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와 관리

박경하 홍윤기 김유환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와 관리

인 쇄 2004년 12월

발 행 200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협동연구팀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51, 2645 (팩시밀리) 901-254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0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와 관리 / 박경하 ; 홍윤기 ; 김유환 [공저].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p. ; cm.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04-13)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270-5 93340

910-KDC4
950-DDC21

CIP200400233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

본 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4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
사회연구회 소관 9개 국책연구기관과 5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약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할 때 동북아에 편재하는 ‘문화유산’, 특히 건축적, 고고학적 문화재 및 기타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어떻게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하여 동북아 미래의 공동 발전을 위한 문화적 공동기반으로 전화할 수 있는지를 다방면으로 논한다. 이는 현재 동북아 초점국가들인 한국, 중국, 일본이 보유하는 문화유산들이 문화(정책)적 차원에서 상생공존과 상호이해의 대의를 사실상 외면한 채 국민국가적 주권 체제의 유지와 강화를 목적으로 단행하는 ‘자기중심적 정체성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다.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이야말로 과거 국민국가로 완전히 자립하기 이전의 역사에서 한, 중, 일 세 나라가 서로의 장점을 잘 인식하여 그것을 자기 생활의 조건으로 전화시킬 수 있을 때 보다 나은 생활양식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본 연구는 현재 유럽 대륙에서 유럽연합의 틀 안에서 유럽유산네트워크를 뼈대로 ‘발전된 정체성 정치’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각종 사례에서 많은 점을 시사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유럽 상황에 준하는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을 연구, 관리하는 방안을 창출함에 있어서 현재의 법제적 상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짚어보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소략하게 기획해 보았다.

I. 동북아 공동의 문화 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의 필요성

1. 동북아의 포스트임페리얼리즘(탈제국주의) 상황과 국민국가체제의 전개: 동북아 공동체 구상의 지리적 범위와 ‘정체성의 정치’의 배경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 지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그것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경제와 정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상을 보인 한국, 중국, 일본을 초점국가(焦點國家, focus-states)들로 놓고, 북한, 대만, 러시아를 제1중간원(第一中間圓)으로 하면서, 몽고, 싱가포르, 베트남, 타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제2중간원(第二中間圓)으로 설정하고, 멀게는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네팔을 외곽원(外廓圓)으로 두르면, 동북아 발전파장의 근거리권과 원거리권의 복합적 윤곽이 떠오른다.

이 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역사적 특색은 일본, 러시아, 타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영국, 프랑스 및 기타 서양 국가들(즉 네덜란드, 20세기 초 짧은 기간 동안의 독일,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의 러시아)과 방금 제외시킨 일본의 제국주의적 지배 아래서 식민지 통치를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서양 제국주의의 ‘직접적 통치’는 종식되었다. 하지만 냉전과 그 뒤의 지구화 과정에 의해 ‘제국주의적 지배 질서’는 사실상 각 나라 사이에서 온존되고 확산되면서 지역 차원에서 ‘포스트임페리얼리즘 체제’(post-imperialist regime)가 성립되었다.

이 포스트임페리얼리즘 체제 안에서 이 지역 국가들은 한편으로는 국민국가 차원의(on the level of nation-state) 세력 결집과 세력 분화를 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 국민국가들 사이에 (between nation-states) 격심한 세력 경쟁을 추동하는 형국으로 20세기가 종료되었다. 결국 21세기가 막 그 초입을 통과하는 2004년 현재, 동북아 초점국가들은 물론 동북아 발전의 파장이 미치는 동아시아권 전체는 ‘국민국가별로’ 생존과 발전을 위한 긴장된 경쟁과 제휴가 복합적으로 착

중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중, 일 삼국의 국민국가 차원에서 포스트임페리얼리즘적 특성으로 분명히 부각되는 것은 이 지역의 각 국민국가가 바로 그 **국민국가 단위**에서 정치적으로는 **승리주의(勝利主義 triumphasm)**, 경제적으로는 **성장주의(成長主義)**,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자기문화우월주의(自己文化優越主義)**를 국민적 체질로 만들어갔다는 것이다. 더구나 문화 차원에서 나타나는 동북아 국민국가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의식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가간 지역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단하게 한다. 그러나 대립의식의 이런 첨예함과 그 위험성을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현재의 순간이야말로, 바로 그런 종류의 대립 의식 때문에 전쟁을 통해 두 번씩이나 국가와 국민을 파탄에 몰아넣었던 과거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시아의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때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근거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동북아 발전과장권의 초점국가로 상정된 한·중·일 삼국은 식민통치가 종식된 이후 포스트임페리얼리즘 체제를 선도하거나(일본) 아니면 거기에 적극 적응함으로써(한국 및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 이 지역에서 특히 경제, 그리고 나아가 권력 정치 측면에서 국민국가적 발전도를 현격하게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초점국가들이 경제 및 정치 면에서 국민국가로서 초기 국면 이상의 발전을 요구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경제 및 정치 측면의 이해관계에서 이들 초점국가들을 사안별로 어느 정도 결합시켰던 ‘쌍무적 협력관계들’만으로 더 이상 조정할 수 없는 국가적 욕구가 제기되었다. 그것은 곧 이들 국가들이 자기 국가를 무엇으로 이해하여 대외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어디에다 자기 입지를 요구하느냐 하는 문제, 즉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에 대한 욕구였다. 정체성의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사 문제이다.

2. 동북아시아 초점국가들(일본, 한국, 중국)의 ‘정체성 정치’의 양상: 역사에 대한 이해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국가가 자신의 활동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순간이 되면 체제 운영 차원에서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 의사결정과정의 중요한 요

인이 된다. 이런 조치로서 가장 전형적인 것은 국가 법률 체계의 정비와 확충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 교육의 정비이다. 역사 교육은 현대 국민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분화를 국민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므로 국가를 주도하는 세력은 정치권력의 안정화를 위해 그 권력의 성격에 부응하는 정신태도가 국민 대다수에게 내면화되기를 바라게 마련이다. 그리고 국가적 필요에 따라 국가의 자기정체성을 규정할 때 다른 국가의 자기정체성을 얼마만큼이나 고려하느냐에 따라 상대 국가 및 자기 국가가 존립하는 지역의 여러 세력들과 정립하는 관계나 그들에 대한 정책 행위의 양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한 국가가 공표하는 자기정체성이 ‘자국중심적·타국배제적 성격’의 정체성인가 아니면 ‘자국개방적·타국연관적 성격’의 정체성인가에 따라 그 국가의 대내외적 권력 행사와 결부된 국가적 실천의 양상과 국가적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정체성의 정치’가 바로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적 냉전과 그 냉전 체제 붕괴 이후의 지구화를 배경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된 포스트임페리얼리즘 체제를 성공적으로 주도하거나 거기에 적응하는 데 성공한 나라들 순서대로, 즉 일본 → 한국 → 중국의 순서로 실행되어 왔다.

가. 일본: 신우익의 대국지향적 민족주의와 시민사회의 간헐적 저항

일본에서 역사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역사 교육 문제를 발판으로 한 정체성의 정치가 시기별로 제기되는 양상은 주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전쟁의 피해자였던 이웃 나라들의 강력한 항의로 야기되는 ‘주기적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특징지어진다. 일본에서 제1차 역사교과서 파동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 일본의 국가정치를 주도한 자민당의 ‘55년 체제’가 역사 교과서를 매개로 일본 국민의 의식으로부터 대동아 전쟁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그 어떤 패배의식도 추방시키고, 일본의 정치군사 대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정신적 발판을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제2차 역사교과서 파동은 1980년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자민당이 문부성에 압박을 가하여 사회 및 역사 교과서에 일본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용어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여 시작되었다. 그

리고 제3차 교과서 파동은 1990년대 중반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이른바 ‘자유주의사관론자들’이 ‘자학사관’(自虐史觀), ‘코민테른 사관, ‘도쿄재판 사관’ 등을 척결하자고 나서면서 발발되었는데, 이 움직임이 활성화되는 계기는 1991년 남북한의 중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2차 대전 중 일본제국체제의 후원 아래 자행된 중군위안부 동원이 인권 침해와 성범죄로 국제적으로 단정되어 그 사실이 1996년 새로 개정된 7종의 교과서 안에 포함되면서부터였다. 일본 교과서 파동은 대략 25년 주기로 반복되고, 정치권, 우익 지식인권, 우익 대중단체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선거를 통해 확보된 자민당 지지를 통해 정치적 추진력을 획득해 오면서 일본 사회의 극보수, 우경화를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일본 사회가 이런 우익 파시즘으로 완전히 획일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실제로 자신들 나름의 교과서를 제작하여 검인정을 통과하고 각급 학교에 채택시키려고 나서자 전일본교직원조합이 앞장서고 대다수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그 교과서의 채택을 사실상 원천 봉쇄시켰다. 이것은 곧 일본 사회 안에 ‘정체성의 정치’에 대해 우익 국가주의와 다른 방향을 취하는 시각도 간헐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일본 안에서의 정체성 정치는 압도적 정치 세력의 지원을 받아 포스트임페리얼리즘 상황에서 대국을 지향하는 우익적 자기정체성 입장을 일관되게 확대시키는 쪽이 일본 민족을 강조하면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가운데 탈정체성의 초국적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 세력이 그 헤게모니에 급진적 비판을 행하는 형세로 진행된다.

나. 한국: 국가절대주의와 민주주의의 정체성 방향 교착

한국에서 정체성 정치가 국가적으로 행해진 것은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장군이 두 번의 선거에서도 대통령으로 거듭 집권하는 데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쿠데타로부터 6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한국 역사에서 유례 없는 속도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 성공한 그는 1968년 들어 “제2경제”의 개념으로 국민에 대한 정신적 관리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국민 교육의 근간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원칙의 수립

에 골몰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구상은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헌장 제정을 추진한 기본적인 정신동력은 ‘국민교육헌장’을 통해 국가적 정체성을 국민 의식에 분명히 각인시키겠다는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자의식이었다. 어느 나라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국적 없는 교육’의 비판을 통해 보편윤리에의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한 ‘국민교육헌장’의 지향점은 단순히 경제에 효율적으로 동원할 기능적 인력의 양성에 그치지 않았다. 헌장의 첫 문장에서 국민의 삶의 최고 의무, 즉 “역사적 사명”으로 규정된 “민족 중흥”의 핵심적인 지향점은 자기의 발전보다 국가의 발전을 보다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국민정신’, ‘성장주의 경제’에 의 헌신, 그리고 반공적 안보를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반공민주주의’를 핵심 구성 요인으로 하는 국가(절대)주의에 따라 각인된 국민적 정체성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쪽으로 작동하여 결국 독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명분이 된 반공주의 자체가 헌장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주의적 정체성 정치는 철저하게 북한 배제적인 대북 불신성 및 대북 공포증을 근본 기조로 함으로써 국가 안의 북한 혐오 세력을 강하게 결집시키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북한에 대해 개방적인 세력이나 북한 그 자체에 대해 ‘온당한 국가 이성’을 보이는 데는 절대적으로 실패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국가가 더 이상 국가주의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 현실과 시민대중 사이에서의 세력 변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치는 국가주의에서 민주주의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경제에서의 국가주의적 규제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IMF사태가 발발하고 김대중 정권 및 노무현 정권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민주화 세력이 그나마 제도정치권의 중요 위치에 진출하게 되자, 정체성의 정치가 ‘색깔론’의 형태로 본격적으로 정쟁의 쟁점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1세기 초엽의 대한민국 국가는 국가주의적 정체성과 민주주의적 정체성이 무정형적으로 교착하는 아주 혼돈스러운 국면에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97년이래 두 차례의 대통령 선거와 의회 총선거라는 국민적 차원의 대결을 거치면서 국가 민주화 과정의 연장선 위에서 민주주의적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세력이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점에서 민주주의적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한·중·일 세 나라 가운데 가장 앞서간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런 국가 차원의 정치적 대결이 문화 차원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짐쳐볼 수 있는 정치권 및 시민권의 정치의식이 문화자산에 까지 확장될 조짐은 아직 뚜렷이 인지되지 않는다.

다. 중국: 문화재의 정치, 그리고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극대화

이에 비하면 후진타오 집권으로 가속화된 중국의 정체성 정치는 국민국가가 자기의 세력 범위 안에서 가동시킬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총동원하여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정체성 정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된 것이 문제인 반면, 중국은 하나의 국가 안에 여러 개의 민족이 동거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민족정책은 중국에 대한 복속상태만 확인되면 자치에 기반을 둔 자율성을 광범하게 허용하고 장기간에 걸쳐 동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수립하면서 중국은 반제국주의 투쟁에서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족과 비한족(非漢族) 모두에 대해 사회주의적 평등주의를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정립하였다. 그러나 한족과 비한족의 **일체화 정책**으로 출발한 사회주의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은 그 안에 소수민족에 대한 강력한 동화 및 통합 정책을 내장하고 있었다.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변화를 고려한 1982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신헌법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을 법적으로 고정시켰다. 그런데 19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계기로 국가 발전 방향을 자립주의적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적 시장주의로 전환시킨 이래 중국은 거의 4반세기만에 대륙 규모의 국가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발전을 성취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균형주의에 입각한 국가 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국가 안의 사회 영역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분화(分化)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면서까지 경제성장 제일주의를 추진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적 성공이 확실해지면서 온당한 사회주의 국가에 서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계층간, 지방간, 그리고 민족간 불균형의 총체적 심화도 명백해지고 있다. 2004년 8월 3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

회 연구팀이 각 대학과 연구소의 저명한 98명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기간 동안 예상되는 중국사회 발전의 열 가지 골칫거리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10대 아킬레스건으로 실업문제, 삼농(농민, 농촌, 농업)문제, 금융문제, 빈부격차, 환경 및 자원문제, 대만문제, 세계화문제, 치안 및 부패문제, 신용위기문제, 에이즈 등 공중위생문제를 뽑았다. 중국 내 인권문제나 티베트 등의 독립 요구, 소수민족의 분열 움직임, 파룬궁 문제, 정치적 민주화 요구 문제, 나아가 정치권의 부패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면서 중국 지배권력에 치명적인 현안 문제가 사실상 은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곧 중국 사회가 엄청난 **원심력적 분열(分裂)의 잠재력**을 안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반증하였다.

중국 사회에서 분출하는 이런 분열 잠재력에 대해 중국 국가의 대응능력과 방안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할 문제이지만,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서 한족을 비롯한 각 민족들이 활약하면서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방대한 문화유산을 국가 통합의 재료로 동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

- 순수하게 역사학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동북공정이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연구 및 발굴 프로젝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왜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비롯한 동북 지방의 과거 역사에 그토록 관심을 갖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이전에 중국 정부가 왜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 전체에 대해 동북공정 규모를 능가하는 여러 개의 연구 및 발굴 프로젝트 사업을 기왕에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이 시작하기도 하는지부터 대답해야 한다. 동북공정을 전후하여 중국 자체 역사의 시간적 확장을 겨냥한 두 개의 대규모 연구 및 발굴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중국 정부는 1996년 5월 ‘하상주(夏商周) 단대공정(斷代工程)’을 시작했다. 그 목적은 중화문명 5,000년을 얘기하지만 이제까지의 자료로는 역사시대가 3,000년에도 못 미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였다. 200여

명의 전문가가 동원됐고 쑤시성(陝西省) 저우위안(周原) 유적, 허난성 정저우의 상청(商城)유적 등 모두 17곳을 새로 발굴했다. 중국 정부는 2000년 11월 9일 하상주 단대공정을 끝내고 ‘하상주 단대연표’를 정식 발표했다. 하나라의 시작을 기원전 2070년으로 확정지었고, 따라서 중국의 역사시대는 총 4070년이 됐다. 현재 기원전 841년보다 1229년을 끌어올렸다.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에 건국했고, 반경이 은(殷)으로 천도 한 때는 기원전 1300년 무렵, 주나라는 기원전 1046년으로 각각 설정됐다. 전설이었던 하나라와 요임금, 순임금은 역사적 사실이 됐다.

- 그러나 여전히 중화문명의 역사시대는 4,000년 정도다. 5,000년에서 약 1,000년이 모자란다. 다시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이 시작됐다. 이 공정은 2002년 11월 중국 언론이 시작을 예고했고 2003년 6월부터 정식으로 개시됐다. 중화문명탐원공정은 ‘중화문명의 시원’을 찾는 프로젝트다. 중화문명탐원공정이 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보면

- 고문헌의 요·순·우(禹) 관련 자료의 수집과 연구 성과 정리
- 중국 천문학의 기원 연구
- 예제(禮制)의 기원과 연구 성과 정리
- 허난성 서부 및 쑤시성 남부 지역의 용산문화부터 이리두 문화까지 고고학 문화 계보
- 용산문화시대부터 하나라 초기 때까지의 취락형태가 보여주는 사회 구조
- 용산시대부터 이리두 시기까지의 야금기술 및 유적,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 초기 각종 부호 및 문자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 생태환경 평가
- 문명기원에 대한 이론과 방법, 연구 성과의 종합
- 탄소측정 방법 연구 등 총 11개 과제다.

‘예비연구’ 과정 중이었던 지난 2001년 8월 14일 중국 후난성 사회과학원 ‘염제순제 과제조’는 “중국 문명은 결코 5,000년 안팎이 아니다”라며 “1만년, 더 나아가 1만 2,000년이나 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의 주장 근거는 순임금의 주요 활동지역인 후난성 잉저우(永州) 다오(道) 현에서 출

토된 볍씨 등의 농작물 종자가 1만 2,000년 전 것이고 각종 고문헌이 방증한다는 것이다. 동북공정이 중국의 역사적 영토를 공간적으로 넓히는 작업이라면, 중화문명탐원공정은 시간적인 영토를 확보하려는 작업이다. ‘위대한 중국’이라는 프로그램 아래 가동되고 있는 이 공정들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중국의 영역을 엄청나게 확장시키려는 프로젝트이며, 중국이 경제·외교적으로 자신감을 얻으면서 강렬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슈퍼 파워’가 되려는 의도를 반증한다. 이런 식으로 갖가지 당면한 정책 현안과 실용적 개발에 대한 관심과 결부되어 중국 대륙 전체에 풀어진 역사 및 고고학 연구 관련 프로젝트로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서남공정(티베트 대상), 서북공정(신장성 및 그 주변 지역 대상), 동북공정, 하상주단대공정, 중국문명탐원공정 등 큰 단위로만 4개 이상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공정이 진행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과거 비중국적인 문화들의 이질적 성격에 대해 중국 학계와 정부는 다민족 통일국가론까지도 넘어, 아주 광대한 의미의 **중화민족론**으로 그 이질적 문화들의 개성적 차이들을 획일화시킨다.

1949년 건국 이래 대륙 중국의 정체성 정치는 중국 내 민족들의 자치권을 모태로 한 ‘민족일체론’에서 시작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적 통합력을 우위로 하는 ‘다민족 통일국가론’으로 한층 강제적 연관성을 부각시키다가, 21세기 들어 예전에는 한족의 별칭으로만 쓰이던 용어의 의미내용을 변용시켜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국 국가 내의 모든 민족적 경계선과 그 개성적 독립성을 일체 부정하여 새로운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성을 기한 문화 관념을 바탕으로 국가우선적 정체성을 핵심으로 하는 ‘중화민족론’으로 귀착되는 과정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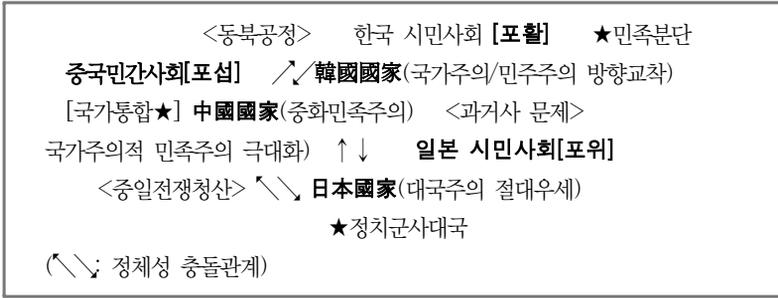
치명적인 문제는 중국 사회 내부에 중국 국가가 점유한 이런 배타적 권력독점성을 항상적으로 견제할 정착된 비판 세력이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의 우익세력이나 한국의 수구세력이 추진하는 정체성의 정치에도 이런 배타적 권력독점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일본과 한국에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민사회가 상당할 정도로 성장하여 국가 이성의 구성에 일정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중국에는 그런 자생적 제동 장치가 거의 정착되어 있지 않다.

3. 정체성 정치와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의 필요성

가. 각국 정체성 정치들 사이의 현재적 관계: 냉소적 무관심 속에서의 긴장된 공존

앞의 논의를 기반으로 국가와 국가의 관계 및 각 국가와 내부 사회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체성 의식에 관한 각국 사이의 현안 문제와 연관시켜 동북아시아 초점국가들의 정체성 정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도를 얻을 수 있다.

<표 요약-1> 동북아시아 초점국가들의 정체성 정치 상관도(2004년 현재)



문제는 이 세 나라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경제적 공동체의 조건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 나라의 정체성 정치가 다른 나라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 나라의 내적 필요에 따라서만 정체성 형성 작업을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우익적 대국주의(일본), 국가주의(한국), 중화민족주의(중국)는 모두 ‘폐쇄적이고 자국중심적인 정체성 구조’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정신태도를 양성한다. 이런 자기중심적 성격의 정체성은 그 안에 타자배제적이거나 타자경시적인 성향을 내장한다. 그러면서도 아주 다행스럽게도 현재 이런 자기중심적 정체성은 타자공격성으로 표출될 만큼 이웃 국가와 바로 충돌할 여지가 있는 ‘현실적이고도 당면한 성격의 이익 분쟁점’, 예를 들어 당면하게 표출된 영토나 자원 분쟁 등과 같은 직접 충돌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아직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국가들 사이

에 위의 표에 적어놓은 쟁점들(즉, 역사교과서 문제, 동북공정, 남경 학살과 같은 중일전쟁 중의 전쟁범죄 등)로 정체성 정치의 충돌이 야기될 경우, 특히 각 사안에서 피해자 입장에 선 나라들로부터 대중적 차원에서 격한 국민감정이 분출된다. 이런 현상의 반복은 세 나라 국민들 사이에 심층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며, 현안이 불거지지 않는 평상적인 상태에서는 문화적 교류보다는 '상호 냉담한 무관심 속에서 긴장된 공존 관계'가 유지된다.

나. 동북아 문화유산의 공동 연구와 관리의 필요성: 문화적 풍요의 교류를 통한 학습가능성과 평화로운 공존 방식의 의식적 추구를 통한 평화문화의 정착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중, 일 삼국이 현재로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명국, 그것도 문화적으로 고도의 발전을 달성한 역사가 있는 문명국이라는 점이다. 세 나라는 과거 상당기간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며, 그러면서도 각기 고도의 기능을 가진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완성해 냈고, 서로의 장점을 학습함으로써 자기 나라 인민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문화적 가능성을 창출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 초기 적응 과정에서 과오와 그것에 대한 근본적 청산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현재 동북아시아 3개국은 서로의 문화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인간적 삶의 풍요로운 가능성을 교류하고 체득할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아무런 피해의식이나 선입견 없이 그리스·로마 신화를 비롯한 구미의 문화적 산물을 수용하였을 때 누릴 수 있었던 더 많은 문화적 풍요의 체감과 이런 냉담한 상황 속에서의 상호 무관심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삼국 국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놓치고 있을 아시아 역사와 문화 속에서 축적된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상실하고 있는지 분명히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에 대해 추상적인 국가로서 그 나라들에 대한 선입견이 그대로 그 구성원들에게 투사되는 이른바 '구성의 오류'가 너무나 만연해 있다. 당연히 이런 오류적인 선입견은 서로의 행태와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방해

가 되며, 방해되는 만큼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오해와 불신의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는 동북아 각 나라의 국민이 처한 이런 생활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다 유익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첫번째 필요성은 바로 이 서로의 삶의 양식과 그 역사적 삶의 과정이 지나는 문화적 학습 가치에서 찾아진다.
- 그리고 서로의 역사와 영토 안에서 국민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에 서로의 삶이 영커 독특한 문화물이 창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삼국이 과거 한 번도 서로에게 폐쇄적으로 고립되어 지낸 적이 없다는 점을 서로의 대중에게 좀더 체계적으로 인식시키고 교육시켜 삼국의 국민이 서로의 발전의 긍정적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납득시켜야 한다. 이렇게 교류의 역사적 지속과 각 문화발전의 긍정적 기여의 확인 필요성이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조성할 두번째 필요성이 된다.
- 나아가 혼자 폐쇄적으로 살기보다는 삶의 현장이 타국으로까지 확장되고 개방되어 자기 삶의 가능성을 보다 풍부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평화로운 상생의 질서를 창출하여 공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자는 것이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의 세번째 필요성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4. 문화유산 공동 연구 및 관리의 필요성과 방안

가. 문화유산 개념의 국민국가적 계박성과 인류적 개방성을 지향하기 위한 발상 전환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또는 ‘문화재’(cultural property)는 상호 교착적으로 쓰이지만 그 외연은 비교적 명확하게 판별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의 성립과 내용 자체가 국가 또는 민족 중심적이다. 보통 문화재란, “① 민족단위의 공동체적 산물로서 **한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확고한 정신적 가치를 지니는 것임과 동시에, ② **문화적으로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으

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한다.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 정책에서 규정의 핵심적 문제의식은 국민국가적 정체성의 역사적 확정에 있다. 그러면서 이 정체성의 외연을 인류 지평과 직결시키고 있는 이중성이 문화유산 개념에는 언제나 병존하고 있다.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UN과 그 유관 국제기구에서 채택, 권고한 대부분의 협약 또는 성명들은 철저하게 국민국가를 문화유산의 관리와 운용의 기본단위로 설정하여 그에 의거해 모든 정책과 활동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 개념은 일차적으로는 철저하게 국민국가의 주권을 문화적으로 정당화 또는 보강하기 위한 ‘정체성 정치’(politics of identity)에 계박(繫縛)되어 그 자체만으로는 문화적 공동성의 발상이 관철될 정신적 여지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문화적 공동성의 구축은 그 어떤 역사적 과거나 현존하는 문화사상(文化事象)에서 객관적으로 직접 추출되기보다, 공동의 생존에 대한 현재적 필요성에서 기왕의 차이났던 문화적 개성들을 공존할 생활세계권역 안에서 창조적으로 연관시켜 **그 생활세계권에서 이루어질 삶이 보다 풍요롭고 다양하게 실현되도록 만들**으로써 가능하다. 공동의 생활세계를 창출한다는 발상을 기본으로 하여 정체성과 다양성을 아울러 창조적 네트워크를 추구한 선례로 우리는 유럽연합이 범대륙적으로 실시하는 문화유산 공동정책과 그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필요 정보를 실시간에 공급하는 ‘유럽문화유산 네트워크’의 전례, 그리고 구체적인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실질적인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례로서 ‘유럽문화도시’ 운영을 살펴볼 수 있다.

나. 유럽연합의 문화유산 공동 정책 개관

1974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문화영역에서 공동체 차원의 조치, 특히 문화유산 보호조치의 필요를 언급한 선도 결의를 수용하였다. 1993년 이래 ‘유럽공동체 창설 조약’ 제151조는 EC가 유럽적 의의를 지니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취하는 조치를 지원하고 보완해야 함을 명문화하고 있다. EC가 초기에 취한 조치는 아테네

의 아크로폴리스나 리스본의 키아도 역사 센터 같은 “건축 유적물”의 복원을 지원하는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이래 EC는 동산 및 부동산 유산(박물관, 수집관, 도서관, 문서고 등), 고고학적 및 건축학적 유산, 자연 유산(자연상의 관심을 끌 만한 풍광 및 장소), 언어 및 음식 유산, 그리고 전통적 직업 등과 관련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다. EC가 취했던 이런 종류의 조치는 문화유산이 지니는 문화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1) 유럽적 정체성 정책의 매개물로서의 유럽공동유산

무엇보다 유럽에서 문화유산은 문화적 정체성의 매개물로서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어떤 문화유산에 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냐 하는 것은 그 문화유산을 촉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이 쏟아졌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유럽인들이 자기 나라 자체의 문화와 유럽연합(EU) 다른 회원국의 문화와 친숙해지고 그 가치를 평가할 줄 아는 역량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 따라서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문화협력 프로그램인 <문화2000>(Culture 2000)의 핵심 목표로 **유럽의 공동유산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을 꼽고, 그 예산 중 대략 34%를 이 목적에 책정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문화유산의 복원기술을 다루는 “유럽 유산 실험실”(European heritage laboratories) 등을 비롯하여 유럽인의 정체성 형성에 전례가 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개발에 전력을 투구한다. 그러면서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생성되고 있는 문화 활동의 지속적 보존에도 주목하여 2000년 6월 26일 결의에서 유럽평의회는 유럽 영화 유산의 보존과 증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유럽연합은 **문화유산에의 공적인 접근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유럽평의회와 합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프로그램>(the SOCRATES programme)은 학교와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유산 영역에서의 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the Leonardo da Vinci

- programme)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전통 기능 및 문화유산의 복원과 개발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지원한다. 나아가 지방언어와 소수자 언어를 진흥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는데, 이들 언어가 유럽의 문화적 유산 및 언어적 유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유럽연합은 1999년 유럽평의회가 착수했던 <“유럽, 우리 공동의 유산” 캠페인>(“Europe, a common heritage” campaign)과 같이 **문화유산에 관한 자각**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에 관여한다. <유럽 유산의 날>을 진행하는 데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기념일은 1991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다. <문화2000> 프로그램은 공동유산에 대한 자각을 고양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필요성은 유럽의 경계선 너머로 확장된다. 유럽연합은 세계유산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국제기구 및 유럽연합 비회원국과 같이 활동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세계유산 보호는 유럽연합의 동반 국가들과 체결한 각종 동의안에도 명시적으로 공포되고 있다.

(2) 경제 발전의 한 요인으로서 문화유산

유럽의 문화유산은 경제적 조건으로 보더라도 귀중한 자산이다. 이 점을 충분히 명심하여 유럽연합은 문화와 관련된 직업 훈련, 지역 개발 및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 영역에서 구상되는 기획들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만인이 공유하는 가치 있는 자원으로서 국가적 차원과 범유럽적 차원 모두에서 보호되고 있다.

- 자신이 재원을 제공하는 각종 연간 프로젝트나 협력 동의안을 통해 <문화2000> 프로그램은 문화적, 고고학적, 건축적 유산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동성과 훈련을 촉진시킨다. 마찬가지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도 유리 세공 같은 전통 직업 영역의 훈련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유럽사회기금(the European Social Fund)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는 국가적 프로그램 아래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진들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유산 영역에서도 훈련

을 제공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 유럽연합 테두리 안에서 창설된 각종 기금이나 기구는 유럽 전역의 문화유산을 **지역 발전과 고용에 연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한다.
- 기술공학은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그 복원과 보존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2001년 6월 유럽의회는, 특히 확장 일로에 있는 문화재 암거래의 폭증을 그 전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각 국가 및 공동체의 정책들과 조치를 연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는 규제와 지침의 실행에 대한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공포하였다. 2002년의 평의회 결의안도 행정부, 경찰, 사법부를 포함하는 국가/공동체 연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쟁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다. 유럽유산네트워크(European Heritage Network)

<유럽유산네트워크>(www.european-heritage.net/)는 유럽평의회의 범위 안에서 유산 보호의 책무를 지닌 정부 차원의 서비스들을 수집하는 항구적 정보시스템이다. <유럽유산네트워크>의 초점은 문화유산, 특히 그 가운데서도 유럽연합 차원의 제반 법률적 조치들의 맥락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은 건축적 유산과 고고학적 유산들이다.

보존 전문가, 유산 중개자, 연구활동가, 단체 회원, 청년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의 존립 목적은 각종 프로젝트와 동반자관계의 출발을 고무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이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자신들의 협력을 개선하는 방식을 기대하는 유산 가족과 다수의 전문가들 및 개인들을 위한 각종 운동과 이상적인 “만남의 터전”을 위해 제공되는 국제적 배출로이다.

유럽유산네트워크는 건축 유산과 고고학 유산에 관한 유럽평의회의 문서 데이터뱅크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도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헤레인 프로젝트>(HEREIN projects)를 통한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의 모범적인 협조 덕분에 창설되었다. 그 프로젝트는 유럽평의회와 유럽위원회로부터 재원의 50%를 후원받으며, 공사간의 참여기관 및 개인들로부터 나머지를 조

달받았다.

라. 유럽 문화유산 공동 운영 사례: 유럽 문화시 (Kulturstadt Europa)

1985년 6월 13일 당시 그리스 문화부장관이자 왕년의 톱클래스 영화배우였던 멜리나 메르쿠리의 발의로 성안된 이 프로그램은 매년 유럽의 각 도시를 “유럽문화시”로 선정하여 그 타이틀을 부여하고, 다른 도시나 국가들이 이 유럽문화시의 축제나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줌으로써 문화적 관심과 관광객을 범유럽적으로 몰아주는 성격의 기획이었다. 문화시로 선정된 각 도시들은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문화시로서의 독특한 면모를 부각시킬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문화시로 선정된 도시는 자신의 문화적 개성을 부각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동시에 범유럽적인 홍보에 힘입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도시를 방문할 기회를 인위적으로 대거 창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된다. 문화시로 선정된 곳은 경제적 이득과 문화적 자부심을 다같이 챙기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보아왔다는 것이 중평이다. 이 도시들에서는 해당되는 연도에 성대한 이벤트가 열림으로써 유럽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축제가 벌어진다. 이를 계기로 각 나라들은 서로의 문화를 비교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교류의 장을 창조해낸다. 유럽이 ‘하나의 집’이라는 것을 체감시키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창출되는 것이다.

II.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분포 및 관리 현황

1. 문화유산의 개념 및 분류

가. UNESCO의 문화유산 분류

유네스코에서는 1972년부터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등록사업을 시작하였다.

(1) **문화유산:** 기념물(Monuments), 건축물군(groups of Building), 유적(Sites)

- (가) 기념물: 건축물, 기념조각 및 회화작품, 고고자료, 금석문, 동굴주거, 복합유구 등으로서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현저히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
- (나) 건축물: 독립된 또는 서로 연관된 건물들로서 건축기술상으로는 배치상태로 보아 균일한 것들로서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현저히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
- (다) 유적: 사람이 이룩한 것 또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빚어낸 것, 그리고 고고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역사상, 관상 또는 민족학이나 인류학의 견지에서 현저히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

(2) **자연유산:**

- (가) 무기적(無機的)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서 관상 또는 과학상 현저하고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나) 지질 또는 자연지리적 생성물 그리고 위협에 처한 동식물의 식지와 자생지.
- (다) 과학상·보존상 및 자연의 미관상 현저하고 보편적 가치를 갖는 자연지역.

나. 유럽연합(EU)의 문화유산 분류

1985년에 제정한 유럽건축유산보호협약과 1992년에 개정된 고고유산보호협약에 나와 있는 문화재 분류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문화유산**

- (가) 기념물은 건축물, 구조물 등 역사상, 고고학상, 예술상, 학술상, 사회적 또는 기술상 뚜렷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그 부속물과 구를 포함한다.
- (나) 건축물군은 도시 또는 농촌의 건축물군 가운데 동질의 것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역사상, 고고학상, 예술상, 학술상, 사회적 또는 기술상 뚜렷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동일한 지형단위 안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다) 유적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 부분적으로 개조되었으나 지형상 뚜렷이 구분되는 동일성이 보이며 역사상, 고고학상, 예술상, 학술상, 사회적 또는 기술상 뚜렷한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2) 고고유산

- (가) 보존하고 연구함으로써 인류역사와 함께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추적해볼 수 있는 것.
- (나) 발굴, 발견,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연구로 사람, 그리고 사람과 환경의 관계를 밝히는 데 정보의 원천이 되는 것.
- (다) 각 나라의 법적 영토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다.
고고유산에는 유구, 구조물, 건축물군, 도시, 동산문화재, 그밖에 여러 가지 기념물들이 있고 땅위에 있는 것과 수중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동북아국가의 문화유산 분류

(1) 한국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고 구분하고 있다.

-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기념물 - 사지(寺址)·고분·패총·성지(城址)·궁지(宮址)·요지(窯址)·유물포함층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學術的 가치가 큰 것

민속 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2) 일본

일본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민속문화재를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독특하다.

유형문화재 - 건조물(building and structure), 회화, 조각, 공예, 전적, 고고역사자료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공예기술

민속문화재 - 무형민속문화재(의식주, 생업, 신앙, 풍속습관)

- 유형민속문화재(무형에 사용된 의복, 기구, 가옥)

기념물 - 사적, 명승지, 천연기념물

전통건조물군 - 숙박촌, 읍성, 농어촌

(3)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1991)’에서는 역사, 예술, 과학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산물 못지않게 사회주의 혁명과 관련한 현대사 자료유산들을 중점보호하고 있다. ‘문물보호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종별로 구분하고 있다.

- 고고문화유적지·고분·고건축·석굴사원과 석조물

- 혁명운동 건축물·유적지

- 예술품·공예미술품

- 혁명문헌자료·친필원고 등

- 역사문화 명승

- 풍경명승구 등

(4) 북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1944)에 의해 문화유적을 정의하고 문화유적은 역사유적과 역사유물로 크게 가르는 방법을 쓰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없으며,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1990), 그리고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1990)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문화 유적: 역사유적 - 원시유적, 성, 봉수,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가마터

역사유물 -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 고서적, 인류화석, 유골

천연기념물: 자연물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및 풍치상 의의가 있는 것. 동식물, 화석, 광천, 동굴을 비롯한 자연물

명 승 지: 정치가 뛰어난 곳

2. 동북아국가의 문화유산 분포

가. 중국

중국 동북지역의 고조선, 고구려 유적을 비롯하여 발해는 그 유적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황하 일대에는 백제부흥운동과 관련된 부여용 흑치상지의 무덤 등이, 양자강 일대에는 통일신라 고려시대에 교류한 불교 문화유산들이 있다.

나. 일본

고대국가의 중심이었던 나라지방을 중심으로 백제, 고구려, 신라 유적이 있다. 구주, 대마도에는 조선시대까지의 유적이 상당수 있으나 한국과의 연관성을 배제시키거나, 그 관련성을 일본 또는 중국과의 것으로 왜곡시켜 놓고 있다.

다. 북한

기원전 중국관련 유적을 비롯하여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시대까지의 유적이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3. 각국의 문화유산 관리 정책

가. 유럽연합(EU) 및 영·미 문화유산 관리 정책

(1) 유럽연합(EU)

유럽 연합의 27개 나라들은 역사와 전통을 함께 하며 이루어온 유산들이 많은 곳이며, 그와 함께 경제공동체를 구상하면서 사회문화 통합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975년 “유럽건축유산의 해(Year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of Europe)”를 계기로 하여 유럽의회는 문화유산 보호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96년 유럽의회 정상회담에서는 유럽공동의 유산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1999년 제2차 정상회담에서 유산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 구성, 국가 또는 지역간 활동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유럽 여러나라의 문화재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은 이미 협약의 형태로 두 차례에 걸쳐 기본방향이 제시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라마다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법과 행정체제가 다르고 중앙집권형과 지방분권형 등 통치방법이 다름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하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연방제 나라들에서는 연방법 체계안에서 등급화(영국), 국가지정과 지방지정을 구분하는 곳(스칸디나비아 지역, 포르투갈, 동유럽지역 국가들) 등이 있다. 문화재 지정대상은 자동지정방법과 지정기준에 의한 지정방법이 있다. 자동지정은 연대 또는 시대를 기준으로 일정한 기준이 되면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리스에서는 1830년 이전의 기념물들은 지정대상이 되며, 특히 1453년 이전의 기념물들은 주변경관을 포함하여 지정 보호한다. 덴마크에서는 1536년 이전의 부동산문화재는 모두 지정대상이며, 노르웨이에서는 1537년 이전의 문화재와 랍(Lapp)족의 기념물과 유적, 100년이 넘는 난파선들을 모두 지정하게 되어 있다. 말타(Malta)에서는 50년이 넘는 건축물과 유적은 모두 보호하며, 아이슬란드

에서는 1939년 이후의 건축물은 문화재지정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있다. 이와같이 문화재 지정기준은 문화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럽 건축유산보호협약 제7조에는 문화재와 함께 주변경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는 문화재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도시계획과 건축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기념물보호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연방자연보호법(1987)’에서 지정기념물 주변과 역사상 중요한 경관보호를 위해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영국

영국의 문화재보호 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3원조직에 의해 운용된다.

영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882년에 제정된 ‘고대기념물보호법(Ancient Monuments Protection Acts)’에서 비롯된다. 1900년에는 법을 개정하면서 역사기념물 평의회를 구성하여 등록심의를 하도록 하였다.

그 뒤를 이어 1913년에 ‘고대기념물통합개정법’이 나왔고, 1931년에 일부 보완되어 현행법인 ‘고대기념물과 고고유적법(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s, 1979)’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건축물과 기념물보존을 위한 ‘역사건축물과 고대기념물법(Historic Buildings and Ancient Monuments Act)’이 1953년에 제정되어 중요건물의 유지, 수리 보조금 지급(공개를 조건으로) 제도를 만들고, 1944년에는 특별보호건축 목록을 작성하여 도시지방계획장관은 건축·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 보호목록에 작성하도록 지방계획청에 지시(등록과 동시에 지도에 표시 도시계획에 기본도면 제시)하고 1급과 2급은 법정목록에 기재하여 현상변경을 위해 지방계획청에 2개월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3급은 보충목록에 등재하기로 하였다.

영국의 문화재정책은 1967년에 제정된 ‘시민쾌적생활환경법(Civic Amenities Act)’으로 통합되었고, 1971에 ‘도시전원계획법(Towns and Country Planning Act)’으로 통합되었고, 1974년에는 ‘도시전원생활환경

법'으로 개정하여 개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보호행정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895년에 시작된 국민신탁기금(National Trust) 운동은 산업혁명으로 전원지역이 황폐화될 것을 걱정하는 3인이 창립하여 보존이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 보존하는 순수 민간운동으로서 1907년과 1937년에 '국민신탁기금법'을 제정하여 민간운동을 뒷받침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에서 문화재 보호는 1830년에 내무부(당시 장관은 역사가 Gizzot)에서 미술품과 고건축조사를 시작하였고, 1841년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1905년에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면서 대회당은 국유, 기타 교회당은 지방공공단체 소유가 되었다. 역사기념물 보존을 위한 '역사기념물법'이 1913년에 제정되어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높은 건축물, 미술공예품은 문화부장관이 역사기념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였다. 1914년에는 문화재금고법을 제정하고 1921년에 문화재금고(金庫)가 발족되었다.

1943년에는 역사기념물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1913년의 법을 고쳐 유적과 역사기념물 주위 500m를 경관보존지구로 지정하고, 곳에 따라서는 500m 이상 지역까지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유산과 풍치보존을 위해 1930년에 천연기념물 및 풍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술, 역사, 과학, 전설, 미관 등 관점에서 보편가치가 있는 자연유산 및 풍치를 지정보호하며 주변경관보호 허가제도와 지정구역 주위에 보호대를 설정하였다. 역사지구 보존을 위해 1962년에는 '역사지구보존법'을 만들었다. 건축, 도시, 경관유산 보전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문화유산보존지구(ZPPAUP)제도는 1993년에 나타난 것으로 문화재보존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여 시도지사가 최종승인을 하게 하였다.

(4)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939년에 역사적, 예술적 재산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예술, 역사, 고고학, 민속 가치가 있는 부동산과 동산 문화재를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요한 것을 지정 고시하여 보존책

임을 국가에서 맡고 국가는 보존문화재를 사들여야 하는 책임이 있고, 소유자는 지정후 2개월 이내에 매취청구권을 갖게 된다. 지정문화재 파괴, 이동, 개조, 보수 등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적발굴도 허가제이다. 또한 1939년에 자연미, 풍광미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각 지방에 보호위원회를 두고 목록작성과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부동산에 대한 현상 변경 허가제와 옥외광고물 및 공공사업에 대한 규제, 중세도시보존을 위해 시의회에서 도시보존 계획 또는 재개발계획 형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독일

독일은 바이마르(Weimar)공화국 헌법에서 “미술적, 역사적 기념물은 국가에서 보호”하도록 하였고 연방법에서는 ‘독일문화재의 해외유출방지에 관한법(1955)’만 제정하고, 각 연방법에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바이에른주 ‘기념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1973)’을 보면 기념물 목록에 등록하여 공시하면 기념물로 지정되며, 지정은 주정부 기념물관리청이 지방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기념물관리자(소유자 등)와 해당지역 향토보호원이 등록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6) 미국

미국의 문화재법으로는 ‘고대유물법(Antiquities Act, 1906)’, ‘사적법(Historic Sites Act, 1935)’, ‘국가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1966 개정)’들이 있다.

한편 문화재보호의 실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로서, 1949년 설치를 인가한 ‘합중국 역사보호 내셔널트러스트법’, 그리고 기타 약간의 문화재보호 관련법도 포함한다. 이외에도 1966년 ‘가환경정책법’, ‘모텔도시 및 수도개발법’등이 있다.

국가지정 역사유적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국법(1916)’에서는 연방 내무부가 국립공원과 국립기념물 보존사업에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 동북아 국가의 문화유산 관리

(1) 한국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령으로는 1916년 조선총독부 제 52호로 제정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 최초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유적과 유물에 관하여 규정된 것이고 그 후 1933년 조선총독부 제 6호인 ‘조선보물고적승명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제정되어 1962년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제정될 때까지 29년간 그 효력을 유지하였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문화재는 국보로 지정하였으나 우리의 문화재는 보물로 지정하여 격을 낮추었으며, 당시 일본인의 가치관에 의해 일부분만 지정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문화재는 1962년 이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지정·보호하게 된 것이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7장 73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최초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 일본 - 문화재보호법

일본은 1950년, 그 이전의 문화재보호법률인 ‘고사사보존법(1897)’,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19)’, ‘국보보존법(1929)’, ‘중요미술품의 보존에 관한 법률(1933)’ 등을 통합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특색은 포괄성과 재산권 존중 및 중점보호주의에 있다. 우선 포괄적인 성격은, 제2차세계대전 전전(戰前)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국보보존법·중요미술품 등의 보존법 등을 1950년에 제정한 문화재보호법에 통합함과 동시에 거기에 무형문화재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의 중점보호주의 채택은 많은 문화재 가운데서 그 문화적 혹은 역사적인 가치나 희소성에 따라서 이를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국 - 문물보호법

중국의 문화재법은 ‘중화인민공화국문물보호법’이 기본이 된다. 문물보

호법은 1982년에 제정하고 1991년에 개정하였으며 모두 33개조로 이루어졌다. 법에 근거하여 국가문물국이 제정한 50개조의 실시세칙이 있으며, ‘고척추동물화석과고고인류화석보호방법’, ‘역사문화명승보호관리방법’, ‘고고발굴관리방법’ 등을 따로 만들었다. 이 법을 만들면서 1961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문물보호관리잠행조례(文物保護管理暫行條例)’는 폐지되었다.

법 제정의 목적은 중국의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계승하여 애국주의와 혁명전통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문화재관리 책임은 법에 따라 전국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법에 따라 관리, 감독 및 지도를 하며, 문화재 관리의 실제 책임은 지방정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에 근거하여 등급화하고 국가지정 또는 지방지정으로 구분한다.

(4) 북한 - 문화유물보호법

북한의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령을 보면 1946년 4월 29일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전문 11조)’과 시행규칙(전문 28조), 시행수속(전문 13조), 그리고 1948년 11월 1일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전문 4개항),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규정(전문 11조 5항) 등을 제정하여 유적 발굴·보존·관리 등을 행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유물과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정무원에 ‘문화유물보존지도국’을 두고 있으며 지방의 유물과 유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하에 ‘문화유적관리소’를 두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인 관리와 함께 문화유적과 유물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사회과학원 산하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각 도의 ‘역사박물관’역시 같은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Ⅲ.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법적 방안

1. 개설

동북아 제국가의 문화유산을 공동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의 분류체계의 확립과 문화재 보호 및 관리, 불법거래의 방지 등의 관점에서 동북아 각국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 국가 간 협력과 공동의 규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적용될 국제규범의 정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동북아의 경우 이러한 국제규범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다.

동북아에 적용 가능한 세계적인 차원의 문화재관련 국제규범이나 양자조약 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역 내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실효적 규범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역내 국가들간의 이해의 증진과 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문화협력을 위한 지식공동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선결적인 조건이 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동북아 문화유산의 실질적인 공동관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공동의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이것을 국내규범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 동북아와는 달리 이미 어느 정도 이러한 문화적 지식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1954년에 문화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동북아의 경우에도 유럽의 문화협정에 준하는 동북아문화협정 또는 동아시아문화협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협정을 통하여 동북아문화유산의 공유를 개념화하고 이를 동북아문화유산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의 관리를 위한 정부간 협력기구 또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협력기구의 공동설치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선 동북아문화장관회의 그리고 동북아 문화지식인 포럼 등을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민간분야와 정부분야 모두 동북아 문화유산에 대한 지역 내의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동북아문화재위원회의 구성에 이를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구체적인 발전을 위하여 유럽이나 아세안의 공동 문화유산 관리

를 위한 법제 발전이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매년 동북아문화도시를 지정하여 동북아가 인정하는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관심을 표하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법제 준비의 쟁점

가.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를 위한 민간 및 정부 차원의 공론의 장 형성: 문화지식인 네트워크의 형성과 정부간 협의기구의 모색

(1) 국제레짐이론과 동북아 문화지식인 네트워크의 형성

동북아에서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내 정부와 시민 사회 상호간의 협력이 절실하다.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인식이나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경제적 동기 등이 각국의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할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제관계이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국제레짐이론에 따르면 국제 사회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집단, 즉 지식인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국제레짐이론은 국제환경협약의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지만 동북아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제적 문화지식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① 법학자, 고고학자, 예술사가를 비롯한 학자들, ② 정부공무원과 문화재보호와 관련한 국제기구(특히 UNESCO) 직원들, ③ 문화재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NGO 및 기타 민간기구(예컨대 ICOM)의 전문가들 등을 들 수 있다.

(2)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정부간 협의기구의 설립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는 법적, 정치적 사안이므로 민간차원의 협의네트워크와 함께 정부간의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간의 협

의기구는 예컨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처럼 이미 세계단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서는 동북아지역의 지역 내 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간 협의는 단계적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차적으로 동북아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문화장관회의와 같은 협의 기구를 만들고 논의의 진전에 따라서는 동북아문화재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간 협의의 대상을 문화유산에만 국한하지 말고 보다 광범위한 지역 내의 문화적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 협의의 차원도 반드시 장관회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무자협의 회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정부간 협의기구가 다룰 의제는 동북아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전부에 미칠 수 있을 것이지만,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과 문화재의 공동개념 범주(category)의 정립, 문화도시의 지정과 동북아 공동의 문화행사의 기획,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 공동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공론장의 형성

이처럼 민간차원의 문화지식인공동체와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정부간의 협의기구를 형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법적 협력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문화협력을 위한 협정 또는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동북아 각국의 문화지식인그룹과 정부관계자들 사이에 현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동의 인식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를 위한 공론장의 형성은 법적 협력의 기초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를 이루는 것이다.

나. 문화재의 개념과 분류 방법 등 문화재 행정의 표준화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를 위한 첫 출발은 관리대상이 되는 문화유산과 문화재에 대한 개념과 분류방법에 대한 상호이해의 확립과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강릉단오제의 인류구전 및 문화재 걸작 등록에 대해 중국이 단오절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개념정립과 분류방법이 동북아국가들 사이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서 공동의 문화유산보호 및 관리에서 공동의 보호 및 관리대상이 되는 문화유산과 문화재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일 국가 안에서도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문화재가 있듯이 국제적인 문화유산이나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도 세계적 차원은 아니면서도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서 동북아 국가 공동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문화유산과 문화재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경우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서 하나의 문화적 콘텐츠가 중복되지만 상이한 문화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 콘텐츠의 개념적 이해와 분류에 대한 상호협약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국가간 문화재 행정은 문화정책의 목표에서부터 방식, 추진체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동의 보호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북아 각국간의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서 다소간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양도의 공동규제

(1) 동북아에서의 문화재의 불법적 거래규제의 필요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동북아에서의 문화재의 불법적 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중인 도시화와 근대화 작업은 많은 문화재의 물리적 보존에 위협이 되어 왔으며 근대화과정에서 많은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발굴되어 왔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부를 형성한 동북아 지역의 기업과 개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재의 수집 등에 관심을 가지는 계층을 확대시켜 문화재의 수요자 층을 두텁게 하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증대된 문화재에 대한 수요는 동북아 각국에서 문화재에 대한 밀거래가 성행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고구려사 논쟁에서 발견되듯이 동북아 국가들이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자국에서 생산된 문화재를 회수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도 문화재의 불법거래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문화재의 불법거래의 양상은 경제적, 정치적 동기 이외에 민족적 정체성과 자존감의 회복 등 다양한 관점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재의 불법거래 규제는 매우 복잡한 국제관계의 양상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고 동북아국가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가 긴요한 분야라고 할 것이다.

(2)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지역적 조약 체결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으로 여러 가지 조약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것은 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1970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UNESCO 협약,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1995년의 UNIDROIT협약, 2001년 수중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이다.

그러나 1970년의 협약은 대부분의 규정이 집행을 위하여 당사국의 국내법상 입법조치를 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사국들이 자국의 형편에 따라 신축적으로 협약상의 규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약상의 의무 중 일부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아직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준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1995년 UNIDROIT협약은 1970년 협약이 가지는 자기집행적 성격의 결여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통일적 규율을 가지고 있으나 동북아국가 중 일본과 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2001년의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도 문화재의 자국 영토로의 반입, 거래 및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이 잇기는 하지

만 이들 규범이 동북아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거나 아직 관련 조약의 미체결국이 많아서 실효적이지 못한 점이 많으므로 동북아지역에서의 문화재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서는 동북아지역 나름의 지역적 협약 또는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적인 협정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국가들로서는 가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적용대상지역이 넓은 만큼 각국의 사정에 대한 고려로 인하여 집행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좀더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실행가능한 지역적 국제협약 또는 국제협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동북아 각국의 국내법 정비

동북아의 실정에 적절한 문화재 보호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협정이 동북아의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합의가 국내법적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북아간의 문화재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약체결과 국내법 정비를 모니터링하는 동북아 문화지식인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중국의 경우 문화재의 불법반출을 방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불법반입을 방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9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문화재보호법 제78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입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결여 되어 있어 1970년 UNESCO협약의 국내이행의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국가간의 각종 협의채널을 통하여 문화재보호와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동북아 각국의 국내법 정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지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도 문화지식공동체와 정부간 협의기구 등 동북아 문화의 공론장을 통한 사전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민법상 선의취득제도에 대한 특별규정의 마련

도난 또는 불법거래된 문화재의 불법거래방지를 위해서는 민법상 선의취득제도의 배제 또는 제한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선의취득제도는 대륙법계에서 비교적 강한 보호를 받고 있는데 판매자의 권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가 도난 등에 의해 권원이 확실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정당한 권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도난품일지라도 그것이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문화재를 구입한 경우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막기 힘들게 된다. 또한 이 제도를 활용하여 도난 문화재를 세탁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의 UNIDROT 협약은 제3조 제1항에서 “도난 당한 문화재의 점유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협약 제4조는 선의취득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 현재 이 협약에는 한국과 일본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서 선의취득으로 인한 문제는 동북아 국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중국은 아직 민법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동북아 국가간의 협의를 통해 국내법을 정비하든지 아니면 국제협약에의 공동가입 또는 새로운 지역협정의 체결 등을 통하여 선의취득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라. 문화적 약탈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간 문제의 해결

동북아 국가 사이에 문화적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거 동북아의 불행한 역사로 인한 문화적 부채가 청산되어야 한다. 즉, 피해를 입힌 측은 주로 일본이 되겠지만 동북아 국가간의 문화재 약탈행위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 등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있는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함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한일간에 체결되었고 이 문서에는 부속서 및 합의의사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의 체결과정에서 한일양국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어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일본 측의 반출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반환”이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증여”라는 용어가 채택되지 못하고 결국 “인도”라는 용어가 채택됨으로써 협정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 봉합으로 마무리지어졌다.

이처럼 한일간의 문화재반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일본과 북한간의 문화재 반환협상을 계기로 동북아 전반에 걸친 문화재반환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이 문제는 자칫하면 국가간의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관한 국제규범과 현실여건을 반영한 실효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문화재의 반환을 위하여는 국가간 협상의 방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자의 기증 그리고 매입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무상반환, 소장자의 기증, 매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각종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동북아 국가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문화재 반출의 경우와 현재의 소유권 상황 등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반환의 방식을 마련하고 이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제도를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당사국가간에 따라 다소간 문제의 양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동북아 문화협력의 큰 틀 안에서 일반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국가별, 사안별 구체적 해결책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및 그를 위한 공동연구

동북아의 문화재 및 문화유산은 동북아 각국의 상호관계와 영향 가운데 형성된 것도 많고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나 동북아 다른 국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문제된 강릉단오제의 경우도 단오는 중국에서 유래되었으나 강릉단오제는 한국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고구려 문화재의 경우 한국과 중국 모두가 중요한 국가적 문화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의 문화유산과 문화재는 동북아 국가 상호간에 공동관심

사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북아 국가들간의 협의를 통해 연구하고 복원 및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문화재 복원 기술 수준이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동북아 국가 공동의 연구는 문화재 기술(Technology)의 공동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문화재나 문화유산의 공동연구와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제협약이 존재하고 있으나 동북아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율은 동북아지역에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그를 위한 공동연구를 위한 동북아 지역의 국제협정과 그를 뒷받침하는 국내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차원의 노력 못지 않게 전문가의 연수와 공동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메커니즘의 형성도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관련 협정이나 국내규범이 이러한 협력메커니즘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북아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연구와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동북아에 특유한 국제기구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그러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문화유산위원회 또는 동북아문화재재위원회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바. 문화유산의 해외전시와 관련되는 관세법 등의 문제점의 해결

동북아 문화도시의 선정 등 문화교류사업을 위하여 공동의 문화사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해외전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관세법 등 관련국가의 수출입통제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며 문화재의 선정이나 포장, 운송 그리고 보험가입에 대한 기준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제규범으로서는 1976년 유네스코의 문화재의 국제교류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al Property), 1961년의 전시회, 전람회, 회의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Concerning Facilities for the Importation of Goods for Display or Use at Exhibition, Fairs, Meetings or Similar

Events of 1961) 등이 있다.

그러나 역시 동북아 사정에 보다 타당하고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룰 포괄적인 국제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며 나아가 동북아 각국의 국내법의 정비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IV. 결론

동북아 문화공동체 사업 구상: 문화유산의 공동연구와 관리를 위한 5대 선도사업

앞에서 도출한 유럽의 사례와 동북아시아 초점국가들의 정체성 정치를 전반적으로 감안하여 본 연구자들은 동북아 문화유산의 공동연구 및 관리를 위한 준비 및 그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선도 사업과 1개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표 요약-2>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 및 문화유산의 공동연구 관리를 위한 5대 선도사업과 1개 파일럿 프로젝트

1	문화유산의 공동연구·관리를 위한 협의체인 ‘동북아 문화유산 공동연구·관리 위원회’ 구성 (동북아 문화 포럼 준비 모임 성격) 상기 위원회의 가동 가능성과 경험 축적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문화재 보존 및 보수 기술 개발 및 교류 사업 위원회’ 출범
2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한 제반 활동 지원법’ 및 ‘동북아 문화유산 보호법’ 제정 입안
3	문화유산과 문화자산 분포에 따른 ‘문화광역시’ 또는 ‘문화광역권’ 설정
4	공동문화기반의 의식적 개발과 계획적 축진을 위한 ‘동북아 국가 문화장관 협의체’ 구성
5	‘동북아시아 문화유산DB 시스템’(가칭 ‘동북아시아유산네트워크’) 구축

위에서 구상한 내용들은 유럽연합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루아침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국이 서로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의식적

인 노력들을 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북아 국가들이 '문화유산'에 대해 자국의 '소유'의 개념보다는 공동 '향유'의 개념으로 전화될 때, 동북아에서의 과거 역사적 불행을 극복하고 진정한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방법	7
II.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의 필요성	9
1. 동북아의 포스트임페리얼리즘(탈제국주의) 상황과 국민국가 체제의 전개	11
2. 동북아시아 초점국가들의 ‘정체성 정치’의 양상	17
3. 정체성 정치와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의 필요성	40
4. 동북아 문화유산 공동 연구 및 관리의 필요성과 방안	45
III.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분포 및 관리 현황	65
1. 각국의 문화유산의 개념 및 분류	67
2. 동북아국가의 문화유산 분포	72
3. 동북아 문화유산 관리 정책	144
IV.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법제적 방안	159
1. 개설	161
2. 문화유산 관리와 보호에 관련된 국제 및 국내 규범의 현황	162
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184

V. 결론 197

참고문헌 205

부 록

1. 中國一(東北地區古代遺跡輯錄) 211
2. 북한 문화유산 개괄 295
3. 북한 “문화유물보호법” 329

표·그림 목차

<표 II-1>	동북아발전 파장권 또는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외연 ...	15
<표 II-2>	동북아시아 초점국가들의 정체성 정치 상관도 (2004년 현재)	40
<표 II-3>	유럽유산네트워크 주제별 사이트맵	61
<표 II-4>	역대 유럽문화시	63
<표 III-1>	중국 동북 고조선지역 지식묘군	73
<표 III-2>	中國內 고대 금석문	79
<표 III-3>	중국 동북지역 고구려 유적	81
<표 III-4>	奈良國立博物館 所藏 目錄	92
<표 III-5>	日本 古代(朝鮮式) 山城一覽	106
<표 III-6>	京都國立博物館 所藏 目錄	108
<표 III-7>	京都, 高麗佛畫所藏寺院	122
<표 III-8>	東京國立博物館 所藏 目錄	123
<표 III-9>	북한지역 고인돌 유적	133
<표 III-10>	고대 금석문	135
<표 III-11>	북한지역<각 도별> 유적	138
<표 III-12>	고구려시대 고분 유적	142
<그림 II-1>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공정들	36
<그림 III-1>	일본 속 한국문화 유산 분포	83
<그림 III-2>	일본고대산성 분포	107

I

서론

1. 연구 목적: ‘정체성의 정치’를 둘러싼 대립적 경쟁을 다양성의 교류로 전형시킬 생활 공동성의 문화적 기반 모색

연구 목적

- 동북아 국가간 역사 왜곡 등으로 표출된, 자국중심이면서 타국배제적인 적대적 경쟁 관계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재인식과 그에 대한 공동의 보호 및 관리방안 도출.
- 한자 문화권이라는 현대 이전의 조건을 참작하여 동북아 공동의 문화와 역사의 이해를 위한 문화간 의사소통 잠재력 탐색
- 한국 중국 일본 북한학자들과의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를 통해 상호 관심과 이해 증진.



연구 효과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

(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 for Peace and Prosperity)

- 서로 이해한다 understand mutually: 상호 이해
- 더불어 협력한다 co-operate together: 인적 협력
- 같이 추구한다 pursue commonly: 공동 사업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 지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그것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되었다. 새 천년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각기 어떤 계기에 의해 거의 국가적 또는 국민적 수준에서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재정비하는 작업을 벌이게 된다. 대체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려운 시기를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세계 경제 상위권에 진입하여 적어도 국가경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탈냉전 국면에서 더 이상 전선 지역이 아니게 된 동북아에서 반공산주의나 반제국주의가 아닌, 21세기를 내다보는 자기 국가의 존립 양식에 대한 고민과 모색이 자기정체성에 대한 국가적·국민적 관심을 자생적으로 촉발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냉전에 가리워져 있던 역사 문제 및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정체성의 정치의 전면에 쟁점으로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의 정치가 단순히 통치를 순탄하게 하기 위해 피 통치자인 국민의 혼란된 의식을 정신적으로 질서지우는 국내 용도의 국가 이데올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고 승리하는 형태와 등급까지 내적으로 규제하는 대외전략적 비전까지 내포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초점국가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어떤 ‘국가’도 대외 경쟁에서 패퇴하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 대해 열등한 처지에 놓이길 원하지 않으며, 그 점에서는 특히 21세기 초엽까지 국가주의로 그 의식습성이 훈련된 각 나라의 ‘국민’이 그런 열패한 처지를 원하지 않는다. 각 나라에서 국가주의는 자기 국민들에게 국가의 성공에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그것을 자발적 국민 동원의 단초로 삼아왔기 때문에, 자기정체성의 우월함에 대한 요구는 20세기 후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자기 국가의 발전에 대한 자부심 또는 자만심을 배경으로 하여 다른 국가에서 제기하는 동일한 요구와 충돌할 경우 쉽게 양보되거나 타협 또는 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특색이 있다. 이 초점국가들은 20세기 후반기 내내 특히 경제 측면에서, 나아가 국제정치적 사안에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다수 공유하면서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켜 왔다. 하지만 아주 역설적으로, 초점국가들 사이의 이런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들어 국민 문화 또는 민족 문화 차원에서 이들 국가 내부에서 제기된 ‘정체성의 정치’는 다른 국가에 대해 촌보의 양보 없는 대립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단초는 바로 여기에서 마련되어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정립한다.

- 우선 경제적으로 빈번한 교류와 정치적으로 심화되는 상호의존, 상호 관광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 초점국가들이 현재 시점에 갖고 있는 자기정체성에 대한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 of the self-identity)는 다른 국가들의 자기이해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정립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동북아시아, 넓게는 동아시아 역사의 공통 이해를 위한 ‘범아시아적 역사 이해 패러다임’(trans-asiatic paradigm for the understanding of asian history)의 수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이 ‘자국중심적, 타자배제적인 정체성 패러다임’이 아시아에서 가장 생동성 넘치는 동북아 지역의 이 세 국가들을 사로잡을 경우, 이들 국가는 그들과 대칭적 위치에 있으면서 각종 분쟁과 상호 투쟁 및 저발전에 시달리는 중동과 서남아시아 지역과 유사한 운명을 밟지는 않겠지만, 소모적인 불신과 대립감정 때문에 보다 선진적이고도 평화적인 질서로의 순탄한 발전이 지체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국가 차원은 극도로 절제된 외교 관행으로 어느 정도 조절되겠지만 국민 또는 인민들 사이의 불필요한 감정 대립이나 불신의 잔존은 결국 국가들의 행보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경우에 따라 대외적으로 역사 왜곡도 불사할 정도로 그 정도를 이탈하고 있는 동북아 초점국가들의 ‘정체성 정치’의 현 상황을 간략하게 점검하고, 그 적대적 경쟁 관계를 극복할 필요성을 짚어보면서, 동북아 전체를 ‘평화와 번영의 문화공동체’로 만들어갈 전략적 비전과 구체적 행동 방안 또는 조직 구성을 모색하는 데 있게 된다.
- 그런데 본 연구의 특정한 목표는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관한 일반론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특별하게도 본 연구는 역사에 관한 학문적 연구의 일차적 소재이면서도 역사학이나 고고학 또는 예술사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차적 관광 자원인 문화재 및 일차적 학습 자료인 역사 교과서 또는 역사 담론을 주목하여, 그것들이 ‘동북아 국가 공동의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common to all east-asiatic lands)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식의 필요성을 탐색해 본다. 현재의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영토 안에 남겨진 한국 문화재 및 역사 기록물을 일단 집산해 보았다(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현재 한국 및 북한 영토 안에 각인된 중국 및 일본의 동일한 유무형의 잔존 재화들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본 연구는 이들 유산이 현재의 국민국가적 관점에서 대립적이나 소유적인 것, 무엇보다 국가정치적인 것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당 시대의 생활관계에서 이루어진 문화 교류(cultural exchange)의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이것들을 동북아시아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재인식하고, 그것들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실험적으로 탐색해야 할 필요성과 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2차 대전 이후 유럽연합(EU)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대륙적으로 전개되어 온 국제적 문화정책과 각종 협약들은 아주 중요한 전거가 될 것이다.

- 이와 같은 작업은 분명히 현재의 국민국가들이 도달한 국가적, 사회적 발전 수준에서 ‘문화간 의사소통의 잠재력’(potenti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을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전제로 한다. 이럴 경우 현대 이전의 동북아시아 문화에서 ‘한자’(漢字)가 한 역할이 특별한 주목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실질적 기반을 전(前)현대적인 특정 문화사상(文化事象)에 계박시킬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히 유의할 것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공동체에 대한 우리 기획의 취지를 곡해하지 않으면서 우리 기획의 여러 과정을 공동으로 실천해 나갈 북한, 중국, 일본의 전문 지성인들을 찾아낼 단초적 작업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한된 자원과 짧은 연구 시간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원들이 이 과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고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우선 21세기 들어 동북아 초점국가들의 ‘정체성 정치’가 어떤 내용으로 상호 경쟁 또는 대립 전선을 전개하고 있는지 개괄하기 위해 이른바 ‘동아시아 역사 전쟁’이라고 불리는, 역사 이해를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적 논쟁현황을 문헌적으로,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검토, 요약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 분쟁을 유럽 통합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로서 유럽연합(EU) 성립까지의 유럽 국가들 사이에 수행된 각종 연구 작업과 네트워크 형성 작업을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기획한 바와 같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공동 이해와 관리가 가능한지에 관해 중국·북한 및 일본의 관련 학자들과 간담회 및 대담을 수행하였으며, 중국·북한 학자로부터는 문화유산의 분포현황에 대한 원고를 접수하였다.¹

¹ <간담회 및 대담>:

1. 동북아 문화정책 간담회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공동연구 · 관리방안 연구”
사회: 박경하(중앙대)
발제 1: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공동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홍윤기(동국대)
발제 2: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법적 문제점> 김유환(이화여대)
종합토론: 장호수(문화재청), 원리(중국사회과학원), 권중달(중앙대), 허권(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일시: 2004년 5월 12일(수), 오전 9시-12시, 장 소: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의실
2. 동북아 문화정책 간담회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공동연구 · 관리방안 연구”
발제 1: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공동연구의 필요성> 박경하(중앙대)
발제 2: <중국 동북지방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 박찬규(연변대 동북아연구중심)
일 시: 2004년 5월 29일(토), 오전 9시-12시, 장 소: 연변대 회의실
3. “동북아 문화정책 대담 1”
대담자: 高橋哲哉(東京大 総合文化研究科),
참석자: 박경하(책임연구원), 홍윤기(동국대, 공동연구원), 온영운(중앙대, 연구보조원)
통역: 이승희(明治大)
일 시: 2004년 11월 8일, 오전 10-14시, 장소: 동경대학교 대학원 총합연구과 회의실
4. “동북아 문화정책 대담 2- 일본문화재청”
대담자: 村田健一(일본 문화청), 梅津章子(일본 문화청)

동시에 우리 연구자들은 일본과 중국 방문하여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정체성의 정치가 관철된 정도를 현지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참석자: 박경하(책임연구원), 홍윤기(공동연구원), 온영운(중앙대, 연구보조원)
통역: 이승희(明治大)
일시: 2004년 11월 8일, 오후 15-18시, 장소: 일본 문화재청 3층 소회의실

II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의 필요성

1. 동북아의 포스트임페리얼리즘(탈제국주의) 상황과 국민 국가체제의 전개: 동북아 공동체 구상의 지리적 범위와 ‘정체성의 정치’의 배경

일본이 주도하여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동아 전쟁’으로 불리던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8월 15일을 기해 일본 제국의 무조건 항복으로 종결된 이래 동북아시아 지역의 전후 질서는 대륙 중국의 공산화를 직접적 배경으로 자본주의 진영과 반자본주의 진영 사이의 총체적 대립을 기축으로 하는 국제적 투쟁 체제로 재편되어 갔다. 그런데 보통 ‘냉전’으로 불리는 이 국제적 투쟁 상황은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 전쟁을 통해 ‘열전’으로 변모하면서 과거 일본에 의한 제국주의 지배와 대규모 전쟁의 상처를 채 벗어나지도 못했던 이 지역 국가들 사이의 비극적 관계에 또 한 번의 역사적 부담을 안기게 되었다.

고전적 의미의 ‘제국주의’(Imperialism) 지배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는 과거 제국주의와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는 ‘식민주의’(Colonialism)의 골격이 동시에 극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지역의 각 국가는 국가 운영 구조에서 일단은 제국주의의 직접적 영향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 차원에서 주권의 확보나 재조정이 가능해졌다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국민 국가를 건립하여 적어도 정치체제에서는 제국주의에서 탈피하였다. 그러나 새로이 전개된 양극화된 국제적 대립 전선에서 이 지역의 국민국가들은 사회적으로 ‘자기 안의 제국주의 또는 식민주의’(imperialism or colonialism in myself)를 전면적으로 극복할 시간적 여유와 사회적 성찰성을 누리지 못한 채 승리주의적 동원체제로 곧바로 재편되어 국제적 패권 경쟁에 투입되게 되었다. 바로 이렇게 ‘자기 안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지양하지 못한 채 미국-소련 사이의 패권 경쟁으로 나타나는 냉전 속에서 국민국가들 사이에 과거의 제국주의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패권 경쟁 상태가 일상적인 국제 상태가 되는 ‘포스트임페리얼리즘’(post-imperialism 후제국주의) 국면이 전개된다.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된 포스트임페리얼리즘 체제 안에서 가장 먼저 이런 방식의 국가 체질을 획득하여 국민국가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한 첫 번째 국가는 물론 일본이었다. 국가의 전면 파탄으로 끝난 태평양 전쟁에서의 패전 이후 일본은 막 도래한 냉전 상황과 한국 전쟁이 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통해 피점령 패전 국가의 지위를 단시간에 벗어나 주권국가의 지위를 회복하였다. 1952년 4월부터 효력이 발휘된 이 조약으로 1945년 8월부터 시작되었던 이른바 7년간의 ‘점령기’(占領期)를 끝낸 일본의 국가적 운영구조는 미국 점령 정책의 압박 아래서 제정된 평화헌법이 상징하듯이 일정 정도 민주화되었지만, 과거 제국주의 운영의 핵심 세력이 그대로 국가주도 세력으로 전이되어 이 세력의 후원과 주도로 이른바 ‘55년체제’를 구성하여 국가 안팎에서 준패권적(準霸權的) 지위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다. 당연히 전후 일본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침략 전쟁을 유발하고 식민주의를 부식하였던 과거 제국주의 주도 세력의 권력 행태에 대한 근본적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가질 필요도 없이 보다 개선되고 세련된 ‘현대화된 패권 추구 기술’로 동북아시아의 포스트임페리얼리즘 체제에서 선두 국가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동북아시아 국가 가운데 현대적 국민국가의 제도적 골격을 형식적으로 가장 먼저 갖춘 나라는, 아주 역설적으로 말해,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3년 만인 1948년 8월에 국민국가 체제로 정부 수립을 선포했던 대한민국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새로이 전개된 냉전 상황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생존 기회를 확보한 과거 제국주의 부역 세력과 가장 열악한 생존 상황에서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했던 극좌 패권주의 사이의 극단적 투쟁으로 사실상 민족과 영토가 분열됨으로써 온전한 형태의 현대 국민국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반공산주의 투쟁의 전선 국가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는 본래의 헌법적 목표였던 자유민주주의와 복지향적 국민경제의 순탄한 실현을 유보한 채 분단체제의 틀 안에서 국제적 패권 경쟁의 선두 국가가 되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거의 반세기 동안 연이어 지속되었던 가부장적 권위주의 통치와 군부독재체제 아래서

정치와 경제의 모든 방면에서 ‘국가주의’(Etatism)를 체화시켰고, 이것은 일단 5·16 쿠데타 이후 1960년대부터 경제의 비약적 성장으로 국가 차원에서 그 효력을 입증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포스트임페리얼리즘의 동북아 질서 안에서 대한민국이 국민국가로서 추구했던 국가주의란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국가적 최고 가치로 삼고, 자유나 민주주의의 발달, 다양한 개성의 공존과 관용 같은 기타의 가치는 아주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대단히 전체주의적 성향의 정신태도를 가리킨다.

중국은 대륙을 제국주의와 유관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면서 1949년 10월 사회주의적 형태의 국민국가 체제를 정식으로 수립하였다. 사회주의 중국은 대내적으로 일체의 계급을 타파하고, 대외적으로 일체의 패권 추구를 배격하면서 그 자체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 국제주의적인 풍모를 갖춘 대단히 혁신적인 국가적 실천을 감행함으로써 포스트임페리얼리즘의 골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자체 한 국가로서 주권 원칙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소선으로 고수하는 한 중국 역시 ‘국제주의의 국가주의로의 변모라는 딜레마’에 빠져들었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주의권 안에서 벌어져 끝내 해소되지 못한 구(舊)소련과의 이념 분쟁과 대내적으로는 조급한 급진주의에 몰린 문화대혁명의 파탄으로 권력 유지와 경제 기반 등의 국가 운영이 궁지에 몰리면서 시작된 1978년부터의 개혁개방 정책은 동북아시아의 포스트임페리얼리즘 체제에 또 하나의 중요한 세력 변수가 출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덩샤오핑에서 장쩌민을 거쳐 후진타오까지 25년 이상 계속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사회성격을 사회주의적인 것에서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완전히 변모시켰고, 중국 국가 자체의 성격도 사회주의적 국제주의 국가에서 ‘중화 민족주의’를 정신축으로 하는 한 개 국민국가로 탈바꿈하였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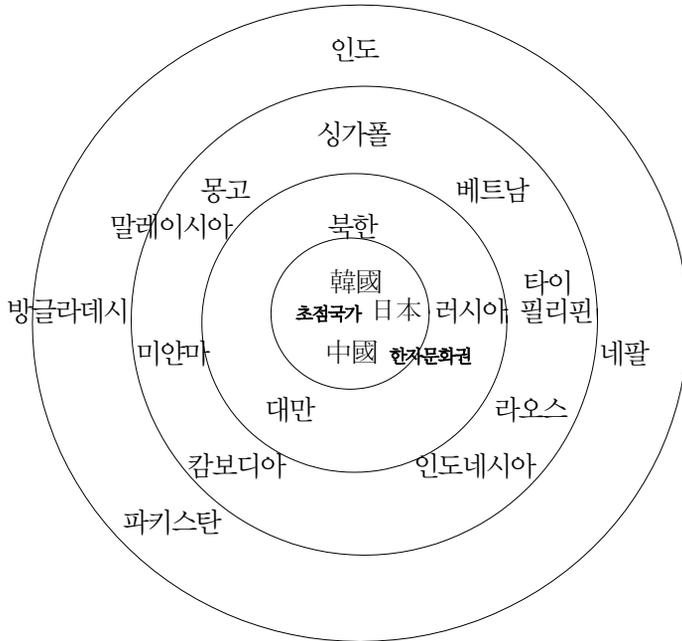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아주 소략하게 요약한 바에 따르더라도 동북아시아 발전

² 나가가네 가즈지, 이일영·양문수 옮김, 『중국경제발전론』 (서울: 나남출판, 2003. 11) 참조.

의 선두에 서서 세계적 비중을 가진 경제와 정치의 수준에 도달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국가 성격에서 2차 대전 때까지의 국제 질서의 기축이었던 제국주의가 완전히 탈피되기는커녕 국민국가 차원에서 포스트 임페리얼리즘적 양상으로 변형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포스트임페리얼리즘적 특성으로 분명히 부각되는 것은 이 지역의 각 국민국가가 바로 그 국민국가 단위에서 정치적으로는 승리주의(勝利主義 triumphalism), 경제적으로는 성장주의(成長主義),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자기문화 우월주의(自己文化優越主義)를 국민적 체질로 만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언명이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위중하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 진단에 동의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현재적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국가간 지역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이런 사태를 유럽과 비교하면, 바로 이렇게 국민국가들 차원의 침예한 대립상과 그 위험성을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 및 그 순간이야말로, 전쟁을 통해 두 번씩이나 국가와 국민들을 파탄에 몰아넣은 유럽 역사의 심각한 과오를 반복할 필요 없이, 동북아시아의 지역 공동체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믿음을 확신시키는 근거이기도 하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 지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그것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경제와 정치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상을 보인 한국, 중국, 일본을 초점국가(焦點國家 focus-states)들로 놓고, 북한, 대만, 러시아를 제1중간원(第一中間圓)으로 하면서, 몽고, 싱가포르, 베트남, 타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제2중간원(第二中間圓)으로 설정하고, 멀게는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네 팔을 외곽원(外廓圓)으로 두르면, 동북아 발전파장의 근거리권과 원거리권의 복합적 윤곽이 떠오른다.

<표 II-1> 동북아발전 파장권 또는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외연



이 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역사적 특색은 일본, 러시아, 타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 영국, 프랑스 및 기타 서양 국가들(즉 네덜란드, 20세기 초 짧은 기간 동안의 독일,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의 러시아)과 방금 제외시킨 일본의 제국주의적 지배 아래서 식민지 통치를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이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서양 제국주의의 ‘직접적 통치’는 종식되었다. 하지만, 앞에서 상술했다시피, 냉전과 그 뒤의 지구화 과정에 의해 ‘제국주의적 지배 질서’는 사실상 각 나라 사이에서 온존되고 확산되면서 지역 차원에서 ‘포스트임페리얼리즘 체제’(post-imperialist regime)가 성립되었다.

크게 이 포스트임페리얼리즘 체제 안에서 이 지역 국가들은 한 편으로는 국민국가 차원의(on the level of nation-states) 세력 결집과 세력 분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역 국민국가들

사이에(between nation-states) 격심한 세력 경쟁을 추동하는 형국으로 20세기가 종료되었다. 결국 21세기가 막 그 초입을 통과하는 2004년 현재, 동북아 초점국가들은 물론 동북아 발전의 파장이 미치는 동아시아권 전체는 ‘국민국가별로’ 생존과 발전을 위한 긴장된 경쟁과 제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자가 동북아 발전과장권의 초점국가로 상정한 한·중·일 삼국은 식민통치가 종식된 이후 포스트임페리얼리즘 체제를 선도하거나(일본) 아니면 거기에 적극 적응함으로써(한국 및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 이 지역에서 특히 경제, 그리고 나아가 권력 정치 측면에서 국민국가적 발전도를 현격하게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시아권의 이 포스트임페리얼리즘 체제는 그것에 포함된 각 국가들이 국민국가로서의 기본틀을 잡아가는 국민국가 초기의 성장 국면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강화되었다. 그런데 이 초점국가들이 경제 및 정치 면에서 국민국가로서 초기 국면 이상의 발전을 요구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경제 및 정치 측면의 이해관계에서 이들 초점국가들을 사안별로 어느 정도 결합시켰던 ‘쌍무적 협력관계들’만으로도 이상 조정할 수 없는 국가적 욕구가 제기되었다. 그것은 곧 이들 국가들이 자기 국가를 무엇으로 이해하여 대외적으로 자기주장을 펼치고, 어디에 자기 입지를 요구하느냐 하는 문제, 즉 ‘정체성의 정치’(politics of identity)에 대한 욕구였다. 정체성의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사 문제이다. 이 문제를 보다 명세적으로 정확하게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동북아시아 현대사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동북아시아 민족과 국가들을 상대로 벌인 역사적 비행에 대한 사실 인식과 평가에 있어서 일본 국가와 다른 국가들 사이의 현격한 격차 문제,
- ② 한반도에서 남북한 분단과 관련된 국제적 책임 문제,
- ③ 중국의 다민족 통일국가관에 의거한 동북아시아 과거사의 전면 개작 문제.

2. 동북아시아 초점국가들(일본, 한국, 중국)의 ‘정체성 정치’의 양상: 역사에 대한 이해의 문제를 중심으로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체성의 정치로 주목 받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자기주장이 각 나라에서 제기되기 이전에 자기 나라나 사회에 대한 정체성 의식이 이 나라들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정체성의 ‘정치’라는 말로써 조금 더 특징적인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우선 발전하는 자기 국가가 자신의 활동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순간이 되면 체제 운영 차원에서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 의사결정과정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가의 발전이 사회적 이해관계의 분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해지는 사회통합조치의 한 수순이다. 이런 조치로서 가장 전형적인 것은 국가 법률 체계의 정비와 확충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 교육의 정비이다. 역사 교육은 현대 국민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분화를 국민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므로 국가를 주도하는 세력은 정치권력의 안정화를 위해 그 권력의 성격에 부응하는 정신태도가 국민 대다수에게 내면화되기를 바라게 마련이다.

그 다음 연구자가 의도하는 것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국가의 자기정체성을 규정할 때 다른 국가의 자기정체성을 얼마만큼이나 고려하느냐에 따라 상대 국가 및 자기 국가가 존립하는 지역의 여러 세력들과 정립하는 관계나 그들에 대한 정책 행위의 양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한 국가가 공표하는 자기정체성이 ‘자국중심적·타국배제적 성격’의 정체성인가 아니면 ‘자국개방적·타국연관적 성격’의 정체성인가에 따라 그 국가의 대내외적 권력 행사와 결부된 국가적 실천의 양상과 국가적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기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정체성의 정치’가 바로 2차

대전 이후의 국제적 냉전과 그 냉전 체제 붕괴 이후의 지구화를 배경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된 포스트임페리얼리즘 체제를 성공적으로 주도하거나 거기에 적응하는 데 성공한 나라들 순서대로, 즉 일본 → 한국 → 중국의 순서로 실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 나라에서 벌어진 정체성의 정치의 콘텐츠와 파장은 각기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각 나라에서 실행한 정체성의 정치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 일본: 신우익의 대국지향적 민족주의와 시민사회의 간헐적 저항

일본에서 역사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역사 교육 문제를 발판으로 한 정체성의 정치가 시기별로 제기되는 양상은 주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전쟁의 피해자였던 이웃 나라들의 강력한 항의로 야기되는 ‘주기적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특징지어진다. 그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이후 일본의 국가정치를 주도한 자민당의 ‘55년 체제’가 역사 교과서를 매개로 일본 국민의 의식으로부터 대동아 전쟁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그 어떤 패배의식도 추방시키고, 일본의 정치군사 대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정신적 발판을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제1차 역사 교과서 파동은 1955년 총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미군정 아래서 제정된 평화헌법의 기초에 일정 정도 부정적 인식을 내비치는 가운데 ‘자주 헌법 제정, 자위군 창설, 국정 교과서 통일’의 공약을 실현에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당시 민주당은 『우려할 만한 교과서 문제』(1~3집)라는 팸플릿에서 이미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우파 학자들은 이에 부응하여 공공연하게 대동아 전쟁 긍정론을 제기하였으며, ‘평화교육’에 입각하여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을 대거 비난하고 나섰다. 자유당과 민주당이 자민당으로 합당한 다음해인 1956년 자민당이 장악한 문부성은 교과서 검정심의위원을 100인으로 두 배 증원하여 검정을 강화하고, 1957년에는 전일본교직원조합과 관련된 대

학 교수들이 집필한 교과서는 모두 불합격시켰다.³

제2차 역사교과서 파동은 1980년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자민당이 문부성에 압박을 가하여 사회 및 역사 교과서에 일본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인상을 줄 수 있는 용어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여 시작되었다. 1982년 문부성의 교과서 심의에서 ‘침략’은 ‘무력 진출’로 하거나 아예 그 표현을 삭제하도록 했으며, 3·1 ‘운동’은 ‘폭동’으로 하면서 그 희생자 수는 명기하지 않았고, 토지의 약탈도 ‘수용’으로 완화시켜 표현하도록 했다. 바로 뒤이어 1983년 나카소네 수상은 ‘정치군사대국론’을 제기하고 ‘전쟁 총결산’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자국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평가를 용인하는” ‘자학사관’의 총체적 청산을 선도하였다.⁴

제3차 교과서 파동은 1990년대 중반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후지오카 노부카스(藤岡信勝), 니시오 간지(西眉幹二) 등 이른바 ‘자유주의사관론자들’은 “확실한 국가의식과 긍정적 역사교육을 위해” “명치 시대 이후 일본은 대륙침략을 시작하여 이웃 국가들을 짓밟아 황폐화시키고, 전쟁으로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일본 국가를 스스로 악역무도하게 묘사하는 ‘자학사관’(자학사관)” 또는 “공산주의자들이 천황제를 비판하는 ‘코민테른 사관’”, “일본 점령 미군의 일본 국가의식 탈취를 위한 ‘도쿄재판사관’” 등을 척결하자고 나섰다.⁵ 그런데 이들의 활동이 크게 격화된 것은 1991년 남북한의 중군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와 유엔에서 쟁점화 시켜 유엔인권위원회와 쿠마라 스와미 보고, 맥두걸 보고 등을 통해 인권 침해와 성범죄로 국제적으로 단정된 중군위안부 사실이 1996년 새로 개정된 7종의 교과서 안에 포함되면서부터였다. 이것은 일본의 우익을 대단결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자유주의사관론자들이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결성한 계기가 되었다.⁶

³ 박찬승, 한국동북아지식연대 편, “동북아 3국의 역사인식 공유를 향하여,”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 435-436.

⁴ 위의 글, pp. 437-438.

⁵ 위의 글, p. 439.

⁶ 위의 글, pp. 441-442.

일본 교과서 파동은 대략 25년 주기로 반복하고, 정치권, 우익 지식인 권, 우익 대중단체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선거를 통해 확보된 자민당 지지를 통해 정치적 추진력을 획득해 왔다. 그러면서 2,000년 가을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문부성 제출로 우익적 정체성 정치의 공세는 절정에 도달하였다. 이 교과서는 일본 우익의 ‘정체성 정치’의 총결정판으로서, 중군위안부 사실이나 난징 대학살 같이 자국에 불리한 역사적 사실의 삭제·축소·왜곡, 제국주의 비행의 합리화 내지 정당화, 근거 없는 반미주의와 아시아 주변 국가들에 대한 폄하, 전쟁책임 회피에서 더 나아간 전쟁찬미론 및 낡은 천황주의의 부활 등 현대적인 양식에 입각해 볼 때 역사 교과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온갖 오류가 의도적으로 총동원되었다는 인근 국가 정부들의 비판을 받았다.⁷

그러나 일본 사회가 이런 우익 파시즘으로 완전히 획일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실제로 자신들 나름의 교과서를 제작하여 검인정을 통과하고 각급 학교에 채택시키려고 나서자 전일본교직원조합이 앞장서고 대다수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그 교과서의 채택을 사실상 원천 봉쇄시켰다. 이런 시민적 실천을 전후하여 재일 조선인이 다수 포함된 일본 학계의 비판적 지식인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및 전쟁 책임 인정에 기반한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면서⁸ “일본의 역사 교육이 국민의 역사’의 교육이었고, 개인의 교육은 ‘국민’으로서 추상화되었으며, 전 지구 시민의 교육은 ‘국제적인 일본인’으로 해소되어 모든 ‘국민의 교육’이라는 내셔널리즘으로 통합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러한 틀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⁹ 이것은 곧 일본 사회 안에 ‘정체성의 정치’에 대해 우익 국가주의와 다른 방향을 취하는 시각도 간헐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일본의 지적인 담론장에서는 일본의

⁷ 위의 글, pp. 442-443.

⁸ 타나카 히로시 외, 이규수 옮김, 『기억과 망각. 독일과 일본, 그 두 개의 전후』 (서울: 삼인, 2000) 참조.

⁹ 코모리 요우이치·타카하시 테즈야, 이규수 옮김, 『옮긴이의 말』, 『국가주의를 넘어서』 (서울: 삼인, 1999), p. 18.

민족주의 또는 네오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띤다.¹⁰ 그러나 대중 담론과 현실 권력의 현장에서 이들 비판적 지식인들의 목소리는 소수파로서 고립되어 있다. 신우익적 정체성 정치에 대항하는 이들의 태세는, 그들 자신이 자처하듯이, 거의 “레지스탕스적인 대응”¹¹으로 규정될 만하다. 따라서 일본 안에서의 정체성 정치는 압도적 정치 세력의 지원을 받아 포스트임페리얼리즘 상황에서 대국을 지향하는 우익적 자기정체성 입장을 일관되게 확대시키는 쪽이 일본 민족을 강조하면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가운데 탈정체성의 초국적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 세력이 그 헤게모니에 급진적 비판을 행하는 형세로 진행된다.

나. 한국: 국가절대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의 정체성 교착

한국에서 정체성 정치가 국가적으로 행해진 것은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장군이 두 번의 선거에서도 대통령으로 거듭 집권하는 데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쿠데타로부터 6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한국 역사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 성공한 그는 1968년 들어 “제2경제”의 개념으로 국민에 대한 정신적 관리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국민 교육의 근간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원칙의 수립에 골몰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구상은 1968년 1월 18일 당시 문교부장관이었던 권오병(權五炳)에게 「국민교육헌장」의 제정을 지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언명되었다.¹² 권 장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¹³ “제3공화국이 수

¹⁰ 대표적으로 일본 민족의 단일성을 신화적 실제화의 오류라고 비판한 오구마 에이지, 조현설 옮김, 『일본 단일민족 신화의 기원』 (서울: 소명출판사, 2003. 12) 참조. 그리고 일본인의 전후 의식의 비현실성과 무책임성에 대한 비판으로서 같은 저자의 小熊英二, 『〈民主〉と〈愛國〉. 前後日本ナツヨナリスムと公共性』 (東京: 新曜社, 2004. 8., 10쇄/2002. 10., 초판1쇄) 참조.

¹¹ 이 표현은 도쿄대학 종합문화연구학부 철학과 타카하시 테츠야(高橋哲哉) 교수가 2004. 11. 8. 도쿄대학교 코마바 캠퍼스의 철학과 사무실에서 연구자와 대담하는 중에 일본 사회 소수자로서의 자기 입장을 묘사하는 말이었다.

¹² ‘국민교육헌장’의 제정 경위와 그 국민교육상의 의의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홍윤

립된 이래 조국의 재건과 근대화 작업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과정에서 우선 제1차·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감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국가 산업 건설을 비롯한 각종 건설이 예상 이상으로 확대되어 가는 한편 일반 국민생활면에서나 국민 교육면에서도 그 양과 질이 일찍이 보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권 장관은 이러한 급변을 가져온 ‘근대화’ 그 자체를 “막중하고도 거창한 민족중흥의 대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선 물량적인 경제 발전이 선행되면서 이를 뒷받침하여야 할 개인의 창의와 노력, 그리고 온 겨레의 합동력을 가일층 함양 발휘하여 국가건설에 자진 참여하기를 원하는 새로운 국민상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 현장 제정의 현실적 근거였다.¹⁴ 그러면서 ‘국민교육헌장’을 통해 국가적 정체성을 국민의식에 분명히 각인시키겠다는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자의식이 현장 제정을 추진한 기본적인 정신동력이었다.

“우리나라 교육의 실정을 보건데도, 지금까지 확고한 교육이념을 정립하지 못하고 민족고유의 전통과 국민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정신교육과 인간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소홀히 하여 왔으며, 어느 나라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국적 없는 교육’이 성행하였고, 일선교육에서는 단순한 지식주입교육에 흐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릇된 개인위주의 조건발전에다 치중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그가 살고 있는 국가사회의 정신적 가치를 이해하고 국가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도록 지도해 주는 도덕적 생활윤리에 의거한 국민교육이 등한시되고 있다.”¹⁵

기, “한국 도덕·윤리 교육의 이념적 혼돈과 정체성 위기,” 전국철학교육자연대회의 폐념, 『한국도덕·윤리교육백서』 (서울: 한울, 2000), 제9장 참조.

¹³ 권오병, “‘국민교육헌장’ 제정 경위 원안 및 수정안,” 박성탁, 『國民教育憲章의 思想的背景과 그 實踐(상권)』 (서울: 教育出版社, 1971), p. 321.

¹⁴ 위의 글, 같은 쪽.

¹⁵ 韓民國國會事務處, 『第67回國會 文教公報委員會會議錄 第10号(第67回-文公第10次)』, 1968. 11. 13. p.2~3. 박성탁 당시 문교부 장학관이 설명한 “『국민교육헌장』 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에서 공식 표명된 견해.

박 대통령이 줄곧 거론했던 “국민 생활 태도에 대한 기본 자세”란, “물량적 경제 발전”으로 이해되는 국가건설에의 기여도를 척도로 하여 거기에 부합할 정도로 가다듬어진 개인의 능력과 의욕, 즉 창의와 노력들이 외적 강제가 없더라도 합동력으로 결합되어 언제든지 국가건설에 투입될 태세가 완비된 상태를 뜻했다. 따라서 **경제개발에 동원 가능한 교육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주지시키는 것에 박정희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뜻이 있다고 이해되었다. 하지만 현장 제정이 지시된 1968년 1월 18일부터 현장이 공포된 같은 해 12월 5일까지 진행된 제정 작업의 결과는 이런 경제적이고 교육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난다.¹⁶

교육현장의 지향점이 단순히 경제에 효율적으로 동원할 기능적 인력의 양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장의 첫 문장에서 국민의 삶의 최고 의무, 즉 “역사적 사명”을 “민족중흥”으로 못 박은 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명의 구체적 내용이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민족주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확하게 393자로 압축적으로 쓰인 현장의 문면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거기에서 중흥해야 할 민족의 활동 구조가 남북한을 포괄할 수 있는 전 민족적 의의를 가진 것이 아니라 아주 뚜렷하게 남한 국가에 국한된 국가(절대)주의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즉 우리 민족의 구성원인 국민은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자각하여 나를 나라의 절대적 부속체로 인정하는 “국민정신”을 투철하게 견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자유와 권리도 주로 경제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발전의 척도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절할 줄 알 정도로 스스로의 행위와 삶을 <국가최우선주의>에 따라 규율해야 하고, 무엇보다 북한에 대해 일체의 관용과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박정희가 생각한 한국 민족 또는 국민의 정체성은 자기의 발전보다 국가의 발전을 보다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국민정신’, ‘성장주의 경제’에의 헌신, 그리고 반공적 안보를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¹⁶ ‘국민교육현장’의 정치적 함축에 대해서는 홍윤기, “박중흥 철학 연구: 철학과 권력의 퇴행적 결합,” 『역사비평』 제55호 (2001. 여름) 참조.

‘반공민주주의’를 핵심 구성 요인으로 하는 국가(절대)주의이다.

그러나 박정희식 정체성 정치에서 아주 불운했던 것은 1968년 12월 박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었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국민교육헌장」을 공포한 뒤 벌어진 국내외의 사태들이 곧바로 이 헌장의 기본 전제들을 전면적으로 분식시키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닉슨 독트린으로 조성된 냉전의 해빙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 자신이 북한과 공동으로 만들었던 7·4남북공동성명은 공산주의 북한과의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는 것을 기조로 한 헌장의 정신적 척추를 연골화시켰다. 그리고 아무리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체제라 하더라도 사유제도를 기본으로 한 시장경제가 국민경제의 핵심적인 원칙으로 작동하는 한 생산력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적 이해관계의 분화는 모든 욕구를 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믿는 헌장의 기조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쪽으로 작동하여 결국 독재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명분이 된 반공주의 자체가 헌장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였다. 결국 「국민교육헌장」에서 내용적으로 가장 압축된 형태로 정리된 한국의 국가주의적 정체성 정치는 대한민국 국가의 사회적 정체성으로 내면화하는 데 전적으로 실패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의 국가주의적 정체성 정치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것이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선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민족적으로 발전적인 포용성’을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주의적 정체성 정치는 철저하게 북한배제적인 대북 불신성 및 대북 공포증을 근본 기조로 함으로써 국가 안의 북한 혐오 세력을 강하게 결집시키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북한 개방적인 세력이나 북한 그 자체에 대해 ‘온당한 국가 이성’을 보이는 데는 절대적으로 실패하였다.

그와 나란히 대한민국의 국가주의적 정체성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국가주의가 강조하는 만큼의 국가적 위신이나 품격을 관철하는 쪽으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가는 자신에 소속된 국민에 대

해서는 아주 과도한 충성을 요구한 반면, 자신보다 국력이 우월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주체성밖에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나 안보가 아니라 국가의 주체성 여부가 걸린 정신적 문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반복적으로 재래하는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 문제 같은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적 통제가 가장 심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동원해서야 비로소 대일 협상력을 강화시키곤 했다. 1982년 일본 교과서 파동이 났을 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철권통치 아래 있던 한국 정부는 제5공화국 들어 처음으로 시민 및 학생들의 거리 시위를 탄압하지 않고 방임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국가가 더 이상 국가주의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 현실과 시민대중 사이에서의 세력 변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치는 국가주의에서 민주주의 쪽으로 큰 폭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경제에서의 국가주의적 규제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IMF 사태가 발발하고 나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화 세력이 그나마 제도 정치권의 중요 위치에 진출하게 되자, 정체성의 정치가 ‘색깔론’의 형태로 본격적으로 정쟁의 쟁점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기간 내내 그의 햇볕정책은 친북적이라는 비난과 정권의 좌경용공성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음해에 시달려야 했다. 2004년 7월, 탄핵 정국을 막 빠져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행보에 대해 야당의 대표는 국가 정체성 논쟁을 걸고 나왔다. 결국 문제는 기존의 국가주의적 기준에서 친북·좌경·용공성을 규정하는 정신태도였다.

국가의 정체성 정치가 정파의 세력 동향을 좌우하는 정쟁점이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국가의 내부적 통합이 소모적인 기준에 의해 저해되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정책 수행이나 시민적 행태를 보이지 못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안정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국가, 특히 시민적 민주주의 사회를 모델로 하는 국가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른 사회적 분화를 당연시함으로써 좌우파 정당의 출현은 기본적으로 용인된

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규칙이 지배하는 정치적 경쟁의 장에서 좌파나 우파에 의해 상대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경쟁 현장을 독식하려고 들거나, 아니면 그 현장 자체를 원천적으로 오염시키는 정치적 행태가 반복될 경우, 국가 기능이 사실상의 내전 상태에 빠져들게 됨으로써 국가 활동의 정당성과 효율성 모두가 상실된다. 다시 말해서 21세기 초엽의 대한민국 국가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체성의 정치를 펼칠 건전한 정치 세력을 전혀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주의적 정체성과 민주주의적 정체성이 부정형적으로 교착하는 아주 혼돈스러운 국면에 있다. 이에 비하면 후진타오 집권으로 가속화된 중국의 정체성 정치는 국민국가가 자기의 세력 범위 안에서 가동시킬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총동원하여 국가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정체성 정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다. 중국: 문화재의 정치, 그리고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극대화

(1) 다방면에 걸친 중국 국가의 원심력적 분열 가능성

한국은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된 것이 문제인 반면, 중국은 하나의 국가 안에 여러 개의 민족이 동거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족을 제외한 소수 민족은 중국 전체 인구에서 8%에 지나지 않으나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면적은 전 국토의 60%로서 대부분 국경 지역에 밀집해 있다.¹⁷ 중국의 전통적인 민족정책은 중국에 대한 복속상태만 확인되면 자치에 기반을 둔 자율성을 광범하게 허용하고 장기간에 걸쳐 동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수립하면서 중국은 반제국주의 투쟁에서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족과 비한족 모두에 대해 사회주의적 평등주의를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정립하였다. 1954년 9월 당시 국가주석 류샤오치(劉少奇)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초안에 관한 보고』 중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으로 “국내 각 민족의 평등·우애·호조의 관

¹⁷ 이희옥, “동북공정 추진현황과 추진기관 실태,” 『중국의 ‘동북공정’, 그 ‘실체’와 ‘허구성’』 (고구려 연구재단 제1차 국내학술대회, 2004. 10), p. 57.

계가 성립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 국가는 철저한 민주주의와 민족평등의 정신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각 민족 사이의 진정한 합작을 성립”시키기 위해 “역사적 유물인 한족의 대한족주의와 소수민족의 지방 민족주의가 모두 잘못되었으므로” 그것을 극복해 주도록 요구하였다.¹⁸ 그러나 한족과 비한족의 **일체화 정책**으로 출발한 사회주의 중국의 소수 민족 정책은¹⁹ 그 안에 소수민족에 대한 강력한 동화 및 통합 정책을 내장하고 있었다.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1982년 10월에 새로 채택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라는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을 법적으로 고정시켰다.²⁰

그런데 중국은 1978년 국가 발전 방향을 자립주의적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적 시장주의로 전환시킨 이래 거의 4반세기만에 대륙 규모의 국가로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발전을 성취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시장에 과감하게 참여함으로써 가능해진 일이었다. 동시에 이것은 중국이 균형주의에 입각한 국가 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국가 안의 사회 영역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분화(分化)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런 구상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성공이 확실해지면서 온당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계층간, 지방간, 그리고 민족간 불균형의 총체적 심화도 명백해지고 있다. 이것은 곧 중국 사회가 엄청난 **원심력적 분열(分裂)의 잠재력**을 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2004년 8월 3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연구팀이 각 대학과 연구소의 저명한 98명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11차 5개년 계획(2006-2010년)’기간 동안 예상되는 중국사회 발전의 열 가지 골칫거리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중국 정부산하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중국의 당면문제와 취약성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스스로 ‘키밍아웃(Coming-Out)’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¹⁸ 이개석, “현대 중국 역사학 연구의 추이와 동북공정의 배경,” 『중국의 ‘동북공정’』, p. 17.

¹⁹ 박장배,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지역구조,” 『중국의 ‘동북공정’』, p. 113.

²⁰ 위의 글, p. 117.

이들은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10대 아킬레스건으로 실업문제, 삼농(농민, 농촌, 농업)문제, 금융문제, 빈부격차, 환경 및 자원문제, 대만 문제, 세계화문제, 치안 및 부패문제, 신용위기문제, 에이즈 등 공중위생 문제를 뽑았다.²¹

이번 발표가 신지도부의 제고된 투명성을 과시하며 문제인식에서부터 해법을 찾는 의미 있는 자기고백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경제-외교부문의 문제들만 부각시킴으로써 치명적인 정치적 약점들을 은폐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중국 내 인권문제나 티베트 등의 독립 요구, 소수 민족의 분열 움직임, 파룬궁 문제, 정치적 민주화 요구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면서 중국정부를 난처하게 하는 진짜 골칫거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가) 실업자 2억 명에 육박, 가장 큰 사회 불안요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이 실업문제이다. 중국에는 2004년 현재 1억7700만 명의 실업자와 국유기업 정리 대상[下崗]인원 2,000만 명을 포함 1억9700만 명이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성장속도를 조절하며 긴축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 매년 1,000만 명 이상 늘어나는 신규 도시노동자와 끊임없이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유입되는 1억 명 이상의 민공(民工)들의 일자리 전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칭화대학 쑤리핑(孫立平) 교수는 그의 저서 『분열(斷裂)』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잠정실업자까지 추산하면 중국의 실제 실업률은 10%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업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혜택, 자녀교육 혜택 등 모든 사회적 수혜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²¹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발표에 대한 이 문단 및 다음의 서술 내용 전체는 전적으로 김대오 기자, “정치적 약점 배제한 중국정부의 ‘커밍아웃’. [해외리포트] 중국 발전 막는 10대 아킬레스건(1),”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검색일: 2004.10.13)을 전재한 것이다.

(나) 모든 문제는 3농(농민, 농촌, 농업)에서 비롯

중국은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는 8억이 농민이다. 실업, 빈부격차, 범죄, 위생 등 모든 문제가 농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요성을 안 중국 정부는 올해 초 삼농문제를 ‘1호 문건(一號文件)’으로 하여 식량증산을 통한 농민의 수입 증대를 각 지방정부에 하달한 바 있다. 그러나 3농에는 여전히 중국사회의 안정성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술한 위험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 2월, 2002년 도농간 소득격차가 공식적으로는 3.1배 수준이지만 의료, 교육, 양로 혜택 등을 감안하면 4~6배 수준에 달하여 세계 최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천웨이띠(陳桂棣)의 저서 <중국농민조사(中國農民調查)>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농민 세금을 연간 소득의 5%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지방 정부에 의해 20%가 넘는 세금을 탈취당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한다. 3농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농민의 식량증산과 소득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데에는 지방정부의 부당한 세금포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공업화와 경제발전은 엄청난 농경지의 유실을 가져와 1인당 농경지가 1.5무(300평)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세계 평균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다. 각종 개발정책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5,000만 명의 농민은 아예 농사를 지을 토지도 없는 실정에서 언제든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옮겨갈 잠재 이농인구이며 그 수가 약 1억 3천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대심이 강한 거대 농민의 도시 유입은 중국사회의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다) 국내총생산(GDP)의 20-40%가 부실채권-금융문제

중국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말 기준 중국의 4대 국유 상업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은 2조4천억 위안(360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의 20%가 넘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제 부실 채권은 이 같은 정부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제신용기관들은 중국 금융회사들의 실제 부실채권 규모가 공식 통계의 2배인 40~50%에 이를 것

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외채무 특히 단기부채가 비교적 적어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막바지 국유기업 개혁이 단행될 경우 금융 문제는 심각한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

(라) 프랑스혁명 당시 지니계수 넘어 위험수위 달한 빈부격차

중국의 동서지역간, 도농간 소득격차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2002년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의 1인당 소득(4915달러)은 최하위인 구이저우(貴州, 350달러)의 14배에 달했다. 상하이 부자는 식당종업원에게 1,000위안(15만원)을 팁으로 뿌리는데 2003년 1인당 연간 소득이 637위안(77달러)을 넘지 못하는 절대 빈곤인구는 8500만 명을 넘어섰다. 게다가 작년에는 자연재해와 환경적 요인으로 절대빈곤층이 80만 명이나 늘어났다. 상하이는 2,000~2002년에 1인당 소득이 1,000달러 늘었으나 산시(山西)는 50달러, 후베이(湖北)는 80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계은행의 절대 빈곤 기준선인 1인당 1일 1달러로 치면 중국의 절대 빈곤층은 2억 명으로 늘어난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지니계수(사회평등 지수, 완전평등사회 0, 완전불평등사회 1)는 0.28이었는데 1995년에는 0.38, 90년대 말에는 0.458에 달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중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지니계수가 0.474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며 0.45를 넘어서면 극심한 빈부 격차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폭동이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될 정도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프랑스혁명 당시의 지니계수를 넘어서 있는 상태이다. 빈민층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의식수준이 낮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지만 사회적 유동이 많아지면서 극심한 빈부격차에 불만을 갖는 세력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 환경 및 자원문제

경제건설을 위해 6천개 이상의 경제개발지구가 조성되며 중국에 심각한 환경 자원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위험수위를 더해가는 환경 자원문제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복병이라는 것이다. 산업화과정에서 사라진 경작지만도 350만 ha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체 국토의 27%인 260만km²가 사막인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매년 약 2460km²씩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가 ‘과학적 발전관을 내세워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내실을 다지는 균형발전을 주창하는 것도 심각한 환경오염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WTO 가입 이후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이에 대한 투자와 설비를 늘여가고 있지만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수준이 제고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자생적인 대항세력이 생겨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 문화재의 정치: 다민족 통일국가론을 넘어선 중화민족론

중국 사회에서 분출하는 이런 분열잠재력에 대해 중국 국가의 대응능력과 방안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할 문제이지만,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서 한족을 비롯한 각 민족들이 활약하면서 역사적으로 축적해 온 방대한 문화유산을 국가 통합의 재료로 동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인다.

2,000년부터 준비에 착수하여 2002년 2월부터 국가의 비준과 재정 지원에 의해 정식으로 출범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한다는 일차적 목적 아래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는 단기간의 집중적 논의를 거쳐 2004년 3월 고구려연구재단을 출범시켰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열린 이 재단의 제1차 학술대회에서 경북대학교 사학과와 이개석 교수는 동북공정이 학문적 위기에 처한 중국 역사학계의 활로로서 구상되어 중국 정부를 움직인 학문적 자구책이라는 추정을 제시하면서 “하지만 정작 중국 정부의 수뇌가 왜 그토록 동북공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

게 되었으며”, “동북지역의 역사를 특별히 중시하게 된 연유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고 언명하였다.²² 그리고 또 다른 발제에서 한신대 중국학과의 이희옥 교수는 “고구려사 왜곡을 포함한 동북공정은 중국정부에 의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패권주의’이며, 이것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영토확정과 관련한 국가전략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국 학계와 시민사회의 통상적 주장이 동북공정에 대한 과잉반응일 수도 있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피력하였다.²³ 그러면서 이 교수는 “동북공정은 동북지방의 새로운 상황변화에 따라 국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어적 측면이 존재하고 있으며, 고구려사 등 역사왜곡의 문제는 중앙의 치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기보다 지방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중앙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측면도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²⁴ 이희옥 교수는 중국 정부가 분명히 승인하고 지원하였으며 지방 정부와 중국 중앙 학계가 대거 연루되어 있는 동북공정의 위상과 의미를 두 나라 역사관의 차이, 학술과 정치의 관계라는 근본적인 철학적 문제, 기타 한·중간의 미해결 국경 문제 및 현재 진행 중인 경제적 교역 관계와의 연관 등의 다면적 맥락에서 소략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짚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동북공정이야말로 “중국이 근대 국민국가의 시각, 중화인민공화국의 현실에서 과거 역사를 국가주권으로 재단하는 오류를 잘 드러낸 프로젝트”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는 있다.²⁵

고구려연구재단을 출범시키기 전에 이루어졌던 여러 토의에서 빈번히

²² 이개석, “현대 중국 역사학 연구의 추이와 동북공정의 배경,” 『중국의 ‘동북공정’, 그 ‘실체’와 ‘허구성’』 (고구려 연구재단 제1차 국내학술대회), p. 42.

²³ 이희옥, “동북공정 추진현황과 추진기관 실태,” p. 49. 이희옥 교수 자신이 한국 학계와 시민사회의 주장을 직접 ‘과잉 반응’이라고 단정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다.

²⁴ 위의 글, 같은 쪽.

²⁵ 위의 글, p. 79. 그러면서 이희옥 교수는 동북공정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서 한국 쪽도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고구려의 복잡하고 혼성적인 성격을 수용하는 학문적 태도”가 부족하며, “폐쇄적인 역사주권이나 국가주권”에 사로잡힌 연구자세를 비판하고 있다.

지적된 문제이지만 이 시점에 정부 출연으로 동북아시아 관련 연구 단체를 꾸리려고 할 경우 특정 국가와 관련된 특정 역사 사안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요구는 만만치 않았다. 왜냐하면 특히 중국과 일본에 접하고 있는 한국과 북한의 역사 과정은 중국과 일본 국가들 그 자체 내부의 필요성에 따라 형태와 내용이 상당 부분 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 정부가 발주한 여러 개의 공정 가운데 동북공정이라는 특정 공정에 대한 즉물적 반응으로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고구려 연구’라는 아주 협소한 작업 관점으로는 결국 중국 내에서 동북공정이 갖는 의의와 그 기본 맥락에 관한 정보조차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순수하게 역사학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동북공정이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연구 및 발굴 프로젝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왜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비롯한 동북 지방의 과거 역사에 그토록 관심을 갖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이전에 중국 정부가 왜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 전체에 대해 동북공정 규모를 능가하는 여러 개의 연구 및 발굴 프로젝트 사업을 기왕에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이 시작하기도 하는지부터 대답해야 한다. 동북공정을 전후하여 중국 자체 역사의 시간적 확장을 겨냥한 두 개의 대규모 연구 및 발굴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²⁶

(가)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

중국 정부는 1996년 5월 ‘하상주(夏商周) 단대공정(斷代工程)’을 시작했다. 200여명의 전문가가 동원됐고 쑤시성(陝西省) 저우위안(周原) 유적, 허난성 정저우의 상청(商城)유적 등 모두 17곳을 새로 발굴했다. 중국

²⁶ 여기에 나온 중국 정부의 두 역사 공정에 대한 서술은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에서 2004년 9월 3일~18일 2주간에 걸쳐 중국 현지를 기획 탐방한 결과를 보고한 특집 기사인 김태경 기자, “특별기획-중화패권주의 ① ‘중화문명 탐원공정’의 현장을 가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검색일: 2004. 10. 3)를 전재한 것이다.

역사에서 연대가 정확하게 알려진 가장 이른 시기는 기원전 841년 서주(西周)말 공화(共和) 원년(元年)이다. 그 이전의 사건은 사실인지 전설인지 불명확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00년 11월 9일 하상주 단대공정을 끝내고 ‘하상주 단대연표’를 정식 발표했다. 하나라의 시작을 기원전 2070년으로 확정지었고, 따라서 중국의 역사시대는 총 4070년이 됐다. 현재 기원전 841년보다 1229년을 끌어올렸다.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에 건국했고, 반경이 은(殷)으로 천도 한 때는 기원전 1300년 무렵, 주나라는 기원전 1046년으로 각각 설정됐다. 전설이었던 하나라와 요임금, 순임금은 역사적 사실이 됐다. 이 공정의 총 책임자인 칭화대(淸華大)의 리쉐친(李學勤) 교수는 지난 6월 17일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정확한 역사시대는 기원전 814년이다, 이전의 역사는 아주 모호하다”며 “세계 4대 문명가운데 유일하게 5,000년 중국 문명만 이런 역사적 공백이 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라고 말했다. 즉 중화문명 5,000년을 얘기하지만 이제까지의 자료로는 역사시대가 3,000년에도 못 미치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하상주단대공정을 벌인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화문명의 역사시대는 4,000년 정도다. 5,000년에서 약 1,000년이 모자란다. 다시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이 시작됐다.

(나)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

이 공정은 2002년 11월 중국 언론이 시작을 예고했고 2003년 6월부터 정식으로 개시됐다. 그러나 중국문화부 홈페이지의 설명을 보면 “지난 2001년 11월 14개 과제와 24개 전문연구과제를 설정했다”며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결합해 역사학, 천문학, 고고학, 연대측정학, 환경 및 야금 등 90여명의 전문가가 이미 결합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중화문명탐원공정은 ‘중화 문명의 시원’을 찾는 프로젝트다. 중화문명탐원공정이 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보면

- 고문헌의 요·순·우(禹) 관련 자료의 수집과 연구 성과 정리
- 중국 천문학의 기원 연구

- 예제(禮制)의 기원과 연구 성과 정리
- 허난성 서부 및 산시성 남부 지역의 용산문화부터 이리두 문화까지 고고학 문화 계보
- 하나라 초기 때까지의 취락형태가 보여주는 사회구조
- 용산시대부터 이리두 시기까지의 야금기술 및 유적,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 초기 각종 부호 및 문자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 생태환경 평가
- 문명기원에 대한 이론과 방법, 연구 성과의 종합
- 탄소측정 방법 연구 등 총 11개 과제다.

‘예비연구’ 과정에서 허난성 신미시의 구청진(古城鎮)과 신짜이촌의 유적, 역시 허난성 덩펑시(登封市)의 왕청강(王城崗) 유적, 산시성 타오스향의 유적 등 4곳이 집중 발굴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곳은 현재 한족의 원류인 화하(華夏)족들이 활동했던 중원지역들이다. 시기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4,000~5,000년 전, 고고학적으로는 신석기 후기문화인 용산문화부터 하나라 초기까지, 전설상으로는 삼황오제 시기에 해당한다. 이미 예비연구는 끝난 상태다.

그러면서 지난 2001년 8월 14일 중국 후난성 사회과학원 ‘염제순제 과제조’는 “중국 문명은 결코 5,000년 안팎이 아니다”라며 “1만년, 더 나아가 1만2,000년이나 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의 주장 근거는 순임금의 주요 활동지역인 후난성 잉저우(永州) 다오(道) 현에서 출토된 볍씨 등의 농작물 종자가 1만2,000년 전 것이고 각종 고문헌이 방증한다는 것이다.

동북공정이 중국의 역사적 영토를 공간적으로 넓히는 작업이라면, 중화문명탐원공정은 시간적인 영토를 확보하려는 작업이다. 연세대 강사인 김선자 박사는 “중국 정부는 신화를 역사로 만들고 있으며, 그 밑바탕에는 ‘위대한 중국’이라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공정들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중국의 영역을 엄청나게 확장시키려는

프로젝트”라며 “중국은 경제·외교적으로 자신감을 얻으면서 강렬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슈퍼 파워’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식으로 갖가지 당면한 정책 현안과 실용적 개발에 대한 관심과 결부되어 중국 대륙 전체에 풀어진 역사 및 고고학 연구 관련 프로젝트는 큰 단위로만 4개 이상 진행되고 있다.

<그림 II-1>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공정들²⁷



출처: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검색일: 2004/10/03 오후 5: 25)

²⁷ 위의 기사에 첨부. “동북 공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상주단대공정과 중국문명탐원공정은 중국의 영토를 최대 1만년 이상으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동북 공정은 만주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한 작업이다. 여기에 이미 서북공정과 서남공정도 진행 중이다. 서북공정은 오늘날 신장위구르 자치구 지역의 역사 및 지리에 대한 종합적 연구다. 이 지역이 중국의 영토로 확실히 들어온 것은 1755년 청나라 건륭제 때 준가리아 부족의 반란을 진압하면서부터다. 따라서 중국의 영토가 된 지 불과 250년밖에 안됐다.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들의 분리 독립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서북 공정을 하는 것이다. 서남 공정은 물론 티벳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큰 문제는 이렇게 자기 문화와 문명의 역사를 확장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된 각종 탐사 작업의 결과물들로 중국 문명의 기원으로 상징하는 황하 유역에서의 중원(中原) 문화와 이질적인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해 발굴 작업을 한 홍산문화 유적지인 랴오닝성(遼寧省) 링위안시(凌源市) 우하량(牛河梁) 유적지에서는 그 동안 고조선 계통으로 인정되어온 유형의 유물들이 다량 발굴되었다. 이 곳을 직접 탐방한 기자의 보고에 따르면, “적석총, 석판묘, 돌로 만든 대형 제단, 각종 다양한 옥 제품, 빗살무늬 토기…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한국 고대문화를 상징하는 유물들이 이곳에서 많이 나왔다. 또 이들 지역은 과거 고조선의 중심지였다고 추정되는 곳이다.”²⁸

그런데 이런 사태에 대처하는 중국 학계와 정부의 태도는 다민족 통일국가론의 해석적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자각시켜 준다. 즉, 그 어떤 문명이나 문화도 현재의 중국이 인지하는 역사권 안에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중국 역사의 산물로 규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조선 문화도 중국 문화 원류 중의 하나로 비정된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시선의 연장에서 전설 시대에 서로 생사를 건 투쟁 관계에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이질적인 두 신상, 즉 중국 민족의 선조로 추앙받는 황제(黃帝)와 동이족의 선조신인 치우(蚩尤)가 중국의 공동 선조로 ‘중화삼조당’(中華三祖堂) 안에 황제를 중심으로 염제와 좌우를 나누며 나란히 봉안되어 있다.²⁹ 그리고 몽고의 징기스

²⁸ 김태경 기자, “특별기획-중화패권주의 ③ ‘反중원중심론’ 현장 홍산문화를 가다,”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검색일: 2004. 10. 10).

²⁹ 김태경 기자, “특별기획-중화패권주의 ②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 붙이기,”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검색일: 2004. 10. 6) “치우, 칭기즈칸, 인디언도..블랙홀 민족주의. … 중화삼조당” 정문 현판에 쓰인 글씨는 ‘귀근원(歸根苑)’이었다. ‘뿌리를 찾아 돌아오는 곳’이라는 뜻이다. 정문 왼쪽 바윗돌에는 “삼조 문화를 널리 떨치고 민족단결을 촉진하자”는 지난 2,000년 1월에 쓴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의 친필 휘호가 새겨져있다. 중화삼조당은 귀근원 정문에서 정면으로 200m 쯤 떨어진 곳에 있다. 건물 50m 정도 앞에는 ‘홍콩 귀근비(歸根碑)’와 ‘마카오 귀근비’가 서있다. 한 여성 관리직원은 “한국인들도 가끔 이곳을 찾는다”며 “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성화가 여기에 안치될 것”이라고 자랑했다. 지난 2003년 2월 중국올림픽조직위원회와 베이징시 등은 중국문명의 발전과 중화민족의 단결을 상징하는 귀근원의 중화합부단(中華合符壇)을 올림픽 성화의 안치 및 봉송지로 결정했다. 귀근원 전체 면적은 35.5km²로 1994년 공사에 착

칸도 중국인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바로 이 징기스칸의 군대가 도달한 가장 서쪽 변경인 헝가리도 중국의 영토이며, 미국 대륙의 인디언도 “중화 인종이 동쪽으로 이동한 것(東遷)”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1949년 건국 이래 대륙 중국의 정체성 정치는 중국 내 민족들의 자치권을 모태로 한 ‘민족일체론’에서 시작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적 통합력을 우위로 하는 ‘다민족 통일국가론’으로 한층 강제적 연관성을 부각시키다가, 21세기 들어 예전에는 한족의 별칭으로만 쓰이던 용어의 의미내용을 변용시켜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국 국가 내의 모든 민족적 경계선과 그 개성적 독립성을 일체 부정하여 새로운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성을 기한 문화 관념을 바탕으로 국가우선적 정체성을 핵심으로 하는 ‘중화민족론’으로 귀착되는 과정에 있다.

이런 발전 과정이 대외적으로 중국 패권주의 또는 중국 제국주의로 발전할 것이라고 단정한다면 아직 이를 것이다. 그러나 자기 국가 내부의 필요를 이런 국가주의적 표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화 차원에서 민족형질까지 새로이 주조할 정도로 나아가는 ‘이데올로기적 조작 기술’ 안에 언제든지 공격성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배타적 권력독점성이 내장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치명적인 문제는 중국 사회 내부에 중국 국가가 점유한 이런 배타적 권력독점성을 항상적으로 견제할 정착된 비판 세력이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의 우익세력이나 한국의 수구세력이 추진하는 정체성의 정치에도 이런 배타적 권력독점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일본과 한국에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시민사회가 상당할 정도로 성장하여 국가 이성의 구성에 일정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해 1996년 9월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았고 1998년 7월 외부인들에게 정식 개방했다. 현재 국가 AAA급 경관구로 중국인민대표자회의 및 인민정치협상회의 관계자들이 220여 차례 찾는 등 모두 100여만 명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핵심 시설은 공사비만 1,000만 위안(16억원)이 들었다는 중화삼조당이 다. 안에는 높이 4m 가량의 황제 좌상이 가운데에 있고 왼쪽에 치우, 오른쪽에 염제의 좌상이 있다. 4면의 벽에는 황제와 염제가 싸웠다는 판천지전(阪泉之戰), 치우와 황제가 싸웠다는 탁록지전(水+豕鹿之戰) 등을 묘사한 4개의 대형 벽화가 그려져있다. 비록 신화상이지만 과거의 철천지원수였던 이들은 이제 중국인들한테 공동으로 향불을 받고 제삿밥을 얻어먹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에는 그런 자생적 제도 장치가 거의 정착되어 있지 않다.

현대 중국의 정치사를 ‘동아시아주의적’ 관점에서 추적해온 연세대 사학과 백영서 교수는 권력과 주권 원칙에 의해 작동되는 ‘국가’와 그 작동 영역과 원칙이 뚜렷이 구분되는 그런 독자적 의미에서의 ‘시민사회’(市民社會), 즉 평등하게 자유의 권리를 향유하는 개인들이 국가와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기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자율적으로 결합하여 특정 결사체를 만들 수 있는 공적 영역으로서의 그런 시민사회는 중국에서 포착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국가와 유기적 관련을 맺으면서도 국가에 대해 — 때로는 비판적이거나 급진적이기도 한 — 공적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가 활동을 보완하는 공론조성의 기능을 한 ‘민간사회’(民間社會)의 존재는 중국 역사에서 특히 유가적 전통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된다고 하였다. 즉, 민간사회란 “공공문제의 논의에 참여하는 사회(특히 직능별) 집단의 자율적 결집의 영역”으로서 “전통적으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지향과 동시에 그것의 보완 지향을 갖는 영역”으로 간주된다.³⁰

하지만 이렇게 공론 조성이라는 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국가와 구별되는 영역을 애써 설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중국 민간사회의 국가 결합성을 역으로 입증(立證)해 준다. 다시 말해 중국의 경우 국가가 이성을 전적으로 상실하고 하나의 정책 달성에 매진할 경우 서구 사회에서처럼 시민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인 결사를 형성함으로써 국가 내에서 분권적인 움직임을 벌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분권적인 결사를 할 여지가 없다면 유일한 가능성은 국가의 제동이 아니라 국가의 전복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현실성이 없으며, 권력 행위를 할 의지를 발휘하기 힘든 개별 구성원에게 권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³⁰ 이상의 논의는 백영서, “중국어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나?: 역사적 관점에서 본 민간사회의 귀적,”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0), pp. 106-107 참조. 이 글은 『아시아 문화』 제10호 (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pp. 205-231에 먼저 수록되었었다.

서로 커다란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이익 향유의 양상이 결코 이익 공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익 분점의 지속에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의존관계의 심화가 경제적 공동체의 조건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경제관계의 내부 성격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것이 이 세 나라의 정체성 정치에서 다른 나라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자기 나라의 내적 필요에 따라서만 정체성 형성 작업을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국주의(일본), 국가주의(한국), 중화민족주의(중국)는 모두 ‘폐쇄적이고 자국중심적인 정체성 구조’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정신태도를 양성한다. 이런 자기폐쇄적 성격의 정체성은 그 안에 타자배제적이거나 타자경시적인 성향을 내장한다.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현재 이런 자폐적 정체성은 타자공격성으로 표출될 만큼 이웃 국가와 바로 충돌할 여지가 있는 ‘현실적이고도 당면한 성격의 이익 분쟁점’, 예를 들어 당면하게 표출된 영토나 자원 분쟁 등과 같은 직접 충돌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아직은 갖고 있지 않다. 즉 한·중·일 세 나라의 국가정치를 주도하는 세력들 사이에는 적대성을 표출할 만큼 대립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따라서 각 국가의 정체성 정치가 다른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고려를 거의 배제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국가간 전면 대결로 비화하여 타자공격성으로 발전할 정도로 즉각적인 가연성(可燃性)을 지닌 소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국가들 사이에 위의 표에 적어놓은 쟁점들(즉, 역사교과서 문제, 동북공정, 남경 학살과 같은 중일전쟁 중의 전쟁범죄 등)로 정체성 정치의 충돌이 야기될 경우, 특히 각 사안에서 피해자 입장에 선 나라들로부터 대중적 차원에서 격한 국민감정이 분출된다. 현재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해 관계를 갖지 않는 역사 문제에 대한 이 같은 감정적 대응의 반복은 세 나라 국민들 사이에 심층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며, 현안이 불거지지 않는 평상적인 상태에서는 문화적 교류보다는 ‘상호 냉담한 무관심 속에서 긴장된 공존 관계’가 유지된다.

나. 동북아 문화유산의 공동 연구와 관리의 필요성: 문화적 풍요의 교류를 통한 학습가능성과 평화로운 공존 방식의 의식적 추구를 통한 평화문화의 정착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중, 일 삼국이 현재로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명국, 그것도 문화적으로 고도의 발전을 달성한 역사가 있는 문명국이라는 점이다. 세 나라는 과거 상당기간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며, 그러면서도 각기 고도의 기능을 가진 독자적인 언어 체계를 완성해 냈고, 서로의 장점을 학습함으로써 자기 나라 인민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문화적 가능성을 창출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 초기 적응 과정에서의 과오와 그것에 대한 근본적 청산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현재 동북아시아 3개국은 서로의 문화로부터 배울 수 있는 인간적 삶의 풍요로운 가능성을 교류하고 체득할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아무런 피해의식이나 선입견 없이 그리스·로마 신화를 비롯한 구미의 문화적 산물을 수용하였을 때 누릴 수 있었던 더 많은 문화적 풍요의 체감과 이런 냉담한 상황 속에서의 상호 무관심으로 인해 동북아시아 삼국 국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놓치고 있을 아시아 역사와 문화 속에서 축적된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상실하고 있는지 분명히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은 현재에도 관광을 통해 삼국간의 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지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광을 통해 우리는 현대라는 시점에서 볼 때 동북아 삼국의 생활양식이 외관상으로 너무나 유사하다는 점에 놀란다.

연구자들도 신주쿠 역에서 도쿄의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 서울 지하철의 차량이나 역사와 너무나 흡사해 마치 서울역이나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탄 기분이 들었다. 간간이 드러나는 운영상의 기법 차이나 언어만 제외하면 통로에 놓인 공중전화 부스나 지하철 안내도 작성 수법은 서울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신주쿠 지역이나 도쿄 기차역권에 새로운 짓는 건물의 규모가 괴이할 정도로 웅장하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건물이 올라가는 모양이나 배치는 서울과 거의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상하이나 베이징을 다녀온 사람들도 거의 마찬가지로 경험을 한다.

일본 텔레비전을 켜놓고 음악을 들으면 서울에서도 들을 수 있는 서양 경음악이나 고전음악 또는 팝송이 주류를 이루며, 방송 광고의 제작 기법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서 동북아시아 삼국은 현대적 생활양식에 있어서 경이로울 정도로 유사한 외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미 생활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유사한 세 나라 사람들이 만나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나 경제 외적인 것을 화제로 삼으면 우리는 참으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지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의 역사와 당장의 현안 사태를 보는 시각 및 거기에 대한 접근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일본 사람이 슬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납득하지 못하는 한국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40대 이상의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본인의 전형적인 상은 식민지 시대 제복으로 정장을 하고 허리에 칼을 차고 험한 욕을 퍼부으며 흰 옷 입은 조선 사람을 땅에 처박아놓고 마구 두들겨 패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과거 박정희 시대 마산 수출자유지역에 들어와 저임금으로 한국 노동자, 특히 여공들을 착취하고 순결을 짓밟거나 아니면 엔화로 현지처를 두고 있다가 돈을 벌면 그냥 챙겨 일본으로 훌쩍 가버리는 경제적 동물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한국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일본인이나 아니면 평화와 진보를 얘기하며 헌신하는 일본 사람이 나타나면 오히려 당황하고 거북스러워한다.

중국인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이중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우리가 지난 1,500년간 너무나 많이 배운 대로 중국을 아주 관대한 문화 선진국으로 보아 중국 사람을 대인(大人)으로 미리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을 다녀온 다수의 대중들은 중국의 현재적 빈곤과 낙후함, 그리고 시장경제 도입 초기에 나타나기 마련인 금전적 탐욕에 대해 거의 오리엔탈리즘적인 경멸감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일본에 대해 추상적인 국가로서 그 나라들에 대한 선입견이 그대로 그 구성원들에게 투사되는 이른바 ‘구성의 오류’가 너무나 만연해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오류적인 선입견은 서로의 행태와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며, 방해되는 만큼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오해와 불신의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해야 한다. 동북아 문화공동체는 동북아 각 나라의 국민이 처한 이런 생활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다 유익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왕에 차고 넘치는 경제 교류와 나날이 증가하는 상호 관광의 기회 등의 차원을 넘어 일본, 중국, 한국이 우선은 서로를 배울만한 상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북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첫 번째 필요성은 바로 이 서로의 삶의 양식과 그 역사적 삶의 과정이 지니는 문화적 학습 가치에서 찾아진다.
- 그리고 서로의 역사와 영토 안에서 국민국가가 수립되기 이전에 서로의 삶이 영겨 독특한 문화물이 창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삼국이 과거 한 번도 서로에게 폐쇄적으로 고립되어 지낸 적이 없다는 점을 서로의 대중에게 좀더 체계적으로 인식시키고 교육시킴으로써 삼국의 국민이 서로의 발전의 긍정적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납득시켜야 한다. 이렇게 교류의 역사적 지속과 각 문화발전의 긍정적 기여의 확인 필요성이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조성할 두 번째 필요성이 된다.
- 나아가 삼국의 시민사회가 각기 겪고 있는 당대의 현안적 고통과 환희를 서로 나눔으로써 각 국가 구성원 개인의 삶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서 자기 삶을 보다 풍부하게 실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찾아내어 자기 것으로 전유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 없다. 혼

자 폐쇄적으로 살기보다는 삶의 현장이 타국으로까지 확장되고 개방되어 자기 삶의 가능성을 보다 풍부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평화로운 상생의 질서를 창출하여 공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의 세 번째 필요성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4. 동북아 문화유산 공동 연구 및 관리의 필요성과 방안

가. 문화유산 개념의 국민국가적 계박성과 인류적 개방성을 지향하기 위한 발상 전환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또는 ‘문화재’(cultural property)는 상호 교착적으로 쓰이지만 그 외연은 비교적 명확하게 판별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의 성립과 내용 자체가 국가 또는 민족 중심적이다.

- 문화재 규정 사례(1): 문화재란, “1) 민족단위의 공동체적 산물로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확고한 정신적 가치를 지니는 것임과 동시에 2) **문화적으로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한다.
 - 문화유산: 인류가 자연과 더불어 생활을 영위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적 소산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 자연유산: 생물학적 무기적 생성물로서 과학상, 보존상 또는 자연경관상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것³¹
- 문화재 규정 사례(2): “문화재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빚어낸 것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고 자연 또는 자연물이 객체가 되어 이루어진 문화

³¹ 정문규, 『문화재행정과 정책』 (서울: 지식산업사, 2001), p. 11.

의 산물이다. 각 나라와 민족이 전통 가치에 따라 각기 독특한 문화를 가꾸고 이어오면서 전통에 따라 문화재에도 민족정서와 가치관이 들어 있게 된다. 따라서 문화재는 전통문화의 산물이며,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다. … 문화재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문화 향상을 돕고, 인류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³²

위의 규정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한국 및 동북아 국가들의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 정책에서 규정의 핵심적 문제의식은 국민국가적 정체성의 역사적 확정에 있다. 그러면서 이 정체성의 외연을 인류 지평과 직결시키고 있는 이중성이 문화유산 개념에는 언제나 병존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UN과 다음과 같은 그 유관 국제기구에서 채택, 권고한 대부분의 협약 또는 성명들은 철저하게 국민국가를 기본단위로 설정하여 그에 의거해 모든 정책과 활동을 결정하고 있다.(관리와 운용의 기본단위로서 국민국가 관리의 원칙)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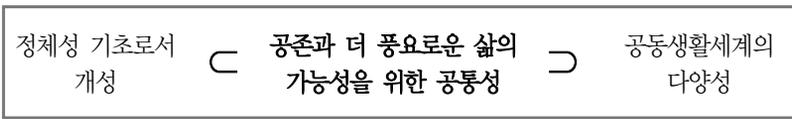
- 국제박물관위원회(ICOM)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센터(ICCRROM)
-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 국제민속축제 민속예술기관협의회(CIOFF)
-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따라서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문화재 또는 문화유산 개념은 일차적으로는 철저하게 국민국가의 주권을 문화적으로 정당화 또는 보강하기 위한 ‘정체성 정치’(politics of identity)에 계박(繫縛)되어 그 자체만으로

³² 장호수, 『문화재학 개론』 (서울: 백산자료원, 2002), p. 10.

³³ 위의 책, pp. 410-416. 이 책의 제10장(문화재와 국제관계) 중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참조.

는 문화적 공동성의 발상이 관철될 정신적 여지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문화적 공동성의 구축은 그 어떤 역사적 과거나 현존하는 문화사상(文化事象)에서 객관적으로 직접 추출되기보다, 공동의 생존에 대한 현재적 필요성에서 기왕의 차이 나던 문화적 개성들을 공존할 생활세계권역 안에서 창조적으로 연관시킴으로써 **그 생활세계권에서 이루어질 삶이 보다 풍요롭고 다양하게 실현되도록 만들**으로써 가능하다.



공동의 생활세계를 창출한다는 발상을 기본으로 하여 정체성과 다양성을 아울러 창조적 네트워크를 추구한 선례로 우리는 유럽연합이 범대륙적으로 실시하는 문화유산 공동정책과 그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필요 정보를 실시간에 공급하는 ‘유럽문화유산네트워크’의 전례, 그리고 구체적인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실질적인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례로서 ‘유럽문화도시’ 운영을 살펴볼 수 있다.

나. 유럽연합의 문화유산 공동 정책 개관³⁴

(1) 유럽연합 문화유산 정책의 전사(前史)

1974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문화영역에서 공동체 차원의 조처, 특히 문화유산 보호조처의 필요를 언급한 선도 결의를 수용하였

³⁴ 이 소절의 기술은 전적으로 유럽연합 인터넷 홈페이지 가운데 유럽연합 문화정책 전반을 소개하는 부분 중 문화유산 정책의 기초를 상술하는 사이트<www.europa.eu.int/comm/culture/activities/cultural_heritage_en.htm>를 번역한 것이다. 유럽연합 문화정책 사이트인 <Europe and Culture>는 문화의 범위 안에 건축, 시각예술, 영화 및 시청각 매체, 무용, 예술 훈련과 교육, 출판, 음악, 문화유산, 연극 등 9개 분야를 포함시킨다.

다. 1993년 이래<유럽공동체 창설 조약>(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은 특히 문화유산의 보존과 증진에 관련된 활동들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조약 제151조는 EC가 유럽적 의의를 지니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취하는 조치를 지원하고 보완해야 함을 명문화하고 있다. EC가 초기에 취한 조치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나 리스본의 키아도 역사 센터 같은 “건축 유적물”의 복원을 지원하는 정도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이래 EC는 동산 및 부동산 유산(박물관, 수집관, 도서관, 문서고 등), 고고학적 및 건축학적 유산, 자연유산(자연상의 관심을 끌 만한 풍광 및 장소), 언어 및 음식 유산, 그리고 전통적 직업 등과 관련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다. EC가 취했던 이런 종류의 조치는 문화유산이 지니는 문화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2) 문화적 정체성의 매개물로서 문화유산

유럽의 어느 곳을 가로지르더라도 문화유산은 문화적 정체성의 매개물로서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다. 어떤 문화유산에 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문화유산을 촉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이 쏟아졌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것은 유럽인들이 자기 나라 자체의 문화와 유럽연합(EU) 다른 회원국의 문화와 친숙해지고 그 가치를 평가할 줄 아는 역량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가) 공동 유산의 보존과 증진

유럽의 공동유산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은 문화협력 프로그램인 <문화2,000>(Culture 2,000)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로서, 이 프로그램의 예산 중 대략 34%가 이 목적에 책정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거의 독보적 중요성을 지닌 유럽 유산을 보존하는 프로젝트, 예를 들어 이른바 “유럽 유산 실험실”(European heritage laboratories) 같은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 실험실 중 몇몇 곳은 이태리 아시시에 있는 성프란체스

코 바실리카 성당의 프레스코 벽화를 복원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문화2,000> 프로그램은 문화유적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 예를 들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멀티미디어 문화상품의 제작을 위한 훈련, 경험 교환 및 개발을 담당하는 프로젝트인 <아르누보 네트워크>(the Art Nouveau Network) 같은 기획을 지원한다. 또 <문화2,000> 프로그램은 유산복원기획에 기여한 이들에게 주는 <신생유럽상(賞)>(Europa Nostra awards)을 지원하기도 한다.

2,000년 6월 26일 결의에서 유럽평의회는 유럽 영화 유산의 보존과 증진이 지닌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미디어 프로그램2001-2005>(the MEDIA programme 2001-2005)는 유럽의 시청각 산업을 지원하는데, 디지털 문서고를 개발하고 영화, 비디오/DVD,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적인 시청각 제작물들을 배포하는 일을 진흥시키는 프로젝트들을 공동으로 재정지원 함으로써 유럽 영화 유산의 발전에 기여한다.

(나) 공동유산에의 접근

유럽연합은 문화유산에의 공적인 접근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며 유럽평의회와 합동으로 홍보 캠페인을 벌이기도 한다. 그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유산에 관한 학습

- <소크라테스 프로그램>(the SOCRATES programme)은 예를 들어 학교와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유산 영역에서의 교육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the Leonardo da Vinci programme)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전통 기능 및 문화유산의 복원과 개발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지원한다.
- 나아가 지방언어와 소수자 언어를 진흥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는데, 이들 언어가 유럽의 문화적 유산 및 언어적 유산의 일

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② 공동유산에 대한 자각의 고양

유럽연합은 1999년 유럽평의회가 착수했던 <“유럽, 우리 공동의 유산” 캠페인> (“Europe, a common heritage” campaign)과 같이 문화유산에 관한 자각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에 관여한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와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는 사진 유산, 고대 유럽의 대학들, 전통 기능 산업, 유럽 음악 전통 등의 주제에 관해 5개의 협정을 체결하고, <문화2,000> 프로그램의 골격 안에서 몇 가지 협동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또한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은 <유럽 유산의 날>을 진행하는 데 공동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기념일은 1991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다. <문화2,000> 프로그램은 공동유산에 대한 자각을 고양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다) 세계유산(World heritage)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할 필요성은 유럽의 경계선 너머로 확장된다. 유럽연합은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국제기구 및 협동이나 협회조직 동의안에 서명한 유럽연합 비회원국과 같이 활동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와 유럽평의회가 1999년 서명한 협정에 따라 코소보 문화유산의 파괴에 대한 협동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예를 들어 <유산 네트워크 프로젝트>(HeritageNet-project) 범위 안에서와 같이 문화유산 및 세계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협조하고 있다.

세계유산 보호는 유럽연합의 동반 국가들과 체결한 각종 동의안에도 명시적으로 공포되고 있다.

<유럽 지중해 유산 프로그램>(EUROMED HERITAGE)은 유럽의 지중해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들의 개발을 촉진하는 지역 프로그램이다.

그것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의 협력 프로그램(MEDA)의 일부이다. <유럽 미디어디지털 서비스>(EUMEDIS)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문화적 자산이나 관광지에 관해 멀티미디어로 디지털 서비스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성안된 조치이다.

The URB-AL programme은 유럽연합과 라틴아메리카의 도시들, 광역도시권들 그리고 지역들이 도시 유산의 보존과 같이 도시 문제와 관계된 프로젝트들에 관한 협력을 고무하기 위한 것이다. 아시아에서 이에 상응하는 일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ASIA-URB가 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제반 노력들은 코토누 협정(the Cotonou Agreement) 조항 안에서 유럽연합이 아프리카, 카리브 해,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벌이는 여러 협력 활동들의 일부로 수행되기도 한다.

(3) 경제 발전의 한 요인으로서 문화유산

유럽의 문화유산은 경제적 조건으로 보더라도 귀중한 자산이다. 이 점을 충분히 명심하여 유럽연합은 문화와 관련된 직업 훈련, 지역 개발 및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 영역에서 구상되는 기획들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만인이 공유하는 가치 있는 자원으로서 국가적 차원과 범유럽적 차원 모두에서 보호되고 있다.

(가) 유산 관련 전문기술의 훈련

<유럽연합 회원국들 안에서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과 관련된 협정>을 적용시키기 위한 2001년 1월 결의에서 유럽 의회는 예술, 기능 및 전통 직업들뿐만 아니라 유산복원에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자신이 재원을 제공하는 각종 연간 프로젝트나 협력 동의안을 통해 <문화2000> 프로그램은 문화적, 고고학적, 건축적 유산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동성과 훈련을 촉진시킨다. 마찬가지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도 우리 세공 같은 전통 직업 영역의 훈련을 위한 프

로젝트를 지원한다. 유럽사회기금(the European Social Fund)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는 국가적 프로그램 아래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진들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유산 영역에서도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나) 문화유산: 지역 발전과 고용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은 위기에 빠진 도시구역들을 해결하려는 <도시문제대처 운동>(the URBAN initiative)과 유럽연합 전역에 걸쳐 도시 개발을 비롯한 각종 현장에서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지역간 대책 활동>(the INTERREG initiative)의 범위 안에서 지역개발 프로그램, 혁신 조치, 그리고 공동체 활동 등의 일부를 형성하는 유산복원 프로젝트들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우스 웹브로우크사이어의 웰쉬군(郡)의 활력을 재 활성화시키려는 프로젝트 같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 발전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유럽농업지도보장기금>(EAGGF.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과 <리더 운동>(the LEADER initiative)도 건물, 문화 유적지, 동산 문화재와 대상물 등의 개축과 개발을 위해 재정적 보조를 제공한다. 유럽연합 신규 가입국들을 위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는 <사파드 프로그램>(the SAPARD programme)이 있다.

유럽연합은 관광촉진정책과 <큰 생활 III 프로그램>(the LIFE III programme)을 통해 문화유산을 진흥시키는 수많은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EU의 이런 지원 활동은 자연 유산과 문화유산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리함으로써 EU의 환경정책에 기여한다.

1997년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는 도시 개발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실시하여 <도시 환경에 대한 도시 포럼>(an Urban Forum on the Urban Environment)과 <도시 환경에 대한 전문가 그룹>(an Expert Group on the Urban Environment)을 각기 창설했다. 이 노력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촉진하는 협력을 위한 공동체 골격을 창설하

는 유럽평의회와 유럽의회의 2001년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의는 문화유적과 결부시켜 문화, 관광, 여가 활동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 기술공학을 통한 문화유산진흥

기술공학은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그 복원과 보존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제5차 RTD 프로그램 안에서 시행되었으며 <내일의 도시와 문화유산>(the City of Tomorrow and Cultural Heritage)라는 제목이 붙은 핵심 조처는 도시들에 산재하는 문화 자원의 복원, 보존 및 발전에 대한 연구들을 재정 지원한다.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문화유산의 증진과 관리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TEN-Telecom programme>은 좀더 사업적인 분야에 방향을 기울여 문화나 유산에의 접근과 같은 공통관심 분야에서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eContent programme>은 디지털 콘텐츠의 판매와 멀티미디어 정보시스템의 창안을 확장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 가운데 몇 개는 문화유산과 관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로는 인터넷 같은 범세계적 연결망 위에서 언어적 다양성을 진흥시키는 디지털 콘텐츠에의 접근가능성을 넓히는 것도 있다.

(라) 문화재 암거래와의 투쟁을 위한 협력 활동

가치를 지닌 다른 모든 재화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역시 단독으로 암약하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조직된 암거래 상들에 의한 절도의 표적이 된다. 국보(國寶)의 보호는 일차적으로 회원국들 자신의 책임이다.(유럽연합조약 제30조) 그러나 공동체 역시 회원국들 사이의 행정적 협조를 위한 틀을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회원국가들로의 수출물에

대한 감시활동은 언제든지 가능하며(1992년의 평의회 조령), 회원국 영토에서 불법으로 반출된 문화 대상물들의 반환도 확실하게 보장된다(1993년 평의회 지침).

2001년 6월 유럽의회는, 특히 확장 일로에 있는 문화재 암거래의 폭증을 그 전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각 국가 및 공동체의 정책들과 조치를 연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는 규제와 지침의 실행에 대한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공포하였다. 2002년의 평의회 결의안도 행정부, 경찰, 사법부를 포함하는 국가 및 공동체 연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쟁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유럽위원회는 자유와 정의의 영역을 창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공기관과 전문가들이 그들의 경험을 토론하고 예술작품의 암거래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조직범죄방지에 관한 유럽 포럼>(European forum on the prevention of organised crime)을 설치하였다.

다. 유럽유산네트워크³⁵

(1) <유럽유산네트워크> 창립의 역사

1949년 스트라스부르에서 창설된 이래 유럽평의회는 공동가치의 영역에서 민주 유럽을 통일시킬 수 있는 유대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점에서 문화는 선도적인 위상을 누려왔다. 특히 1960년대 이래 문화유산 부문은 그 주제로 체결된 수많은 협정, 권고안 그리고 지침안들이 입증하듯이 협동적인 노력의 측면에서 다대한 진보를 보여 왔다.

1996년 헬싱키에서 열렸던 문화유산 책임장관 제4차 유럽총회는 “유럽

³⁵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전적으로 <유럽문화유산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있는 자기 소개 사이트(www.european-heritage.net/sdx/herein/european_heritage_program/presentation.xsp)를 번역한 것이다.

에서의 건축유산정책에 관한 유럽평의회 초기 보고에 의거하여 관련 당국, 전공자, 연구자 및 훈련전문가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들의 유산 발전과 향시 접촉하도록 하기위해 유럽평의회가 영구적인 정보시스템, 즉 <유럽유산 감시네트워크>(European Heritage Watch Network)를 설립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01년 포르투로즈에서 열린 제5차 장관총회는 유럽평의회에 후원 아래 <유럽유산네트워크>(European Heritage Network)의 항구적 가동을 권고하였다.

(2) <유럽유산네트워크>의 현황

<유럽유산네트워크>는 유럽평의회에 범위 안에서 유산 보호의 책무를 지닌 정부 차원의 서비스들을 수집하는 항구적 정보시스템이다. <유럽유산네트워크>의 초점은 문화유산, 특히 그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은 제반 법률적 조치들의 맥락에서 그 의의를 인정받은 건축적 유산과 고고학적 유산들이다.

- <유럽평의회협정>(The European Cultural Convention, 1954)
- <유럽건축유산 보호 협정>(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of Europe, 1985)
- <건축유산 보호에 관한 유럽 협정>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 1992)
- <유럽풍광협정> (The European Landscape Convention, 2000)

보존 전문가, 유산 중개자, 연구활동가, 단체 회원, 청년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의 존립 목적은 각종 프로젝트와 동반자관계의 출발을 고무하고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이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자신들의 협력을 개선하는 방식을 기대하는 유산 가족과 다수의 전문가들 및 개인들을 위한 각종 운동과 이상적인 “만남의 터전”을 위해 제공되는 국제적 배출로이다.

유럽유산네트워크는 <헤레인 프로젝트>(HEREIN projects)를 통한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의 모범적인 협조 덕분에 창설되었다.

(3) 가맹회원단

(가) 국제기구

유럽평의회
유럽위원회 (DG 정보협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나) 회원국 행정부 및 위임 기구:

Andorra/Ministeri de Turisme i Cultura, Patrimoni Cultural
Armenia/Ministry for Foreign Affairs, Information Technology
Foundation
Belgium/Brussels-Capital Service des Monuments et Site de
Bruxelles-Capitale
Flemish Region/Ministerie van de Vlaamse Gemeenschap, A.RO.H.
M. Afdeling Monumenten en Landschappen
Walloon Region/Direction Generale de l'Amenagement du Territoire,
du Logement et du Patrimoine/Division du Patrimoine
Bulgaria/Ministry of Culture, National Institute for Monuments of
Culture /Bulgaria National Committee of ICOMOS
Croatia/Ministry of Culture, Institute for Culture
Cyprus/Ministry of Interior, Department of Town Planning and
Housing
Czech Republic/National Institute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Denmark/Ministry of Culture, National Cultural Heritage Agency
Estonia National Heritage Board

Finland/National Board of Antiquities, Department of Monuments and Site

France/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Direction de l'Architecture et du Patrimoine

Georgia/Ministry of Foreign Affairs,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Germany/Ministerium fur Stadtebau u. Wohnen, Kultur und Sport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German National Committee for Monument Protection

Greece/Minsitere de la Culture, Direction des Antiquites byzantines et postbyzantines

Hungary/Kulturalis Oroksegvedelmi Hivatal (National Office of Cultural Heritage)

Ireland/Department for Arts, Heritage, Gaeltacht and the Islands, Dúchas

Latvia/State Inspection for Heritage Protection

The former republic Yugoslav of Macedonia/Ministry of Culture/Museum of Macedonia

Lithuania/Academy of Cultural Heritage

Luxemburg/Service des Sites et Monuments Nationaux

Netherlands/Netherlands Department for Conservation

Norway/Rikskantikvaren, Directorate for Cultural Heritage

Poland/Ministerstwo Kultury, Department for the Protection of Historical Monuments

Portugal/Instituto Portugues do Patrimonio Arquitectonico

Romania/CIMEC - Institutul de Memorie Culturala

Slovakia/Pamiatkovy ustav

Slovenia/Ministry of Culture, National Institute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Spain/Ministerio de Educacion Cultura y Deporte, Subdireccion
General de Proteccion del Patrimonio Historico
Sweden/National Heritage Board
Switzerland/Office Federal de la Culture
United-Kingdom/English Heritage

관련동반기구

기업직능개발협회(Association pour le Developpement des Entreprises
et des Competences - ADEC)
과학정보문헌센터(Consejo Superior de Investigaciones Cientificas -
Centre for Scientific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국제산업유산보존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the Con-
servation of the Industrial Heritage (TICCIH)

(4) 제1차 헤레인 프로젝트 (HEREIN 1 1999-2001)

(가) 목표:

- 건축 유산과 고고학 유산에 관한 유럽평의회 의 문서 데이터뱅크
를 인터넷을 통한 신속하고도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킴
- 공공 기관, 전문가 및 기업의 소관 아래 문화유산에 관한 항구적
이고도 쌍방향적인 정보시스템을 작동시킴으로써 문화유산에 대
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

(나) **재원조달:** 유럽평의회와 유럽위원회로부터 재원의 50%를 후원받으
며, 공사간의 참여기관 및 개인들로부터 나머지를 조달함.

(다) **동반관계:**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및 영국에서

문화유산 관리 책임을 맡은 6개 정부 관청 및 공사분야의 13개 단체

(라) 결과:

- 유산 정책에 관한 15개국의 데이터베이스 탑재.
- 문화유산 영역에서의 인터넷 자원에 관한 포털사이트 구축(Website: www.european-heritage.net) ,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의 3개 국어 검색 가능.
- 헤레인 프로젝트는 유럽위원회로부터 유럽평의회,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문화성 및 유럽위원회 사이의 결실 풍부한 협조를 예증해주는 성공 스토리로 평가받았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헤레인 2’와 ‘헤레인2E’를 후속 프로젝트로 재정 지원하도록 결정하여 더 많은 나라들이 유럽유산네트워크의 일부가 되도록 고무하기로 했다.

(5) 제2차 헤레인 프로젝트 (HEREIN 2/2E, 2001-2003)

(가) 기대효과: 헤레인2와 헤레인2E 프로젝트들은 3개 방향, 즉

- 유럽 전역에 걸쳐 비판적인 활동가 대중을 구축하고,
- 전공 분야와 공동체를 가로지르는 시너지 효과를 자극하며,
- 기존의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고 증진시키는 쪽으로 헤레인 작업의 충격을 증가시키기를 기대 받았다.

(나) 목표:

- 현재의 기준과 최선의 가동상태를 유럽의 새 나라들 쪽으로 촉진 시킴으로써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대시킨다.(2002년 현재 27 개국)
- XML 기술의 소스 공개를 내실화한다.
- 행정부의 전문가들과 다른 활동가들(각종 네트워크, NGO, 지방 당국들, 전공자들 등) 사이의 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자 포

럼을 실행하고, IT 기술의 이점에 관한 정부 기관들의 각성을 증진시키며, (XML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수정되고 확장되는 공동 인터넷 포털을 수단으로 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사용자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전공 분야와 공동체 전반을 가로지르는 시너지 효과를 자극한다.

- 유산정책에 대한 검색기능을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까지 확대시키고, 그것을 그리스어, 리투아니아어, 슬로베니아어로 번역한다.
- 스페인 정부의 특별 지원 덕택으로 스페인어를 더함으로써 웹사이트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 유럽평의회 문화유산 조절위원회의 특별사업팀과의 긴밀한 협조 안에서 규정된 관리 조직을 시험 가동한다.
- 웹사이트에 관련된 각자의 권리들을 아주 정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모든 동반자들 사이에 지적 및 소유 권리에 관한 동의안을 확정한다.
- 하나는 자국어용, 다른 하나는 공적 용도로 쓰기 위해 웹사이트를 새로이 레이아웃하고 새로운 웹사이트 디자인을 개발한다.

(다) **재원조달:** IST 프로그램의 골격 안에서 100% 유럽위원회가 후원한다.

(라) **참가국들:**

- 헤레인2 (HEREIN 2): 벨기에(플란더스 지역), 프랑스,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 헤레인2E (HEREIN 2E): 불가리아, 키프러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로 확대

(6) 유럽유산네트워크의 사이트 맵

이런 노력의 결과 유럽유산네트워크의 웹사이트에는 회원국 정부의 문화 정책이 모두 탑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10월 현재 다음과 같이 5개 대분야에 걸친 142개 소스가 일목요연하게 검색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전산화되었다.

<표 II-3> 유럽유산네트워크 주제별 사이트맵

<p>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Architectural heritage + Archaeological heritage + Natural heritage + Movable heritage + Photographic heritage + Documentary heritage + Written heritage + Unlawful trafficking + Intangible heritage-ethnological heritage + Industrial, scientific and technical heritage + Industrial heritage + Maritime and waterways heritage + Military heritage + World heritage +</p> <p>Heritage agents + Europea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European organisations + Projects + Administrations + NGO + Voluntary organisations + Charities + Public interest foundations + Professional membership organisations + Education and training + University education + Vocational training + Schools and training centres + Skills + Networks and partnerships +</p>	<p>Access and interpretations + Cultural events + Exhibitions + European heritage days + Educational activities + Cultural tourism + Cultural facilities + Information campaigns + Publications +</p> <p>Town and country planning + Town planning + Environment + Sustainable development +</p> <p>Research and development + Information technologies + Digitisation + Free softwares + GIS + 3D modelling + Laboratories and research centres + Heritage economy + Exploitation of research + Scientific publications + Studies +</p>
---	--

출처: www.european-heritage.net/sdx/herein/heritage_portal/themes.xsp

라. 유럽 문화유산 공동 운영 사례: 유럽 문화시 (Kulturstatdt Europa)³⁶

- (1) **계기:** 1985년 6월 13일 당시 그리스 문화부장관이자 왕년의 톱클래스 영화배우였던 멜리나 메르쿠리는 유럽위원회에서 “유럽인들을 좀더 친밀하게”라는 취지를 내걸고 “유럽문화시(文化市) 프로그램”을 제안하였고, 당시 참석했던 각국 위원들은 그 제안을 적극 수용하였다.
- (2) **기획:** 이 프로그램은 매년 유럽의 각 도시를 “유럽문화시”로 선정하여 그 타이틀을 부여하고, 다른 도시나 국가들이 이 유럽문화시의 축제나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줌으로써 문화적 관심과 관광객을 범유럽적으로 몰아주는 성격의 기획이었다.
- 문화시로 선정된 각 도시들은 독자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문화시로서의 독특한 면모를 부각시킬 기회를 갖게 된다. 따라서 문화시로 선정된 도시는 자신의 문화적 개성을 부각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 동시에 범유럽적인 홍보에 힘입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도시를 방문할 기회를 인위적으로 대거 창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된다.
- (3) **결과:** 문화시로 선정된 곳은 경제적 이득과 문화적 자부심을 다같이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아왔다는 것이 중평이다. 이 도시들에서는 해당되는 연도에 성대한 이벤트가 열림으로써 유럽인들이 대거 참석하는 축제가 벌어진다. 이를 계기로 각 나라들은 서로의 문화를 비교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교류의 장을 창조해낸다. 유럽이 ‘하나의 집’이라는 것을 체감시키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창출되는 것이다.

³⁶ 이 정책의 집행 결과에 대한 자세한 소개서로는 이장훈, 『유럽의 문화도시들』, (서울: 자연사랑, 2001) 참조.

(4) 역대 유럽문화시

<표 II-4> 역대 '유럽문화시'

1985	아테네
1986	리스본
1987	암스테르담
1988	베를린
1989	파리
1990	글래스고우
1991	더블린
1992	마드리드
1993	안트워프
1994	리스본
1995	룩셈부르크
1996	코펜하겐
1997	테살로니키
1998	스톡홀름
1999	바이마르(동부 독일)
2000	아비뇽, 베르겐, 볼로냐, 브뤼셀, 크라코프, 헬싱키, 프라하, 레이카비크, 산티아고 드 콤포스텔라

III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분포 및 관리 현황

각국마다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 및 분류방식이 다르므로 먼저 UNESCO를 비롯하여 유럽연합, 영·미, 동북아국가들의 문화재에 대한 개념규정 및 분류방식을 개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의 기준에 따른 각국의 문화재 관리 정책을 통해 문화유산의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은 한국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앞으로 우선적으로 공동연구와 관리할 문화유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일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각국의 문화유산 개념 및 분류³⁷

가. UNESCO의 문화재 분류

유네스코는 1972년 제17차 총회에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는데, 이 협약에서는 문화재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정의하였다.

(1) 문화유산: 기념물(Monuments), 건축물군(groups of Building), 유적(sites)

- (가) 기념물: 건축물, 기념조각 및 회화작품, 고고자료, 금석문, 동굴주거, 복합유구 등으로서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현저히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
- (나) 건축물: 독립된 또는 서로 연관된 건물들로서 건축기술상이나 배치상태로 보아 균일한 것들로서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현저히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
- (다) 유적: 사람이 이룩한 것 또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빚어낸 것, 그리고 고고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역사상, 관광상 또는 민

³⁷ 장호수, 『문화재학 개론』 (서울: 백산자료원, 2002) 참조.

죽학이나 인류학의 견지에서 현저히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

(2) 자연유산:

- (가) 무기적(無機的)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들로부터 이룩된 자연의 기념물로써 관상상 또는 과학상 현저하고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나) 지질 또는 자연지리적 생성물 그리고 위협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와 자생지.
- (다) 과학상·보존상 및 자연의 미관상 현저하고 보편적 가치를 갖는 자연지역.

나. 유럽연합(EU)의 문화재 분류

유럽연합에서는 1985년에 제정한 ‘유럽건축유산보호협약’과 1992년에 개정된 ‘고고유산보호협약’에 나와 있는 문화재 분류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문화유산이란 다음과 같은 항구적 자산(부동산문화재)을 말한다.

- (1) 기념물은 건축물, 구조물 등 역사상, 고고학상, 예술상, 학술상, 사회적 또는 기술상 뚜렷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그 부속물과 기구를 포함한다.
- (2) 건축물군은 도시 또는 농촌의 건축물군 가운데 동질의 것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역사상, 고고학상, 예술상, 학술상, 사회적 또는 기술상 뚜렷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동일한 지형단위 안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3) 유적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것, 부분적으로 개조되었으나 지형상 뚜렷이 구분되는 동일성이 보이며 역사상, 고고학상, 예술상, 학술상, 사회적 또는 기술상 뚜렷한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고고유산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 (1) 보존하고 연구함으로써 인류역사와 함께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추적해볼 수 있는 것.
- (2) 발굴, 발견, 그밖의 방법을 통한 연구로 사람, 그리고 사람과 환경의 관계를 밝히는데 정보의 원천이 되는 것
- (3) 각 나라의 법적 영토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다.

고고유산에는 유구, 구조물, 건축물군, 도시, 동산문화재, 그밖에 여러 가지 기념물들이 있고 땅위에 있는 것과 수중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다. 동북아의 문화재 분류

(1) 한국³⁸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고 구분하고 있다.

-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등
-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기념물 - • 사지(寺址)·고분·패총·성지(城址)·궁지(宮址)·요지(窯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³⁸ ‘文化財保護法’(1982. 12. 3 전문개정법률 제3644호,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0호)

민속 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2) 일본³⁹

일본은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하고 있
다. 민속문화재를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독특하다.

유형문화재 - 건조물(building and structure), 회화, 조각, 공예, 전적,
고고역사자료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공예기술

민속문화재 - 무형민속문화재(의식주, 생업, 신앙, 풍속습관)

유형민속문화재(무형에 사용된 의복, 기구, 가옥)

기념물 - 사적, 명승지, 천연기념물

전통건조물군 - 숙박촌, 읍성, 농어촌

(3)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1991)’에서는 역사, 예술, 과학 가치가 있
는 것을 국가에서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산물 못지않게 사
회주의 혁명과 관련한 현대사 자료유산들을 중점보호하고 있다. ‘문물보
호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종별로 구분하고 있다.

- 고고문화유적지·고분·고건축·석굴사원과 석조물
- 혁명운동 건축물·유적지
- 예술품·공예미술품
- 혁명문헌자료·친필원고 등
- 역사문화 명승

³⁹ 장호수, 『문화재학 개론』, 참조.

- 풍경명승구 등

(4) 북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1944)’에 의해 문화 유적을 정의하고 문화유적은 역사유적과 역사유물로 크게 가르는 방법을 쓰고 있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없으며,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규정(1990) 그리고 명승지의 보호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1990)에 의해 보호하고 있다.

문화 유적: 역사유적 - 원시유적, 성, 봉수,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가마터

역사유물 -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 고서적, 인류화석, 유골

천연기념물: 자연물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있거나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및 풍치상 의의가 있는 것. 동식물, 화석, 광천, 동굴을 비롯한 자연물

명 승 지: 경치가 뛰어난 곳

국제협약 및 여러 나라들의 문화재 분류기준은 필요에 따라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문화재를 나누는 기준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 문화재는 전승방법에 따라 크게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뉜다. 유형문화재는 물질로 전해지는 것이며 무형문화재는 행위 또는 언어를 수단으로 전승되는 것이다.

유형문화재는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부동산문화재라고 하며, 필요에 따라 여러 곳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을 동산문화재라고 한다. 동산문화재에는 회화, 조각, 공예 등 예술작품들과 전적류들이 있다.

부동산문화재는 기념물, 건축물, 유적, 문화경관 등을 말한다. 기념물은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현저히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행태에 따라 건축 기념물, 조형물 등이 있고, 전통정원은 건축과 조경의 복합체로서 기념물로 분류할 수 있다. 건축물은 사람들이 활동하기 위한 공간으로 마련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은 터와 쓰임새, 재료에 따라 다양한 구성과 형태를 보인다. 건축물이 일정한 지역에 서로 닮은 형식의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을 건축물군이라고 한다. 서울 북촌의 한옥지구 같은 것들이다.

유적은 역사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이다.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곳으로 역사유적과 고고유적이 있다. 고고유적은 땅위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많아 고고학 발굴과정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들이다. 역사지구는 유적, 유물들이 집중되어있는 지역단위를 일컫는 말이다. 역사도시 안에서도 여러 곳에 역사지구 단위로 구분이 가능하다.

2. 동북아국가의 문화유산 분포

가. 중국

중국 동북지역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포함하여 한반도와는 고조선, 고구려 유적을 비롯하여 발해는 그 유적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1) 중국 동북 고조선지역 지석묘군⁴⁰

한반도 역사와 관련이 있는 선사시대의 유물 유적으로 지석묘(고인돌)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전북 고창지역의 ‘고인돌군’이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되었는데, 소위 ‘북방식’ 고인돌은 동북지역의 요령성과 길림성에 <표 III-1>에서 보여 주듯이 80여기가 분포되어 있다. 남방식 북방식의 구분이 적절한 것인지, 또 양자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

⁴⁰ 하문식, 『고조선 지역의 고인돌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1999) 참조.

있는지 등 양국학자간의공동연구가 필요한 유적이다. 이 유적 역시 한국의 고창 고인돌군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됨에 따라, 중국측에서도 등재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표 III-1> 중국 동북 고조선지역 지식묘군

번호	유적명	장소	國	비고
1	金縣 小關屯 고인돌 유적	금현 소관둔 산	遼寧省	탁자식 2기
2	普蘭店 石棚溝 고인돌유적	普蘭店市 검탕향 대가촌 석봉산	遼寧省	탁자식 4기
3	普蘭店 雙房 고인돌유적	普蘭店市 안파지 덕성촌 쌍방둔 서산	遼寧省	탁자식 6기 및 개석식 3기
4	普蘭店 碧流河 고인돌유적	普蘭店市 안파진 유둔의 서산과 東山, 그리고 쌍탑향의 교둔	遼寧省	개석식 11기
5	普蘭店 劉屯 고인돌유적	普蘭店市 안파진 유둔촌	遼寧省	탁자식 1기
6	普蘭店 邵屯 고인돌 유적	普蘭店市 안파진 소둔촌	遼寧省	개석식 6기
7	普蘭店 台前 고인돌 유적	普蘭店市 안파진 덕성촌	遼寧省	탁자식 2기
8	普蘭店 安平寨 고인돌 유적	普蘭店市 쌍탑진 흥기촌	遼寧省	탁자식 2기
9	普蘭店 王營 고인돌 유적	普蘭店市 쌍탑진 양둔촌	遼寧省	탁자식 3기
10	普蘭店 三台子 고인돌 유적	普蘭店市 쌍탑진 양둔촌	遼寧省	탁자식 1기
11	瓦房店 台子 고인돌 유적	瓦房店市 송수진 대자촌 하북둔	遼寧省	탁자식 1기
12	瓦房店 ?銅? 고인돌 유적	瓦房店市 이관향 화동광촌 구릉지대	遼寧省	탁자식 4기
13	瓦房店 榆樹房 고인돌 유적	瓦房店市 이관향 우수방	遼寧省	탁자식 2기
14	庄河 白店子 고인돌 유적	庄河市 오로향 소방신촌 석봉산	遼寧省	탁자식 1기
15	庄河 大荒地 고인돌 유적	庄河市 탐령지 대황지촌 고수석산	遼寧省	탁자식 1기
16	庄河 楊屯 고인돌 유적	庄河市 태평령향 모회촌 양둔	遼寧省	탁자식 3기

번호	유적명	장소	國	비고
17	庄河 粉房前 고인돌 유적	庄河市 울자방진 분방전둔	遼寧省	탁자식 2기
18	庄河 朱屯 고인돌 유적	庄河市 울자방진 울자방촌 주둔	遼寧省	탁자식 1기
19	庄河 大營山 고인돌 유적	庄河市 울자방진 온둔 대영산	遼寧省	탁자식 1기
20	盖州 石棚山 고인돌 유적	盖州市 이대자 농장 석봉촌 남쪽	遼寧省	탁자식 1기
21	盖州 ?家窩堡 고인돌 유적	盖州市 구채진 삼도하지촌 노우대산	遼寧省	탁자식 5기
22	盖州 河北 고인돌 유적	盖州市 양운향 하북촌 용조산 및 분구	遼寧省	탁자식 7기
23	盖州 仰山村 고인돌 유적	盖州市 귀주향 양산촌 북쪽	遼寧省	탁자식 1기
24	盖州 連云寨 고인돌 유적	盖州市 십자가향 연운채촌 소북산	遼寧省	탁자식 2기
25	盖州 二百壟地 고인돌 유적	盖州市 십자가향 패방촌 단산	遼寧省	탁자식 1기
26	盖州 長?崗 고인돌 유적	盖州市 십자가향 패방촌 장발강 유역	遼寧省	탁자식 3기
27	盖州 鄒屯 고인돌 유적	盖州市 십자가향 서남쪽	遼寧省	탁자식 11기
28	盖州 牌坊 고인돌 유적	盖州市 십자가향 패방촌 남단산, 용왕묘강, 모가구 서강의 東山두 등	遼寧省	개석식
29	大石橋 石棚? 고인돌 유적	大石橋市 관둔진 석봉옥촌	遼寧省	
30	海城 析木城 고인돌 유적	海城市 석목진 달도옥촌	遼寧省	탁자식 2기
31	海城 牌樓 고인돌 유적	海城市 패루진 북쪽의 동패루촌	遼寧省	탁자식 2기
32	岫岩 興隆 고인돌 유적	岫岩縣 흥룡향 설가보지촌 동쪽	遼寧省	탁자식 2기
33	岫岩 百家堡子 고인돌 유적	岫岩縣 흥룡향 백가보지촌 산	遼寧省	탁자식 11기 및 개석식 1기
34	岫岩 紅石 고인돌 유적	岫岩縣 용담향 흥석촌 하북둔 남쪽	遼寧省	탁자식 2기
35	岫岩 藥家爐 고인돌 유적	岫岩縣 난가노둔 뒤산	遼寧省	탁자식 1기

번호	유적명	장소	國	비고
17	庄河 粉房前 고인돌 유적	庄河市 울자방진 분방전둔	遼寧省	탁자식 2기
18	庄河 朱屯 고인돌 유적	庄河市 울자방진 울자방촌 주둔	遼寧省	탁자식 1기
19	庄河 大營山 고인돌 유적	庄河市 울자방진 온둔 대영산	遼寧省	탁자식 1기
20	盖州 石棚山 고인돌 유적	盖州市 이대자 농장 석봉촌 남쪽	遼寧省	탁자식 1기
21	盖州 ?家窩堡 고인돌 유적	盖州市 구채진 삼도하지촌 노우대산	遼寧省	탁자식 5기
22	盖州 河北 고인돌 유적	盖州市 양운향 하북촌 용조산 및 분구	遼寧省	탁자식 7기
23	盖州 仰山村 고인돌 유적	盖州市 귀주향 양산촌 북쪽	遼寧省	탁자식 1기
24	盖州 連云寨 고인돌 유적	盖州市 십자가향 연운채촌 소북산	遼寧省	탁자식 2기
25	盖州 二百壟地 고인돌 유적	盖州市 십자가향 패방촌 단산	遼寧省	탁자식 1기
26	盖州 長?崗 고인돌 유적	盖州市 십자가향 패방촌 장발강 유역	遼寧省	탁자식 3기
27	盖州 鄒屯 고인돌 유적	盖州市 십자가향 서남쪽	遼寧省	탁자식 11기
28	盖州 牌坊 고인돌 유적	盖州市 십자가향 패방촌 남단산, 용왕묘강, 모가구 서강의 東山두 등	遼寧省	개석식
29	大石橋 石棚? 고인돌 유적	大石橋市 관둔진 석봉옥촌	遼寧省	
30	海城 析木城 고인돌 유적	海城市 석목진 달도옥촌	遼寧省	탁자식 2기
31	海城 牌樓 고인돌 유적	海城市 패루진 북쪽의 동패루촌	遼寧省	탁자식 2기
32	岫岩 興隆 고인돌 유적	岫岩縣 흥룡향 설가보지촌 동쪽	遼寧省	탁자식 2기
33	岫岩 百家堡子 고인돌 유적	岫岩縣 흥룡향 백가보지촌 산	遼寧省	탁자식 11기 및 개석식 1기
34	岫岩 紅石 고인돌 유적	岫岩縣 용담향 흥석촌 하북둔 남쪽	遼寧省	탁자식 2기
35	岫岩 藥家爐 고인돌 유적	岫岩縣 난가노둔 뒤산	遼寧省	탁자식 1기

번호	유적명	장소	國	비고
36	岫岩 石棺地 고인돌 유적	岫岩縣 양하향 양자구 산취둔 석관 지	遼寧省	탁자식 1기
37	岫岩 山頭 고인돌 유적	岫岩縣 조양향 황지촌 산두둔 동쪽	遼寧省	탁자식 2기
38	岫岩 唐家堡子 고인돌 유적	岫岩縣 양하향 당가보자촌 당가보 자둔 북쪽	遼寧省	김돌 잔존
39	岫岩 吳西 고인돌 유적	岫岩縣 조양향 조양촌 오서둔	遼寧省	탁자식 1기
40	岫岩 高家堡子 고인돌 유적	岫岩縣 삼가자향 고가보자촌	遼寧省	탁자식 2기
41	岫岩 小黃旗 고인돌 유적	岫岩縣 홍기향 광산촌 소황기둔 포 대산	遼寧省	탁자식 1기
42	岫岩 太老墳 고인돌 유적	岫岩縣 홍룡향 백가보자촌 서남쪽	遼寧省	탁자식 1기
43	東溝 宋家墳房 고인돌 유적	東溝縣 신농향 신농촌 송가분방	遼寧省	탁자식 1기
44	淸原 ?頭溝 고인돌 유적	淸原縣 창석향 낭두구촌 증가구둔	遼寧省	탁자식 1기
45	淸原 大?溝 고인돌 유적	淸原縣 만전자진 대변구촌	遼寧省	탁자식 1기
46	新賓 仙人堂 고인돌 유적	新賓縣 상협하향 승리촌 북쪽	遼寧省	탁자식 1기
47	新賓 付家墳 고인돌 유적	新賓縣 상협하진 하서촌 남쪽	遼寧省	탁자식 1기
48	新賓 南嘉禾 고인돌 유적	新賓縣 상협화진 남가화촌 양가둔	遼寧省	탁자식 1기
49	新賓 趙家墳 고인돌 유적	新賓縣 상협하진 하서촌 서북쪽	遼寧省	김돌 잔존
50	新賓 紅山 고인돌 유적	新賓縣 신빈진 북쪽 홍산	遼寧省	탁자식 1기
51	新賓 南溝 고인돌 유적	新賓縣 상협하진 남구촌 하북둔	遼寧省	김돌 및 마구리돌 잔존
52	撫順 山龍 고인돌 유적	撫順縣 구명향 산용촌	遼寧省	탁자식 2기 및 개석식 3기
53	撫順 下馬古村 고인돌 유적	撫順縣 상마향 하마고촌 서쪽	遼寧省	탁자식 1기
54	撫順 大石頭溝 고인돌 유적	撫順縣 석문진 대석두구촌	遼寧省	탁자식 1기

번호	유적명	장소	國	비고
55	開原 皮屯 고인돌 유적	開原市 팔과수향 조피둔	遼寧省	탁자식 2기
56	開原 葦塘溝 고인돌 유적	開原市 신변향 영원촌 위당구둔	遼寧省	탁자식 1기
57	鳳城 東山 고인돌 유적	鳳城縣 草河經濟管理區 管家村	遼寧省	20기
58	鳳城 西山 고인돌 유적	鳳城縣 草河經濟管理區 管家村	遼寧省	5기
59	柳河 太平溝 고인돌 유적	유하현 태평구 산	吉林省	탁자식 16기 및 개석식 8기
60	柳河 三塊石 고인돌 유적	유하현 강가점현 삼괴석둔	吉林省	탁자식 3기 및 개석식 7기
61	柳河 大花斜 고인돌 유적	유하현 화평향 대화사둔 북쪽	吉林省	탁자식 3기 및 개석식 4기
62	柳河 野豬溝 고인돌 유적	유하현 난산향 아저구촌 서북쪽	吉林省	탁자식 2기 및 개석식 1기
63	柳河 通溝 고인돌 유적	유하현 유남향 통구촌	吉林省	탁자식 및 개석식
64	柳河 長安 고인돌 유적	유하현 안구진 장안촌 동쪽	吉林省	탁자식 1기 및 개석식 1기
65	柳河 大沙灘 고인돌 유적	유하현 안구진 대사탄촌 서쪽	吉林省	탁자식 2기 및 개석식 1기
66	柳河 集安屯 고인돌 유적	유하현 태평천향 집안둔 서남쪽	吉林省	
67	柳河 宋家油坊 고인돌 유적	유하현 입문향 송가유분 서쪽 산	吉林省	흙돌 잔존
68	梅河口 검수 고인돌 유적	매하구시 험수육사 북쪽	吉林省	탁자식 16기 및 개석식 6기
69	梅河口 龍頭堡 고인돌 유적	매하구시 수도향 용두보촌 북쪽	吉林省	탁자식 2기 및 개석식 5기
70	梅河口 白石溝 고인돌 유적	매하구시 사팔석향 남쪽	吉林省	탁자식 4기
71	梅河口 跳山溝 고인돌 유적	매하구시 길락향 도산구촌	吉林省	탁자식 1기 및 개석식 5기
72	東豐 瓦房頂子山 고인돌 유적	동풍현 대양진 와우산촌	吉林省	탁자식 8기 및 돌널무덤 7기
73	東豐 小四平 고인돌 유적	동풍현 소사평향 소록권구	吉林省	탁자식 3기 및 개석식 1기

번호	유적명	장소	國	비고
74	東豊 趙秋溝 고인돌 유적	동풍현 대양진 보산촌 조추구	吉林省	개석식 3기
75	東豊 보산촌 고인돌 유적	동풍현 대양진 보산촌 동산	吉林省	개석식 1기
76	東豊 龍頭山 고인돌 유적	동풍현 대양진 보산촌 용두산	吉林省	
77	東豊 大陽 고인돌 유적	동풍현 대양진	吉林省	개석식 2기
78	東豊 駝腰村 고인돌 유적	동풍현 황도하진 타요촌	吉林省	개석식
79	東豊 杜家溝 고인돌 유적	동풍현 황도하진 타요촌	吉林省	덧개돌 2기
80	東豊 三里 고인돌 유적	동풍현 대양진 삼리촌 서북쪽	吉林省	
81	吉林 蘭旗屯 고인돌 유적	길림시 난기둔 동산단산자	吉林省	덧개돌
82	통화 砬縫 고인돌 유적	통화시 금두향 입봉촌 서북쪽 나고하	吉林省	빚돌 잔존
83	통화 大廟 고인돌 유적	통화시 남쪽 대묘 구릉지대	吉林省	탁자식 2기
84	통화 英額布 고인돌 유적	통화시 신빈현	吉林省	빚돌 잔존
85	渾江 利民屯 고인돌 유적	혼강시 손가보진 이민둔	吉林省	덧개돌 잔존
86	撫松 무생둔 고인돌 유적	무송현 무생촌 동북쪽		빚돌 잔존

동북지방을 비롯하여 황하지역의 하북 하남성에 한반도 역사와 관련한 고분들과 관련 금석문 명문들이 <표 III-2>에서 알 수 있듯이 31기가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길림성 집안의 광개토왕비문은 비문의 해석을 둘러싼 제 문제는 한·중·일간의 역사왜곡과 직접관련이 있는 유물이다. 또한 황하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된 백제부흥운동의 주역들인 ‘부여웅’과 ‘흑치상지’의 묘지명은 백제인의 중국에서의 활약상을 보여 주는 귀중한 유물로 역

시 한·중학자간의 공동연구의 주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표 III-2> 中國內 고대 금석문

번호	자료명	소재지(발굴처)	관련인물	연도	
				발견 년도	건립
1	廣開土王陵碑	吉林省 集安縣 太王鄉 九華里 大碑街	미상	1880년	414년
2	牟頭婁墓誌	吉林省 集安縣 太王鄉 下解放村 (舊名 下羊魚頭)		1935년	長壽王代
3	長川 1號墳	吉林省 集安縣			
4	長川 2號墳	吉林省 集安縣			
5	「太寧四年」銘 瓦當 2점	吉林省 集安縣城			
6	「泰」字銘 瓦當 2점	吉林省 集安縣 梨樹園子南遺址 및 禹山墓區 M992호묘			
7	「丁巳」銘 瓦當 2점	吉林省 集安縣 禹山墓區 M3319호분			
8	「十谷民造」銘 瓦當 1점	吉林省 集安縣 梨樹園子南遺址			
9	「乙丑」銘 瓦當 1점	吉林省 集安縣 麻線中學西 50m지점			
10	「吉女子」銘 瓦當 1점	吉林省 集安縣 麻線中學西 50m지점			
11	「?作」銘 瓦當 1점	吉林省 集安縣 勝利村 消防隊 부근			
12	「照行」銘 瓦當 1점	吉林省 集安縣 勝利2隊 부근			
13	「月造記」銘 瓦當 1점	吉林省 集安縣城			
14	太王陵塼銘文	광개토왕릉비에서 서남쪽으로 200m지점			
15	千秋揭塼銘文	吉林省 集安縣城 서남쪽 3.5km, 麻線溝河 동쪽 기슭 200m			
16	魏 曠丘儉紀功碑	集安縣 小板?嶺 출토 (現 吳光國 所藏)		1906년	

번호	자료명	소재지(발굴처)	관련인물	연도	
				찬술	건립
18	泉男生 墓誌銘	中國 河南省 開封圖書館에 소장	泉男生	1921년	679년
19	高慈 墓誌銘	河南 洛陽의 北郊에서 출토	高慈(피장자)	1923년	700년
20	泉獻誠 墓誌銘		泉獻誠(피장자), 朝議大夫, 昌膳部員外郎, 護軍梁惟忠이 撰함		701년
21	泉男産 墓誌銘	북경대학 원고고학실	泉男産 (피장자)	1922년	702년
22	泉愷 墓誌銘		泉愷(피장자), 泉隱이 撰함		733년
23	高震 墓誌銘		高震 (피장자, 高藏王의 손자)		733년
24	扶餘隆 墓誌銘	河南圖書館 所藏	扶餘隆 (피장자) 義慈王의 子	1920년	682년
25	黑齒常之 墓誌銘	南京博物館 所藏	黑齒常之	1929년	699년
26	黑齒俊 墓誌銘	南京博物館 所藏	黑齒俊	1929년	706년
27	珣將軍功德記	중국 山西省 太原市 부근 天龍山 天龍寺	郭謙光이 글을 짓고 글씨를 씀		707년
28	王禎 墓誌銘	중국 河南省 洛陽출토	王禎 (피장자)		515년
29	王基 墓誌銘	중국 河南省 洛陽출토	王基 (피장자)		523년
30	元願平妻 王氏 墓誌銘	중국 河南省 洛陽출토			509년
31	安樂王 三子妻 韓氏 墓誌銘	중국 河南省 洛陽출토			513년

(2) 중국 동북지역 고구려 유적⁴¹

길림성 집안의 고구려 유적은 중국이 2004년 6월말 유네스코 중국 소주대회에서 중국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 것으로 한국 중국 일본 북한간의 공동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표 III-3>에서의 각저총, 무용총 등 수많은 고분들이 있으나, 실증적 연구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미공개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III-3> 중국 동북지역 고구려 유적

번호	구분	명칭	장소	국가	시대
1	古墳	角抵塚	集安縣 禹山 남쪽 기슭	中國	高句麗
2	古墳	舞蹈塚	集安縣 禹山 남쪽 기슭	中國	高句麗
3	古墳	散蓮花塚	集安縣 禹山 남쪽 기슭	中國	高句麗
4	古墳	三室塚	集安縣 禹山 남쪽 기슭	中國	高句麗
5	古墳	通溝 4神塚	集安縣 禹山 남쪽 기슭	中國	高句麗
6	古墳	還文塚	集安縣 下羊魚頭	中國	高句麗
7	古墳	牟頭樓塚	集安縣 下羊魚頭	中國	高句麗
8	古墳	龜甲塚	集安縣 山城子	中國	高句麗
9	古墳	美人塚	集安縣 山城子	中國	高句麗
10	古墳	通溝 4號墳	集安縣 大王村	中國	高句麗
11	古墳	通溝 5號墳	集安縣 大王村	中國	高句麗
12	古墳	通溝 12號墳	集安縣 大王村	中國	高句麗
13	古墳	通溝 17號墳	集安縣 大王村	中國	高句麗
14	古墳	通溝 18號墳	集安縣 大王村	中國	高句麗
15	古墳	通溝 20號墳	集安縣 大王村	中國	高句麗
16	古墳	通溝 41號墳	集安縣 禹山	中國	高句麗
16	古墳	通溝 41號墳	集安縣 禹山	中國	高句麗
17	古墳	麻線 1號墳	集安縣 麻線溝	中國	高句麗
18	古墳	長川 1號墳	集安縣 長川	中國	高句麗
19	古墳	長川 2號墳	集安縣 長川	中國	高句麗
20	古墳	山城下 332號墳	集安縣 山城下	中國	高句麗

⁴¹ 민족문화사 편집부, 『고구려 고고학』 (민족문화사, 1993).

번호	구분	명칭	장소	국가	시대
21	古墳	山城下 983號墳	集安縣 山城下	中國	高句麗
22	古墳	萬寶汀 1368號墳	集安縣 萬寶汀	中國	高句麗
23	古墳	禹山下 제41號墳	集安縣 禹山下	中國	高句麗

이 외에도 한국인 일본인들이 고대 중세에 중국에 남겨 놓은 발자취와 유물 유적이 중국전역에 산재해 있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현안에 떠오른 것만 정리 하였다. (부록 I. 참조)

나. 일본

고대국가의 중심이었던 나라지방을 중심으로 백제 고구려 신라 유적 등이 있다. 구주, 대마도에는 조선시대까지의 유적이 상당수 있으나 한국과의 연관성을 배제시키거나, 중국 또는 일본의 것으로 왜곡시켜 놓고 있다.⁴²

이 장에서는 한반도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유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1) 九州 지역

대륙에 가까운 규슈 북부 지방은 일찍이 대륙문물에 접하기 쉬웠기 때문에, 야마토지방[大和地方: 현재의 奈良縣]과 함께 일본 고대문화인 야요이식[彌生式] 문화의 2대 중심지의 하나가 되었고, 그 뒤 대륙과의 사이에 정식거래가 이루어지자 대외교통의 요충이 되어왔다. 13세기 후반에는 2차에 걸쳐 원(元)의 침입을 받았으며, 에도[江戸]시대에는 조총(鳥銃)·그리스도교 등 유럽 문물이 이곳을 거쳐 전래되어 일본의 역사에 영향을 끼쳤다.

⁴² 일본지역 문화 유산분포 현황은 박중명, 『歩いて知る朝鮮と日本の歴史』(滋賀, 奈良, 京都, 九州 편, 明石書店)을 참조하여 번역 정리하였다.

<그림 III-1> 일본 속 한국문화 유산 분포



(가) 朝鮮式山城: 외적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한 성. 帶隈山神籠石(佐賀縣), 雷山, 鹿毛馬把木 高良山 女山 御所ヶ谷 おつぼ山등이 있다.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基肄城, 大野城. 大野城은 일본 최고 조선식산성으로, 전체 7.9Km에 이른다.

A. 鞠智城跡: 일본의 옹본현(熊本縣) 국지성(鞠智城)은 백제인들이 쌓은 성(城)으로서 내부에는 8각 건물지가 남쪽과 북쪽에 각각 2개가 세워져 있으며 건물의 면적은 같은 것으로 다만 초석의 배열 구조만 다르게 되어있다. 현재 남쪽의 8각 건물지는 그

림처럼 복원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는 북(鼓)을 치는 누각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지성은 백제인들이 조성한 것으로 기록에는 7세기 말로 되어있으나 그 이전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는 성이다. 다만 7세기 말의 왕궁이었던 난파궁에서도 2개의 8각 건물기 세트틀 이루고 세워진 것과 같은 현상이 국지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 (나) 志登支石墓群: 糸島半島(熊本縣)의 대량 중간에 위치한 지등에 있는 지등지석묘군은, 국가지정사적이다. 거석은 현무암과 화강암으로 되어있다. 조선반도남부에 많은 기반현지석묘로. 여기에 최대약 5톤의 상부석, 옹관, 부장품, 흑요석의 석죽, 마제석죽 등이 출토되었다.
- (다) 裝飾古墳: 6세기 전후, 주로 九州・東國에 분포한다. 묘실에 채색과 선각으로 변화를 묘사하고 있고, 석관 등에 浮彫 장식되어 있다. 日本繪畫史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 장식고분의 대표로 할 수 있는 珍敷塚古墳, 日の岡古墳, 月の岡古墳, 王塚古墳, 五郎山古墳 등이 現存한다. 熊本縣에는 千金甲 1号墳, 釜尾古墳, 廣浦古墳, 大分縣 國見町에는 鬼塚壁畫古墳 등이 있다.
- (라) オソドル跡: 福岡縣津屋崎町(小田遺跡, 下の原遺跡), 岡垣町(墓の尾遺跡群), 夜須町등에서 古代朝鮮의 暖房장치, オソドル(溫突)遺蹟이 출토되었다. 조선반도와 달라서, 온도가 높은 일본에서는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
- (마) 鴻臚館跡: 내량 평안시대에 신라사신, 당사신 등 외국 사절을 접대, 숙박했던 영빈관.
- (바) 白岳: 對馬에서는 白岳, 白巖, 白山등 「白」에 관한 山이 8개가 있다.

對馬의 白岳信仰은 朝鮮의 白岳信仰에서 들어왔다는 說이 있다.

(사) 觀世音寺の鐘: 福岡縣太宰府市の 동쪽에 있는 觀世音寺에 白鳳時代 제작된 鐘이 있다. 이 鐘에는 「上三毛」三文字가 세겨져 있다.

(아) 今津元冠防壘: 西는 今津에서 東은 香椎까지 약 20km, 博多灣을 주위에 축조된 石壘. 九州各地의 地頭·御家人 등이 동원되었다. 底面幅 3m, 上面幅 2m, 높이 3m. 1931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今津에 松林 안에 200m가 현존한다.

(자) 唐人町: 강제연행된 朝鮮인을 모아서 거주시킨 마을 이름. 朝鮮인을 唐人, 高麗人이라고 하였다.

(차) 李參平: 有田燒의 始祖. 陶工. 有田町の 陶山神寺에서 제사를 지낸다. 17세기 초까지 백자를 만드는 기술은 중국과 한국만 갖고 있었다. 조선 백자에 군침을 흘리고 있던 일본은 이를 직접 만들기 위하여 임진왜란 때 전쟁에 참가했던 영주들이 경쟁적으로 도공들을 잡아갔다. 그러나 백자는 당시 조선에서는 흔하게 사용했던 투박하고 소박한 도자기였다.

일본으로 잡혀간 조선 도공 이삼평은 아리타(有田)에서 백자의 원료가 되는 흙을 발견하였다. 이를 사용해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자기를 빚었기에 그는 지금도 도조(陶祖)로 추앙받고 있다. 일본에 잡혀간 조선 도공들은 영주들의 극진한 지원 아래 마음껏 예술성을 살릴 수 있었다.

기술을 천시하던 당시 조선에서 천민 대접을 받으며 자기가 만든 작품에 이름도 새기지 못하였던 조선 도공들은 자신 명의로 된 도자기를 빚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도자기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을 시켰다. 조선 도공들은 큐우슈우 지역을 중심으로 정착하면서 자신의 혼

을 담은 백자, 청자를 만들면서 일본의 도자기 수준을 높였다. 지금도 아리타에서는 산 꼭데기에 ‘도조 이삼평 기념비’를 세우고 또한 신사(神社)까지 만들어 이삼평을 추앙하고 있다.

- (카) 朝鮮人陶工供養塔「高麗碑」: 碑文안에 「高麗町에 歸化, 居住한 陶磁器製作에 從事하...」 「(巨關은)藩의 監視下에 있고, 望郷에 눈물을 흘리다」라고 기록되었다. 1994년 5월에 除幕式이 行했졌다.

(2) 滋賀縣 지역

면적은 4, 017km², 인구는 약 128만(1997)이다. 현청 소재지는 오쓰시(大津市)이다. 7시(市) 42정(町) 1촌(村)으로 구성되며, 현의 주위는 동부의 이부키(伊吹) ·스즈카(鈴鹿), 서부의 히라[比良] ·히에이(比叡) 등 단층산지로 둘러싸이고, 그 중앙에 비와호(琵琶湖)를 안은 오미(近江) 분지가 있다.

- (가) 園城寺(三井寺), 大津市 園城寺町 246

원성사는 南院, 中院 北院을 중심으로 해서 伽藍이 배치되어 있다. 원성사는 686년, 오오도모노요다王이 그의 氏寺로 창건하였다. 859년 입당구법을 마친 智証大師 円珍(814~891)이 長吏가 되어, 866년 天台別院으로 해서 再興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 A. 朝鮮鐘: 원성사의 고려시대 銅鐘(중요문화재, 琵琶湖文化館에 寄託)
- B. 新羅善神堂: 시가현에 園城寺(三井寺)가 있는데 이곳에는 당나라로 유학 간 圓珍(圓珍) 스님이 귀국하는 배 안에서 만난 신라 명신의 좌상을 모신 신라선신당(新羅善神堂)이 있다. 신라명신 좌상과 신라선신당은 모두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 있다.

- (나) 唐崎神社: 滋賀縣 大津市에 있는 神社

琵琶湖西岸에 위치하고、近江八景「唐崎の夜雨」로 알려져 있다. 여기「唐崎」의「唐」은「韓」을 뜻하는 것으로 고대 조선남부의 국명으로, 고대 조선남부에는 백제, 신라, 가라제국이 있다. 그 영역은 현재 경상도를 관통하여 흐르는 낙동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여러 소국 연합체로 구성, 일본과의 교류도 깊어, 그 지역에서 생산된 철은 대량으로 일본에 수출 되어, 武器, 武具, 農具, 工具등에 가공되었다. 서일본지명에「カラ」「カヤ」의 지명이 다수 남아 있다.

(다) 穴太廢寺: 이 廢寺는 비조·백봉시대 사원으로, 두 시기의 가람이 발굴되었다. 상·하 이층으로 나뉘어져, 상층 사원은 하층 사원을 전면적으로 建替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창건시의 사원가람은(하층)은, 동쪽에 탑이, 서쪽에 금당이, 금당기단은 동서 12.3m, 남북 14.3m이다. 탑은 동서변으로 5.2m이상, 남북변 9.4m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재건사원(상층)은, 동쪽에 탑, 서쪽으로 금당, 북으로 강당을 배치 법기사식 가람배치를 가지고 있다.

(라) 崇福寺跡: 1629년에 나가사키에 살던 중국인 승려 초넨(超然)이 세운 사찰. 대웅보전(大雄寶殿)이나 옛 당나라 사람들의 집터 등 건물 가운데 6동이 국보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마) 南滋賀町廢寺跡: 이 廢寺는, 1928년, 1938~1940년에 발굴조사되었다. 그 결과 이 사원 유적에서, 동탑, 서탑, 금당, 강당의 遺構가 확인되었고, 白鳳期에 창건된 藥師寺식 가람배치를 가진 사원으로 평안시대 말경까지 존속된 것으로 상정되며, 1957년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寺院의 규모는 東塔基壇이 12.1m, 西金堂(小金堂)이 東西 約 13.3m, 南北 約12.1m, 金堂基壇은 東西 約22.7m, 南北 約18.2m이다. 이 寺院의 주목되는 점은 金堂의 瓦積基壇이 二重으로 되었다

는 점이다. 이 二重基壇은 百濟渡來人들에 의해 구축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바) 滋賀郡居住 百濟系渡來氏族과 遺跡

A. 百穴古墳群(大津市 滋賀里町甲): 고분내부에는 「百穴古墳群」라고 쓰여진 大津市 教育委員會의 説明板이 있고, 내부도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분견학에는 적합한 장소이다.

횡혈식고분은 고분시대중기 5세기 초기, 전국적으로 수십에서 수백규모로 밀집한 소고분군이 조영되었다. 이 백혈고분군도 그 하나이다. 횡혈식고분은 조선반도에서 북구주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한다.

경도교육대학교고고학연구회 조사에 의하면, 곡구의 북측미근남서면으로 동서약 250m, 남북 180m의 범위로 고분이 64기가 확인된다.

B. オンドル遺構: 혈태유적에서 1km 남서에 온돌장유구가 양호한 유존상태로 발견되었다. 현재 이 온돌 유주는 대진시 역사박물관 앞으로 이축 전시되어있다. 온돌은 현재도 조선반도에서 사용되는 난방시설이다.

C. 渡來人 住居跡・穴太遺跡 (大津市 穴太1丁目・唐崎 4丁目): 혈태유적은 혈태폐사 북쪽에서 동쪽 일대에 입지한 집락유적으로, 1976년 발굴조사에 의해 조몬시대에서 7세기에 걸쳐 사층 이상의 유구면의 존재가 밝혀졌다. 이 지역에서 발굴된 건축물 조사결과 백제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 日吉大社・日吉古墳群 (滋賀縣 大津市 坂本 5-1)

히에이 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한 신사로 엔라쿠지(延曆寺)와 더불어 발전한 신사. 엔라쿠지를 세운 사이초(最澄)는 히에이산에 천태종을 열었는데, 이 천태종이 예로부터의 산악신앙과 결합하고 또 신불습

합사상에 밀착하여 히에신사는 엔라쿠지와 더불어조정과 백성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이 신사 주변일대에는 다수의 고분군이 있다. 우미산 동쪽 기슭에 있는 「日吉古墳群」은, 현재 68기의 고분이 확인된다. 발굴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직경 5~18m의 小規模圓墳으로 구성되어있고, 내부구조는 横穴式石室이다. 석실은 비교적 큰 石材를 이용하였으며, (ドム)式技法으로 쌓아올려져 있다. 이 기법은 朝鮮에서 전해진 기술로, 자하현에 다수 거주한 渡來人系氏族의 古墳으로 생각된다.

(아) 滋賀縣의 朝鮮半島 渡來人과 관련된 神社들

- A. 穴村町 安羅神社 (滋賀縣 草津市 穴村町),
- B. 野村町 安羅神社 (滋賀縣 草津市 野村町)
- C. 小安羅神社 (滋賀縣 栗東市 十里)
- D. 大市神社 (滋賀縣 草津市 南山田)
- E. 小市神社 (大宮若宮神社境内社)
- F. 手原廢寺 (滋賀縣 栗東市 手原, 7세기 후반 건립)
- G. 高野神社 (滋賀縣 栗太郡 栗東市 高野)
- H. 苗村神社 (滋賀縣 龍王町 綾戶)
- I. 鏡神社 (滋賀縣 蒲生郡 龍王町 大字鏡)
- J. 田村神社 (滋賀縣 甲賀群 土山町 北土山)
- K. 大瀧神社 (滋賀縣 多賀町 富之尾)
- L. 大隴神社 (滋賀縣 愛知川町 長野)
- M. 阿自岐神社 (滋賀縣 伏上郡 豊郷町 安食西)
- N. 日撫神社 (滋賀縣 坂田郡 近江町 顔戶)
- O. 日置神社 (滋賀縣 高島郡 今津町 酒波)
- P. 白髮神社 (滋賀縣 栗太郡 栗東市 高野)
- Q. 新羅崎神社跡 (滋賀縣 余吳町 川並)

(자) 新開古墳(栗東市 大字安養寺): 신개고분은 안량사산 북서구릉 미근 상에 세워진 6기의 고분 중 일부, 1호분과 2호분, 2기 원분으로 되어 있다.

부장품으로는 거울, 옥류, 절제무기, 마구, 장신구등이 출토되었다. 오래전부터 철을 생산한 朝鮮南部諸國 伽倻諸國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차) 新羅神社

‘신라’는 일본에서 ‘시라기’로 읽혀진다. 따라서 신라 선신당처럼 그대로 ‘신라’로 읽혀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시라기 신사는 이 곳 신라 선신당 말고도 각지에 많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효고 현(兵庫縣) 히메지 시(姫路市), 기후 현(岐阜縣) 타지미 시(多治見市), 후쿠이 현(福井縣) 이마조 정(今庄町), 시즈오카 현(靜岡縣) 하마마쓰 시(浜松市), 가가와 현(香川縣) 켄쓰지 시(善通寺市), 미야기 현(宮城縣) 시바타 군(柴田郡), 아오모리 현(靑森縣) 하치노헤 시(八戸市) 등에 시라기 신사가 있고 시마네 현(島根縣) 오타 시(大田市)에 는 가라가미 시라기 신사(韓神新羅神社)가 있다고 한다. 또 ‘시라기’가 변형된 시라히게(白鬚) 신사나 시라야마(白山) 신사 등도 각지에 퍼져 있다.

(3) 奈良縣 지역

710년 헤이조쿄(平城京)라는 도읍이 조성되어 74년 동안 국도(國都)로 번영을 누렸던 고도(古都)로,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크게 융성하였다. 4세기와 5세기의 거대한 고분군이 남아 있다. 경도(京都)로 천도한 뒤, 국도로서의 기능을 잃었으나, 가스가신사(春日神社)·고후쿠사(興福寺)·도다이사(東大寺) 등이 남아 문전도시(門前都市)로 번영하였다.

12세기 말 병란(兵亂)으로 시가지가 소실되었다가, 13세기에 여러 사찰들이 재건되었다. 명치유신(明治維新) 이후 현청소재지가 되었고, 오늘

날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변모하였으며, 서부는 오사카(大阪) 도시권 안의 주택 위성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나라공원에서는 시슴을 놓아 기르며 시의 관광명소가 거의 공원 안에 산재해 있다.

서반부에는 도다이사·고후쿠사·가스가신사·쇼소인(正倉院) 등을 비롯한 호화로운 건축·조각 등 문화유산이 많고, 동반부에는 가스가산 등의 구릉지에는 원시림이 펼쳐져 있다. 또 서쪽 교외의 니시노쿄(西ノ京)에는 세이다이사(西大寺)·야쿠시사(藥師寺)·도쇼다이사(唐招提寺) 등이 있다. 예로부터 전승되고 있는 고전 행사가 많고, 칠기·떡·붓 등의 전통 공예품의 생산도 활발하다. 한국의 경상북도 경주시와 자매도시결연을 맺고 있다.

(가) 奈良博物館⁴³

불교미술의 소장에 있어서 정평이 나 있는 나라국립박물관은 고후쿠지의 동쪽에 있는데, 근대적 건축인 신관과 메이지 시대의 건물인 본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관내에 소장된 다종 다양한 불교미술은 계통적으로 구분, 해설이 되어 있어 일본불교 이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가을에는 쇼소인(正倉院) 소장품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쇼소인전이 열리기도 한다. 본관은 1894년에 건설된 양관으로 건물 자체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⁴³ 나라국립박물관, 데이터베이스 참조. www.narahaku.go.jp/index_e.html.

<표 III-4> 奈良國立博物館 所藏 目錄

번호	分野	名称	時代・年代	所藏者・寄贈者	備考
1	考古	軒丸瓦(公州出土)	三國時代	個人	神奈川縣
2	考古	軒丸瓦(新光寺出土)	三國時代	個人	神奈川縣
3	考古	軒丸瓦 (山城20号出土品)	三國時代	個人	神奈川縣
4	考古	軒丸瓦	三國時代 4~5世紀	個人	奈良縣
5	考古	軒丸瓦	三國時代 5世紀	個人	奈良縣
6	考古	軒丸瓦	三國時代 5世紀	個人	奈良縣
7	考古	軒丸瓦 (山城15号出土品)	三國時代 6世紀	個人	神奈川縣
8	考古	軒丸瓦	三國時代 7~8世紀	個人	京都府
9	考古	軒丸瓦	三國時代 7~9世紀	個人	京都府
10	考古	軒丸瓦	三國時代 7世紀	個人	奈良縣
11	考古	軒丸瓦	統一新羅時代 7世紀	個人	奈良縣
12	考古	軒丸瓦	統一新羅時代 8世紀	個人	京都府
13	考古	軒丸瓦	統一新羅時代 8世紀	個人	京都府
14	考古	軒丸瓦	統一新羅時代 8世紀	個人	京都府
15	考古	軒平瓦	統一新羅時代 8世紀	個人	京都府
16	考古	軒丸瓦 (清岩里廢寺出土)	三國時代 5世紀	奈良縣立博物館	
17	考古	軒丸瓦 (清岩里廢寺出土)	三國時代 5世紀	奈良縣立博物館	
18	考古	軒丸瓦 (朝鮮出土品)	三國時代 5世紀	奈良縣立博物館	

번호	分野	名称	時代・年代	所藏者・寄贈者	備考
19	考古	軒丸瓦 (韓國出土品)	三國時代 7世紀	奈良縣立博物館	
20	考古	軒丸瓦 (月城出土品)	統一新羅時代 7世紀	奈良縣立博物館	
21	考古	軒丸瓦 (四天王寺跡出土品)	統一新羅時代 7世紀	奈良縣立博物館	
22	考古	軒丸瓦 (伝四天王寺跡出土品)	統一新羅時代 7世紀	奈良縣立博物館	
23	考古	軒丸瓦 (伝皇龍寺跡出土品)	統一新羅時代 7世紀	奈良縣立博物館	
24	考古	軒丸瓦 (伝雁鴨池出土品)	統一新羅時代 8世紀	奈良縣立博物館	
25	考古	セン (慶州付近出土品)	統一新羅時代 8世紀	奈良縣立博物館	
26	考古	軒丸瓦 (五陵付近出土品)	統一新羅時代 9世紀	奈良縣立博物館	
1	工芸	塔鈴(宝塔形)(仏像鈴)	高麗時代	個人	福岡縣
2	工芸	斧	高麗時代	個人	神奈川縣
3	工芸	舍利容器(宮殿形)	高麗時代 11~12世紀	個人	奈良縣
4	工芸	舍利容器(箱形)	高麗時代 11世紀	個人	奈良縣
5	工芸	梵鐘	高麗時代 13世紀	個人	岩手縣
6	工芸	香爐	高麗時代 13世紀	個人	東京都
7	工芸	経箱(菊唐草文)	高麗時代 13世紀	個人	京都府
8	工芸	箱	高麗時代 14~15世紀	個人	京都府
9	工芸	梵鐘	統一新羅時代 9世紀	光明寺	島根縣
10	工芸	梵鐘	高麗時代	金剛頂寺	高知縣
11	工芸	水瓶(仙盞形)	統一新羅時代 9~10世紀	奈良縣立博物館	

번호	分野	名称	時代・年代	所藏者・寄贈者	備考
12	工芸	水瓶(王子形)	統一新羅時代 8世紀	奈良縣立博物館	長崎縣
13	工芸	水瓶(仙蓋形)	高麗時代 13世紀	奈良縣立博物館	
14	工芸	金山寺香爐	高麗時代 14~15世紀	奈良縣立博物館	
15	工芸	金山寺香爐	朝鮮 時代 15世紀	奈良縣立博物館	
16	工芸	水瓶(仙蓋形)	高麗時代 12世紀	唐招提寺	奈良縣
17	工芸	梵鐘	高麗時代 14世紀	大願寺	廣島縣
18	工芸	鉢(八重)	統一新羅時代 8世紀	東京國立博物館	
19	工芸	鉢(八重のうち)	統一新羅時代 8世紀	東京國立博物館	
20	工芸	鉢(八重のうち)	統一新羅時代 8世紀	東京國立博物館	
21	工芸	鉢(八重のうち)	統一新羅時代 8世紀	東京國立博物館	
22	工芸	鉢(八重のうち)	統一新羅時代 8世紀	東京國立博物館	
23	工芸	鉢(八重のうち)	統一新羅時代 8世紀	東京國立博物館	
24	工芸	鉢(八重のうち)	統一新羅時代 8世紀	東京國立博物館	
25	工芸	鉢(八重のうち)	統一新羅時代 8世紀	東京國立博物館	
26	工芸	鉢(八重のうち)	統一新羅時代 8世紀	東京國立博物館	
27	工芸	鉢(八重のうち)	統一新羅時代 8世紀	東京國立博物館	
28	工芸	鉢(八重のうち)	統一新羅時代 8世紀	東京國立博物館	
29	工芸	鉢(八重のうち)	統一新羅時代 8世紀	東京國立博物館	
30	工芸	五鈷鈴(佛像鈴)	高麗時代 14世紀	東京國立博物館	
31	工芸	梵鐘	高麗時代 13世紀	曼茶羅寺	愛知縣

번호	分野	名称	時代・年代	所藏者・寄贈者	備考
32	工芸	梵鐘	高麗時代 10世紀	不動院	廣島縣
33	工芸	梵鐘	三國時代 9世紀	常宮神社	
34	工芸	梵鐘	高麗時代 11世紀	聖福寺	福岡縣
35	工芸	梵鐘	高麗時代 11世紀	承天寺	福岡縣
36	工芸	五鈷鈴(仏像鈴)	高麗時代	神護寺	京都府
37	工芸	梵鐘	高麗時代 11世紀	円清寺(朝倉郡)	福岡縣
38	工芸	梵鐘	統一新羅時代 10世紀	宇佐神宮	大分縣
39	工芸	梵鐘	統一新羅時代 8世紀	雲樹寺	島根縣
40	工芸	金山寺香爐	高麗時代 13世紀	長谷寺	奈良縣
41	工芸	梵鐘	高麗時代 13世紀	長安寺	新潟縣
42	工芸	五鈷鈴(仏像鈴)	高麗時代	正曆寺	奈良縣
43	工芸	梵鐘	高麗時代 10世紀	照蓮寺	廣島縣
44	工芸	梵鐘	統一新羅時代 10世紀	住吉神社	山口縣
45	工芸	梵鐘	高麗時代 13世紀	志賀海神社	福岡縣
46	工芸	梵鐘	高麗時代 11世紀	天倫寺	島根縣
47	工芸	梵鐘	高麗時代	出石寺	愛媛縣
48	工芸	梵鐘	高麗時代 11世紀	賀茂神社	山口縣
49	工芸	五鈷鈴(仏像鈴)	高麗時代	鶴岡八幡宮	神奈川縣
50	工芸	合子	高麗時代 13~14世紀	当麻寺	奈良縣
51	工芸	梵鐘	高麗時代 11世紀	惠日寺	佐賀縣

번호	分野	名称	時代・年代	所藏者・寄贈者	備考
52	工芸	梵鐘	高麗時代 10世紀	觀音院	岡山縣
1	書跡	華嚴經隨疏演義鈔 (高麗版)(卷第八)	高麗時代 11世紀	東大寺	奈良縣
2	書跡	法華經 (卷第一~卷第七)	高麗時代 14世紀	羽賀寺	福井縣
3	書跡	法華經(卷第一)	高麗時代 14世紀	羽賀寺	福井縣
4	書跡	法華經(卷第二)	高麗時代 14世紀	羽賀寺	福井縣
5	書跡	法華經(卷第三)	高麗時代 14世紀	羽賀寺	福井縣
6	書跡	法華經(卷第四)	高麗時代 14世紀	羽賀寺	福井縣
7	書跡	法華經(卷第五)	高麗時代 14世紀	羽賀寺	福井縣
8	書跡	法華經(卷第六)	高麗時代 14世紀	羽賀寺	福井縣
9	書跡	法華經(卷第七)	高麗時代 14世紀	羽賀寺	福井縣
10	書跡	法華經 (卷第一・卷第三)	高麗時代 14世紀	羽賀寺	福井縣
11	書跡	法華經 (卷第一~卷第三)	高麗時代 14世紀	羽賀寺	福井縣
12	書跡	法華經 (卷第四~卷第七)	高麗時代 14世紀	羽賀寺	福井縣
13	書跡	山水図 (尊海渡海日記裏面)	朝鮮 時代 16世紀	大願寺	廣島縣
1	彫刻	誕生仏像	三國時代 7世紀	個人	神奈川縣
2	彫刻	如來像	統一新羅時代 8世紀	個人	京都府
3	彫刻	如來像	統一新羅時代 8世紀	個人	京都府
4	彫刻	如來像	統一新羅時代 8世紀	個人	京都府
5	彫刻	如來像	統一新羅時代 9世紀	個人	京都府

번호	分野	名称	時代・年代	所藏者・寄贈者	備考
6	彫刻	地藏菩薩像	高麗時代 13世紀	個人	長崎縣
7	彫刻	如來像	統一新羅時代 8世紀	光明寺	奈良縣
8	彫刻	如來像	統一新羅時代	奈良縣立博物館	
9	彫刻	如來像	統一新羅時代 8世紀	奈良縣立博物館	
10	彫刻	如來像	統一新羅時代 8世紀	奈良縣立博物館	
11	彫刻	二仏並坐像	三國時代 7世紀	東京大?文?部	
12	彫刻	菩薩像	三國時代 6世紀	東京國立博物館	
13	彫刻	觀音菩薩像	統一新羅時代 8世紀		東京都
14	彫刻	弥勒菩薩像	三國時代 7世紀	日本26聖人 記念館	
15	彫刻	毘盧遮那仏像	高麗時代 13世紀	國分寺(防府市)	山口縣
16	彫刻	如來像	統一新羅時代 8世紀	海神社	
1	繪畫	阿弥陀三尊像	高麗時代	個人	東京都
2	繪畫	地藏菩薩像	高麗時代 14世紀	個人	東京都
3	繪畫	釋迦如來說法図	朝鮮 時代 14~15世紀	個人	京都府
4	繪畫	花鳥図	朝鮮 時代 17世紀	個人	東京都
5	繪畫	楊柳觀音像	高麗時代 14世紀	鏡神社	佐賀縣
6	繪畫	安樂國太子變相図	朝鮮 時代 16世紀	高知縣立 青山文庫	高知縣
7	繪畫	阿弥陀如來像	高麗時代	根津美術館	東京都
8	繪畫	地藏菩薩像	高麗時代	根津美術館	東京都

번호	分野	名称	時代・年代	所藏者・寄贈者	備考
9	繪畫	觀音菩薩像 (觀音・地藏菩薩像のうち)	高麗時代 14世紀	南法華寺	奈良縣
10	繪畫	地藏菩薩像 (觀音・地藏菩薩像のうち)	高麗時代 14世紀	南法華寺	奈良縣
11	繪畫	白衣觀音像	高麗時代 14世紀	奈良縣立博物館	
12	繪畫	楊柳觀音像	高麗時代 14世紀	奈良縣立博物館	
13	繪畫	楊柳觀音像	高麗時代 14世紀	談山神社	奈良縣
14	繪畫	觀經十六觀變相図	高麗時代 14世紀	大高寺	茨城縣
15	繪畫	觀經序分義變相図	高麗時代 14世紀	大恩寺	愛知縣
16	繪畫	楊柳觀音像	高麗時代	大和文華館	奈良縣
17	繪畫	五百羅漢図 (第二百三十四尊者)	高麗時代 13世紀	大和文華館	奈良縣
18	繪畫	五百羅漢図 (第二十三尊者)	高麗時代 13世紀	東京國立博物館	
19	繪畫	觀經十六觀變相図	朝鮮 時代 15世紀	隣松寺	愛知縣
20	繪畫	阿弥陀淨土曼荼羅	朝鮮 時代 16世紀	法輪寺	奈良縣
21	繪畫	如來五尊像	高麗時代 14世紀	法恩寺	埼玉縣
22	繪畫	万五千仏図	高麗時代 13世紀	不動院	廣島縣
23	繪畫	阿弥陀如來像 (阿弥陀三尊像のうち)	高麗時代 14世紀	上杉神社	山形縣
24	繪畫	觀音菩薩像 (阿弥陀三尊像のうち)	高麗時代 14世紀	上杉神社	山形縣
25	繪畫	勢至菩薩像 (阿弥陀三尊像のうち)	高麗時代 14世紀	上杉神社	山形縣
26	繪畫	主夜神像	高麗時代 14~15世紀	西福寺	福井縣
27	繪畫	觀經序分義図	高麗時代 14世紀	西福寺	福井縣

번호	分野	名称	時代・年代	所藏者・寄贈者	備考
28	繪畫	地藏菩薩像	高麗時代	善導寺	福岡縣
29	繪畫	楊柳觀音像	高麗時代 14世紀	聖衆來迎寺	滋賀縣
30	繪畫	摩利支天像	高麗時代	聖澤院	京都府
31	繪畫	阿弥陀八大菩薩像	高麗時代 14世紀	松尾寺	奈良縣
32	繪畫	地藏十王図	高麗時代 14世紀	日光寺	岡山縣
33	繪畫	楊柳觀音像	高麗時代 14世紀	長谷寺	奈良縣
34	繪畫	阿弥陀如來像	高麗時代	正法寺	京都府
35	繪畫	地藏菩薩像	高麗時代 14世紀	中宮寺	奈良縣
36	繪畫	地藏曼荼羅	高麗時代 14世紀	与田寺	香川縣
37	繪畫	阿弥陀三尊像	高麗時代	知恩寺	東京都
38	繪畫	觀經十六觀變相図	朝鮮 時代1 5世紀	知恩寺	京都府
39	繪畫	弥勒下生經變相図	高麗時代	知恩院	京都府
40	繪畫	觀經十六變相図	高麗時代 14世紀	知恩院	京都府
41	繪畫	楊柳觀音像	高麗時代 14世紀	泉屋博物館	京都府
42	繪畫	八相涅槃図	朝鮮 時代 14世紀	最教寺	長崎縣
43	繪畫	阿弥陀如來像	高麗時代	萩原寺	香川縣
44	繪畫	楊柳觀音像	高麗時代 12世紀	豐乘寺	鳥取縣
45	繪畫	阿弥陀三尊像	高麗時代	專修寺	三重縣
46	繪畫	阿弥陀八大菩薩像	高麗時代	廣福護國禪寺	佐賀縣

번호	分野	名称	時代・年代	所藏者・寄贈者	備考
47	繪畫	華嚴五十五所繪	朝鮮 時代 14世紀	廣福護國禪寺	佐賀縣
48	繪畫	地藏菩薩像	高麗時代	德川美術館	愛知縣
49	繪畫	阿弥陀八大菩薩像	高麗時代 14世紀	淨教寺	京都府
50	繪畫	施餓鬼図	朝鮮 時代 16世紀	藥仙寺	兵庫縣
51	繪畫	阿弥陀八大菩薩像	高麗時代 14世紀	鏗阿寺	栃木縣
52	繪畫	文殊菩薩像 (文殊・普賢菩薩像のうち)	高麗時代	靜嘉堂文庫 美術館	東京都
53	繪畫	普賢菩薩像 (文殊・普賢菩薩像のうち)	高麗時代	靜嘉堂文庫 美術館	東京都
54	繪畫	地藏十王像	高麗時代 14世紀	靜嘉堂文庫 美術館	東京都

(나) 飛鳥(明日香)과 그 周辺

A. 飛鳥寺(현재: 元興寺・法興寺), 高市郡明日香村飛鳥

飛鳥寺는 백제에서 불교가 전해지자 불교를 신봉하고 자기의 집에 불상을 안치하고 믿던 소아씨가 그 반대파인 물부씨와 전쟁하여 이긴후 아스카에 거대한 비조사를 건립하였는데 그 목탑이 건립되던날 천황과 모든 신하들이 백제의 옷을 입고 기뻐하였다고 전한다. 현재는 자그마한 금당에 비조대불이라는 거대한 그 당시의 불상만이 남아있다.

B. 飛鳥의 寺社

백제계 실력자 소가노우마코(蘇我馬子)가 596년에 건립한 소가씨의 씨사(氏寺)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사찰이다. 백제의 기술자들이 건너와 건축하였는데 1탑 3금당형식으로 가장 오래된 가람배치 양식이다. 이는 일본의 사원 건축양식이 아니고 평양에 있는 청암리 절터와 같다.

C. 高松塚壁畫古墳

다카마스고분은 고구려의 벽화에 나타나는 사신도, 별자리 등이 나타난 고분으로 유명하며 키토라고분 또한 별자리가 나타나 유명한 고분이다. 이것은 그 당시 일본서기에 백제와 고구려의 천문학이 이곳에 전해졌음을 알 수 있는 유적이다.

四神圖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그려져 있고 또한 남녀 각각 4명의 인물상이 그려져 있다. 주목할 점은 사신도의 그림들이 중국이 아닌 한국의 것과 흡사하며 그림 속의 인물상들의 복식이 고구려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당시의 최고 화가였던 담징이 그렸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는 것이다.

四神圖는 백제의 능산리 고분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한국의 四神圖는 신수들의 발가락이 모두 세 개씩이라는 점이 특징인데 벽화 속의 현무, 용역시 발가락이 세 개이다.

D. 石舞台古墳

石舞台는 비조천의 상류에 있는 횡혈식석실분으로 거대한 돌들로 이루어져 있어 왕릉을 방불케 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蘇我馬子の 묘로 추정되고 있다. 그는 백제계의 여왕이었던 추고천황, 성덕태자와 함께 그 당시 백제의 불교문화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였던 아스카문화(飛鳥文化)를 이룩한 3두마차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자이다.

(다) 法隆寺와 그 周辺

호류사는 쇼토쿠태자가 607년에 건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동편은 몽전(夢殿)을 중심으로 건물을 배치하였고, 서편은 금당과 오층탑을 나란히 배치하였는데 남문-중문-강당은 남북으로 향하며 주변을 회랑으로 두르고 있다. 현재의 금당·오층탑·중문·회랑의 대부분은 아스카의 건축양식을 따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이다. 670년 소실된 기록이 있는데 최근 발굴 결과 재건축설이 유력하다. 호류사에는 백제관음을 비롯한 국보 및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2300여점이 있다.

호류사 금당 석가삼존상은 쿠라스쿠리노도리(鞍作鳥: 백제계 기술자로 일명 도리부시)가 만들었다. 아스카대불(飛鳥大佛)도 도리부시가 만들었는데 이 시대의 조각양식으로 ‘도리’식이 유행하였다. 이밖에 호류사 약사여래상·구세관음상 등이 있다.

A. 廣隆寺 彌勒菩薩半跏思惟像

코류지[광룡사(廣隆寺)]의 彌勒菩薩半跏思惟像은 적송(赤松)으로 제작되었으며 백제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과 매우 흡사하다. 쇼토쿠태자가 하타노가와가쓰(秦河勝)에게 하사한 불상으로 한반도에서 전래되었다고 한다. 이는 백제와 일본의 불교미술과 양국의 교류가 매우 밀접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한편 호류사의 백제관음상(百濟觀音像)은 신체와 머리 부분의 비례가 8 : 1이다.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띠고 있으며 1개의 목조로 이루어졌다.

B. 中宮寺 天壽國曼荼羅繡帳

고구려의 가서일(加西湓)이 만들었다는 天壽國曼荼羅繡帳(일본국보)은 고구려풍의 인물이 묘사되어 있다. 인동문(忍冬文) 및 연화문(蓮花文) 등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의장(意匠) 요소와 같은 점이 많아 고구려와 백제의 자수기법이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C. 中宮寺 彌勒菩薩半跏思惟像

D. 藤ノ木古墳

법룡사(法隆寺) 서쪽 근교에 있는 藤ノ木古墳은 1970년 후반에 발굴 시 황혈식석실안에 석관이 발견되었는데 그 석관뒤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호화로운 말안장이 나왔는데 그 무늬가 구갑무늬모양으로 백제무령왕릉에서 나온 유물의 모양과 비슷하다.

또한 금동제신발과 금관, 동경이 나왔는데 이 금관은 천계, 인동초를 소재로 제작한 것으로 봐서는 당시 백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신분으로 생각된다.

현재 이 무덤의 치장자는 송준천황(崇峻天皇)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도굴을 한번도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된 6세기의 천황릉(天皇陵)에서 백제의 유물들이 가득 담은 채로 발견되었다

(라) 東大寺와 그 周辺

A. 東大寺

a. 大仏 b. 行基堂 c. 開山堂 d. 三月堂

동대사는 세계 최대의 목조대불전과 함께 좌상으로는 최대불상(16미터)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다. 신라 의상대사의 제자였던 심상대덕은 백제 양변스님의 초청으로 화엄불교를 강설하게 되고 이에 성무천황은 747년부터 동대사(東大寺)를 짓기 시작했는데 당시 동대사(東大寺) 가람의 총책임자는 고구려인 고려복신(高麗 福信)이 맡았으며 대불의 주조는 백제인 국중마려(國中麻呂)가 그리고 대불전 건축은 신라인 저명부백세(猪明部百世)가 만든 것이다.

금당내에 있는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은 화엄경의 설법에 의해서 불교의 근본인 석가여래로부터 또 그 위의 전우주를 지배하는 부처로서 지어진 것이다. 그 부처를 위해서 나라 안의 구리를 모두 동원했고 연인원 51만명이 동원돼서 10년만에 완성했으나 불상에 칠할 금이 없어 애를 타고 있을 때 백제왕 경복이 이 소식을 듣고 일본 최초로 무쓰국(임지 - 지금의 아오모리)에서 금을 캐서 그가 황금 9백냥을 바쳐 겨우 불상에 금도색을 했다고 한다.

대불전(金堂)은 대불을 안치하는 건물로 높이가 50미터 되는 세계 최대의 목조건물로서 지금의 모습은 에도((江戶)시대때 복원된 것이다. (동서 57미터, 남북 50미터 그리고 높이 49미터)

B. 正倉院과 所藏品

a. 紺瑠璃坏 b. 佐波理 c. 金銅剪子 d. 新羅琴 e. 黒・螺鈿鏡 f. 鵲尾形柄香爐 g. 高笠麻呂과 「天蓋莊嚴雲花形裁文」

정창원은 창건연대는 쇼무왕(聖武王)대인 덴보(天平) 연간(729~749)

으로 추정되며 왕실의 유물창고이다. 쇼소인(正創院)은 세계에서 가장 큰 大佛이라고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금동좌불상이 있는 도다이지(東大寺)에서 약 300m 거리에 있다. 지금은 모두 없어지고 1동만 남아 있다. 756년 쇼무왕이 죽자 왕비는 그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손가락을 비롯한 칼·거울·무기·목칠공예품·악기 등 600여 종의 애장품을 49제(齋)에 맞춰 헌납하였다.

가치 있는 미술·공예·기록·생활 등 각 방면에 걸친 물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8세기 나라시대부터 일본문화를 구체적으로 전하는 수많은 유품과 한국·중국·인도의 고대 유물에 이르기까지 9천여 점이 소장되어 있어 일본이 세계 제일의 보고로 자랑하는 곳이다. 그 가운데는 구양 순(歐陽詢)의 진적(眞蹟) 병풍, 왕희지(王羲之)·헌지(獻之) 부자의 진적, 신라민정(民政)문서 등도 있다.

또한 가위·유리잔·칼·사리기(舍利器) 등 외형, 또는 새겨진 무늬만으로도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임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일본에서는 백제금이라고도 하는 신라금과 금동가위, 신라떡, 신라종 등이 소장되어 있다. 752년 도다이지 대불 개안식에 참석한 신라의 사절이 기증한 문화재들도 상당수 있다.

일본 학자들은 이들 유물이 대륙으로부터 직접 또는 한국을 거쳐 들어온 것이라고 하나 8세기 일본의 공예품 제작 능력, 재료의 생산 여부, 일본의 조선(造船)·항해(航海) 수준, 일본 사신(使臣)이 당에서 가져온 물품, 출토된 통일신라시대의 공예품과 비교해 볼 때 이들 유물이 당나라 제품이기보다는 통일신라의 제품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주장도 한다.

이곳에 소장된 총 667권 5책의 ‘쇼소인문서’ 가운데 《신라장적(新羅帳籍)》으로 부르는 신라민정문서가 있는데, 755년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대 일본 쇼소인 소장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화엄경론(華嚴經論)의 질(帙) 속에서 발견되었다. 신라 농촌사회의 구조와 토지제도 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마) 百濟王神社

이 신사는 백제가 불상과 경전을 전해준 것을 기리기 위하여 서기 737년에 백제왕사묘와 백제사를 세우고 백제왕을 제사하기 시작하였다. 서방사(西方寺)에 보존되어 있는 <백제왕영사묘유래기 百濟王靈詞廟由來記>에 의하면 백제의 마지막왕인 의자왕의 직계 후손 남전(南典)이 병에 걸려 죽자 이를 슬퍼한 세이무왕[聖武王]이 백제왕사묘(百濟王祀廟) 및 백제의 사찰을 주궁(中宮)에 건립하도록 명하여 백제왕씨족의 선조 영(靈)을 그곳에다 안치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이 신사는 이곳에서 정착하여 살았던 백제의 귀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이곳은 의자왕의 아들이라고 전해지는 선광(善光)의 증손인 경복(敬福)이 백제에서 이주하여 살던 난바[難波]에서 그의 씨족을 이끌고 다시 옮겨 살았던 지역이다. 이들은 이곳에 백제사(百濟寺)도 건립하였다.

(바) 藥師寺

약사사는 삼국을 통일하고 발해와 함께 남북국시대를 이루었던 후기신라시대의 문화가 일본에 전해진 하쿠호문화(白鳳文化)의 정수로 慶州의 四天王寺와 같이 雙木塔을 가지고 있다. 약사사는 680년, 천무천황이 황후의 병이 완쾌되기를 염원하면서 건립했다고도 전해지고 있다.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사원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상륜부가 하나는 금으로 다른 하나는 은으로 이루어져있다.

(사) 高安山城跡⁴⁴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 唐과 동맹을 맺어 百濟를 멸망시키려 한 신라에 干涉戰에서 완패한 일본이, 그 반공을 두려워하여 방비하기 위해, 신라와 대항관계에 있던 백제인 망명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대마, 북구주,

⁴⁴ 박종명, 『歩いて知る朝鮮と日本の歴史』(滋賀, 奈良, 京都, 九州 편, 明石書店) 및 백제문화연구회(www.paekche.or.kr/) 참조.

중국, 사국, 그리고 고안성 등 20여개의 조선식 산성을 쌓았다. 백제도래 축성기술자가 조선식산성 구축을 직접 담당하였다.

高安城이 667년에 쌓았다는 것은 判然하지만, 築城者의 이름은 기록이 없다. 또한 高安山城築城記錄은 있지만, 그 소재의 정확한 위치, 실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표 III-5> 日本 古代 山城 一覽

區分	名稱	所在地	旧國名
文獻에 보이지 않는 古代山城	1 雷山	福岡縣 糸島郡 前原町	筑前
	2 鹿毛馬	福岡縣 嘉穂郡 穎田町	筑前
	3 把木	福岡縣 朝倉町 把木町	筑前
	4 高良山	福岡縣 久留米市 御井町	筑後
	5 女山	福岡縣 山門郡 瀬高町	筑後
	6 御所ヶ谷	福岡縣 行橋市	豊前
	7 帶隈山	佐賀縣 佐賀市 久保泉	肥前
	8 おつぼ山	佐賀縣 武雄市 橋町	肥前
	9 石城山	山口縣 熊毛郡 大和町	周防
	10 永納山	愛媛縣 東予市	伊予
	11 城山	香川縣 坂出市西庄町 他	讃岐
	12 鬼ノ城	岡山縣 總社市奥坂	肥中
	13 大廻・小廻	岡山縣 岡山市草ヶ部	肥前
	14 (仮) 安芸城	廣島縣 豊田郡 安芸津町	安芸
文獻에 보이는 古代山城	1 金田城	長崎縣 下縣郡 美津島町 黒瀬城山	對馬
	2 ◆土城	福岡縣 糸島郡 前原町 高祖山	筑前
	3 大野城	福岡縣 大野城市 他	筑前
	4 水城	福岡縣 筑紫郡 太宰府町 他	筑前
	5 基肄城	佐賀縣 三養基郡基山町	肥前
	6 鞠智城	熊本縣 鹿本郡 菊鹿町	肥後
	7 長門城	山口縣 下關市 周辺 ?	長門
	8 常城	廣島縣 芦品郡 新市町常	肥後
	9 茨城	廣島縣 福山市 藏王町 ?	肥後
	10 屋嶋城	香川縣 高松市 屋嶋	讃岐
	11 高安城	大阪縣 八尾市 高安城 他	河内

<그림 III-2> 일본고대산성 분포



(4) 京都 지역

교토의 역사는 794년 나라에서 이곳으로 수도를 옮겨오면서 시작되었다. 9세기에 들어서며 신라, 당과 교역이 이루어졌고, 도시의 구획정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즈음부터 유명한 사찰들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하였다. 10~11세기에 귀족문화가 탄생하면서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이 기간을 헤이안(平安) 시대로 분류한다. 불교가 번성하여 곳곳에 절이 세워졌고, 학자도 많이 배출되었다.

헤이안 시대 말기에 이르러 가마쿠라(鎌倉)에 쇼군 정부가 세워지고 교토에는 미나모토 장군의 세력이 확장되었다. 특히 무로마치와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초기에 이르러 더욱 발전을 보였는데, 이 시기에 그 유명한 금각사, 은각사가 세워졌다. 또 다양한 수공예품과 예술품들이 생산되기도 했다.

(가) 京都博物館⁴⁵

교토국립박물관은 도쿄, 나라 국립박물관과 함께 일본 3대 박물관이다.

⁴⁵ 京都國立博物館(www.kyohaku.go.jp/indexe.htm) 데이터베이스 참조.

1897년에 ‘제국교토박물관’이란 이름으로 개관한 이 박물관은 이후 ‘교토 황실박물관’, ‘은사교토박물관’이란 이름을 거쳐 1952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르네상스식 벽돌건물인 본관을 비롯하여 신관의 두 개의 진열관이 있으며 본관건물은 주로 특별전의 전시관으로 사용된다. 일본미술품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미술품, 역사적 유물, 공예품 등을 전시하며, 특히 빨간 벽돌 정문은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표 III-6> 京都國立博物館 所藏 目錄

	작품名	國名	世紀
1	有柄式磨製石劍	國銅器	
2	瓦質土器 甕	原三國	
3	双耳壺	三國	3~5世紀
4	軒丸瓦	高句麗	2~3世紀
5	軒丸瓦	高句麗	2~3世紀
6	軒丸瓦	高句麗	2~3世紀
7	軒丸瓦	高句麗	2~3世紀
8	軒丸瓦	高句麗	2~3世紀
9	軒丸瓦	高句麗	2~3世紀
10	軒丸瓦	高句麗	2~3世紀
11	軒丸瓦	高句麗	2~3世紀
12	新羅土器 高杯	統一新羅	5~6世紀
13	銅造如來立像	統一新羅	8世紀
14	軒丸瓦	統一新羅	2~3世紀
15	軒丸瓦	統一新羅	2~3世紀
16	軒丸瓦	統一新羅	2~3世紀
17	軒丸瓦	統一新羅	2~3世紀
18	軒丸瓦	統一新羅	2~3世紀
19	軒丸瓦	統一新羅	2~3世紀
20	軒丸瓦	統一新羅	2~3世紀
21	軒丸瓦	統一新羅	2~3世紀
22	施釉土器 長頸壺	統一新羅~高麗	5~6世紀
23	新羅·高麗土器 扁平壺	統一新羅~高麗	5~6世紀

	作品名	國名	世紀
24	四乳青馬鏡	高麗	11~14世紀
25	連珠文懸鏡	高麗	11~14世紀
26	連珠文懸鏡	高麗	11~14世紀
27	素文懸鏡	高麗	11~14世紀
28	唐草懸鏡	高麗	11~14世紀
29	花鳥鏡	高麗	11~14世紀
30	花文鏡	高麗	11~14世紀
31	花文鏡	高麗	11~14世紀
32	花文鏡	高麗	11~14世紀
33	花文鏡	高麗	11~12世紀
34	唐草鏡	高麗	11~12世紀
35	高麗唐草鏡	高麗	11~14世紀
36	唐草双鳥八稜鏡	高麗	11~14世紀
37	唐草六花鏡	高麗	11~12世紀
38	畫文帶四乳四神鏡	高麗	11~14世紀
39	菊花鏡	高麗	11~14世紀
40	菊花鏡	高麗	11~14世紀
41	宝鑑き鳳鏡	高麗	11~14世紀
42	許由洗耳鏡	高麗	11~14世紀
43	許由洗耳八花鏡	高麗	11~14世紀
44	海獸葡萄鏡	高麗	11~14世紀
45	禽獸葡萄鏡	高麗	11~14世紀
46	大方廣仏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 普賢行願品	高麗	14世紀
47	手鑑「藻塩草」華嚴經行願品斷簡 横川切) / 國宝	高麗	
48	煌丕昌天海舶八稜鏡	高麗	12世紀
49	高麗古墓 玉類	高麗	
50	高麗古墓 銅骨藏器	高麗	
51	高麗古墓 銅合子	高麗	
52	高麗古墓 銅皿	高麗	
53	高麗古墓 銅製匙	高麗	
54	高麗古墓 銅製箸	高麗	
55	高麗古墓 銅碗	高麗	

	作品名	國名	世紀
24	四乳青馬鏡	高麗	11~14世紀
25	連珠文懸鏡	高麗	11~14世紀
26	連珠文懸鏡	高麗	11~14世紀
27	素文懸鏡	高麗	11~14世紀
28	唐草懸鏡	高麗	11~14世紀
29	花鳥鏡	高麗	11~14世紀
30	花文鏡	高麗	11~14世紀
31	花文鏡	高麗	11~14世紀
32	花文鏡	高麗	11~14世紀
33	花文鏡	高麗	11~12世紀
34	唐草鏡	高麗	11~12世紀
35	高麗唐草鏡	高麗	11~14世紀
36	唐草双鳥八稜鏡	高麗	11~14世紀
37	唐草六花鏡	高麗	11~12世紀
38	畫文帶四乳四神鏡	高麗	11~14世紀
39	菊花鏡	高麗	11~14世紀
40	菊花鏡	高麗	11~14世紀
41	宝鑑き鳳鏡	高麗	11~14世紀
42	許由洗耳鏡	高麗	11~14世紀
43	許由洗耳八花鏡	高麗	11~14世紀
44	海獸葡萄鏡	高麗	11~14世紀
45	禽獸葡萄鏡	高麗	11~14世紀
46	大方廣仏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 普賢行願品	高麗	14世紀
47	手鑑「藻塩草」華嚴經行願品斷簡 横川切) / 國宝	高麗	
48	煌丕昌天海舶八稜鏡	高麗	12世紀
49	高麗古墓 玉類	高麗	
50	高麗古墓 銅骨藏器	高麗	
51	高麗古墓 銅合子	高麗	
52	高麗古墓 銅皿	高麗	
53	高麗古墓 銅製匙	高麗	
54	高麗古墓 銅製箸	高麗	
55	高麗古墓 銅碗	高麗	

	作品名	國名	世紀
56	高麗古墓 銅碗	高麗	
57	高麗古墓出土品	高麗	
58	青磁鐵繪葉文双耳壺	高麗	13世紀
59	青磁背地象嵌唐草文油壺	高麗	12~13世紀
60	高麗白磁陰刻蓮華牡丹文瓶	高麗	12世紀
61	湖州入隅方鏡	高麗	11~14世紀
62	湖州鏡	高麗	11~14世紀
63	湖州八稜鏡	高麗	12~13世紀
64	蟠龍八花鏡	高麗	11~14世紀
65	湖州八花鏡	高麗	11~14世紀
66	湖州方鏡	高麗	11~14世紀
67	湖州葉形鏡	高麗	11~14世紀
68	湖州葉形鏡	高麗	11~14世紀
69	湖州六花柄鏡	高麗	11~14世紀
70	湖州六花柄鏡	高麗	11~14世紀
71	妙法蓮華經如來壽量品斷簡	高麗	14世紀
72	妙法蓮華經卷第五 分別功德品第十七	高麗	
73	阿育王太子法益壞目因緣經	高麗	14世紀
74	妙法蓮華經奧書斷簡	高麗	14世紀
75	華嚴經卷第二十五	高麗	13~14世紀
76	三鳳八花鏡	高麗	11~14世紀
77	四神四獸鏡	高麗	11~14世紀
78	四神八卦十二支鏡	高麗	11~14世紀
79	四神八卦十二支鏡	高麗	11~14世紀
80	四獸鏡	高麗	11~14世紀
81	四乳鳳凰鏡	高麗	11~14世紀
82	七宝鏡	高麗	11~14世紀
83	七宝鏡	高麗	11~14世紀
84	神仙清遊鏡	高麗	11~14世紀
85	人物飛鶴柄鏡	高麗	14世紀
86	瑞花鴛鴦五花鏡	高麗	11~12世紀
87	瑞花鴛鴦五花鏡	高麗	11~12世紀
88	瑞花五花鏡	高麗	11~14世紀

	作品名	國名	世紀
56	高麗古墓 銅碗	高麗	
57	高麗古墓出土品	高麗	
58	青磁鐵繪葉文双耳壺	高麗	13世紀
59	青磁背地象嵌唐草文油壺	高麗	12~13世紀
60	高麗白磁陰刻蓮華牡丹文瓶	高麗	12世紀
61	湖州入隅方鏡	高麗	11~14世紀
62	湖州鏡	高麗	11~14世紀
63	湖州八稜鏡	高麗	12~13世紀
64	蟠龍八花鏡	高麗	11~14世紀
65	湖州八花鏡	高麗	11~14世紀
66	湖州方鏡	高麗	11~14世紀
67	湖州葉形鏡	高麗	11~14世紀
68	湖州葉形鏡	高麗	11~14世紀
69	湖州六花柄鏡	高麗	11~14世紀
70	湖州六花柄鏡	高麗	11~14世紀
71	妙法蓮華經如來壽量品斷簡	高麗	14世紀
72	妙法蓮華經卷第五 分別功德品第十七	高麗	
73	阿育王太子法益壞目因緣經	高麗	14世紀
74	妙法蓮華經奧書斷簡	高麗	14世紀
75	華嚴經卷第二十五	高麗	13~14世紀
76	三鳳八花鏡	高麗	11~14世紀
77	四神四獸鏡	高麗	11~14世紀
78	四神八卦十二支鏡	高麗	11~14世紀
79	四神八卦十二支鏡	高麗	11~14世紀
80	四獸鏡	高麗	11~14世紀
81	四乳鳳凰鏡	高麗	11~14世紀
82	七宝鏡	高麗	11~14世紀
83	七宝鏡	高麗	11~14世紀
84	神仙清遊鏡	高麗	11~14世紀
85	人物飛鶴柄鏡	高麗	14世紀
86	瑞花鴛鴦五花鏡	高麗	11~12世紀
87	瑞花鴛鴦五花鏡	高麗	11~12世紀
88	瑞花五花鏡	高麗	11~14世紀

	作品名	國名	世紀
89	瑞花五花鏡	高麗	11~14世紀
90	瑞花双鳥八稜鏡	高麗	11~14世紀
91	瑞花双鳥八稜鏡	高麗	
92	瑞花双鳥八稜鏡	高麗	12~13世紀
93	瑞花双鳥八稜鏡	高麗	11~12世紀
94	瑞花双鳥八稜鏡	高麗	11~12世紀
95	杭州瑞花蜻蜓方鏡	高麗	13~14世紀
96	瑞花八稜鏡	高麗	11~14世紀
97	瑞華飛鳥方鏡	高麗	11~14世紀
98	瑞花鐘形鏡	高麗	11~14世紀
99	瑞獸鏡	高麗	11~14世紀
100	瑞獸鏡	高麗	11~14世紀
101	瑞獸方鏡	高麗	11~14世紀
102	青磁象嵌牡丹鶴文合子	高麗	13世紀
103	鸚鵡鏡	高麗	
104	雲鶴鏡	高麗	11~14世紀
105	草花飛鳥方鏡	高麗	11~14世紀
106	草花鏡	高麗	11~14世紀
107	草花鏡	高麗	11~14世紀
108	草花八稜鏡	高麗	11~14世紀
109	草花方鏡	高麗	11~14世紀
110	瑞花双鳥五花鏡	高麗	11~14世紀
111	瑞花双鳥八稜鏡	高麗	11~14世紀
112	瑞花双鳥八稜鏡	高麗	11~14世紀
113	瑞花双鳥八稜鏡	高麗	11~14世紀
114	瑞花双鳥八稜鏡	高麗	11~14世紀
115	瑞花双鳥八稜鏡	高麗	11~14世紀
116	瑞花双鳥八稜鏡	高麗	11~14世紀
117	双禽宝相華鏡	高麗	11~14世紀
118	菊花双鳥鏡	高麗	11~14世紀
119	菊花双鳥鏡	高麗	11~14世紀
120	浮線菊文散?鳥鏡	高麗	11~14世紀
121	双鳥瑞獸八花鏡	高麗	11~14世紀

	作品名	國名	世紀
122	双鳳鏡	高麗	11~14世紀
123	双鳳鏡	高麗	11~14世紀
124	双魚鏡	高麗	11~14世紀
125	双龍鏡	高麗	11~14世紀
126	双龍鏡	高麗	11~14世紀
127	双龍鏡	高麗	11~14世紀
128	双龍鏡	高麗	11~14世紀
129	双龍鏡	高麗	11~14世紀
130	双龍鏡	高麗	12~13世紀
131	双龍八稜鏡	高麗	11~14世紀
132	双龍六稜鏡	高麗	11~14世紀
133	双鯉蓮池鏡	高麗	11~14世紀
134	双鯉蓮池鏡	高麗	11~14世紀
135	素文入隅方鏡	高麗	11~14世紀
136	素文柄鏡	高麗	11~14世紀
137	素文鐘形鏡	高麗	11~14世紀
138	素文鏡	高麗	11~14世紀
139	素文八稜鏡	高麗	11~14世紀
140	素文八稜鏡	高麗	11~14世紀
141	素文八花鏡	高麗	11~12世紀
142	素文方鏡	高麗	11~14世紀
143	大宝積經卷第三十二 / 重文 高麗國金字大藏經)	高麗	11世紀
144	鳥獸鏡	高麗	11~14世紀
145	鳥獸柄鏡	高麗	14世紀
146	八乳禽獸鏡	高麗	11~14世紀
147	點畫唐草鏡	高麗	11~14世紀
148	渡海大船八稜鏡	高麗	13~14世紀
149	素文懸鏡	高麗	11~14世紀
150	軒丸瓦	高麗	2~3世紀
151	軒丸瓦	高麗	2~3世紀
152	八卦懸鏡	高麗	11~14世紀
153	蟠龍入隅方鏡	高麗	11~14世紀
154	蟠龍入隅方鏡	高麗	11~14世紀

	作品名	國名	世紀
155	蟠龍鏡	高麗	11~14世紀
156	蟠龍八花鏡	高麗	11~14世紀
157	飛雲鐘形鏡	高麗	11~14世紀
158	飛仙八稜鏡	高麗	11~14世紀
159	青磁陰刻蓮華文瓶	高麗	12世紀
160	青磁象嵌牡丹梅竹文扁壺	高麗	13世紀
161	方格四獸鏡	高麗	11~14世紀
162	宝閣人物鏡	高麗	11~14世紀
163	宝相華鏡	高麗	11~14世紀
164	宝相華鏡	高麗	11~14世紀
165	宝相華鏡	高麗	11~14世紀
166	宝相華鏡	高麗	11~12世紀
167	宝相華鏡	高麗	11~14世紀
168	宝相華鏡	高麗	11~14世紀
169	宝相華鏡	高麗	11~14世紀
170	宝相華鏡	高麗	11~14世紀
171	宝相華六花鏡	高麗	11~12世紀
172	妙法蓮華經卷第四	高麗	14世紀
173	牡丹唐草鏡	高麗	12世紀
174	國宝 / 手鑑「藻塩草」 妙法蓮華經卷第二斷簡 (多武峰切)	高麗	
175	重文 / 文殊師利問菩提經	高麗	13世紀
176	四乳き龍鏡	高麗	11~14世紀
177	四乳四禽鏡	高麗	11~14世紀
178	四乳四獸鏡	高麗	11~14世紀
179	四乳四獸鏡	高麗	11~14世紀
180	四乳四獸鏡	高麗	11~14世紀
181	家常貴富八禽鏡	高麗	11~14世紀
182	家常貴富八禽鏡	高麗	11~14世紀
183	草花飛禽鏡	高麗	11~14世紀
184	四乳鳳凰鏡	高麗	11~14世紀
185	龍虎鏡	高麗	11~14世紀
186	龍虎鏡	高麗	11~14世紀
187	妙法蓮華經卷第四	高麗~朝鮮	14~15世紀

	作品名	國名	世紀
188	華嚴經卷第六十七卷第六十八 (大和寧國經)	高麗~朝鮮	14世紀
189	青磁象嵌靈芝宝珠文碗 (狂言袴筒 茶碗)	朝鮮	16~17世紀
190	山水図	朝鮮	
191	山水図	朝鮮	
192	白磁透彫葡萄文筆筒	朝鮮	19世紀
193	石人	朝鮮	16世紀
194	方台	朝鮮	16世紀
195	井戸茶碗 銘あがた	朝鮮	16世紀
196	白磁壺	朝鮮	19世紀
197	粉青沙器搔落蓮池文扁壺 彫三島)	朝鮮	15世紀
198	粉青沙器刷毛目搔落葉文瓶 彫三島)	朝鮮	15~16世紀
199	粉青沙器刷毛目鐵繪文字文鉢 繪三島)	朝鮮	16~17世紀
200	墳墓表飾石造遺物 朝鮮	朝鮮	15~19世紀
201	木造童子形立像	朝鮮	15世紀
202	飴釉面取壺	朝鮮	19世紀
203	飴釉面取瓶	朝鮮	19世紀
204	鐵砂雲龍文壺	朝鮮	17~18世紀
205	鐵砂草文耳杯	朝鮮	17~18世紀
206	鐵砂草文小?	朝鮮	17~18世紀
207	鐵砂草文鉢	朝鮮	17~18世紀
208	鐵砂草文?	朝鮮	17~18世紀
209	鐵砂竹文壺	朝鮮	17~18世紀
210	鐵砂野菊文壺	朝鮮	18~19世紀
211	鐵砂墓誌	朝鮮	16世紀
212	鐵砂葉文碗	朝鮮	17~18世紀
213	白磁角台鉢	朝鮮	17~18世紀
214	白磁角杯	朝鮮	16~17世紀
215	白磁片口	朝鮮	17~18世紀
216	白磁煙管台	朝鮮	18~19世紀
217	白磁鏞文壺	朝鮮	18~19世紀

	作品名	國名	世紀
218	白磁小扁壺	朝鮮	17~18世紀
219	白磁耳杯	朝鮮	15~16世紀
220	白磁耳杯	朝鮮	15~16世紀
221	白磁鳥形把手耳杯	朝鮮	15~16世紀
222	白磁鳥形把手耳杯	朝鮮	15~16世紀
223	白磁水注	朝鮮	15~16世紀
224	白磁水注	朝鮮	17~18世紀
225	白磁透彫蓮華文水滴	朝鮮	18~19世紀
226	白磁硯	朝鮮	15~16世紀
227	白磁硯	朝鮮	15~16世紀
228	青花「祭」字文面取鉢	朝鮮	17~18世紀
229	青花「祭」字文面取鉢	朝鮮	17~18世紀
230	青花「福」字唐草文角皿	朝鮮	17~18世紀
231	青花「福」字文菊花形鉢	朝鮮	17~18世紀
232	青花「福」字草花文角小鉢	朝鮮	17~18世紀
233	青花「福」字草花文角皿	朝鮮	17~18世紀
234	青花梅鳥文壺	朝鮮	17~18世紀
235	青花花卉文角皿	朝鮮	17~18世紀
236	青花花卉文角水滴	朝鮮	18~19世紀
237	青花花卉文八角筆筒	朝鮮	17~18世紀
238	青花花鳥文瓜胴形筆洗	朝鮮	18~19世紀
239	青花花鳥文角粉缸	朝鮮	18~19世紀
240	青花算木文角鉢	朝鮮	17~18世紀
241	青花山水文六角杯	朝鮮	18~19世紀
242	青花草花文四方瓶	朝鮮	17~18世紀
243	青花詩文角扁壺	朝鮮	17~18世紀
244	青花詩文面取瓶	朝鮮	17~18世紀
245	青花辰砂(釉裏紅)鷄水滴	朝鮮	18~19世紀
246	青花錢箱形水滴	朝鮮	18~19世紀
247	青花野菊梅鳥文角扁壺	朝鮮	18~19世紀
248	青花葡萄文皿	朝鮮	18~19世紀
249	青花窓繪花鳥文面取瓶	朝鮮	17~18世紀
250	青花丸に梅枝文壺	朝鮮	17~18世紀

	作品名	國名	世紀
251	青花丸に算木文八角筆筒	朝鮮	17~18世紀
252	青花野草文角鉢 (秋草手)	朝鮮	17~18世紀
253	青花野草文壺 (秋草手)	朝鮮	17~18世紀
254	青花葉文四方粉盒	朝鮮	18~19世紀
255	青花瑠璃地白拔龍文台鉢	朝鮮	18~19世紀
256	白磁壺	朝鮮	17~18世紀
257	白磁捻花形皿	朝鮮	17~18世紀
258	白磁捻花形皿	朝鮮	17~18世紀
259	白磁捻花形杯	朝鮮	15~16世紀
260	白磁八角面取台鉢	朝鮮	17~18世紀
261	白磁深鉢	朝鮮	18~19世紀
262	白磁水呑	朝鮮	16世紀
263	白磁面取瓶	朝鮮	17~18世紀
264	白磁四方水滴	朝鮮	17~18世紀
265	白磁輪花皿	朝鮮	17~18世紀
266	白磁輪花鉢	朝鮮	18~19世紀
267	白磁輪花盤	朝鮮	18~19世紀
268	瑠璃釉網目文面取六角長頸瓶	朝鮮	19~20世紀
269	瑠璃釉角瓶	朝鮮	19~20世紀
270	瑠璃釉角扁壺	朝鮮	19~20世紀
271	瑠璃釉撫四方長頸瓶	朝鮮	19~20世紀
272	瑠璃釉面取六角長頸瓶	朝鮮	19~20世紀
273	蘭石図	韓國	
274	釋迦如來像		

(나) 京都 左京區

A. 赤山禪院의 新羅神

세키산젠인(赤山禪院)은 엔닌(圓仁)이 개성(開成) 5년(840) 당나라 문 등현의 신라 적산법화원에 머물고 있을때 「적산신(赤山神)」에게 자기의 본원이 이루어 지기를 빌고, 만일 본국(日本)에 귀국하게 되면 반드시 선

원을 세워 불법을 널리 전하고 「적산신(赤山神)」을 자익(資益)케 하겠다고 서원한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엔닌은 생전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입적에(864) 앞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겨 「赤山神」을 위하여 「赤山禪院」의 건립을 유탁한다. 제자들은 인화(仁和) 4년(888), 스승인 입적한지 24년이 지나서야 선원 건립을 실현하였다. 「赤山禪院」에는 「赤山神」을 모시고 있다. 「赤山神」은 곧 「적산신라명신」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天台宗 寺門派의 총본산 정관원년(859) 円珍이 엔라쿠지의 별원으로 창건하였다. 궁귀족의 歸依가 많았으며 특히 미나모토씨의 신앙이 두터웠다. 신라 선신당은 園城寺 또는 三井寺라고 하는 사찰의 신당 가운데 하나이다. 14세기 중엽에 아시카가 足利尊氏が 만들었다는 신라 善神堂은 국보로서 역시 국보인 新羅明神坐像을 모시고 있다. 이 좌상은 円珍이라는 스님이 唐나라 유학후 귀국하다 배 안에 나타난 신라 명신의 모습을 보고 860년에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신라 명신은 특히 중세의 명문 미나모토(源) 씨에게 숭배되어 미나모토 요시미쓰(源義光)는 이름마저 신라 사부로 요시미쓰(新羅三郎義光)라 칭했다고 한다. 신라 선신당의 남쪽에 그의 묘가 있다.

B. 大雲寺의 新羅明神

京都의 岩倉이라 하면, 實相院만이 무언가 유명해서 참배자들이 끊이지 않지만, 그 북쪽에는, 방문자가 그다지 많지 않은 天台系 大雲寺가 있다. 진각을 개조로 해서 971년 창건했던 원성사의 별원으로, 本尊의 十一面觀音은, 百濟系渡來人 行基의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다. 創建期에는 장대한 寺院이었다. 創建時 大雲寺 사적지는 현재 북산병원이 세워져 있고, 현재 이곳으로 이전하였다.

현 대운사 경내 입구에는 「新羅明神」라고 쓰여진 설명판이 세워져 있다.

(다) 京都 西京區의 櫟谷神寺 宗像神社

櫟谷神寺와 宗像神社의 創建年은 기록이 없지만, 平安時代 嘉祥원(848)년에 從五位下의 神階을 받았다고 「續日本後期」(11月條)에 써있

다. 松尾大社가 秦都理에 의해서 창건된 것은 701년으로, 제신으로 市杵島姫을 모신다. 櫟谷神寺도, 그 경 秦氏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宗像神社는 朝鮮半島와 九州을 잇는 항로상에 위치하여서, 해상교통과 관련된 신을 섬긴다.

(라) 京都 右京區의 廣隆寺:

옛날 일본의 국보1호(2차대전 이후 일본은 國寶의 號數를 모두 없앴다.)

목조미륵반가사유상이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국보 79호와 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과 너무나 흡사하다. 또한 재료는 적송(赤松)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나무라고 한다. 신라인이 만들어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 반가사유상은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는데, 일본 여자 미술학도가 너무 반하여 껴안다가 손가락을 부러뜨린 적도 있고 철학자인 야스퍼스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학자들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간에도 異見은 있다.

(마) 京都 右京區의 高山寺 『華嚴宗祖師繪伝』

고산사는 774년, 공인천황의 勅원에 의해 창건되었다. 개창자는 백제계 도래인 자손인 갈정씨출신 승 경준으로 전하고 있다.

고산사는 최초, 신원사도하미방이라고 칭했다. 평안시대 초기에는 도하미사라고 칭하였고, 천태종 사원이었다. 그 후 황폐해졌지만, 겸창시대에 명혜(1173~1232)이 화엄종복흥 도장으로 재흥하여, 이래 고산사라고 불리면서 사세는 융성하였다.

고산사는 오래된 문화재 보고이다. 겸창시대를 중심으로해서 국보, 중요문화재 1만여 점이 있다.

그 중에 국보 『華嚴宗祖師繪伝』이 있다. 이 『華嚴宗祖師繪伝』는 의상을 주인공으로 한 의상대사회 4권과, 원효를 주인공으로 한 원효대사회

2권이 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3권만이 전한다.

(바) 京都 東山區의 八坂神社 創建과 牛頭天王

교토(京都)의 기온사(祈園寺)인 야사카신사(八坂神社)는 전국 각지에 8만5천687사의 지역신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금은 야사카신사(八坂神社)로 불려오고 있지만 본래의 이름은 기온사(祈園寺)이다. 그래서 야사카신사(八坂神社)축제를 “기온마쓰리”라고 부른다. 이것은 일본의 메이지유신(1868년)이후에 일본정부의 신불습합(神佛習合)이라는 신불의 동일체(同一體) 관습을 깨고 신(神)만을 국가적으로 받아드리는 것이다.

사이메이천황(656년)에 고구려의 사신 이리지(伊利之)가 신라국(新羅國)의 우두산(牛頭山)에 계신 스사노오노미코도신을 교토(京都)땅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으며 왕실로부터 팔판조(八坂造 - 야사카노미야쓰코)라는 성을 받았다. [야사카신사(八坂神社) - 유서기략(由緒記略)] 일본신화를 보면 스사노오노미코토가 하늘로부터 신라땅의 소의 머리(우두)라는 곳(지금의 춘천 우두산)에 내려 배를 타고 동해를 건너와 이즈모(시마네현)에 내렸다고 한다. 그래서 스사노오미코토를 우두천황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스사노오미코토가 신라에서 온 신라신인 것이다.

(사) 京都 東山區의 耳塚

임진왜란때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조선인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에 의해, 조선의 병사는 물론, 무고한 남녀노소와 갓난아이까지 살해하고 코와 귀를 잘라갔다. 그것을 소금에 절여 통에 담아 일본으로 보내졌고, 이것을 전승과 무공의 증거로 삼았다.

일본군은 이를 모아 히데요시에게 나고야를 거쳐 오사카로 보내고 오사카에서 큰통에 이를 싣고, 오사카·교토의 거리를 다니며 마을과 주민들에게 「戰勝」을 시위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이를 1597년 분묘를 쌓아 매장하고, 승려들에게 공양을 하게 했다. 이 무덤을 처음에는 「鼻塚」이라고 불렀지만, 언제부터인지 「耳塚」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것이 교토의

귀무덤이다.

(아) 北野天滿宮

신라 제신(際神)을 모시고 있는 키타노텐만궁(北野天滿宮) 일본인들에게는 명소 중의 명소인 이곳은 스가와라 미치자네((菅原道眞)를 제신(際神)으로 모신 곳이다.

일본의 으뜸가는 “학문의 신”으로 숭앙받고 있는 그는 헤이안시대(794 - 1192)의 문장박사이자 정치가이며 신라계의 고대 한국인이다

그는 11살부터 시를 읊었고 17세 때에 과거에 급제 22세 때는 벼슬길에 들어선 그는 조정의 정상 우대신까지 오른다.

하지만 주변 정치가들(후지와라노토키히라)의 음모로 큐슈 후쿠오카(福岡) 태재부(太宰府)로 좌천을 당한 후 2년만에 903년에 병사한다. [일본서기] 스사노오노미코토는 하늘나라에서 아들신 “이타케루신”을 이끌고 신라국으로 강림(降臨)해서 그 곳의 “소의 머리(牛頭)”[강원도 춘천]라는 곳에 살았다 라고 기록되어있다. 그 스사노오미코토가 바로 신라신이며 하늘에서 내려올 때 소를 타고 내려왔다고 한다.

또한 지금의 여신 천조대신(天照大神)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는 스사노오미코토의 손위누이로 기록[일본서기] 되어 있으므로 천조대신(天照大神)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 역시 신라여신으로 생각된다.

<표 III-7> 京都, 高麗佛畫所藏寺院

번호	불화	소장	소재지
1	觀經變相圖	知恩院	東山區 林下町
2	弥勒下生經變相圖		
3	阿弥陀三尊像		
4	阿弥陀三尊像		
5	阿弥陀如來立像	正法寺	
6	阿弥陀如來立像	東海庵	右京區 花園妙心寺(미확인)

번호	불화	소장	소재지
7	阿弥陀如来坐像	玉林寺	
8	阿弥陀如来坐像	禪林寺	左京區 永觀堂町
9	阿弥陀三尊像	松尾寺	
10	阿弥陀三尊像	泉谷博古館	左京區 鹿ヶ谷下宮ノ前町
11	楊柳觀音半跏像		
12	阿弥陀八代菩薩像	淨教寺	
13	楊柳觀音半跏像	大德寺	北區柴野大德寺町
14	楊柳觀音半跏像		
15	楊柳觀音半跏像		
16	楊柳觀音半跏像	藤井齊成會有隣館	左京區 岡崎円勝寺町
17	摩利支天坐像	聖澤院	右京區 花園妙心寺
18	阿弥陀三尊像	個人	

(5) 東京, 東京國立博物館⁴⁶

동경 국립박물관은 일본과 동양 각 지역의 미술품이나 고고자료를 보존, 전시하는 국립기관으로 박물관의 소장품은 일본 각 분야 미술품 및 고고자료, 그리고 동양 미술 고고자료 등 89,000건 이상이 있다.

그 중 한국의 원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까지의 주로 불교와 관련된 상당수의 유물들이 소장되어 있다. 소장하게 된 경위야 어떻든간에 유물의 공개로 공동연구가 이루어져야할 부분이다.

<표 III-8> 東京國立博物館 所藏 目錄

번호	指定	名称	時代・年代世紀	所藏者・寄贈者
1	重美	金製冠	三國・5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2	重文	金銅透彫冠帽	三國・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3		鐵地金銅裝冠帽	三國・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4	重文	金銅鳥翼形冠飾	三國・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⁴⁶ 東京國立博物館 (www.kyohaku.go.jp/indexe.htm) 데이터베이스 참조

번호	指定	名称	時代・年代世紀	所藏者・寄贈者
5	重文	金製太環式耳飾	三國・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6		金製細環式耳飾	三國・5~6世紀	
7	重文	金製釧	三國・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8	重文	金銅臍当	三國・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9	重文	金銅透彫飾履	三國・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0		銅製盒	三國・5~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1		有銘環豆大刀	三國・5世紀	
12		金製太環式耳飾	三國(新羅)・ 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3		金製太環式耳飾	三國(新羅)・ 6世紀	
14		金製細環式耳飾	三國(新羅)・ 5~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5		金製細環式耳飾	三國(加耶)・ 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6		金製細環式耳飾	三國(加耶)・ 5世紀	
17		金製細環式耳飾	三國(百濟)・ 5~6世紀	
18		金製釧	三國(新羅)・ 6世紀	朝鮮?督府寄贈
19		銀製釧	三國(百濟)・ 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20		金帽付き蜻蛉玉	三國・5~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21		金銅三葉文透彫帶金具	三國・4世紀	
22		金銅龍文透彫帶金具	三國・4世紀	
23		銀製帶金具	三國(新羅)・ 5~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24		金銅帶金具	三國(新羅)・ 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25		銀製帶金具	三國(新羅)・ 7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번호	指定	名称	時代・年代世紀	所藏者・寄贈者
26		銅製帶金具	三國(新羅)・7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27		銀製魚佩	三國・5~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28	重美	銀製透彫金具付佩礪	三國・5~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29	重美	丹城邑出土品	三國(加耶)・5~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30		綠釉連弧文長頸瓶	三國(百濟)・7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31		綠釉鉢	三國(百濟)・6~7世紀	
32		綠釉長頸壺	三國(新羅)・7世紀前半	
33		綠釉壺	三國(新羅)・7世紀前半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34		綠釉盒子	三國(新羅)・6~7世紀	
35		綠釉脚付壺	統一新羅・8世紀	
36		綠釉舍利壺	統一新羅・8~9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37		綠釉千鳥形磚	統一新羅・7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38		金象嵌銅魁	三國(高句麗)・4世紀 [中?製]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39		金銅冠	三國(新羅)・5~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40		金銅冠	三國(加耶)・5~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41		銅製ふく	三國・5~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42		銅製しょう斗	三國(加耶)・5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43		銅製鏡	三國(加耶)・5~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44		銅製熨斗	三國(新羅)・5~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45		獸帶鏡	三國・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번호	指定	名称	時代・年代世紀	所藏者・寄贈者
46		金銅籠文透彫雲珠・ 金銅辻金具	統一新羅・7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47	重美	南山出土品	統一新羅・8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48	重文	青銅鐘	高麗・ 睿宗2年(1107)	東京國西新井大師?持寺?
49		青銅金鼓	高麗・ 康宗2年(1213)	
50		青銅淨瓶	高麗・ 12~13世紀	
51		青銅鉢	高麗・ 10~14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52		響銅鏡	高麗・ 10~12世紀	?川?貞氏寄贈
53		高麗古墓出土品	高麗・12世紀	個人藏
54		青銅鍍金小刀把鞘	高麗・ 11~13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55		銀鍍金毛拔き・耳搔き	高麗・ 11~13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56		金釵	高麗・ 10~14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57		銀金貼り釵	高麗・ 10~14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58		青銅鍍金笄	高麗・ 10~14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59		青銅耳飾り	高麗・ 10~14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60		金裝飾具	高麗・ 11~13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61		青銅鍍金裝飾具	高麗・ 11~13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62		銀鍍金腕釧	高麗・ 11~13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63		青銅鍍金垂飾	高麗・ 11~13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64		青銅鍍金か具	高麗・ 11~13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65		銀鍍金針筒	高麗・ 11~13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번호	指定	名称	時代・年代世紀	所藏者・寄贈者
66		靑銅印	高麗・ 11~13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67		銀匙	高麗・ 10~12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68		靑銅鉢	高麗・ 10~12世紀	
69		巾着形壺	原三國・2世紀	
70		爐形土器	原三國・ 3世紀前半	
71		四脚付壺	三國(百?)・ 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72		三足杯	三國(百?)・ 5世紀後半	
73		鳥足文壺	三國(馬韓)・ 5世紀	個人藏
74		高杯	三國(加耶)・ 4~5世紀	
75		高杯	三國(新羅)・ 6世紀	個人藏
76		爐形器台	三國(加耶)・ 4世紀末	
77		台付長頸壺	三國(新羅)・ 5世紀中葉	
78		印花文台付長頸壺	統一新羅・8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79		印花文骨壺	統一新羅・ 8世紀初頭	
80		象嵌瓶	高麗・ 13~14世紀	
81		瓜形水注	高麗・ 11~12世紀	
82		瓢形壺	高麗・14世紀	
83		壺	高麗・ 10~12世紀	
84		蓮花文軒丸瓦	三國(高句麗)・ 6~7世紀	內藤雋輔氏寄贈
85		「元興三年」磚	樂浪時代・293年	內藤雋輔氏寄贈
86		「王平」磚	樂浪時代・ 1~3世紀	內藤雋輔氏寄贈

번호	指定	名称	時代・年代世紀	所藏者・寄贈者
87		「大吉壽大」磚	樂浪時代・ 1~3世紀	內藤雋輔氏寄贈
88		幾何文磚	樂浪時代・ 1~3世紀	內藤雋輔氏寄贈
89		狩獵文磚	樂浪時代・ 1~3世紀	內藤雋輔氏寄贈
90		白虎文磚	樂浪時代・ 1~3世紀	內藤雋輔氏寄贈
91		「樂浪禮官」軒丸瓦	樂浪時代・ 2~4世紀	內藤雋輔氏寄贈
92		雲氣文軒丸瓦	樂浪時代・ 前2~後4世紀	內藤雋輔氏寄贈
93		雲氣文軒丸瓦	樂浪時代・ 前2~後4世紀	內藤雋輔氏寄贈
94		輻線蓮花文軒丸瓦	三國(高句麗)・ 5世紀	內藤雋輔氏寄贈
95		蓮花文軒丸瓦	三國(高句麗)・ 5世紀	內藤雋輔氏寄贈
96		蓮花文軒丸瓦	三國(高句麗)・ 5~6世紀	內藤雋輔氏寄贈
97		蓮花文軒丸瓦	三國(高句麗)・ 6~7世紀	內藤雋輔氏寄贈
98		蓮花文軒丸瓦	三國(高句麗)・ 6~7世紀	內藤雋輔氏寄贈
99		蓮花文軒丸瓦	三國(高句麗)・ 6~7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00		蓮花文軒丸瓦	三國(高句麗)・ 6~7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01		輻線珠文軒丸瓦	三國(高句麗)・ 6~7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02		重圈文軒丸瓦	三國(高句麗)・ 6~7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03		蓮花文軒丸瓦	三國(百?)・ 7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04		蓮花文軒丸瓦	三國(新羅)・ 7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05		忍冬蓮花文軒丸瓦	統一新羅・ 7~8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06		蓮花文軒丸瓦	統一新羅・ 8世紀	內藤雋輔氏寄贈

번호	指定	名称	時代・年代世紀	所藏者・寄贈者
107		蓮花文軒丸瓦	統一新羅・8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08		蓮花文軒丸瓦	統一新羅・8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09		蓮花文軒丸瓦	統一新羅・8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10		蓮花文軒丸瓦	統一新羅・8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11		高杯	三國(新羅)・ 5世紀末	內藤雋輔氏寄贈
112		把手付鉢	三國(加耶)・ 4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13		宝相花文軒丸瓦	統一新羅・8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14		宝相花文軒丸瓦	統一新羅・8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15		宝相花文軒丸瓦	統一新羅・8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16		宝相花文軒丸瓦	統一新羅・8~9 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17		蓮花文軒丸瓦	統一新羅・ 8~9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18		蓮花文軒丸瓦	統一新羅・9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19		蓮花文軒丸瓦	統一新羅~高麗 10~11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20		獅子文軒丸瓦	統一新羅・8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21		宝相花文楕圓瓦	統一新羅・8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22		麒麟文軒平瓦	統一新羅・ 8~9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23		鳥文軒平瓦	統一新羅・ 8~9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24		鳥文軒平瓦	統一新羅・ 8~9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25		鳥文軒平瓦	統一新羅・ 8~9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26		唐草文軒平瓦	統一新羅・ 8~10世紀	內藤雋輔氏寄贈
127		菩薩立像	高句麗・6世紀	山本茂策氏寄贈
128		菩薩頭部	三國・6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29		誕生釋迦仏立像	三國・7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30		如來及兩脇侍像	三國・7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번호	指定	名称	時代・年代世紀	所藏者・寄贈者
131		孔雀明王坐像	三國・7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32		藥師如來立像	三國・7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33		如來及び脇侍立像	三國・7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34		供養人物跏趺坐像	三國・7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35		釋迦如來坐像	三國~統一新羅 7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36		毘盧舍那仏立像	統一新羅~高麗 9~10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37		菩薩頭部	三國~統一新羅 7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38		菩薩立像	三國~統一新羅 7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39		菩薩頭部	統一新羅・8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40		供養菩薩跏趺坐像	統一新羅・ 7~8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41		神將立像	統一新羅・8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42		如來立像	統一新羅・8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43		神將立像	統一新羅・8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44		如來立像	統一新羅・ 8~9世紀	鈴木光氏寄贈
145		如來立像	統一新羅・ 8~9世紀	鈴木光氏寄贈
146		全州芭蕉葉扇	朝鮮・ 19~20世紀	
147		全州芭蕉葉扇	朝鮮・ 19~20世紀	
148		慶州鷺尾扇	朝鮮・ 19~20世紀	
149		慶州鷺尾扇	朝鮮・ 19~20世紀	

번호	指定	名称	時代・年代世紀	所藏者・寄贈者
150		羅州國旗扇	朝鮮・ 19~20世紀	
151		羅州大極扇	朝鮮・ 19~20世紀	
152		固城桐葉尾扇	朝鮮・ 19~20世紀	
153		固城桐葉尾扇	朝鮮・ 19~20世紀	
154		青磁碗	高麗・10世紀	
155		青磁蓮華蓋水注	高麗・ 11~12世紀	橫河民輔氏寄贈
156		青磁鸚鵡文鉢	高麗・12世紀	橫河民輔氏寄贈
157		青磁印花花卉唐草文鉢	高麗・12世紀	橫河民輔氏寄贈
158		青磁草花文瓜形?	高麗・12世紀	
159		青磁蓮弁文水注	高麗・12世紀	
160		青磁透彫唐草文箱	高麗・12世紀	
161		青磁蓮唐草文水注	高麗・12世紀	
162		青磁象嵌梅竹蒲柳水禽文瓶	高麗・12世紀	
163		青磁象嵌菊花文杯	高麗・12世紀	山田丑太?氏寄贈
164		青磁象嵌菊花文長頸瓶	高麗・ 12~13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65		青磁象嵌花卉文瓜形水注	高麗・ 12~13世紀	
166		青磁象嵌雲鶴文合子	高麗・13世紀	
167		青磁象嵌辰砂菊唐草	高麗・13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68		黑釉瓶	高麗・ 12~13世紀	橫河民輔氏寄贈
169		黑釉鉢	高麗・ 12~13世紀	橫河民輔氏寄贈
170		粉青印花文鉢	朝鮮・15世紀	
171		粉青象嵌波文倭壺	朝鮮・15世紀	
172		粉青搔落花蝶文扁壺	朝鮮・ 15~16世紀	
173		粉青搔落草葉文扁壺	朝鮮・ 15~16世紀	

번호	指定	名称	時代・年代世紀	所藏者・寄贈者
174		粉靑刷毛目鉢	朝鮮・ 15~16世紀	橫河民輔氏寄贈
175		粉靑鐵繪花鳥文瓶	朝鮮・ 15~16世紀	
176		粉靑線刻魚文雙耳鉢	朝鮮・ 15~16世紀	
177		粉靑線刻魚文俵壺	朝鮮・ 15~16世紀	
178		白磁壺	朝鮮・ 17~18世紀	橫河民輔氏寄贈
179		白磁皿	朝鮮・ 15~16世紀	個人藏
180		白磁壺	朝鮮・16世紀	個人藏
181		鐵砂草文壺	朝鮮・17世紀	橫河民輔氏寄贈
182		靑花草花文筆筒	朝鮮・18世紀	小倉コレクション保存會 寄贈
183		靑花鶴龜文壺	朝鮮・18世紀	橫河民輔氏寄贈
184		白磁梅花文瓶	朝鮮・19世紀	橫河民輔氏寄贈
185		靑花花卉文瓶	朝鮮・19世紀	
186		靑花辰砂桃形水滴	朝鮮・19世紀	
187		靑花辰砂透彫蓮唐草 文筆筒	朝鮮・19世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에는 구주 나라 교토 관동지역에 걸쳐 한국의 유물 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주로 불교 유물 유적이 다수를 차지하나, 25,000여개의 일본신사에 모셔진 인물이나 유물 가운데 80여%가 한반도에서 건너간 인물 유물이다. 일본의 경우는 이 유물 유적의 한반도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유물은 ‘소유권(所有權)’의 문제 보다는 서로가 ‘향유(享有)’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 북한

기원전 중국관련 유적을 비롯하여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시대까지의 유적이 분포되어 있다.

(1) 북한지역 고인돌 유적⁴⁷

주로북한의 평안도 황해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20여기의 고인돌유적도 중국동북지방 및 한국 전북지방의 고인돌과 함께 공동연구의 필요가 요청되는 유적이다. 고인돌을 통해 한·중간의 문화적 정체성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9> 북한지역 고인돌 유적

번호	유적명	장소	國	비고
1	안악 노암리 고인돌 유적	황남 안악군 노암리 화평 남쪽	北韓	탁자식 1기
2	은천 약사동 고인돌 유적	황남 은천군 덕양리 약사동	北韓	탁자식 1기
3	용연 석교리 고인돌 유적	황남 용연군 석교리	北韓	괘이형 집터 및 고인돌 4기
4	은율 관산리 1호 고인돌 유적	황남 은율군 관산리	北韓	덧개돌 잔존
5	연탄 오덕리 고인돌 유적	황북 연탄군 오덕리	北韓	고인돌 15기
6	연탄 평촌 고인돌	황북 연탄군 오덕리 송신동 북쪽	北韓	고인돌 5기
7	연탄 석장골 고인돌 유적	황북 연탄군 오덕리 석장골	北韓	탁자식 2기
8	연탄 송신동 고인돌 유적	황북 연탄군 오덕리 송신동	北韓	고인돌 12기
9	황주 침촌리 고인돌 유적	황북 황주군 침촌리 정방산 일대	北韓	고인돌 29기
10	황주 간동 고인돌 유적	황북 황주군 침촌리 정방산 서북쪽	北韓	탁자식 1기 및 개석식 5기

⁴⁷ 하문식, 『고조선 지역의 고인돌 연구』 참조. 도표화 정리.

번호	유적명	장소	國	비고
11	황주 천진동 고인돌 유적	황북 황주군 침촌리 천진동	北韓	고인돌 6기
12	황주 극성동 고인돌 유적	황북 황주군 침촌리 정방산 서쪽	北韓	고인돌 100여기
13	황주 신대동 고인돌 유적	황북 황주군 침촌리 신대동 독가마산	北韓	고인돌 11기 가운데 개석식 8기
14	사리원 광성동 고인돌 유적	황북 사리원시 광성동 정방산 남쪽과 발양산 북쪽 일대	北韓	
15	사리원 성문 1지점 고인돌 유적	황북 사리원시 광성동 발양산 서북쪽	北韓	고인돌 6기
16	사리원 성문 2지점 고인돌 유적	황북 사리원시 성문 1지점 서남쪽	北韓	고인돌 5기
17	연산 공포리 고인돌 유적	황북 연산군 공포리 후동마을 구릉지대	北韓	탁자식 1기 및 돌널무덤
18	인산 주암리 고인돌 유적	황북 인산군 주암리 닭골마을	北韓	
19	개천 묵방리 고인돌 유적	평남 개천군 묵방리 까치산 기슭과 대동강 유역	北韓	탁자식 및 개석식 40기 분포
20	북창 대평리 고인돌 유적	평남 북창군 대평리	北韓	개석식 2기
21	용강 석천산 고인돌 유적	평남 용강군 석천산 기	北韓	탁자식
22	강서 태성리 고인돌 유적	평남 강서군 태성리	北韓	개석식 2기
23	평원 원암리 고인돌 유적	평남 평원군 원암리	北韓	개석식 14기
24	중산 용덕리 고인돌 유적	평남 증산군 용덕리	北韓	탁자식 7기
25	신양 평곡리 고인돌 유적	평남 신양군 백석리 평곡마을	北韓	탁자식 6기
26	숙천 지석동 고인돌 유적	평남 숙천군 평산리 지석동	北韓	탁자식 1기
27	상원 귀일리 고인돌 유적	평양시 상원군 귀일리 하무산 기슭	北韓	
28	김책 덕인리 고인돌 유적	함북 김책군 덕인리 전장마을	北韓	고인돌 4기 중 탁자식 2기
29	강동 문흥리 고인돌 유적	강동군 문흥리 구릉지대	北韓	탁자식 3기 및 개석식 2기

<표 III-10>에서 보여 주듯이 북한의 고대 낙랑시대 금석문 역시 한·중간에 비교 분석을 통해 문화교류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10> 고대 금석문

번호	자료명	소재지(발굴처)	관련인물	연도	
				찬술	건립
1	高山里 1號墳	平安南道 大同郡 林原面 高山里			
2	鎧馬揭	平安南道 大同郡 柴足面 魯山里			
3	梅山里 四神揭	平安南道 龍岡郡 大代面 梅山里			
4	龕神揭	平安南道 龍岡郡 新寧面 新德里			
5	天王子神揭	平安南道 順天郡 北倉面 北倉里			
6	遼東城揭	平安南道 順天郡 龍鳳里			
7	伏獅里 壁畫古墳	황해도 안악군 복사리			
8	평정리 1호분	황해도 안악군 평정리		1988년	
9	眞坡里 4號墳	平安南道 中和郡 東頭面 眞坡里			
10	平壤城 石刻(5種)				
11	籠吾里山城磨 崖石刻	평안북도 태천군 龍山里 山城山		1958년	
12	永康七年銘 金銅光背	평양 平川里的 고구려 폐사지		1946년	
13	景四年 辛卯銘 金銅三尊佛立像	黃海道 谷山郡 花村面 蓮山里 (現 金東鉉 소장)		1930년	571년 (평원왕1 3년)
14	정릉사지 토기명 일괄	평양 九浦區域 戊辰里 王陵洞소재 寺址			
15	定陵寺址 出土 平瓦銘	平壤市 九浦區域 戊辰里			
16	新浦里 절골터 金銅版 銘文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의 절골 유적지		1988년	

번호	자료명	소재지(발굴처)	관련인물	연도	
				찬술	건립
17	焜蟬縣 神祠碑	平安南道 龍岡郡 海雲面 於乙洞土城의 동북 약 150m 지점에서		1913년	A.D.85
					A.D.178
					A.D.32
18	秦 25年銘 銅函	平壤博物館		1925년	B.C.209
19	永光 3年銘 銅鐘	평양 船橋里 船橋驛의 동북방 遂安街道 부근에서	孝文廟	1920년	B.C.41
20	정백동 3호분(周古墓) 출토 漆器 銘文	정백동3호분	周古(피장자), ?氏 (제작자 혹은 소유자)		
21	梧野里 20호분 출토 漆器 銘文	梧野里 20호분	孫 (소유자 或 제작자 성씨)		
22	始元 2年銘 耳杯	平壤 石巖里 194호분 출토			B.C.85
23	地節 4年銘 漆槩	평양 정백동 37호분 출토			B.C.69~ 66
24	永光 元年銘 耳杯	평양 貞栢里 17호분 출토			B.C.43
25	河平 3年銘 漆盤	傳 平壤 낙랑고분 출토			B.C.26
26	陽朔 2年銘 漆扁壺	平壤 石巖里 194호분 출토			B.C.23
27	永始 元年銘 漆盤	평양 石巖里 194호분 출토			B.C.16
28	耳杯 殘缺	傳 平壤 낙랑고분 출토			永始元年 전후시기
29	建平 4年銘 漆盤	傳 平壤 낙랑고분 출토			B.C.14
30	綵和 元年銘 漆盒	평양 石巖里 194호분 출토			B.C.8
31	建平 4年銘 漆盤	傳 평양 貞栢里 고분 출토			B.C.6~4
32	居攝 3年銘 漆盤	평양 石巖里 201호분 출토			A.D.6~8
33	初始 元年銘 漆盤	傳 평양 梧野里 낙랑고분 출토	西長(소유자 의 성명으로 추정)	A.D.8	

번호	자료명	소재지(발굴처)	관련인물	연도	
				찬술	건립
34	始建國 元年銘 漆盤	傳 평양 낙랑고분 출토			A.D.9
35	始建國 天鳳 元年銘 漆盤	傳 평양 낙랑고분 출토			A.D.14
36	建武 5年銘 耳杯	평양 정오동 6호분 출토			A.D.29
37	永平 12年銘 神仙畫像漆盤	평양 石巖里 王?墓 출토	盧氏 (제작자)		A.D.69
38	夫租歿君 銀印	平壤 정백동 夫租?君墓 출토			B.C.75~ A.D.30
39	周古 銀印	平壤 정백동 3호분(周 古墓)출토	周古 (피장자)		
40	王衛 兩面木印	平壤 石巖里 204호분(王?墓)출토			
41	樂浪大尹五官 檄 高春印 封泥	평양 낙랑토성지 출토	高春		A.D.9~ A.D.25
42	樂浪禮宮銘 瓦當	평양 낙랑토성지 출토			
43	光和 5年銘傳	黃海道 鳳山郡 文井面 土城里 土城址 출토	韓氏(축조자 또는 피장자)		182년
44	正始 9年銘磚	黃海道 信川郡 鳳凰里 王卿墓 출토			248년
45	建武 9年銘磚	傳 黃海道 출토			343년
46	永和 9年銘磚	平南 平壤市 平壤驛 구내 출토	爾利 (피장자)	1932년	353년
47	張撫夷磚	黃海道 鳳山郡 文井面 昭封里 1號墳 출토	張撫夷 (피장자)	1914년	348년
48	「含資王君」銘 磚	黃海道 安岳郡 安岳邑 柳城里 출토			
49	「李」銘 土器	平壤 彩??(南井里 116號墳) 출토	李氏, 王 (피장자의 姓氏)		
50	居攝元年銘 內行花紋鏡	평양 石巖里 부근에서 출토		1924년	A.D.6
51	延熹七年銘 獸首鏡	낙랑고분군에서 출토		1932년	A.D.164

번호	자료명	소재지(발굴처)	관련인물	연도	
				찬술	건립
52	連弧文銘帶鏡	평양 정백동 10호분, 2호분, 石巖里 52호분 출토			
53	內行花紋鏡	낙랑지역			後漢代
54	『王通』銘覆輪金具	平壤 樂浪 博築墳 出土	王通(소유자의 성명으로 추정)	1909년	
55	魏 曠丘儉紀功碑	集安縣 小板?嶺 출토 (現 吳光國 所藏)		1906년	

(2) 북한지역 <각 도별> 유적⁴⁸

<표 III-11>에서 보여 주는 유적들은 부록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표 III-11> 북한 지역 <각 도별> 유적

번호	유적명	장소	시대(시기)	비고
1	평양성	평양시	고구려 (552~586)	
2	대동문과 평양중	평양시	고구려	
3	련광정	평양시	고구려	
4	보통문	평양시	고구려	
5	칠성문	평양시	고구려	
6	을밀대	평양시	고구려	
7	현무문	평양시	고구려	
8	최승대	평양시	고구려	
9	부벽루	평양시	고구려	
10	홍복사 7층탑	평양시	고려	
11	승령전	평양시	조선 (1492년)	
12	승인전	평양시	고려 (1325년)	
13	대성산성	평양시	고구려 (3~5세기)	
14	대성산성 남문	평양시	고구려	

⁴⁸ 북한 사회과학원 조희승 교수 제공 자료에서 도표화 정리. 부록편 참조.

번호	유적명	장소	시대(시기)	비고
15	대성산부근 고구려무덤떼	평양시	고구려	1,000여기 무덤
16	안화궁터	평양시	고구려 (5세기 초엽)	왕궁터
17	청암리성	평양시	고구려 (5세기 경)	
18	금강사터	평양시	고구려	
19	법운암	평양시	고구려	
20	룡곡서원	평양시	조선	
21	동명왕릉	평양시	고구려	
22	정릉사터	평양시	고구려	
23	검은모루유적	평양시	구석기시대 전기	100만년 이전
24	고구려 대동강다리터	평양시	고구려	
25	황룡산성	남포시	고구려	
26	쌍기등무덤	남포시	고구려 (5세기 말엽)	
27	강서세무덤	남포시	고구려 (7세기 중엽)	
28	덕흥리벽화무덤	남포시	고구려 (408년)	
29	약수리벽화무덤	남포시	고구려 (5세기 초)	
30	수산리벽화무덤	남포시	고구려 (5세기 후반)	
31	안주성	평안남도	고구려	
32	백상루	평안남도	고려	
33	안국사	평안남도	고구려	
34	천왕지신무덤	평안남도	고구려 (5세기 중엽)	
35	동명관터	평안남도	고려 (1343년)	조선시대 객사
36	덕화리 1호, 2호무덤	평안남도	고구려 (6세기)	
37	훈련정	평안남도	조선	
38	천리장성	평안북도	고려	
39	구주성	평안북도	고려	
40	구성남문	평안북도	고려	
41	철웅성	평안북도	고려	
42	철웅성 남문	평안북도	고려	
43	천주사	평안북도	조선 (1684년)	
44	록승정	평안북도	조선 (1728년)	
45	서운사	평안북도	고려 (1345년)	
46	룡오리산성	평안북도	고구려	

번호	유적명	장소	시대(시기)	비고
47	양화사	평안북도	9세기 중엽	
48	룡골산성	평안북도	고구려	
49	묘향산 보현사	평안북도	고려 (11세기 초)	
50	불영대	평안북도	조선 (1570년)	
51	룡한산성	평안북도	고구려	
52	백마산성	평안북도	고구려	
53	의주남문	평안북도	조선 (1613년)	
54	통군정	평안북도	고려 전기	
55	금광사	평안북도	조선	
56	성동리다라니석당	평안북도	고려 (1027년)	
57	박천심원사	평안북도	고려 (9세기 경)	
58	인풍루	자강도	조선 (1472년)	
59	망미정	자강도	조선 (1436년)	
60	강계아사	자강도	조선 (1663년)	관청
61	관산리고인돌	황해남도	청동기시대	
62	연안읍성	황해남도	고구려	
63	부용당터	황해남도	조선 (1500년)	
64	해주석빙고	황해남도	고려 (1735년)	
65	해주5층탑	황해남도	고려 초기	
66	광조사 진철대사비	황해남도	고려 초기	
67	소현서원	황해남도	조선	
68	강서사	황해남도	조선시대	
69	안악1호무덤	황해남도	고구려	
70	안악2호무덤	황해남도	고구려 (5~6세기 초)	
71	안악3호무덤	황해남도	고구려 (4세기 중엽)	
72	자혜사	황해남도	고려	
73	자혜사 5층탑	황해남도	고려	
74	현암	황해남도	9세기 이전	
75	안악월정사	황해남도	9세기 중엽	
76	로암리 고인돌	황해남도	청동기시대	
77	수양산성	황해남도	고구려	
78	정방산성	황해북도	고려	
79	성불사	황해북도	898년	
80	경암루	황해북도	조선	

번호	유적명	장소	시대(시기)	비고
81	태백산성	황해북도	고구려	
82	귀진사	황해북도	고려 (12세기)	
83	연탄 심원사	황해북도	고려 말기	
84	개성성	개성시	고려	
85	개성 남대문과 연복사종	개성시	고려	
86	만월대	개성시	고려	
87	개성 첨성대	개성시	고려	
88	선죽교	개성시	고려	
89	불일사 5층탑	개성시	고려	
90	승양서원	개성시	고려	
91	개성 성균관	개성시	고려	
92	표충비	개성시	조선	
93	홍국사탑	개성시	고려 초기 (1021년)	
94	개국사돌등	개성시	고려 초기	
95	대흥산성	개성시	고려	
96	관음사	개성시	고려 초기	
97	공민왕릉	개성시	고려	고려 31대 왕
98	현화사 7층탑	개성시	고려 초기 (1020년)	
99	령통사 5층탑	개성시	고려 초기	
100	령통사 대각구사비	개성시	고려 (1125년)	
101	오룡사 법경대사비	개성시	고려 초기 (944년)	
102	괘궁정	량강도	조선	
103	진복루	량강도	조선	
104	경성읍성	청진시	고려	
105	경성남문	청진시	고려	
106	개심사	함경북도	발해	
107	쌍계사	함경북도	조선	
108	구천각	함경남도	고려	
109	함흥본궁	함경남도	조선	사당
110	함흥선화당	함경남도	조선	관청
111	군자루	함경남도	조선	
112	량천사	함경남도	8세기 중엽	
113	공민루	함경남도	조선 (1438년)	
114	정광사	함경남도	고려	

번호	유적명	장소	시대(시기)	비고
115	동덕사	함경남도	고려	
116	룡흥사	함경남도	고려	
117	표훈사	강원도	7세기 중엽	
118	정양사	강원도	600년	
119	정양사 3층탑	강원도	600년	
120	보덕암	강원도	고구려	
121	묘길상	강원도	고려	
122	장안사터	강원도	6세기 중엽	
123	장연사 3층탑	강원도	삼국시기	
124	금장암 사자탑	강원도	고려 초	
125	신계사터와 신계사 3층탑	강원도	삼국시기	
126	가학루	강원도	8세기 중엽	
127	안변 보현사	강원도	8세기 중엽	
128	석왕사	강원도	고려 말	
129	명적사	강원도	고려이전	

(3) 고구려시대 고분 유적⁴⁹

<표 III-12>에서 보여 주는 고구려 유적들은 부록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표 III-12> 고구려시대 고분 유적

번호	구분	명칭	장소	국가	시대
1	古墳	安岳 1號墳	潢海道 安岳郡 大楸里	韓國(北韓)	高句麗
2	古墳	安岳 2號墳	潢海道 安岳郡 大楸里	韓國(北韓)	高句麗
3	古墳	安岳 3號墳	潢海道 安岳郡 伏獅里	韓國(北韓)	高句麗
4	古墳	鳳城里壁畫古墳	潢海道 安岳郡 鳳城里	韓國(北韓)	高句麗
5	古墳	新栗里壁畫古墳	潢海道 安岳郡 新栗里	韓國(北韓)	高句麗

⁴⁹ 민족문화사 편집부편, 『고구려 고고학』.

번호	구분	명칭	장소	국가	시대
6	古墳	鎧馬塚	平壤市 三石區域 魯山里	韓國(北韓)	高句麗
7	古墳	內里 1號墳	平壤市 三石區域 內里	韓國(北韓)	高句麗
8	古墳	湖南里四神塚	平壤市 三石區域 湖南里	韓國(北韓)	高句麗
9	古墳	平壤驛前壁畫古墳	平壤市 外城區域 蓮花洞	韓國(北韓)	高句麗
10	古墳	高山里 1號墳	平壤市 大城區域 高山洞	韓國(北韓)	高句麗
11	古墳	高山里 9號墳	平壤市 大城區域 高山洞	韓國(北韓)	高句麗
12	古墳	南京里 1號墳	平壤市 勝湖區域	韓國(北韓)	高句麗
13	古墳	眞坡里 1號墳	平南道 中和郡 戊進里	韓國(北韓)	高句麗
14	古墳	眞坡里 4號墳	平南道 中和郡 戊進里	韓國(北韓)	高句麗
15	古墳	傳東明王陵	平南道 中和郡 戊進里	韓國(北韓)	高句麗
16	古墳	加長里壁畫古墳	平南道 中和郡 加長里	韓國(北韓)	高句麗
17	古墳	江西大墓	平南道 江西郡 三墓里	韓國(北韓)	高句麗
18	古墳	江西中墓	平南道 江西郡 三墓里	韓國(北韓)	高句麗
19	古墳	藥水里壁畫古墳	平南道 江西郡 藥水里	韓國(北韓)	高句麗
20	古墳	臺城里 1號墳	平南道 江西郡 大城里	韓國(北韓)	高句麗
21	古墳	蓮花塚 2號墳	平南道 江西郡 大城里	韓國(北韓)	高句麗
22	古墳	修山里 壁畫古墳	平南道 江西郡 修山里	韓國(北韓)	高句麗
23	古墳	雙楹塚	平南道 龍岡郡 龍岡邑 安城里	韓國(北韓)	高句麗
24	古墳	龍岡大塚	平南道 龍岡郡 龍岡邑 安城里	韓國(北韓)	高句麗
25	古墳	大安里 1號墳	平南道 龍岡郡 巖面 大安里	韓國(北韓)	高句麗
26	古墳	梅山里 4神塚	平南道 南浦市 火鳥里	韓國(北韓)	高句麗
27	古墳	星塚	平南道 溫泉郡 神寧里	韓國(北韓)	高句麗
28	古墳	龕神塚	平南道 溫泉郡 神寧里	韓國(北韓)	高句麗
29	古墳	麻永里壁畫古墳	平南道 溫泉郡 麻永里	韓國(北韓)	高句麗
30	古墳	八清里壁畫古墳	平南道 大洞郡 八清里	韓國(北韓)	高句麗
31	古墳	遼東城塚	平南道 順川郡 龍鳳里	韓國(北韓)	高句麗
32	古墳	天王地神塚	平南道 殷山郡 北倉里	韓國(北韓)	高句麗
33	古墳	牛山里 1號墳	平南道 南浦市 牛山里	韓國(北韓)	高句麗

번호	구분	명칭	장소	국가	시대
34	古墳	牛山里 2號墳	平南道 南浦市 牛山里	韓國(北韓)	高句麗
35	古墳	牛山里 3號墳	平南道 南浦市 牛山里	韓國(北韓)	高句麗
36	古墳	大寶山里壁畫古墳	平南道 大安市 大寶山里	韓國(北韓)	高句麗
37	古墳	寶山里壁畫古墳	平南道 大安市 寶山里	韓國(北韓)	高句麗
38	古墳	德興里壁畫古墳	平南道 大安市 德興里	韓國(北韓)	高句麗
39	古墳	戊進里 식물원 9號墳	平南道 中和郡 戊進里	韓國(北韓)	高句麗
40	古墳	戊進里 식물원 10號墳	平南道 中和郡 戊進里	韓國(北韓)	高句麗
41	古墳	戊進里 식물원 15號墳	平南道 中和郡 戊進里	韓國(北韓)	高句麗
42	古墳	德花里 1號墳	平南道 大洞郡 德花里	韓國(北韓)	高句麗
43	古墳	德花里 2號墳	平南道 大洞郡 德花里	韓國(北韓)	高句麗

3. 동북아 문화유산 관리 정책 50

가. 유럽연합(EU) 및 영·미 문화유산 관리 정책

(1) 유럽연합(EU)

유럽 연합의 27개국은 1975년 “유럽건축유산의 해(Year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of Europe)”를 계기로 하여 문화유산 보호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96년 유럽의회 정상회담에서는 유럽공동의 유산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1999년 제2차 정상회담에서 유산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 구성, 국가 또는 지역간 활동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유럽 여러나라의 문화재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은 이미 협약의 형태로 두 차례에 걸쳐 기본방향이 제시되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라마다 실행

⁵⁰ 장호수, 『문화재학 개론』;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지식산업사, 2000) 참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법과 행정체제가 다르고 중앙집권 형과 지방분권형 등 통치방법이 다름에 따라 차이가 있기도 하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연방제 나라들에서는 연방법체계 안에서 등급화(영국), 국가지정과 지방지정을 구분하는 곳(스칸디나비아 지역, 포르투갈, 동유럽지역 국가들) 등이 있다. 문화재 지정대상은 자동지정방법과 지정기준에 의한 지정방법이 있다. 자동지정은 연대 또는 시대를 기준으로 일정한 기준이 되면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리스에서는 1830년 이전의 기념물들은 지정대상이 되며, 특히 1453년 이전의 기념물들은 주변 경관을 포함하여 지정 보호한다. 덴마크에서는 1536년 이전의 부동산문화재는 모두 지정대상이며, 노르웨이에서는 1537년 이전의 문화재와 랍(Lapp)족의 기념물과 유적, 100년이 넘는 난파선들을 모두 지정하게 되어 있다. 말타(Malta)에서는 50년이 넘는 건축물과 유적은 모두 보호하며, 아이슬란드에서는 1939년 이후의 건축물은 문화재지정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있다. 이와 같이 문화재 지정기준은 문화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볼수 있다.

유럽 건축유산보호협약 제7조에는 문화재와 함께 주변경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재 주변 경관보호는 문화재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도시계획과 건축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기념물보호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연방 자연보호법(1987)’에서 지정기념물 주변과 역사상 중요한 경관보호를 위해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영국

영국은 유럽의 여러나라 중에서 문화재보존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이다. 영국의 문화재보호 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3원조직에 의해 운용된다. 중앙정부에서 문화재보존을 담당하는 부서는 도시계획·지방자치 및 환경오염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성 소속 주택 및 건조물유산국에서 역사적 건조물 및 고대 기념물 보호 및

보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존실무를 총괄하고 문화재지정 및 보존계획 수립과 건축허가업무를 관장한다. 국민신탁기금(National Trust)을 비롯한 민간 단체 운영은 정부보조와 회비, 기부금 등 각종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882년의 ‘고대기념물보호법(Ancient Monuments Protection Acts)’, 1913년의 ‘고대기념물법’, 1953년의 ‘역사적건조물 및 기념물법(Historic Buildings and Ancient Monuments Act)’, 1979년의 ‘고대기념물 및 고고학지구법(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s)’ 등이 추가 된다.

1944년에는 특별보호건축목록을 작성하여 도시지방계획장관은 건축·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 보호목록에 작성하도록 지방계획청에 지시(등록과 동시에 지도에 표시 도시계획에 기본도면 제시)하고 1급과 2급은 법정목록에 기재하여 현상변경을 위해 지방계획관청에 2개월 전에 보고하도록 하고, 3급은 보충목록에 등재하기로 하였다.

교회건축 보존을 위해 1924년에는 교회보존중앙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교회가 본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아니라 자체로 보존하도록 하고, 심의회는 전통기법 유지, 숙련기술자 확보 등에 노력하며 1951년에 교회수리위원회로 개칭, 역사적 교회 보존을 위한 Trust조직, 교회수리자금 조달업무를 맡고 있다.

영국의 문화재 관련 기구의 특징은 중앙정부의 환경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에서는 법령의 제정·정책수립·보존, 재정교부 등에 국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존지역의 지정, 보존계획의 수립, 보존지역 내의 건축허가 등 보존에 관한 거의 모든 실무를 집행하고 있다.

문화재보존 업무의 대부분이 고건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민간단체가 발달되어 있으며 문화재보존을 미적 가치나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쾌적한 환경(amenity)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도시개발과 환경정책이 잘 조화되고 있다.

(3) 프랑스

프랑스는 문화부가 중심이 되어 문화재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앙에 청단위의 문화유산총국을 두고 총무부·고고학부·국보예술지정부·역사유물 및 사적부 등 4개의 부와 4개의 위원회, 3개의 감시반을 두고 있다. 또한 각부의 책임자인 부장 밑으로 차장과 담당관이 있는데 총무 및 공공건물 담당차장·역사적 건물 및 국립궁 담당차장·역사예술유산목록 담당차장·고고학 담당차장·민속문화재 담당관·사진유산 담당관·보급선양 담당관·기술재정 담당관 등이 있다.

관계 위원회로는 역사유적위원회·민족유산위원회·고고학연구위원회·역사학술유산목록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다. 지방의 문화재는 지방연방위원회·문화재지방관리위원회·지방국립위원회 등에서 상기한 각 부의 지방 보존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과 역사예술유산목록 담당차장이나 사진유산 담당관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프랑스의 문화재보호 행정은 1913년에 제정된 ‘역사기념물법’과 1930년에 제정된 ‘경관보호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기념물법’은 역사상·미술상의 견지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건조물·토지 등의 보호와 보존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법률로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과 비슷한 문화재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관보호법’은 미술적·역사적·풍경적인 관점에서 그 보존이 공익에 합치하는 천연기념물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1943년에는 역사기념물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1913년의 법을 고쳐 유적과 역사기념물 주위 500m를 경관보존지구로 지정하고, 곳에 따라서는 500m 이상 지역까지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 역사지구 보존을 위해 1962년에는 ‘역사지구보존법’을 만들었다. 역사지구보호 국가위원회를 만들고 전체지역의 문화재가치를 판단하여 개발계획을 세울 때에는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건설부 시가지 개발부문과 공동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건축, 도시, 경관유산 보전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문화유산보존지구

(ZPPAUP)제도는 1993년에 나타난 것으로 문화재보존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여 시도지사가 최종승인을 하게 하였다.

(4)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문화재보호에 지방분권적 전통이 강하고, 문화행정이 관광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교육부에서 문화재 보호를 담당한다. 교육부 고대유물미술국에 고대유물미술심의회를 두고 심의회 산하에 보호감독 사무소를 전국에 설치하고 있다. 중요미술관이나 유적은 국가에서 관리하며 기념물의 외관은 보존하고 내부개조는 가능하여 박물관 등으로 활용한다. 역사광장에서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공연을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역사유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961년 12월 ‘미술적 및 역사적 중요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였다. 이 법률의 입법 취지는 이미 1939년에 제정한 ‘미술적 및 역사적 중요재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볼 수 있다.

1939년의 ‘미술적 및 역사적 중요재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지방·법인 및 사인이 소유하는 미술적·역사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이다. 이 법률의 기초는 공공이익을 위해 각종 물건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제한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하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물건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제한, 미술적 가치를 갖는 건조물을 변형시키는 행위의 금지, 미술적 가치를 갖는 부동산의 사용상의 계약 및 제한 등이 그것이다.

(5) 독일

독일은 바이마르(Weimar)공화국 헌법에서 “미술적, 역사적 기념물은 국가에서 보호”하도록 하였고 연방법에서는 ‘독일문화재의해외유출방지에관한법(1955)’만 제정하고, 각 연방법에서 문화재 보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바이에른주 ‘기념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1973)’을 보면 기념물 목록에 등록하여 공공하면 기념물로 지정되며, 지정은 주정부 기념물관리

청이 지방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기념물관리자(소유자 등)와 해당지역 향토보호원이 등록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기념물 보존, 수리, 재난예방은 소유자의 의무이며 보상기금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기금은 주정부와 지방기관에서 반씩 부담한다. 현상변경허가제도와 유적 기념물에 대해서는 발굴허가제와 타목적 이용시 허가제가 있다. 토지에 유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인정되는 경우, 주변 상황으로부터 판단하여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 지방행정기관은 유적 기념물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경우 발굴보호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발굴보호지역은 토지이용 계획안에 표시하고, 유적기념물 발견시 지방관청이나 연방 기념물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후 일주일간 현상변경이 금지된다.

(6) 미국

미국의 문화재 행정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문화재보호 책임은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맡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역사보존자문위원회”가 있다. 위원회 사무국은 내무부 국립공원국에 있고 대통령 교서 행태로 문화재 보호정책이 제시된다. 역사보존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 구성원은 내무부, 주택도시개발부, 경제부, 행정부, 재무부 등 각부의 장, 법무장관, 내셔널트러스트 위원장 등 7인과 연방정부 이외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10명(주·지방정부 직원,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연보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의회의 결정을 받아 시행한다.

미국의 문화재법으로는 미국연방의 문화재보호법의 기본법은 1906년 ‘고대유물법(Antiquities Act)’과 1935년 ‘사적법(Historic Preservation Act)’ 및 1966년 ‘국가역사보호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의 세 가지 법률이다. ‘고대유물법’은 공유지에 있는 국유기념물보존규정이며, ‘사적법’은 내무부에서 역사·고고 등 미국내 중요자산 보호를 위

해 만든 것이다. 국유 이외에 사유의 기념물도 역사보존정책을 강력히 하기 위해 내무부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국가역사보존법’은 미국의 역사, 건축, 고고, 기술, 문화와 관련되는 유산을 주정부와 지방의 문화재로 보존하고 있다. 미국 역사상, 건축상, 고고학상, 문화상 현저한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지정을 확대하고, 공공의 복지를 위해 내셔널트러스트가 그 책임을 갖도록 하고 적절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지정 역사유적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국법(1916)’에서는 연방 내무부가 국립공원과 국립기념물 보존사업에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나. 동북아 국가의 문화재 관리

(1) 한국 - ‘문화재보호법’⁵¹

한국의 문화재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령은 1916년 조선총독부 제 52호로 제정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 최초의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후 1933년 조선총독부 제 6호인 ‘조선보물고적승명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제정되었다. 해방이후 1948년 정부수립후 문교부 문화국에 문화보존과를 두고 명목상 문화재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일제 시기부터 있었던 ‘조선보물고적승명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그대로 유지하였다. 1961년 10월 구황실재산사무총국과 문교부 문화보존과를 합쳐 문화재관리국을 두었고, 1962년 1월에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문화재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7장 73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최초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제정 이후 지금까지 20차에 걸쳐

⁵¹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서울: 지식산업사, 2000).

개정한 바 있으며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문화재 범위의 확대와 국제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의 인정
(1982년 제7차 전문개정)**

문화재를 ‘우리나라’로 한정되었던 것을 삭제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문화재 관계 국제조약의 가입당사국의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과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하였다.

(나) 동산문화재 등록제 폐지(1984년 제8차 개정)

50년 이상의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소유자·점유자가 문화공보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하였다. 1970년부터 실시한 등록제는 등록의 저조와 소유자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여 문화재를 은닉함으로써 동산문화재의 소유를 음성화하는 등 부작용이 큼에 따라 비현실적인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재의 전시와 공개, 유통을 양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다) 매장문화재 발굴 소요경비의 국가부담(1995년 제14차 개정)

매장문화재의 그 발굴 소요경비는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을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문화재보호·관리의 기본원칙 등의 신설(1999년 제16차 개정)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조항을 신설하였다.

(마) 매장문화재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등 실시(1999년 제16차 개정)

건설공사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지역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판명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 및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설정 및 매장문화재 기록 작성,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 육성지원 의무를 신설하였다.

(바) 문화재행정 절차의 간소화(1999년 제16차 개정)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의 일환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의 관리상황 보고의 의무 및 공개의무, 문화재의 수리 등 착수 및 완료시의 신고의무, 외국문화재 국내반입 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문화재매매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보수교육의무를 폐지·정비하였다.

(사) 보호물·보호구역의 적정성 여부 검토(2,000년 제18차 개정)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아)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2002년 제21차 개정)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저한 인류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2) 일본⁵² - 문화재보호법

일본 문화재보호법은 1950년에 기존의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 1897)’,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19)’, ‘국보보존법(1929)’, ‘중요미술품의 보존에 관한 법률(1933)’ 등을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한 그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세계문화의 진보에 공헌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민속문화재·기념물·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사회 경제의 혼란 속에서 문화재 황폐화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앞선 법들을 바탕으로 종합하고 무형문화재, 민속자료, 매장문화재 등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문화재 보존, 활용에 대한 제도를 체계화한 것이다. 소화 25년 4월 참의원 문부위원회에서 발의하고 같은 해 5월 제정, 8월부터 시행하였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다. 소화 29년(1954) 개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발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주요내용은 중요문화재에 대한 관리 단체 지정(소유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 신설, 보유자 인정제도, 민속자료 보호제도를 신설하여 유형문화재에서 분리, 유형의 민속자료에 대해서는 중요민속자료로 지정,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토목공사시 매장문화재 호장지역에 대한 사전 발굴제도,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무단 현상변경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지방공공단체의 문화재보호업무를 명확히 하였다.

소화 43년(1968) 개정은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기 위해 문화재보호위원회와 문부성 문화국이 통합되어 <문화청>이 발족되면서 ‘문화재보호법’

⁵² 장호수, 『문화재학개론』.

도 일부 개정되었다. 문화재 지정 및 해제 권한은 문부대신이 갖고, 그밖의 권한은 문화청장관이 갖게 되었다. <문화재보호심의회>를 설치하여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문부대신과 문화청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소화 50년(1975)에는 1954년 개정 이후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1974년 5월 중의원 문교위원회와 <문화재보호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개정을 연구검토하여, 1975년 5월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었고, 같은 해 6월에 법안을 마련하여 10월부터 시행하였다. 고도 성장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정세 변화, 개발사업 증가에 따라 문화재 보호에 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보호대상 문화재의 확대, 매장문화재 보호강화, 전통건조물 보호제도 신설, 문화재 보존기술 보호제도 신설, 지방공공단체의 문화재보호행정체제 정비 등이 새로운 내용이다. 매장문화재 보호제도를 크게 바꿔 문화재보호와 더불어 개발과의 조정을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공공법인은 토목공사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있는 사업을 할 경우 사업계획을 문화청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문화청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의 확정, 시행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등은 문화청장관이 고시한 기관들을 말한다(251개 기관, 1975년 문화청장관 고시). 그 밖에 <민속문화재>로 이름을 바꾸고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지정제도를 신설하였고, 유형문화재 가운데 학술상 가치가 높은 역사자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 중요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규제대상으로 하였고,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보유자뿐만 아니라 보유단체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성 8년(1996)에는 건조물 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보호권한을 명확히 하였다. 등록제도는 근대건조물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라질 위기에 대비하고 긴급히 보호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등록제도는 지정제도를 보완하고 문화재 보호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이며 지역문화를 보존하는 뜻이 있다. 지정도시와 중핵도시에 권한을 위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중요문화재의 활용을 촉진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과 지방에 권한위임, 규제완화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특색은 포괄성과 재산권 존중 및 중점보호주의에 있다. 우선 포괄적인 성격은, 제 2차세계대전 전전(戰前)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 ‘국보보존법’, ‘중요미술품 등의 보존법’ 등을 1950년대 재정한 ‘문화재보호법’에 통합함과 동시에 거기에 무형문화재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에서 볼 수 있다.

(3) 중국 - 문물보호법

중국에서 문화재행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는 국무원 산하 문화부 소속의 국가문물국에서 담당한다. 국가문물국은 문물처와 박물관처 등 11개의 실과가 있으며 사업단위로는 고궁박물관·중국혁명박물관·중국문물연구소 등 14개의 박물관·연구소·출판사 등이 있다.

지방행정단위에서는 지방정부별로 문화청 산하의 문물관리위원회·문물사업관리국·문물고고연구소·박물관 등에서 담당한다.

국가문물국의 주요업무는 문물사업의 발전전략·방침·정책의 연구·관련된 법규 및 조례와 제도의 제정, 전국 중점문물단위의 수리방안과 보호 범위, 전국 중점고고발굴항목과 고고발굴단의 자격, 일급 문물의 관리와 심사, 문물의 국외반출, 문물상점의 지도 감독과 국내문물 시장과 문물의 대외판매 문제 등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⁵³

(가) ‘중화인민공화국문물보호법’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문물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文物保護法)’은 1982년에 제정하고 1991년에 개정하였으며 모두 33개조로 이루어졌다. 법에 근거하여 국가문물국이 제정한 50개조의 실시세칙이 있으며, ‘고척추동물

⁵³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참조.

화석과 고고인류화석보호방법’, ‘역사문화명승보호관리방법’, ‘고고발굴관리방법’ 등을 따로 만들었다. 이 법을 만들면서 1961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문물보호관리잠행조례(文物保護管理暫行條例)’는 폐지되었다.

법 제정의 목적은 중국의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계승하여 애국주의와 혁명전통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문화재관리 책임은 법에 따라 전국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법에 따라 관리, 감독 및 지도를 하며, 문화재 관리의 실제 책임은 지방정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안의 지하, 수중, 영해에 들어있는 모든 문화재는 국가소유로 되어 있으나, 기념건축물·고건축물·전통문화재 등에 대해서는 집단이나 개인소유를 인정하며 소유권은 법률로 보호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는 반드시 문화재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관에서는 개인이 등록한 문화재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기념건축물이나 고건축물을 사용하는 기관에게는 이들 건축물의 정비와 보수 책임이 지워진다.

(4) 북한 - ‘문화유물보호법’

북한에서는 지정문화재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의 개념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헌법 제4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건설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시킨다.”라는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관한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문화재관련법에도 그와 같은 원칙을 담고있다.⁵⁴

북한의 문화재보호에 관한 법령을 보면 1946년 4월 29일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전문 11조)과 시행규칙(전문 28조), 시행수

⁵⁴ 장호수, 『문화재학개론』 참조.

속(전문 13조), 그리고 1948년 11월 1일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전문 4개항), 물질문화유물보존에 관한 규정,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규정(전문 11조 5항) 등을 제정하여 유적 발굴·보존·관리 등을 행하고 있다.

(가) ‘문화유물보호법’⁵⁵

북한은 1994년 4월 법령을 개정하여 ‘문화유물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우리의 문화재보호법과 유사한 성격의 법으로 문화재보호에 대한 기본법령으로 볼 수 있다.

‘문화유물보호법’은 제1장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제 2장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제 3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4장 문화유물의 보존관리, 제5장 문화유물의 복구 재건, 제6장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지도 통제 등 총 6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 주는 나라의 귀중한 제보’를 ‘문화유물’로 정의 하고 있다(제 2조). 문화유물에는 원시유적·성·봉수터·건물·무덤·탑·비석·도자기가 마터·쇠부리터 같은 역사유적과 생산도구·생활용품·무기·조형예술품·고서적·고문서·인류화석·유골 같은 것이 속한다고 예시하고 있다(제 2조 후단).

한편, 문화유물을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 일반문화유물로 평가하고 국보문화유물과 준국보문화유물의 지정은 정무원이, 일반문화유물의 평가는 중앙문화유물보존기관이 한다. 북한의 문화유물보호법은 기본원칙과 관리의 측면에서 몇 가지 특색을 지니고 있다.

첫째,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에서 문화유물은 국가만이 소유하고 (제 3조) 문화유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7조).

⁵⁵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참조.

둘째, 문화유물보호 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앞선 과학기술 성과를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학적 관리부문을 강조하고 있다(제 7조)

셋째, 문화유물보존 기관에서는 국보적 의의가 있는 문화유물의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 영구 보관토록 하는 등 세부적이며 실천중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역사유물은 해당 시설이 갖추어진 보존고에 정히 보관하며 손상될 수 있는 진귀한 역사유물은 모조품을 만들어 이용하여야 한다(제 32조)고 규정하여 문화재보존에 대한 원칙을 법제화하였다.

다섯째, 문화유물보존 기관은 청소년 학생들과 인민들 속에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단일성 등을 강조하는 출판보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사업으로 문화유산을 적극 관리하고 있다(제48조).

북한에서는 유물과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정무원에 ‘문화유물보존지도국’을 두고 있으며 지방의 유물과 유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하에 ‘문화유적관리소’를 두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인 관리와 함께 문화유적과 유물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사회과학원 산하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각 도의 ‘역사박물관’ 역시 같은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국은 ‘문물보호법’, 일본은 ‘문화재보호법’, 북한은 ‘문화유적보호법’, 한국은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상당한 비중으로 엄격히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고 있다.

관리는 중국은 유물의 관리책임은 지방정부이나, 용도를 변경할 시는 국무원(총리실에 해당)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일본은 문화재청을 장관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문광부장관 산하의 차관급의 문화재청이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북한은 정무원(총리실에 해당)에 문화유물보존지도국을 설치하여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IV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법제적 방안

1. 개설

동북아 제국가의 문화유산을 공동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의 분류체계의 확립과 문화재 보호 및 관리, 불법거래의 방지 등의 관점에서 동북아 각국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 국가간 협력과 공동의 규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적용될 국제규범의 정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동북아의 경우 이러한 국제규범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다.

동북아에 적용 가능한 세계적인 차원의 문화재관련 국제규범이나 양자 조약 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역 내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실효적 규범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은 원래 동아시아 지역은 인권, 군비축소, 어업, 환경보호 등 여러 국제법 분야에서 지역협력을 위한 지역적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것과 관련이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치, 그리고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등이 이와 같은 협력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역내 국가들간의 이해의 증진과 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문화협력을 위한 지식공동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선결적인 조건이 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동북아 문화유산의 실질적인 공동관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공동의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이것을 국내규범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 동북아와는 달리 이미 어느 정도 이러한 문화적 지식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1954년에 문화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동북아의 경우에도 유럽의 문화협정에 준하는 동북아문화협정 또는 동아시아문화협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협정을 통하여 동북아문화유산의 공유를 개념화하고 이를 동북아문화유산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의 관리를 위한 정부간 협력기구 또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협력기구의 공동설치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선 동북아문화장관회의 그리고 동북아 문화지식인 포럼 등을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민간분야와 정부분야 모두 동북아 문화유산에 대한 지역 내의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동북아문화재위원회의 구성에 이를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구체적인 발전을 위하여 유럽이나 아세안의 공동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법적 발전이 중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매년 동북아 문화도시를 지정하여 동북아가 인정하는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관심을 표하는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문화유산 관리와 보호에 관련된 국제 및 국내 규범의 현황

가. 개요

동북아의 문화유산 관리와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은 이미 이 보고서의 선행 장들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 있다. 특히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개념과 분류 그리고 일본, 중국, 한국, 북한의 문화재 보호 관련규범들은 이미 자세히 소개되고 검토된 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대략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아직 소개되지 않았거나 미진하게 소개된 국제규범들을 중심으로 그 개요를 소개하기로 한다.

나. 각 규범의 내용

(1)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of 1970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제16차 유네스코 총회(1970년 11월 14일, 불란서 파리)에서 채택한 협약이다. 문화재의 국가간 교류는 인류문화에 관한 지식을 높이고 문화생활을 살찌우는 것이며 나라간 상호존중과 이해를 높이는 것이므로 문화재를 도난, 도굴, 불법반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책임이며, 다른 나라의 문화재도 존중하는 것이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 협약에서는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 동산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각 나라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 소유이거나 지정보호받지 않는 문화재는 협약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협약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기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문화재는 그 나라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다.

- (가) 그 나라 국민 개인이나 집단이 창작한 문화재, 그리고 그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나 무국적인이 창작한 것으로서 그 나라에 중요한 문화재.
- (나) 그 나라 영토안에서 발견한 문화재.
- (다) 출처국 주무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고고학, 민족학, 자연과학 탐사단이 수집한 문화재.
- (라) 자유협의를 통해 주고받은 문화재
- (마) 선물로 받았거나, 출처국 주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구입한 문화재.

각 나라는 중요문화재 목록을 작성하고 도난문화재에 대해서는 널리 그 사실을 알리야 하며 협약 가입국들은 불법반출 문화재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이를 출처국에 알려야 한다. 또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을 설립하여 법안과 규칙을 제정하고, 중요문화재 목록을 작성하며, 연구기관 설립, 고고학유적 보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도록 권고하였다. 문화재 반입과 반출을 막기 위한 증명서제도 도입 등 국내 입법과 이행을 촉구하며 불법 반입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반환절차를 통한 원상회복 (restitution)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 성립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소급 적용은 아니다.

(2) 수중문화유산보호에 관한 협약(2001, 유네스코)⁵⁶

협약은 해안국들이 영해상에 있는 수중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유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국제연합해양법협약(1982년)」과 「고고유산보호에 관한 유럽협약(1992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에서 만든 ‘수중문화유산 보호 관리에 관한 국제헌장’을 참고하여 국제법률학회 문화유산위원회에서 1994년에 협약 초안을 만들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 5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거쳐 2001년 7월에 최종안을 만들어 그해 11월 2월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협약을 채택하였다.

협약에서 수중문화유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A. “수중문화유산(Underwater Culture Heritage)”은 전체 또는 일부분이, 한동안(periodically) 또는 계속해서 적어도 100년 동안 수중에 들어있던 문화적,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성격을 지닌 인류(human existence)의 모든 자취로서 아래와 같은 것을 말한다.
- a. 유적, 구조물, 건축물, 유물 및 인류 유해(human remains)와 함께 그것들이 놓여있는 고고학적, 자연적 상황(together with their archaeological and natural contexts)

⁵⁶ 장호수, 『문화재학 개론』 참조.

- b. 선박, 항공기, 그밖에 운송 수단이나 그것들의 어떤 부분, 그들의 화물
이나 다른 내용물들과 함께 그들이 놓여있는 고고학적, 자연적 상황.
 - c. 선사시대 유물들
- B. 해저에 놓여 있는 관로와 전선은 수중문화유산으로 보지 않는다.
- C. 해저에 놓인 관로, 전선 이외의 시설물이라도 아직 사용되고 있는 것
은 수중문화유산으로 보지 않는다.

(3) 공적, 사적 공사로 위협시 되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
(1968 유네스코)⁵⁷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여기에서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 A. 부동산문화재, 이를 테면 고고유적, 역사유적, 과학유적, 구조물 또는
각종 유구로서 역사상, 학술상, 예술상, 건축상 가치를 갖는 것(종교적
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있을 수 있음), 여기에는 전통구조물군, 도시와
농촌의 역사지구, 그리고 과거의 문화이지만 현재까지 살아있는 민족
특유의 구조물들이 포함된다. 땅위에 드러나 있는 유적뿐 아니라 땅
속에서 발견되는 고고, 역사유적도 부동산문화재로 본다. 또한 문화재
라는 말에는 문화재가 있는 배경(주변환경)을 포함한다.
- B. 동산문화재, 부동산문화재 안에 들어 있거나 그 안에서 발견된 것, 그
리고 땅 속에서 들어있는 것들로서 고고, 역사유적이거나 그 밖의 장소
에서 발견되는 것들이다.

문화재에는 사실이 확인되고 지정된 건축, 고고, 역사유적과 구조물뿐
아니라 지정 및 분류되지 않은 과거의 흔적들과, 예술상, 역사상 중요한
최근의 유적과 구조물들도 포함된다.

⁵⁷ 위의 책.

(4) 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특성보호에 관한 권고(1962 유네스코)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 and Sites)

1962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제 1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특성보호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였다.

“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특성보호에 관한 권고”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특성보호에 관한 권고”의 목적상, 자연경관의 미와 특성의 보호라 함은 문화적 또는 미적 의의를 가지고 있던가 혹은 전형적인 자연적 환경을 구성하는 천연 또는 인공적인 농촌 및 도시의 경관의 보존 및 가능한 한 그의 복구를 의미한다. 규정은 자연보호를 위한 조치를 보완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5) 역사지구의 보전과 현재의 역할에 관한 권고

역사지구 및 건축지구(지방 특유의 양식을 포함하여)라 함은 건축물군, 구조물 그리고 개방공간으로서 고고유적과 고생물유적이 포함된 것으로, 도시 또는 농촌환경에서 인간 거주와 결과 나타난 것이며 고고학상, 건축학상, 선사 및 역사상, 관상상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밀접히 관련된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지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선사유적, 역사도시, 옛 주거지구, 크고 작은 마을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기념물군들이다. 기념물군들은 현상대로 잘 보존되어야 한다.

(6) 동산문화재보호를 위한 권고

여기에서 동산문화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동산문화재는 인류창작 능력을 표현한 것. 또는 자연진화를 증거하는 모든 움직임 수 있는 자산으로서 고고학상, 역사상, 학술상, 기술상 가치를 갖는 다음의 것들을 말한다.

- A. 땅에서, 그리고 수중에서 이루어진 고고학 발굴조사에서 나온 것들,
- B. 각종연모, 토기, 비문, 동전, 인장, 보석, 무기, 장례유물(미이라 포함) 등 골동품들
- C. 역사기념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들.
- D. 인류학, 민족학상 가치 있는 것.
- E. 역사와 관련된 것들(과학기술사, 군사, 사회사를 포함하여), 국가지도자(사상가, 과학자, 예술가)와 관련되는 것,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과 관련된 것.
- F.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들, 바탕이나 재질에 관련없이 손으로 제작된 유화, 도화(산업도안이나 손으로 제작했더라도 공업생산품은 제외), 인쇄원본, 포스터, 사진 가운데 원 창작품, 예술 조립 및 합성품의 원작, 조상이나 조각(재질에 관계없음), 유리, 세라믹, 금속, 나무 등으로 만든 응용예술작품
- G. 원고, 판본, 고서 필사본, 책, 문서, 특별한 목적으로 만든 인쇄물들
- H. 화폐, 우표 등 가치있는 것들
- I. 각종 기록물, 서적, 지도, 사진, 영상물들
- J. 가구, 수예, 돛자리, 옷, 악기 등
- K. 동식물, 광물 표본 등

각 나라는 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가치기준에 따라 그 영토 안에서 보호해야 할 동산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채택한다.

(7) 문화재의 국제교류에 관한 권고(유네스코 1976)

나이로비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1976.10.26~11.30)는 ‘문화재의 국제교류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al property)’를 채택한 바 있다.

이 권고문에 의하면 문화재는 문명의 기본 요소로서 다양한 문화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 유산과 지식을 상호 교환하는 문화재교류의 증진은

인류의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데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문화기관 사이에 교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 각국에 산재해 있는 유산을 인류의 공동 문화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여러 방향의 문화적 교류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모든 문화재는 인류공동의 유산이므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위하여 문화재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출입 등의 전파를 쉽고 가능하도록 하고, 교류협정의 체결시에 문화재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위한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8)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1972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아래에서 ‘세계유산 협약’으로 줄여쓴다.)은 1972년 10월 17일-11월 21일, 불란서 파리에서 열린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UNESCO) 제 17차 총회에서 논의하여 그 해 11월 16일 채택되었다. 협약을 채택하게 된 동기는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인류 유산들이 손상과 파괴가 심해지는 것에 대비하고 인류 유산이 세계인의 공동의 소유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유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을 걱정하며, 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호하는 책임이 모두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유네스코현장의 정신에 따라 인류 역사에 보편적 가치를 갖는 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한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협약은 국가 유산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보살핌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국이 국가차원에서 가장 높은 보존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협약 제4조와 5조에는 각 가입국은 가능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자국 영토 내 문화,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과 전시를 위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수단이 취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러한 기능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수단이 취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나 이상의 서비스 기구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협약은 또한 국제협력에 훌륭한 도구가 된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나 행동을 통제하기 보다는 인류역사의 중요한 것들은 기리기 위해 국가, 기구, 개인간의 협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에 기초한 것이다. 세계유산 지역의 등재신청과 보존에 관한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분야의 학문이 발전하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협약은 먼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된다. 문화유산은 기념물(Monuments), 건축물군(groups of Building), 유적(Sites)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기념물이란 건축물, 기념조각 및 회화작품, 고고자료, 금석문, 동굴거주, 복합유구 등으로서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여전히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건축물군은 독립된 또는 서로 연관된 건물들로서 건축시술상으로는 배치상태로 보아 균일한 것들로서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현저히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자연유산에 대해서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물리적 생물학적으로 형성된 자연생성물로서 관상상, 학술상 현저히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 지질 또는 자연지리적 형성물 그리고 위협에 처한 동식물의 특정 서식지로서 학술상 현저히 보편적 가치를 지녔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곳. 자연지역이나 특정지역으로서 학술상, 보존상, 또는 자연미가 현저히 보편적 가치를 지닌 곳들이다.

협약은 유산보호를 위해 국내보호와 국제보호에 대한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국내에서 유산의 보호, 보존, 활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 원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지역 개발계획을 세울 때에는 유산보호를 반영한 종합정책을 채택하도록 하였고 유산 보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9)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1972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 및 국제적 보호조치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⁵⁸

- A. 체약국은 자국 내의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하고 활용하여 다음 세대에 전승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의무이다.
- B. 체약국은 자국 내의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C. 지역개발계획에 문화 및 자연유산보호를 반영한 종합정책을 채택한다.
- D. 자국의 문화·자연유산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 E. 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보호·보존·활용 및 기능회복에 필요한 법적·과학적·기술적·행정적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한다.
- F. 체약국은 문화 및 자연유산이 세계의 유산이라는 것과 그 유산의 보호에 협력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전체의 의무라는 것을 인식한다.
- G.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 위치하는 유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상을 입힐 위험이 있는 조치를 고의로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1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of 1970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A. 협약의 배경

문화재는 문명과 문화의 기본요소의 하나를 이루며, 그 참된 가치는 그 기원, 역사 및 전통적 배경에 관련하여서만 평가될 수 있으며 자국의 영

⁵⁸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역 내에 존재하는 문화재를 도난, 도굴 및 불법적인 반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부과된 책임이며 도덕적 의무이다.

문화기관으로서의 박물관·도서관·기록보관소들은 그 수집품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도덕적 원칙에 따라 수집된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보호는 긴밀히 협력하는 국가간에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조직화됨으로써만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유네스코가 본 협약을 채택하였다.

B. 주요내용

본 협약의 당사국은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입과 반출 및 소유권의 양도가 그 문화재 출처국의 문화유산을 고갈시키는 주된 원인의 하나이며, 본 협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화재를 반입·반출 또는 소유권을 양도함은 불법이다.

C. 국가문화유산의 구성

본 협약의 당사국은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재산이 각국의 문화적 유산으로 구성됨을 인정한다.

- a. 개인 및 집단에 의하여 창조된 문화재 또한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인이 영역 내에서 창조된 중요한 문화재
- b. 국가영역 내에서 발견된 문화재
- c. 출처국 주무관청의 동의하에 고고학, 인종학 또는 자연과학 사절단에 의하여 획득된 문화재
- d. 자유로이 합의된 교환의 대상이 되어 온 문화재
- e. 출처국 주무관청 동의하에 선물로서 증여받거나 합법적으로 구입한 문화재

D. 주요약속 시행

증명서 도입: 문제된 문화재의 반출이 인가되었음을 반출국가가 명기한

적절한 증명서를 도입하며, 반출증명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반출을 금지한다.

국내법에 의한 조치: 박물관 및 유사기관이 타 당사국으로부터 출처되어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취득을 방지하도록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비용부담과 보상: 문화재의 회수 및 반환에 따른 모든 비용은 요청당사국이 부담하며 선의의 매수인이나 정당한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등록부의 비치: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이동을 제한하고 각구마다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형벌 또는 행정제재를 조건으로 하여 골동품 취급자로 하여금 문화재의 각 품목의 출처, 공급자의 성명 및 주소와 매도된 문화재의 각 품목 명세와 그 가격을 기록하는 등록부를 비치하도록 한다.

점령지 반출의 불법: 외국의 군대에 의한 일국의 점령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강제적인 문화재의 반출과 소유권의 양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기금운용 등: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을 방지하고 본 협약의 시행에서 발생하는 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가능한 충분한 예산을 문화유산의 보호책임을 지는 국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 목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Agreement concerning Cultural Assets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f 1965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1965년 문화재 협정’은 모두 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딸린 부속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본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이 추가되었다. 본 협정의 전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⁹

⁵⁹ 김형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서울: 삼우사, 2001).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양국의 학술 및 문화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 국민간의 문화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한다.

제 2 조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간의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 효력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제 3 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학술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타방국의 국민에게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자)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조약 제182호)

“한국측 대표는, 일본국민의 私有로서 한국에 연유하는 문화재가 한국측에 기증되도록 희망한다는 뜻을 말하였다.

일본 대표는 일본국민이 소유하는 이러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한국측에 기증함은 한일 양국간의 문화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게도 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12) Agreement on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Mongolian People's Republic of 1991(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1991년 3월 28일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의 문화협력 협정은 모두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협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인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간에 현존하는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문화·교육·과학·신문·정보·공중보건 및 체육 분야에서 양국관계의 증진·발전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 신뢰 및 긴밀한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은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문화, 교육, 대중매체, 공중보건, 체육 및 청소년 분야에서의 관계를 발전시킨다.

- (가) 학자, 연구원, 교사, 의료진, 학생, 전문가의 교류 및 연수
- (나) 언론인, 기자, 작가, 미술가, 음악가 및 무용가의 교류
- (다) 예술 및 민속공연단의 교류 장려
- (라) 각국에서 전시회 및 영사회의 개최
- (마) 운동경기의 개최 및 운동선수, 지도자, 전문가의 방문 장려
- (바) 청소년의 교류 및 동 단체간의 협력
- (사) 라디오·텔레비전 방송단의 교류 및 영화·정기간행물 및 기타 출판물의 교환
- (아) 문학·예술작품의 번역 및 복제 장려
- (자) 학교와 교사의 이용을 위한 교육이론과 교육방법에 관한 소책자 및 기타 자료의 교환
- (차)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타방법과 수단

제 2 조 각 체약당사국은 고등교육기관에 타방국의 문학, 역사, 사회 및 경제분야에 관한 강좌 및 강의의 개최를 장려한다.

제 3 조

1. 각 체약당사국은 관계법령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인 학생들이 일방 체약 당사국의 교육기관에의 입학허가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획득한 학위, 대학교 및

대학의 증명서가 학문상의 목적으로 자국 영역에서 취득한 상응하는 학위 및 증명서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고려한다.

제 4 조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문화, 교육, 과학, 신문, 정보, 공중보건, 예술, 체육 및 기타 기구간의 직접적인 접촉의 수립 및 발전을 장려한다.

제 5 조 체약당사국은 역사적 기념물, 문화재의 복구와 보존 및 문화 예술기관의 물적 기초를 강화함에 있어서 협력을 장려하고 전문가의 연구 및 공동작업의 개발을 장려하고 용이하게 한다.

제 6 조 각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 안에 타방국의 문화기관의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 “문화기관”이라 함은 문화, 정보센터, 학교, 도서관 및 그 설립목적이 이 협정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기관을 말한다.

제 7 조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에서 몽골학과 한국학을 장려한다.

제 8 조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에서 친선단체의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제 9 조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국민들이 타방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서, 문서, 신문 및 기타 자료를 포함한 모든 공식출판물에 타방국의 역사적, 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

제 10 조 이 협정시행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재정조건을 첨부한다.

이 세부계획서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는 양 당사국의 상호협의를 기초 위에서 시행된다. 이 경우, 동 합의는 각서교환형식을 취한다.

제 11 조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 12 조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적어도 그 종료 6월 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다음 5년간 연장된다.

이 협정의 종료에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완료되지 아

니한 계획, 교류, 합의 또는 사업은 계속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3) Agreement on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f 199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1994년 3월 28일 북경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의 문화협력 협정은 모두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협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양국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교육·학술·문화·예술·언론·라디오·영화·텔레비전·출판·청소년 및 체육분야에서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계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국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문화협력의 발전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제 2 조 계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하여 교육 및 학술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교사, 학자 및 전문가간 방문, 연구 및 순회강연회의 상호 교환을 장려 및 지원

나. 상호주의하에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자국내 관련당국과 기관의 장학금 지급 및 자국 영토내에서의 면학 및 학술연구에 적합한 여건 조성을 장려

다. 양국 고등교육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

라. 양국 교육기관간 교과서, 각종 교육서적 및 자료 교환을 장려

마.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의 참석을 장려 및 지원

제 3 조 계약당사자는 상대국의 권한 있는 교육기관에서 발급 또는 수여

한 학위, 졸업 증서 및 기타 증명서의 상호 인정문제를 검토한다.

제 4 조 계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방법을 통해 문화 및 예술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

가. 작가, 예술가 및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인사들의 상호 교환 방문

나. 예술단, 예술가 및 예술공연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순회공연 상호 교환

다. 양국 문화기관 및 예술기구간 친선관계 수립 장려

라.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행사 및 교류

제 5 조 각 계약당사자는 호혜의 원칙하에 자국 국민에게 편견없이 상대국의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데 유리한 여건 조성을 장려한다.

제 6 조 계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해 출판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

가. 상대국 국민에 의해 제작된 뛰어난 문학, 예술 및 학술 작품의 번역과 출판 장려

나. 문화와 예술에 관한 서적, 잡지 및 각종 자료의 교환 장려

다. 서적의 공동출판, 전문가와 대표단 교환, 서적 전시회 개최 및 자국에서 개최되는 서적박람회의 상호 참석 장려

제 7 조 계약당사자는 양국 도서관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제 8 조 각 계약당사자는 자국 내에서 확립된 관행에 따라 상대국 국민에게 이 협정과 일치되는 목적을 가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타 문화, 학술 및 교육기관에의 모든 가능한 접근을 제공한다.

제 9 조

1. 계약당사자는 상대국의 문화·예술·역사·학술 및 문화유적의 보존에 관한 자료의 교환과 공동조사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
2. 계약당사자는 관련 국제협약과 자국 국내법에 따라 일방 계약당사자의 문화재의 불법수입, 수출 및 이전을 방지하고, 이러한 문화재의 소유권자에의 반환에 관한 정보교환 및 조치장구에 있어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계약당사자는 역사적 문서, 유물 및 유적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 교류를 장려한다.

제 10 조 계약당사자는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신문 및 각종 자료 등 상대국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자국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

제 11 조 계약당사자는 양국의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및 언론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

제 12 조 계약당사자는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 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국제 청소년행사에서 공동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제 13 조 계약당사자는 체육기관간 교환 방문 및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행사에서의 참석을 통하여 체육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 14 조

1. 계약당사자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과 목적을 이행하는데 유리한 여건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 이 협정에 의거한 교류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조건은 양국의 관계당국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 15 조 계약당사자는 문화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 협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기 위하여 2년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제 16 조 계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관련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문화협력 계획 또는 약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 17 조 계약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이 협정을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다.

제 18 조

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채약당사자가 적어도 협정종료 6월전에 타방 채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거해 시행된 어떠한 협력계획의 효력이나 기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나. 기타 참고할 만한 국내외 규범과 국제조직

(1) 유럽의 공통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 (가) The European Cultural Convention(1954)
- (나)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Architectural Heritage of Europe(1985)
- (다) The Europea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1992)
- (라) The European Landscape Convention(2,000)

(2) 문화재 보존을 위한 국제기구들⁶⁰

(가)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소(유네스코)

ICCROM--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 근거규범---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of 1957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소 규약)

⁶⁰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1956년 문화재보존과 복구를 위한 연구 및 국제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뉴델리에서 ‘국제문화재 보존복구연구센터’규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1968년 12월에 이미 가입한 바 있으며, 1965년 이후에는 ICCROM의 관계 전문가가 방한하여, 석굴암과 남대문 등의 안전을 진단한 바 있다.

(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1965)

ICOMOS--International Council of Monuments and Sites

1965년 창설되어 1970년 이후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이 협의회의 목적은 기념물과 유적에 관한 연구와 보존을 촉진하고, 관계기관과 각국 국민들에게 자기 나라의 기념물과 유적 및 문화유산에 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이 분야의 보존·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기구·연구소들과 각 개인들 사이의 상호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 세계유산위원회

The World Heritage Committee(1976)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8조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해 정부간위원회(세계유산위원회)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설치한다”는 규정에 따라 1976년에 구성하였다.

주요 임무는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세계유산일람표 등록대상 문화재 심의결정 및 공표, 세계유산기금의 확보 운용, 위협에 처한 유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업무 등이다.

조직과 운영은 의장과 5명의 부의장 등으로 구성되는 의장단과 임기 6년의 위원국으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산위원회 가입국 총회(1997.10.12)에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1997~2003)으로 선출되었다.

(라) 국제자연자원보존연맹(1948)

International Union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1948년에 창설되어 스위스 그랑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자연의 다양성의 세계적 보전과 자연자원의 이용을 생태학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181개국의 과학자·전문가 10,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적 학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9년 인도총회때 한국자연보존협회에서 가입한 바 있다.

(마) 국제박물관회의(1946)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1946년 창설되어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 유네스코와 협력하고 있으며 147개국 15,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바) 국제문화재보존연구소(1950)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nservation of Historic and Artistic Works)

문화재 보존복구의 과학적 및 기술적 문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 연구, 보급하고, 이 분야에 관한 연구를 특별히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국제회의, 문헌발간 및 전문가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정, 장려 또는 개설하고, 문화재의 보존복구에 관련된 일반적 및 특수문제에 관하여 조언과 권고를 행하며, 연구생과 기술자의 훈련을 지원하고 문화재의 복구작업 수준을 향상한다.

(3) 관련되는 국내 주요 규범들⁶¹

(가) 문화재보호법 제21조, 76조(수출 등의 금지)

반출의 허가: 국보·보물·천연기념물 또는 중요민속자료는 국외로 수

⁶¹ 위의 책.

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21조 제1항)

허가신청서 제출: 국보·보물·천연기념물이나 중요민속자료의 국외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출예정일 1월 전에 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반출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출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반출기간의 연장: 문화재청장은 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1항).

국무회의의 심의: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21조 제3항).

천연기념물의 수출: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아 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제1항(수출금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 할 수 있다.

시·도지정문화재 및 동산문화재의 준용: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법 제 76조 제 1항의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가운데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78조(외국문화재의 보호)

A. 조약 및 협약의 효력

인류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화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 보호되는 외국 문화재는 조약과 문화재보호법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법 제 78조 제1항).

우리나라가 체결 또는 협약한 사항은 ‘문화재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파리: 1970년 제 16차 유네스코 총회)’ 과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파리: 1972년 제 17차 유네스코 총회)’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1965년 일본 도쿄)’이 있다.

B. 외국 문화재의 유치 및 반출

불법반출 외국 문화재의 유치: 문화재청장은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당해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 문화재를 박물관 등에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법 제78조 제3, 4항).

소유자에게 반환: 불법반출 외국 문화재로 보관중인 경우 외국문화재가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그 외국 문화재가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당해 반출국이 그 문화재를 회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때에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법 제78조 제5항).

반출국에 반환: 문화재청장은 외국문화재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문화재가 자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계약에 의한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문화재가 반출국에 반환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78조 제6항)>

(다) 문화재보호법 제78조의2(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

2002년 12월 30일 신설된 문화재보호법 제78조의 2 “세계유산의 등록

및 보호”는 다음과 같다.

- A.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저한 인류보편적 가치를 갖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등록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B. 문화재청장은 세계기록유산의 등록,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의 선정 등을 비롯하여 인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문화재의 국외선양사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C.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으로 등록 또는 선정된 문화재(이하 “등록세계유산등”이라 한다)는 그 성질의 구분에 따라 그 등록 또는 선정된 때부터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 및 그 주변경관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가.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를 위한 민간 및 정부 차원의 공론의 장 형성: 문화지식인네트워크의 형성과 정부간협의기구의 설립

(1) 국제레짐이론과 동북아 문화지식인네트워크의 형성

동북아에서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내 정부와 시민사회 상호간의 협력이 절실하다.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인식이나 문화유

산보호와 관련된 경제적 동기 등이 각국의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할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국제관계이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국제레짐이론에 따르면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집단, 즉 지식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⁶².

이러한 국제레짐이론은 국제환경협약의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지만 동북아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선도적 레짐이론가 중의 한 사람인 Peter M. Haas는 이러한 지식공동체에 대해

“지식공동체는 자신의 전문영역에 있어서의 정책관련 지식에 대하여 권위를 갖춘 지식전문가 집단간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지식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전문성을 인정받은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또는 자연적 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러한 영역에 있어 어떠한 조치가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지에 대한 규범적 신념을 공유한다”⁶³

라고 한다

한 국제법학자는 이러한 국제적문화지식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1) 법학자, 고고학자, 예술사가를 비롯한 학자들, (2) 정부공무원과 문화재보호와 관련한 국제기구(특히 UNESCO) 직원들, (3) 문화재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NGO 및 기타 민간기구(예컨대 ICOM)의 전문가들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⁶⁴

(2)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정부간 협의기구

⁶² 이근관, “동아시아지역의 문화재보호 및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3호(2003), p. 130.

⁶³ 이근관, 위의 글. Peter M. Haas, “Epistemic Communities and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Regime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edited by Volker Rittberger, 1993), p. 179.

⁶⁴ 위의 글, pp. 130-131.

의 설립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는 법적, 정치적 사안이므로 민간차원의 협의네트워크와 함께 정부간의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간의 협의기구는 예컨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처럼 이미 세계단위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서는 동북아지역의 지역 내 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기구가 긴요하다고 본다.

동북아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은 동북아의 문화적 공통성의 확인에 의해 크게 뒷받침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협력은 동북아의 정치, 경제 등 전 영역에서의 협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우 긴요하다.

이러한 정부간 협의는 단계적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차적으로 동북아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문화장관회의와 같은 협의기구를 만들고 논의의 진전에 따라서는 동북아문화재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간 협의의 대상을 문화유산에만 국한하지 말고 보다 광범위한 지역 내의 문화적 문제를 다룰 수도 있다. 협의의 차원도 반드시 장관회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무자협의회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정부간 협의기구가 다룰 의제는 동북아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 전부에 미칠 수 있을 것이지만, 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과 문화재의 공동개념 범주의 정립, 문화도시의 지정과 동북아 공통의 문화행사의 기획,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 공동의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다.

(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를 위한 공론장의 형성

이처럼 민간차원의 문화지식인공동체와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정부간의 협의기구를 형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공론장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법적 협

력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문화협력을 위한 협정 또는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동북아 각국의 문화지식인 그룹과 정부관계자들 사이에 현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통의 인식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를 위한 공문장의 형성은 법적 협력의 기초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를 이루는 것이다.

나. 문화재의 개념과 분류 방법 등 문화재 행정의 표준화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리를 위한 첫 출발은 관리대상이 되는 문화유산과 문화재에 대한 개념과 분류방법에 대한 상호이해의 확립과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강릉단오제의 인류구전 및 문화재 걸작 등록에 대해 중국이 단오절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개념정립과 분류방법이 동북아국가들 사이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서 공동의 문화유산보호 및 관리에서 공동의 보호 및 관리대상이 되는 문화유산과 문화재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일 국가 안에서도 국가가 관리하는 문화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문화재가 있듯이 국제적인 문화유산이나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도 세계적 차원은 아니면서도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서 동북아 국가 공동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문화유산과 문화재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경우 동북아 국가들에 있어서 하나의 문화적 콘텐츠가 중복되지만 상이한 문화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화적 콘텐츠의 개념적 이해와 분류에 대한 상호협의를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국가 간 문화재 행정은 문화정책의 목표에서부터 방식, 추진체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동의 보호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북아 각국간의 문화유산 관리에 있어서 다소간의 표준화가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등 동북아 국가간의 문화재 분류방법은 서로 일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동의 관리와 보호에 애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므로 각국간의 논의를 통하여 문화유산과 문화재의 분류방법의 표준화를 시도하거나 동북아 공동의 분류법을 개발하여 공동의 문화유산 관리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계 차원에서의 공동의 문화유산 관리와 보호의 대상의 선정, 그리고 새로운 분류방법이나 표준화방법 등에 대한 협력적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동북아문화지식인 포럼 및 정부간 협의기구 채널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해결의 방식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공동규제

(1) 동북아에서의 문화재의 불법적 거래규제의 필요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일어난 정치적, 경제적 변화는 동북아에서의 문화재의 불법적 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동북아지역에서 진행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중인 도시화와 근대화 작업은 많은 문화재의 물리적 보존에 위협이 되어 왔으며 근대화과정에서 많은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발굴되어 왔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부를 형성한 동북아 지역의 기업과 개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재의 수집 등에 관심을 가지는 계층을 확대시켜 문화재의 수요자 층을 두텁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증대된 문화재에 대한 수요는 동북아 각국에서 문화재에 대한 밀거래가 성행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고구려사 논쟁에서 발견되듯이 동북아 국가들이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자국에서 생산된 문화재를 회수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것도 문화재의 불법거래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문화재의 불법거래의 양상은 경제적, 정치적 동기 이외에 민족적 정체성과 자존감의 회복 등 다양한 관점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재의 불법거래규제는 매우 복잡한 국제관계의 양상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고 동북아국가 상호간의 협력과 이해가 긴요한 분야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관련된 히가사컬렉션 사건은 동북아의 문화재 불법거래사건이 가지고 있는 복잡 미묘한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⁶⁵.

(2)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지역적 조약 체결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서 제16차 유네스코 총회(1970년 11월 14일, 불란서 파리)에서 채택된 1970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UNESCO협약(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1995년의 UNIDROIT협약(UNIDROIT 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 2001년 수중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2001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같은 일반적인 다자조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1970년의 협약은 대부분의 규정이 집행을 위하여 당사국의 국내법상 입법조치를 요하고 있을 뿐아니라 당사국들이 자국의 형편에 따라 신속적으로 협약상의 규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약상의 의무 중 일부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협약의 적용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우

⁶⁵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 p. 106 이하 참조.

리나라도 아직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리고 1995년 UNIDROIT협약은 1970년 협약이 가지는 자기집행적 성격의 결여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통일적 규율을 가지고 있으나 동북아국가 중 일본과 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2001년의 수중문화유산보호협약도 문화재의 자국 영토로의 반입, 거래 및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재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규범이 동북아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거나 아직 관련 조약의 미체결국이 많아서 실효적이지 못한 점이 많으므로 동북아지역에서의 문화재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서는 동북아지역 나름의 지역적 협약 또는 협정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 세계적인 협정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국가들로서는 가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적용대상지역이 넓은 만큼 각국의 사정에 대한 고려로 인하여 집행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좀더 지역실정에 부합하고 실행가능한 지역적 국제협약 또는 국제협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북아지역의 문화재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문화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문화재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다. 이것은 중국이 이 점에 적극적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도 문화지식공동체와 정부간협의기구 등 동북아 문화의 공론장을 통한 사전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동북아 각국의 국내법 정비

동북아의 실정에 적절한 문화재 보호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정이 체결 된다고 하더라도 그 협정이 동북아의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합의가 국내법적 수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동북아간의 문화재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약체결과 국내법 정비를 모니터링하는 동북아문화지식인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다시 말하면 국제협정의 체결 못지 않게 각국의 문화재에 관한 국내법의 정비도 이러한 문화재 보호 및 불법거래 방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중국의 경우 문화재의 불법반출을 방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불법 반입을 방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도 1999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문화재보호법 제78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입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결여 되어 있어 1970년 UNESCO협약의 국내이행의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국가간의 각종 협의채널을 통하여 문화재보호와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동북아 각국의 국내법 정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지역협정 체결을 위해서도 문화지식공동체와 정부간협의기구 등 동북아 문화의 공론장을 통한 사전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민법상 선의취득 제도에 대한 특별규정의 마련

도난 또는 불법거래된 문화재의 불법거래방지를 위해서는 민법상 선의취득제도의 배제 또는 제한을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선의취득제

도는 대륙법계에서 비교적 강한 보호를 받고 있는데 판매자의 권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가 도난 등에 의해 권원이 확실하지 않은 물건을 구입 하더라도 정당한 권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미법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 법계 국가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도난품일지라도 그것이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문화재를 구입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문화재의 불법거래를 막기 힘들게 된다. 또한 이 제도를 활용하여 도난 문화재를 세탁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의 UNIDROT협약은 제3조 제1항에서 “도난 당한 문화재의 점유인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 협약 제4조는 선의취득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 현재 이 협약에는 한국과 일본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서 선의취득으로 인한 문제는 동북아 국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하고 있고 중국은 아직 민법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⁶⁶.

향후 동북아 국가간의 협의를 통해 국내법을 정비하든지 아니면 국제 협약에의 공동가입 또는 새로운 지역협정의 체결 등을 통하여 선의취득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라. 문화적 약탈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

동북아 국가 사이에 문화적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거 동북아의 불행한 역사로 인한 문화적 부채가 청산되어야 한다. 즉, 피해를 입힌 측은 주로 일본이 되겠지만 동북아 국가간의 문화재 약탈행위 또는 불법 반출 문화재 등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있는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

⁶⁶ 위의 글, p. 116 이하 참조.

지하다시피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와 함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이 한일간에 체결되었고 이 문서에는 부속서 및 합의의사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의 체결과정에서 한일양국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어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일본측의 반출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반환”이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증여”라는 용어가 채택되지 못하고 결국 “인도”라는 용어가 채택됨으로써 협정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 봉합으로 마무리지어졌다.

이처럼 한일간의 문화재반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일본과 북한간의 문화재 반환협상을 계기로 동북아 전반에 걸친 문화재반환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이 문제는 자칫하면 국가간의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관한 국제규범과 현실여건을 반영한 실효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최근 발굴된 1945년 로버츠 위원회(American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and Salvage of Artistic and Historic Monuments in Europe)가 작성한 “극동지역에서의 골동품, 예술품, 서적, 문서 및 기타 문화재의 반환에 관한 원칙” 제3조가 참조되어야 할 것이다⁶⁷. 동원칙 제3조는 1894년 불평등조약 하에서 그리고 일본의 점령기간 중 일본이 탈취한 모든 문화재는 강박 하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약탈물로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여하튼 동북아 국가 사이의 문화유산과 문화재의 공동관리와 보호의 문제는 약탈문화재의 반환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넘지 않고는 진척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는 지난하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문화지식인 공동체를 통하여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문화재의 반환을 위하여는 국가간 협상의 방식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자의 기증 그리고 매입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⁶⁷ 위의 글, p. 101.

로 경우에 따라 무상반환, 소장자의 기증, 매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각종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동북아 국가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문화재 반출의 경우와 현재의 소유권 상황 등을 분류하여 유형별로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반환의 방식을 마련하고 이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제도를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당사국가간에 따라 다소간 문제의 양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동북아 문화협력의 큰 틀 안에서 일반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국가별, 사안별 구체적 해결책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동북아 국가간 이러한 문화재 반환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Agreement concerning Cultural Assets and 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f 1965)에 대한 합의의사록”에서는 단지 그러한 문화재가 한국측에 기증될 것을 희망하고 권장한다는 의견교환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및 그를 위한 공동연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형성

동북아의 문화재 및 문화유산은 동북아 각국의 상호관계와 영향 가운데 형성된 것도 많고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나 동북아 다른 국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문제된 강릉단오제의 경우도 단오는 중국에서 유래되었으나 강릉단오제는 한국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고구려 문화재의 경우 한국과 중국 모두가 중요한 국가적 문화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의 문화유산과 문화재는 동북아 국가 상호간에 공동관심사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북아 국가들간의 협의를 통해 연구하고 복원 및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문화재 복원 기술 수준

이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동북아 국가 공동의 연구는 문화재 기술의 공동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문화재나 문화유산의 공동연구와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제협약에는 2001년 유네스코의 수중문화유산보호에 관한 협약, 1968년 유네스코의 공적, 사적 공사로 위협시되는 문화재 보존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Endangered by Public or Private Works) 그리고 1962년 유네스코의 고적 및 명승지의 미관 및 특성보호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afeguarding of the Beauty and Character of Landscape and Sites), 역사지구의 보전과 현재의 역할에 관한 권고, 동산문화재보호를 위한 권고 등이 있으나 동북아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율은 동북아지역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그를 위한 공동연구를 위한 동북아 지역의 국제협정과 그를 뒷받침하는 국내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적 차원의 노력 못지않게 전문가의 연수와 공동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메커니즘의 형성도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관련 협정이나 국내법 규범이 이러한 협력메커니즘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이처럼 동북아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및 그를 위한 연구에 있어서의 협력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 보존을 위한 국제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국제기구에는 ① 유네스코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소(ICCROM--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근거규범---Statutes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of 1957: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소 규약), ②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International Council of Monuments and Sites, 1965), ③ 세계유산위원회(The World Heritage Committee, 1976), ④ 국제자연자원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1948),

⑤ 국제박물관회의(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 1946), ⑥ 국제문화재보존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Conservation of Historic and Artistic Works, 1950)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구들이 동북아의 문화유산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으며 동북아의 고유한 문화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 많지 않다고 사료된다. 궁극적으로 동북아 문화유산의 공동연구와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동북아에 특유한 국제기구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그러한 국제기구로서 동북아문화유산위원회 또는 동북아문화재위원회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바. 문화유산의 해외전시와 관련되는 관세법 등의 문제점의 해결

동북아 문화도시의 선정 등 문화교류사업을 위하여 공동의 문화사업을 수행해나감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해외전시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관세법 등 관련국가의 수출입통제에 편의를 제공해 주고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며 문화재의 선정이나 포장, 운송 그리고 보험가입에 대한 기준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제규범으로서는 1976년 유네스코의 문화재의 국제교류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Cultural Property), 1961년의 전시회, 전람회, 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Concerning Facilities for the Importation of Goods for Display or Use at Exhibition, Fairs, Meetings or Similar Events of 1961) 등이 있다.

그러나 역시 동북아의 사정에 보다 타당하고 광범위한 이슈들을 다룰 포괄적인 국제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며 나아가 동북아 각국의 국내법의 정비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V

결론

동북아 문화공동체 사업 구상: 문화유산의 공동연구와 관리를 위한 5대 선도사업

앞에서 도출한 유럽의 사례와 동북아시아 초점국가들의 정체성 정치를 전반적으로 감안하여 본 연구자들은 동북아 문화유산의 공동연구 및 관리를 위한 준비 및 그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선도 사업을 제안한다.

<표 V-1>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축 및 문화유산의 공동연구 관리를 위한 5대 선도사업과 1개 파일럿 프로젝트

1	문화유산의 공동연구·관리를 위한 협의체인 ‘동북아 문화유산 공동연구·관리위원회’ 구성 (동북아 문화 포럼 준비 모임 성격) 상기 위원회의 가동 가능성과 경험 축적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문화재 보존 및 보수 기술 개발 및 교류 사업 위원회’ 출범
2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한 제반 활동 지원법’ 및 ‘동북아 문화유산 보호법’ 제정 입안
3	문화유산과 문화자산 분포에 따른 ‘문화광역시’ 또는 ‘문화광역권’ 설정
4	공동문화기반의 의식적 개발과 계획적 촉진을 위한 ‘동북아 국가 문화장관 협의체’ 구성
5	‘동북아시아 문화유산DB 시스템’(가칭 ‘동북아시아유산네트워크’) 구축

동북아시아 초점국가인 세 나라는 국민국가로서 단시간 안에 너무나 인상적인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갈수록 심화되는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우리 나라 안에서 우리 힘만으로’ 이룩했다는 ‘자기완결적 폐쇄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도 동북아 세 나라는 과거에 서로 전혀 교류 관계가 없었던 것 같은 서술 방식을 택함으로써 각 나라 국민들에게 ‘역사적 쇄국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현대화 과정에서 타민족과 타국가에 대해 일본 제국

주의가 자행한 부정의한 행태는 그 동안 범아시아적 차원에서 한 번도 체계적으로 반성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것이 아니었다라면 서로에게 충분히 유익했을 각 나라의 정치적, 문화적 능력은 서로에 대한 반목과 갈등으로 계속 낭비되는 악순환이 21세기에 들어온 현재까지 반복되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정치적 관계의 확산,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초국가적 문제들의 누증 등 이 지역에 공동체적 해결 방안이 요구되는 문제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상호관계는 계속 누증되어 가는데, 각 나라의 '정체성 정치'는 이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각 국가의 정체성 정치와 그것의 국내적 함의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런 냉담한 자족주의적 분립이 계속되는 한 삼국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역량을 창출할 때 이웃 나라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이 자기 나라만의 위축된 해결책을 찾는 상태가 계속되리라는 것이다. 결국 불신의 비용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다른 두 나라와 달리 국가의 성격이 가장 유연하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로 개성의 다양화를 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굉장한 호조건으로 자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자신이 좀더 자신을 갖고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다양한 개성들이 혼성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충분히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동북아시아 삼국 가운데 현재 대한민국에 '자유'의 자원이 가장 많이 저수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국가체질을 내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 이 때문에 동북아 문화공동체 문제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보다 개방적이고 관용스러우면서도 정의의 기준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우리 나라의 문화체질부터 대거 정비하는 일부터 착수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면서 이와 나란히 한국 시민사회의 문화관련 NGO와 정부 유관 기관 및 기타 재계, 학계의 관심자들을 시발점으로 하여 중국과 일본의 동종의 관

심자들까지 참여시켜 ‘동북아 문화유산 관심공동체’를 형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관심 차원의 공동체는 가장 먼저 동북아시아 각 나라의 국민들이 왜 서로 이해하기보다 적대하는지, 거기에 문제되는 요인들을 적출하여 의제화시키는 일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심공동체는 문화유산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공동연구 및 관리를 위한 논의를 하는 ‘동북아 문화유산 위원회’, 문화유산을 포함하여 동북아의 전반적인 문화를 논의하는 ‘동북아 문화 포럼’으로 발전할 것을 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본문에서 충분히 기술한 대로 동북아 문화유산의 공동 규정과 상호 교류가 각 국가의 정체성 정치에 의해 심각하게 규정되어 갈등을 재연시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동북아 문화유산 위원회에서는 정치적 관련성이 가장 미약한 활동, 즉 문화재의 보존과 보수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교류와 같은 파일럿 프로젝트부터 추진하여 교류와 대화의 경험, 그리고 인적 신뢰를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문화유산을 통한 상호이해와 보다 고차적인 관계설정을 목표로 하는 이 관심공동체의 구성과 그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국가는 장기적으로 유럽연합에 비견할 수 있는 ‘아시아 공동체’ 또는 ‘아시아 연합’을 내다보는 가운데 ‘동북아시아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한 제반 활동 지원법’ 및 동북아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동북아시아 문화유산 보호법’을 입안하여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동북아 전 국민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동북아 제국가의 문화유산을 공동관리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의 분류체계의 확립과 문화재 보호 및 관리, 불법거래의 방지 등의 관점에서 동북아 각국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 국가간 협력과 공동의 규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적용될 국제규범의 정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동북아의 경우 이러한 국제규범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다.

현재 문화재나 문화유산의 공동연구와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제협약이 존재하고 있으나 동북아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율은 동북아지역에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그리고 그를 위한 공동연구를 위한 동북아 지역의 국제협정과 그를 뒷받침하는 국내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적 차원의 노력 못지 않게 전문가의 연수와 공동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메커니즘의 형성도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관련 협정이나 국내법규범이 이러한 협력메커니즘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동시에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의 이해와 관리에 관해 보다 넓은 시각에서 그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개시되어야겠다. 이때 문화유산에는

- 국내 사적지
- 한국사 관련 국외 사적지
- 생활터전 및 민속 자원
- 음식자원
- 의상자원
- 언어자원 (한자, 한글 및 기타 소수언어 등)
- 고전적 가치와 의의를 지니는 각종 기록물과 기록보관소
- 영화 및 방송 자료원 (시청각 아카이브)
- 박물관 (중앙, 지방자치체, 대학, 사설)
- 미술관
- 음악당
- 도서관
- 타문화와의 언어적 교류를 전담할 번역원

등을 망라하여 ‘문화광역시’ 또는 ‘문화광역권’ 개념에 따라 상호 특색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문화의 경제적 연관성을 극대화하기 위

해 광역권에 맞는 문화인력 양성 계획을 수립하여 각 대학에 위촉하고, 대중적으로는 프로젝트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대비한다는 뜻도 있다.

(4) 이런 노력들과 나란히 정부는 문화부 차원에서 유럽평의회와 각료 회의의 기능에 상응하는 정례 모임을 중국 및 일본 정부와 쌍무적으로 또는 다자적으로 주동함으로써 **공동문화기반을 의식적으로 개발하고 계획적으로 촉진하는 정부간 다자 또는 공동 협의**를 주도할 구상에 착수해야 한다.

(5) 가장 현시적인 성과가 나올 일로, 유럽유산네트워크의 전례를 따라, (3)의 문화유산 영역별로 중국 및 일본 쪽과 광범한 **‘동북아시아 유산 DB 시스템’(가칭 ‘동북아시아유산네트워크’)**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위에서 구상한 내용들은 유럽연합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루아침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국이 서로 꾸준히 인내심을 가진 노력들을 할 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북아 국가들이 ‘문화유산’에 대해 자국의 ‘소유’의 개념보다는 공동 ‘향유’의 개념으로 인식할 때, 동북아에서의 과거 역사적 불행을 극복하고 진정한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3권. 서울: 인물과사상사, 2004.
- 고구려연구재단. 『중국의 ‘동북공정’, 그 실체와 허구성. 고구려연구재단 제 1차 국내학술대회』. 서울: 고구려연구재단, 2004.
- 권용혁 외. 『한·중·일 3국 가족의 의사소통구조 비교』. 서울: 이학사, 2004.
- 김달수. 『日本 속의 韓國文化』. 서울: 조선일보사, 1987.
- _____. 오문영·김일형 편역. 『일본 열도에 흐르는 한국혼』. 서울: 동아일보사, 1993.
- _____. 배석주 역. 『일본 속의 한국문화유적을 찾아서. 고대사의 열쇠를 쥔 도시, 나라』. 서울: 대원사, 1995.
- _____. 배석주 역. 『일본 속의 한국문화유적을 찾아서 2. 일본 고대사의 주역, 도래인』. 서울: 대원사, 1997.
- 김약수·이영진 편저. 『문화재조사연구입문』. 서울: 학문사, 2000.
- 김형만. 『문화재반환과 국제법』. 서울: 삼우사, 2001.
- 들루슈, 프레데리크 편. 윤승준 역. 『새 유럽의 역사. 유럽 공동의 역사 교과서』. 서울: 까치, 1999.
- 매클라우드, 로이 외. 이종인 옮김.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에코의 서재』. 서울: 시공사, 2004.
- 민족문화사 편집부. 『고구려 고고학』. 서울: 민족문화사, 1993.
- 박종철·한용섭 외. 『평화변영정책의 이론적 기초와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백영서. 『동아시아의 귀환. 궁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0.

- 송영배. 『동서철학의 교섭과 동서양 사유방식의 차이』. 서울: 논형, 2004.
- 양승운·최영수·이희수 외. 『바다의 실크로드』. 서울: 청아출판사, 2003.
- 양태진. 『미리가보는 북산의 문화유적 순례』. 서울: 백산출판사, 1995
- 이경재. 『일본속의 한국문화재』. 서울: 미래M&B, 1993.
- 이보아. 『박물관학 개론』. 서울: 김영사, 2000.
- 이븐 바투타. 정수일 역. 『이븐 바투타 여행기 1』. 파주: 창비, 2001.
- _____. 『이븐 바투타 여행기 2』. 파주: 창비, 2001.
- 이장훈. 『유럽의 문화도시들』. 서울: 자연사랑, 2001.
- 인문사회연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서울: 인문사회연구회·통일연구원, 2004.
- 전국철학교육자연대회의 펴냄. 『한국도덕·윤리교육백서』. 홍윤기 책임편
집. 서울: 한울, 2,000.
- 정문교. 『문화재행정과 정책』. 서울: 지식산업사, 2001.
- 정수일. 『문명교류사 연구』. 파주: 사계절, 2002.
- _____. 『문명의 루트 실크로드: 비단길 속에 감추어진 문명교류사』. 서울:
효형출판, 2002.
- _____. 『실크로드학』. 파주: 창비, 2001.
- _____. 『이슬람 문명』. 파주: 창비, 2002.
- 조선일보. 『일본속의 한민족사』. 서울: 조선일보사, 1987.
- 천광성. 백지운 외 역. 『제국의 눈. 동아시아의 비판적 지성』. 파주: 창비,
2003.
- 최원식·백영서.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서울: 문화과지
성사, 2001.
- 코모리 요우이치·타카하시 테츠야 엮음. 이규수 역. 『국가주의를 넘어서』.
서울: 삼인, 1999.
- 타나카 히로시 외. 이규수 역. 『기억과 망각. 독일과 일본, 그 두 개의 전후』.
서울: 삼인, 2000.
- 하문식. 『고조선지역의 고인돌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1999.

- 한국교육개발원. 『Historia 8 — 66년도 폴란드 역사교과서 — 발췌번역
본. 독·폴 교과서 협의사례 연구. 연구자료 RM 2002-5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2.
-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지역통합의 꿈
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헨리 올·앙리 꼬르디에 공저. 정수일 역. 『중국으로 가는 길』. 파주. 세계
절, 2002.
- 혜초 저. 정수일 역주.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문명기행 1』. 서울: 학교재,
2004.
- 山本博文. 『日本史 B』. 東京: 東京書籍, 平成15年 4月.
- 石井進・五味文彦 외. 『詳説 日本史 B』. 東京: 山川出版社, 2004.
- 九州の中の朝鮮文化を考える會. 『九州のなかの朝鮮』. 東京: 明石書店,
2002.
- 金達壽. 『朝鮮 — 民族・歴史・文化 —』. 東京: 岩波書店, 昭和37年.
- 小熊英二. 『<民主>と<愛國>. 前後日本ナツヨナリズムと公共性』. 東
京: 新曜社, 2004.
- 菊竹淳一・中吉功 外. 『古代の高麗と日本』. 韓國文化院 監修 東京: 學
生社, 1990.
- 朴鐘鳴. 『京都のなかの朝鮮』. 東京: 明石書店, 1999.
- _____. 『奈良のなかの朝鮮』. 東京: 明石書店, 2000.
- _____. 『滋賀のなかの朝鮮』. 東京: 明石書店, 2003.
- 田邊裕. 『新しい社會 歴史』. 東京: 東京書籍, 平成16年.
- Schüddenkopf. 『20년간의 서유럽 역사교과서 개선 활동: 1945-1965. 연
구자료 RM2002-5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2.
- Study on Cultural Cooperation in Europe -Interarts and EFAH-
(June 2003)

2. 기타

개혁전략연구소.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방안. 제4차 월례포럼』.
2004. 9.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 CIKC Fellowship for Textbook Specialists of
China 2004년도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 중국 북경사범대학출판사
교과서 편집자 초청 연수, 2004. 9.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한-중 역사전쟁, 고구려(사)가 ‘위협’하
다”. 중국역사왜곡공개토론회』.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2003.
10.

한일교육자교류회 · 나라시교직원조합. 『제2회한일교육교류회. 나라시평
화교육여행』. 정신문화연구원 · 전국역사교사모임, 2004. 8.

文化廳. 『文化財保護法』. 平成14年
_____. 『文化財保護法の一部改正する法律案資料』. 第159回國會, 平成
16年

文化財研究所. 『奈良文化財研究所概要 2003』. 2003. 6.

유네스코 한국위원회(www.unesco.or.kr).

세계유산센터(www.unesco.org).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www.icomos.org).

국제문화재보존복구센터(www.iccrm.org).

국제자연보존연맹(www.iucn.org).

국제박물관위원회(www.icom.org).

국제민속축제민속예술기관협의회(www.cioff.org).

세계유산도시조직위원회(www.ovpm.org).

세계기념물기금(www.worldmonuments.org).

유럽연합유산보존기구(www.european-heritage.net).

유럽연합(www.europa.eu.int).
세계은행(www.worldbank.org).
내셔널 트러스트(자연신탁국민운동)(www.nationaltrust.org.uk).
한국내셔널 트러스트(www.nationaltrust.org.kr).
한국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
대만국립고궁박물관(www.npm.gov.tw).
중국고궁박물관(www.dpm.org.cn).
중국역사박물관 (www.nmch.gov.cn).
일본동경박물관(www.kyohaku.go.jp).
일본경도박물관(www.kyohaku.go.jp).
일본나라박물관(www.narahaku.go.jp).
일본고려미술관(www.koryomuseum.or.jp).

부록 I

中國 - 東北地區古代遺跡輯錄

東北地區古代遺跡輯錄

朴燦奎* · 孫泓**

동북지구는 종래로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의 중요한 거주지의 하나였다. 장기간의 역사발전과정에서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은 동북을 개발함으로 동북지역에 수많은 역사유적을 남기었다.

최근 백년 이래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중국 동북의 역사면모를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고고작업을 진행해왔었다. 동북지역에서 발견한 각 시대의 여러 가지 유적만 하여도 수만 곳에 달한다. 이는 중국 동북지역의 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자료이다. 전에 동북의 각 성, 시, 현에서는 분분히 文物志를 편찬하여 이러한 유적들을 일일이 기록하였다. 또한 瀋陽東亞研究中心에서는 《中國考古集成·東北卷》를 편집하여 동북지구의 고고학자들의 성과를 묶어 모음으로써 연구의 참고로 하게 하였다.

이전부터 동북의 학자들은 동북고고유적의 目錄索引을 편집하고자 하는 념원이 있었다. 그러나 거대한 작업량으로 하여 지금까지도 완성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통계해 보았는데 동북지역의 고대유적만으로 약 5, 6만 곳에 달하였다. 이를 모두 묶어 모은다는 것은 단기간에 완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주요한 것만을 골라 기록하고 舊石器·新石器·青銅時代·戰國秦漢·魏晉隋唐·遼金·元明清등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각 유적은 다만 그 명칭, 지점과 시대를 열거하였을 뿐이다.

이 책이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참고로 되었으면 하고 그 어떤 부족이 있다면 곧 지적해 주시길 바란다.

* 박찬규(연변동북아연구중심 교수)

** 손 홍(심양동아연구중심 교수)

I. 舊石器時代遺跡

구석기시대의 유적은 동북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발견 되되었다. 아래 문장은 그중의 중요한 것을 개괄하여 서술한 것이다.

1. 遼寧省舊石器時代遺跡

요녕지역에서 발견한 구석기시대의 인류유적은 비교적 많으며 또한 비교적 이르기다 하다.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유적들이 있다.

營口金牛山遺址: 요녕성 營口縣 (駐大石橋鎮) 에서 남쪽으로 16리 떨어져 있는 永安鄉 西田屯 서쪽의 오솔길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淤泥河와 가깝다. 金牛山遺址은 동북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고대 인류화석의 산출지와 구석기시대의 초기 문화유적일 뿐만 아니라 초기로부터 후기에 이르는 고대 인류화석과 구석기시대의 문화유존도 포괄하고 있다.¹

藏山遺址: 요녕성 營口縣 白寨鄉 陳家寶村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져 있는 藏山의 동남쪽 산비탈의 동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구석기시대의 초기유적에 속한다.²

海城小孤山洞穴遺址: 海城市에서 동남으로 60리 떨어져 있는 小孤山村의 동남쪽 海城河의 오른쪽 기슭의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晚更新世遺存에 속한다.³

本溪秒後山遺址: 遼寧省 本溪縣 山城子鄉 太子河의 지류인 湯河의

¹ 《中國日報》 1984年 11月 20日; 呂遵誥: 《金牛山猿人化石發現記》, 《文史知識》1985年4期; 吳汝康: 《“金牛山人”是猿人嗎?》 《光明日報》1987年 6月 14日; 張鎮洪: 《遼寧地區遠古人類及其文化的初步研究》, 《古脊椎動物與古人類》第十九卷第二期, 1981年4月.

² 崔德文等: 《遼寧營口藏山洞穴地點試掘報告》, 《人類學學報》13卷 3期, 1994年.

³ 張鎮洪等: 《遼寧海城小孤山遺址發掘簡報》, 《古人類學報》 第四卷第一期, 1985年 2月.

남쪽 기슭의 廟後山の 남쪽 비탈에 위치하고 있는데 太子河에서 1리쯤 떨어져 있다. 여기에는 동굴유적이 4곳이 있고 그 높이는 강바닥보다 약 30여 미터 더 높이 하고 있다. 이 곳 유적은 또한 遠古人群이 장기적으로 거주한 지역이기도 하다.⁴

瓦房店古龍山洞穴遺址: 瓦房店市 (原復縣) 교외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 시대는 更新世晚期에 속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12만년 전으로 추측되고 있다.⁵

東溝前陽洞穴遺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 전의 洞穴遺址에 속하는데 여기에서 고대인류화석이 출토되었다. 유적은 요녕성 東溝縣 前陽鄉의 採石場에 위치하고 있다. 大鹿島에서도 같은 시기의 유적을 발견하였다.⁶

喀左水泉鴿子洞遺址: 遼寧省 喀喇沁左翼蒙古族自治縣 水泉鄉 瓦房村 옆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大凌河 강가의 岩廈遺址에 속한다. 이는 강바닥보다 30여 미터 높이 하고 있는데 遼寧에서 처음 발견된 層位가 있는 고대 인류화석이다. 이와 동반하여 대량의 古脊椎動物化石이 발견되었다. 그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15만년 전이다.⁷

錦縣沈家台遺址: 遼寧省 錦縣 沈家台鄉 可樹溝村 小凌河의 지류 오른쪽 기슭의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5~3만년 전이다.⁸

凌源八間房遺址: 遼寧省 凌源縣 서북쪽에 있는 大凌河의 오른쪽 기슭에서 2리쯤 떨어져 있는 一級階地에 위치하고 있고 그 뒷면이 草帽山의 동쪽 비탈과 마주하고 있다. 년대는 晚更新世말엽에 해당되며 지금으

⁴ 張鎮洪: 《遼寧地區遠古人類及其文化的初步研究》, 《古脊椎動物與古人類》第十九卷第二期, 1981年 4月.

⁵ 尤玉柱等: 《大連古龍山洞穴文化遺物及對當時古生物環境的探討》, 《史前研究》1985年 1期.

⁶ 孫鈞: 《東溝縣前陽公社發現與北京周口店“山頂洞人”同時代的古人類頭骨化石》, 《光明日報》1982年11月14日.

⁷ 張鎮洪: 《遼寧地區遠古人類及其文化的初步研究》, 《古脊椎動物與古人類》第十九卷第二期, 1981年 4月.

⁸ 張鎮洪: 《遼寧地區遠古人類及其文化的初步研究》, 《古脊椎動物與古人類》第十九卷第二期, 1981年4月.

로부터 약 3~1만년 전으로 추측된다.⁹

建平南地溝遺址: 建平縣 建平鎮 南楊樹嶺鄉 南地溝村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遼寧省경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인류화석이다. 이 시기는 更新世晚期에 속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5, 6만년 전이다.¹⁰

2. 吉林省舊石器時代遺迹

榆樹周家油坊遺址: 유적은 吉林省 榆樹縣에서 서남쪽으로 36리 내려와 송화강의 오른쪽 기슭에서 10리 떨어져 있는 大於鄉 周家油坊村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앞으로 한줄기의 강이 동북방향에서 서남방향으로 송화강에 흘러든다. 모래톱의 一級, 二級階地에서 동서 길이가24리, 남북 넓이가 약 24리 되는 구석기문화유존을 발견하였다. 지리좌표를 보면 북위 44도 43.5분, 동경 126도 21분에 해당하며 그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7~3만년 전이다.¹¹

蛟河磚廠地點: 吉林市地區 蛟河市에서 북쪽으로 6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拉法河의 Ⅱ級階地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舊石器時代의 中期遺址에 속한다.¹²

安圖明月溝遺址: 유적은 吉林省 安圖縣 明月鎮에서 동남으로 5리 내려와 石門鎮에 있는 石門山의 남쪽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岩溶洞穴의 하나이며 동굴의 남쪽은 布林哈通河와 가까이 하고 있는데 강바닥보다 25미터 높이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6만년 전이다.¹³

⁹ 張鎮洪: 《遼寧地區遠古人類及其文化的初步研究》, 《古脊椎動物與古人類》第十九卷第二期, 1981年4月.

¹⁰ 吳汝康: 《遼寧建平人類上臂骨化石》, 《古脊椎動物與古人類》第三卷 第四期, 1961年.

¹¹ 孫建中等: 《吉林榆樹周家油坊舊石器文化遺址》, 《古脊椎動物與古人類》第九卷 第三期, 1981年 7月. 榆樹縣文物志編寫組: 《榆樹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年 12月版.

¹² 陳全家: <吉林市地區首次發現的舊石器>, <東北亞舊石器文化> 中·露·韓國際學術會議, 白山文化, 1996年.

前郭爾羅斯查幹泡遺址: 吉林省 前郭爾羅斯蒙古族自治縣 查幹泡의 북쪽 기슭에 있는 靑山頭壟崗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두층으로 나눌수 있는데 윗층은 新石器時代에 속하고 아래층은 舊石器時代에 속한다. 이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 전이며 舊石器時代의 晚期遺存에 속한다.¹⁴

撫松仙人洞遺址: 吉林省 撫松縣의 동남쪽에 있는 仙人洞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舊石器時代의 晚期遺址에 속한다.¹⁵

壽山仙人洞遺址: 吉林省 樺甸市 榆木橋子鎮 壽山村의 壽山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지리적 좌표는 북위 43도 9분, 동경 126도 37분이다. 이는 舊石器時代의 晚期遺址에 속한다.¹⁶

九站西山地點: 吉林市の 교외에 있는 九站山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지리적 좌표는 북위 43도 5분, 동경 126도 28분이다. 이는 舊石器時代의 晚期遺址에 속한다.¹⁷

紅嘴子遺址: 吉林省 長春市 南8公里的伊通河畔的一級階地上, 地理座標爲北緯43度41分, 東經125度15分, 爲舊石器時代晚期遺址¹⁸

榆樹大橋屯地點, 吉林省 榆樹市 劉家鄉 大橋屯의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 좌표는 북위 44도 43분, 동경126도 20분이다. 이는 舊石器時代의 晚期遺址에 속한다.¹⁹

¹³ 薑鵬: 《吉林安圖人化石》, 《古脊椎動物與古人類》 第二十卷 第一期, 1982年 10月; 安圖縣文物志編寫組: 《安圖縣文物志》 11-14頁,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年 2月版.

¹⁴ 尤玉柱等: 《吉林前郭查幹泡發現的人骨化石和古生態環境》, 《史前研究》 1984年 4期.

¹⁵ 王文興: 《吉林撫松發現舊石器時代文化遺址》, 《人類學學報》 12卷 2期, 1992年.

¹⁶ 陳全家: 《吉林樺甸壽山仙人洞舊石器遺址試掘報告》, 《人類學學報》 13卷 1期, 1994年.

¹⁷ 陳全家: 《吉林市地區首次發現的舊石器》, 《東北亞舊石器文化》 中·露·韓國國際學術會議, 白山文化, 1996年.

¹⁸ 程新民等: 《長春郊區紅嘴子發現哺乳動物化石》, 《長春地質學院學報》 23卷 2期, 1993年.

¹⁹ 薑鵬: 《吉林榆樹大橋屯發現的舊石器》, 《人類學學報》 9卷 1期, 1990年.

大布蘇地點: 吉林省 西部乾安縣 大布蘇泡子の 동쪽 기슭에 있는 第二級階地の 앞테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所字鄉의 學字井村과 1킬로미터 사이두고 있다. 그 지리적 좌표는 북위 44도 48분, 동경 123도 42분이며 이 유적은 舊石器時代의 晩期遺址에 속한다.²⁰

3. 黑龍江省舊石器時代遺迹

哈爾濱閻家崗遺址: 哈爾濱市の 서남쪽 교외인 道裏區 新農鄉 閻家崗 磚廠과 糧庫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2만년 전이다.²¹

哈爾濱顧鄉屯遺址: 유적은 哈爾濱市の 서쪽에 있는 顧鄉屯의 溫泉河와 瓦盆窯河가 송화강으로 모여드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河窪地에 속하고 량쪽 기슭은 또 一二級階地에 속한다. 그 지질년대는 更新世晩期를 앞찌르지 않는다고 추측되고 있다.²²

哈爾濱黃山遺址: 哈爾濱市の 동쪽 교외에 위치하고 있고 그 지질년대는 更新世晩期에 속하며 刀狀石片特徵으로 보면 그 년대는 약 6~5만년 전이다. 그러나 돌조각의 同一層位인 雲杉化石의 碳十四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3만년좌우로 추측되고 있다.²³

哈爾濱附近各縣의 遺址: 哈爾濱및 그 부근의 여러 현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몇몇 古人類化石과 舊石器、骨器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열거하면 松浦에서는 古人類間肌化石의 錢片를, 哈爾濱의 車輛廠·四方台·半拉城子등에서는 舊石器時代의 骨器를, 肇東瀋州·阿城小嶺·向陽·尙志 螞蜒河·賓縣城關·延壽등에서 舊石器時代의 유물을 발견하기도

²⁰ 董祝安: 《大布蘇的細石器》, 《人類學學報》 8卷 1期, 1989年.

²¹ 魏一正等: 《哈爾濱閻家崗舊石器時代晩期地點1982-1983年發掘簡報》, 《北方文物》 1986年 4期.

²² 幹志耿、孫秀仁: 《黑龍江古代民族史綱》 26-29頁, 黑龍江人民出版社1986年版.

²³ B. B. 包諾索夫: 《哈爾濱附近黃山的早期新石器時代(可能爲舊石器時代)文化》, 《中國第四紀研究》 第一卷 第二期.

하였다.²⁴

五常學田遺址: 黑龍江 五常縣 龍鳳山鄉 學田村의 서쪽에 있는 水渠 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2.4만년 전이다.²⁵

齊齊哈爾大興屯遺址: 昂昂溪의 동남으로 36리 내려와 있는 大興屯의 동남쪽에 있는 一級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으로 嫩江과 약 40리 사이두고 있으며 그 지리적 좌표는 동경 123도 53분, 북위 47도 2분이며 嫩江의 오른쪽 기슭의 一級階地에 있으며 그 해발은 157.2미터로서 이 지역의 강바닥보다 46미터 더 높이 자리잡고 있다. 舊石器시점의 범위는 남북으로 길이가 1,000미터, 동서로 넓이가 약 300미터이며 그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을 넘는다.²⁶ 이밖에 齊齊哈爾市의 梅裏斯莽格吐에서도 타제석기와 古生物化石등을 발견하였는데 이미 채집한 석제품(石製品)과 동물화석이 500여개나 된다.²⁷

龍江缸窯遺址: 龍江縣에서 남쪽으로 60리 내려와 있는 景星鄉 缸窯村의 罕達罕을 가까이 한 량쪽 기슭의 臺地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타제석기와 石核이 출토되었다. 그 년대는 2만년으로 확정되고 있다. 이밖에 碾子山의 서쪽에 있는 蛇洞山등 곳에서도 일부 타제석기를 발견하였다. ²⁸

訥河清河屯遺址: 이는 嫩江의 중류에 자리잡고 있는 舊石器유적의 하나인데 黑龍江省 訥河縣 清河屯村부근의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²⁹

呼瑪十八站遺址: 大興安嶺의 동단에 있는 呼瑪縣 呼瑪鎮의 서북방향으로 올라가 咱瑪河라는 강의 왼쪽 기슭에 자리잡은 十八站村의 二級階地에 위치하고 있다. 그 지리적 좌표는 동경 125도 25분, 북위 52도 25분

²⁴ 幹志耿、孫秀仁: 《黑龍江古代民族史綱》 30-31頁, 黑龍江人民出版社 1986年版.

²⁵ 《我省發現三萬年前古人類化石》 《黑龍江日報》 1986年 12月 16日.

²⁶ 黃尉文: 《黑龍江昂昂溪的舊石器》, 《人類學報》 第三卷 三期, 1984年 8月; 高星: 《昂昂溪新發現的舊石器》, 《人類學報》 1988年 2月.

²⁷ 齊齊哈爾市文物管理站於 1988年 4月 提供的資料.

²⁸ 張鎮洪: 《東北亞地區舊石器時代古人類分佈特點初探》, 未刊稿.

²⁹ 黑龍江省博物館: 《嫩江沿岸細石器文化遺址調查》, 《考古》 1960年 10期.

이다. 전업공작원들은 이런 石器文化傳統이 周口店、峙峪、下川、虎頭梁 등 곳의 舊石器文化와 비슷하다고 보았다.³⁰

漠河老溝河遺址: 呼瑪縣 漠河鎮 南老溝村에 있는 東額木爾河의 지류(支流)인 老溝河의 남측의 一、二級階地가 교체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은 북쪽으로 漠河와 80리를 사이두고 남쪽으로는 西林吉와 약 100리를 사이두었으며 그 지리적 좌표는 동경 120도 30분, 북위 53도 20분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구석기유적이다. 그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1만년 전이다.³¹

饒河小南山遺址: 饒河縣의 주둔지인 饒河鎮 남쪽의 烏蘇里江의 왼쪽 기슭의 한 자그마한 지류 옆의 船廠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뒤로 小南山과 면하고 있으며 그 지리적 좌표는 동경 134도 1분 16초, 북위 47도 47분 13초이다. 이 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舊石器遺物點인데 石核石器와 單刃刮削器 등이 출토되었다. 그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2천년 전이다.³²

黑龍江東部地區의其他遺址: 黑龍江의 동부지역의 友誼縣 鳳林古城 부근의 七星河畔에는 또 舊石器遺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인공으로 두드린 흔적이 남아있는 鹿角化石이 발견되었다.³³

牡丹江市、穆稜縣 및 東寧縣 경내에서는 舊石器가 존재하였다는 실마리가 보였다.³⁴

³⁰ 魏正一、幹志耿: 《呼瑪十八站新發現的舊石器》, 《求是學刊》 1981年 1期.

³¹ 楊大山: 《漠河出土的打制石器》, 《黑龍江文物叢刊》 1982年 1期.

³² 楊大山: 《饒河小南山新發現的舊石器地點》, 《黑龍江文物叢刊》 1981年 創刊號.

³³ 據友誼縣文物管理所王學良同志提供的材料.

³⁴ 匡瑜: 《東北地區的舊石器時代考古文化》, 《考古與文物》 1982年 2期.

II. 新石器時代遺迹

新石器時代에서 동북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대폭 늘어나 각지에 퍼졌다. 그들의 활동은 수많은 유적(遺址)과 墓葬을 후세에 남기었다.

1. 遼寧省新石器時代遺迹

瀋陽新樂遺址: 이는 瀋陽지역의 신석기시대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이 유적이 瀋陽市의 북쪽 교외에 있는 淸昭陵(北陵)의 서쪽, 新樂라는 공장의 숙사구간 내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발견된 후 “新樂文化”라고 이름지었다. 유적은 상, 하 두 층으로 나누며 윗층은 靑銅時代에 속하는데 후에 다루기로 하고 아래 층은 碳十四의 측정으로 그 년대는 지금으로 약 7,000년 전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는 瀋陽지역에서 가장 이른 신석기시대의 문화유존(文化遺存)이다.³⁵

新民偏堡遺址: 유적은 新民縣에서 동남방향으로 52리 되는 堡子村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쪽으로 遼河와 20리 사이두고 있다. 유적은 이 마을의 서쪽에 있는 검은색 모래톱에 자리잡고 있다. 그 년대는 新樂下層보다는 뒤늦으며 瀋陽지역의 新石器時代에 있어서 전후 서로 다른 두 단계의 유존(遺存)이다.³⁶

親民東高臺山遺址: 유적은 新民縣의 북쪽으로 15리 올라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상, 하 두 층으로 나누는데 윗층은 靑銅時代에 속하고 아래층은 新樂下層文化와 같은 것으로 같은 시기의 유존에 속한다.³⁷

이밖에도 여러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존재하는데 어떤 것은 그 특점이

³⁵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瀋陽新樂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1978年4期; 遼寧省煤田地質勘探公司科學技術研究所: 《瀋陽市新樂遺址煤精製品產地探討》, 《考古》1979年1期.

³⁶ 東北博物館文物工作隊: 《遼寧新民縣偏堡沙崗新石器時代遺址調查記》, 《考古通訊》1958年1期.

³⁷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瀋陽新民縣高臺山遺址》, 《考古》1982年5期.

있다. 열거하면 瀋陽北陵沙河子³⁸ 新民縣公主屯後山遺址³⁹ 등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고대 인류의 거주지점을 료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고고자료(考古材料)이다.

長海小珠山遺址: 長海縣 廣鹿島의 중부지역인 吳家村의 서쪽에 있는 小珠山の 동쪽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쌓임이 비교적 두터워 세 개 층으로 나눌수 있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의 신석기시대의 부동한 발전 단계를 보여주었다. 이 유적은 遼南지역에서 발전서열(發展序列)이 있는 유적에 속한다. 小珠山下層文化의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으로 瀋陽新樂下層文化의 년대에 해당된다. 小珠山中層文化의 년대는 碳十四의 측정으로 지금으로부터 5-6천년 전으로 추측되고 있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山東大汶口文化의 년대에 해당된다. 小珠山上層文化의 년대는 碳十四의 측정으로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상으로 추측되고 있는 것으로 山東龍山文化의 년대와 대체적으로 같다.⁴⁰

長海廣鹿島等遺址: 遼南의 원시문화는 비교적 발달한 축으로 지금까지 조사발굴된 유적이 많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주요한 유적중에 小珠山下層文化에 속하는 것으로 長海縣 廣鹿島에 있는 柳條溝東山遺址⁴¹, 大長山島에 있는 上馬石遺址下層⁴²과 新金縣에 있는 塔寺屯遺址 등이 있다. 小珠山中層文化에 속하는 것으로는 長海縣에 있는 廣鹿島吳家村遺址⁴³, 旅順口區에 있는 郭家村遺址下層⁴⁴이 있다. 小珠山上層文化에 속하는 것으로는 長海縣 廣鹿島에 있는 王屯蠣磧崗南窯遺址⁴⁵, 大長山島 上馬石遺址⁴⁶, 新金縣雙塔橋東遺址⁴⁷ 및 旅順口區老鐵山積石墓 등이

³⁸ 李小鍾: 《瀋陽北陵地區發現新石器時代遺物》, 《遼寧文物》 總第六期, 1984年.

³⁹ 瀋陽市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 《新民縣公主屯後山遺址試掘簡報》, 《遼海文物學刊》 1987年 2期.

⁴⁰ 遼寧省博物館: 《長海縣廣鹿島大長山島貝丘遺址》, 《考古學報》1981年1期.

⁴¹ 遼寧省博物館: 《長海縣廣鹿島大長山島貝丘遺址》, 《考古學報》1981年1期.

⁴² 遼寧省博物館: 《長海縣廣鹿島大長山島貝丘遺址》, 《考古學報》1981年1期.

⁴³ 遼寧省博物館: 《長海縣廣鹿島大長山島貝丘遺址》, 《考古學報》1981年1期.

⁴⁴ 遼寧省博物館: 《大連市郭家店新石器時代遺址》, 《考古學報》1984年1期.

⁴⁵ 遼寧省博物館: 《長海縣廣鹿島大長山島貝丘遺址》, 《考古學報》1981年1期.

있다. 이러한 유적의 발견은 遼南地區의 원시적 분포를 풍부히 하고 보충하였다.

東溝後窪遺址: 유적은 東溝縣 馬家店鄉 三家子村後窪村이라는 마을의 동쪽에 있는 臺地의 서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17,000평방미터에 달한다. 발굴한 뒤 그 유존(遺存)은 상, 하 두 층으로 나눌 수 있었다. 後窪下層文化의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가량이다. 조사 결과 이런 문화는 丹東地區 大洋河의 동쪽인 黃海연안에서부터 북쪽으로 鴨綠江유역의 蒲石河유역까지 뻗었다. 東溝縣에는 黃土坎鄉石灰窯、馬家店、雙山西大崗과 石佛山, 寬甸縣에는 永甸鄉幸福村등 유적이 존재한다.⁴⁸ 後窪上層文化의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가량이다. 이러한 문화유적의 분포지역의 범위는 비교적 넓으며 丹東、本溪、鞍山、海城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 海城縣에는 小孤山の仙人洞, 寬甸縣에는 永甸鄉幸福과 牛毛塢등 유적이 있다. ⁴⁹

岫岩北溝遺址: 유적은 岫岩縣의 서북방향으로 5리 떨어져있는 壩牆裏村과 北溝村에 위치하고 있다. 北溝文化의 년대는 초기로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가량, 그 후기로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 가량이다. 이 시기의 유적에 속하는 것으로 또 寬甸縣 下露河鄉 老地溝, 古樓子鄉 砬子溝 등이 있다.⁵⁰

本溪東崴子遺址: 유적은 本溪縣 南甸鄉 東崴子村에 있는 東太子河의 오른쪽 기슭의 산굴에 위치하고 있다. 산굴의 두 墓葬의 아래층(下層)은 居住址를 겹누르고 있다.⁵¹

⁴⁶ 遼寧省博物館：《長海縣廣鹿島大長山島貝丘遺址》，《考古學報》1981年1期。

⁴⁷ 旅順博物館：《大連新金縣橋東遺址發掘簡報》，《考古》1983年2期。

⁴⁸ 許玉林：《後窪遺址出土四十多件原始圖騰石雕和人形陶像》，《光明日報》1987年 5月 18日。

⁴⁹ 許玉林：《後窪遺址出土四十多件原始圖騰石雕和人形陶像》，《光明日報》1987年 5月 18日。

⁵⁰ 新華社稿（記者卜昭文）：《遼東發現大規模原始文化遺址》，《人民日報》1988年2月15日；許玉林等：《遼東半島新石器時代考古又有重要發現》，《中國文物報》1988年 2月 12日。

⁵¹ 齊俊：《淺談太子河上游新石器文化》，《遼寧省本溪、丹東地區考古學術討論

本溪謝家崴子水洞遺址: 水洞遺址은 本溪縣 謝家崴子村에 있는 西太子河의 오른쪽 기슭의 “本溪水洞”앞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몇몇 서로 다른 시대를 포함하였다. 下部는 新石器時代層으로 그 시대는 新石器時代의 晩期에 처했을 것이다. 이밖에 太子河의 상류에서 여러 곳의 유적과 墓葬이 발견되었다.⁵²

康平沙金遺址: 주요하게는 細石器遺址인데 康平縣에 있는 沙金鄉에 분포되었으며 이미 5곳이 발견되었다. 이로는 五汗朝老、馬架子、嘎土後山、西沙金後山、張家窩窮棒子山이다. 이와 같은 유적으로 康平縣 兩字子鄉 太平莊、小城子鄉 小城子村에서도 발견되었는데 출토된 유물은 거의 같다.⁵³

法庫葉茂台遺址: 유적은 法庫縣 葉茂台鄉 葉茂台村에 있는 西山의 동쪽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細石器遺址에 속한다.⁵⁴

康平北坨子遺址: 康平縣 二牛所口鄉 李家村에서 북쪽으로 3리 올라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유물의 분포면적은 1만여 평방미터에 달하며 비교적 큰 細石器과 彩陶을 포함한 유적에 속한다.⁵⁵

康平馬架子山遺址: 유적은 康平縣 沙金台鄉 嘎土窩堡村의 서쪽에서 2리 떨어져 있는 모래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馬架子山으로 불리우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2만평방 미터이고 유물이 비교적 풍부하며 遼北지역에서 細石器遺存이 비교적 전형적인 유적에 속한다.⁵⁶

康平敖力營子遺址: 유적은 康平縣 沙金台鄉 力營子村에서 서쪽으로 4리 떨어져 있는 모래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7,000여평방미터에 달한다.⁵⁷

會文集》1985年.

⁵² 齊俊: 《淺談太子河上游新石器文化》, 《遼寧省本溪、丹東地區考古學術討論會文集》1985年.

⁵³ 孟慶忠: 《試述鐵嶺地區的新石器時代文化和青銅文化遺存》, 《遼寧省考古博物館學會成立大會會刊》1981年.

⁵⁴ 遼寧鐵嶺地區文物組: 《遼北地區原始文化遺址調查》, 《考古》1981年2期.

⁵⁵ 孟慶忠: 《康平縣的三處新石器時代彩陶文化遺址》, 《遼寧文物》總第一期, 1980年.

⁵⁶ 張少青: 《康平縣新石器時代遺址調查》, 《遼海文物學刊》1988年 2期.

康平後崗遺址: 유적은 康平縣 四家子鄉 劉家店村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遼河의 서쪽 기슭에 자리잡은 길이가 700미터, 넓이가 500미터인 남북방향의 沙丘漫崗이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주요하게 陶器이며 石器는 보이지 않고 있다.⁵⁸

法庫李貝堡遺址: 유적은 法庫縣 大孤家子鄉 李貝堡村的 남쪽에 있는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비교적 커며 문화내용도 풍부하다.⁵⁹

法庫一統溝遺址: 유적은 法庫縣의 서북쪽에 있는 慈恩寺鄉 一統溝村 韓六山の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 산꼭대기는 평탄하며 유물이 비교적 풍부하다.⁶⁰

建平牛河梁遺址: 遼寧省의 凌源、建平 두 현이 접경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牯牛河가 이 산을 발원지로 하기에 崗梁를 “牛河梁”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유적은 바로 崗梁의 꼭대기에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는 建築遺址과 積石塚이 있는데 建築遺址은 “女神廟”라고 불리우고 있다. 牛河梁은 최근에 발견한 紅山文化의 중요한 遺迹이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는 신석기시대의 晩期의 유존(遺存)이기도 하다. 遼西地區에서 紅山文化에 속하는 유적이 비교적 많아 각지에 분포되었다. 열거하면 建平縣에서만으로 수백 곳에 달하여 매우 밀집하다.⁶¹

喀左東山嘴遺址: 유적은 遼寧省 喀喇沁左民辦蒙古族自治縣의 동남 방향에서 8리 떨어져 있는 大凌河의 서쪽 기슭의 東山嘴村 北山 崗緩平의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주요한 구조는 石砌建築群址로서 그

⁵⁷ 孟慶忠: 《康平縣的三處新石器時代彩陶文化遺址》, 《遼寧文物》 總第一期, 1980年; 張少青: 《康平縣新石器時代遺址調查》, 《遼海文物學刊》 1988年 2期.

⁵⁸ 孟慶忠: 《康平縣的三處新石器時代彩陶文化遺址》, 《遼寧文物》 總第一期, 1980年; 張少青: 《康平縣新石器時代遺址調查》, 《遼海文物學刊》 1988年 2期.

⁵⁹ 張博泉、魏存成: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1998年.

⁶⁰ 張博泉、魏存成: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1998年.

⁶¹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牛河梁紅山文化“女神廟”與積石塚群發掘簡報》, 《文物》 1986年 8期.

中心은 大型方形基址、랑측의 石牆基、前部石圈形台址와 圓形石基址이다. 東山嘴遺址文化는 풍부하여 紅山文化의 特點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정한 지방적 類型을 나타냈다. 이가 처한 年代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의 신석기시대 晩期이다.⁶²

綏中大臺山遺址: 유적은 綏中縣 大臺山의 과일농장의 북측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약10,000평방미터에 달하며 문화층의 두께는 근 반미터에 이른다. 이는 遼西지역에서 가장 이른 문화류형에 속하며 그 年代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이다.⁶³ 興城黃山遺址: 유적은 興城市 望海鄉에 있는 黃山이라는 과수원의 英茂山의 남측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비교적 크며 나타난 유물도 비교적 풍부하다.⁶⁴

錦縣山神廟遺址: 유적은 錦縣 巧烏鄉 小虹螺山의 동쪽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그 면적은 5,000여 평방미터에 달하며 문화층(文化層)의 두께는 30-50센치미터이다. 이는 遼西지역에서의 새로운 문화류형(文化類型)으로 그 年代는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이다.⁶⁵

阜新胡頭溝墓地: 묘지는 阜新蒙古族自治縣 西境化石戈村的 서쪽에 있는 牯牛河의 동쪽 기슭의 흙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紅山文化墓葬에 속하는데 또한 전의 紅山文化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새로운 인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遼西地區의 紅山文化의 特點을 반영하였다.⁶⁶

阜新查海遺址: 阜新蒙古族自治縣 沙拉鄉 查海村的 서쪽에서 5리 떨어져 있는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약 15,000평방미터이며 문화층의 두께는 약 60센치미터이며 제일 두꺼운 데는 1.85미터에 달한

⁶² 郭大順等:《遼寧省喀左縣東山嘴紅山文化建築群址發掘簡報》,《文物》1984年 1期.

⁶³ 李恭篤等:《一種時代偏早的原始文化類型的發現》,《北方文物》1986年 3期.

⁶⁴ 劉義仲:《概述錦州沿海地區新石器時代文化遺存》,《遼寧文物》總第五期,1983年.

⁶⁵ 劉義仲:《概述錦州沿海地區新石器時代文化遺存》,《遼寧文物》總第五期,1983年.

⁶⁶ 方殿春等:《遼寧阜新縣胡頭溝紅山文化玉器墓的發現》,《文物》1984年 6期.

다. 유적의 년대는 碳十四의 측정으로 지금으로부터 690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遼西地區에서 紅山文化보다 이르고 興隆窪文化보다와는 그 년대가 해당되는 것인데 또한 興隆文化와 다른 점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遼西地區에서 년대가 비교적 이르고 또한 주목할 바 있는 새로이 발견된 문화유존(文化遺存)이다.⁶⁷

2. 吉林省新石器時代遺迹

長春楊家溝遺址: 유적은 長春市에서 동남쪽으로 40여리 되는 伊通河의 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新石器時代의 中、晩期の 北方文化의 특점을 구비하였다.⁶⁸

農安左家山遺址: 유적은 農安縣 城郊鄉 兩家子村 高家屯의 서남쪽에서 500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伊通河와 50미터 사이 두고 있다. 유적의 臺地의 기복이 심하고 현지에서는 흔히 左家山라고 불리운다. 유적은 네 개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제1기의 시간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으로, 제2기는 碳十四의 측정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6,10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적에서는 露天窯와 류사한 것과 房址의 잔존(殘存)이 발견되었다. 碳十四의 측정으로 지금으로부터 4300여년으로 추정되었다. 左家山考古文化의 발견과 분기(分期)는 新石器時代의 초, 중기에서의 원시인류의 분포와 활동정황을 반영하였다.⁶⁹

農安元寶溝遺址: 유적은 農安縣 巴吉壘鄉 元寶溝村的 서남쪽에서 500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신석기시대에 인류의 거주지였다.⁷⁰

德惠大靑嘴遺址: 德惠縣 大靑嘴鄉에서 동쪽으로 500미터 떨어져 있

⁶⁷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阜新查海新石器時代遺址試掘簡報》, 《遼海文物學刊》 1988年 1期.

⁶⁸ 蔣三林: 《長春近郊伊通河流域史前文化遺址調查報告》, 《廈門大學學報》 1954年 1期; 王恒傑: 《長春市郊新石器時代遺址》, 《考古通訊》 1957年 1期.

⁶⁹ 農安縣文物志編寫組: 《農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年 10月版.

⁷⁰ 農安縣文物志編寫組: 《農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年 10月版.

는 동남방향에서 서북으로 향하는 溫崗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서쪽에는 飲馬河가 있다. 유적의 면적은 근 1,000평방미터에 달하고 문화유존(文化遺存)이 풍부하다. 이는 신석기시대의 유존(遺存)에 속한다.⁷¹

九台偏臉城遺址: 유적은 九台縣 慶陽鄉 慶陽村 靠山屯의 동쪽에 있는 漫崗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은 偏臉城古城址와 가까이 하고 서쪽으로 九(台)德(惠)公路가 있으며 서쪽에서 9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飲馬河가 있다. 유적은 동서로 400미터, 남서로 300미터에 달하며 유물이 풍부하다. 이 유적의 문화면모는 德惠二青嘴、農安左家와 그 유형이 같은 것으로 신석기시대의 문화에 속한다.⁷²

雙陽雜木溝遺址: 유적은 雙陽縣 四家子鄉 雜木溝屯의 東山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石頭門水庫와 면하고 있다. 산꼭대기는 비교적 평탄하며 유적은 산꼭대기와 산의 남쪽 비탈에 자리잡고 있다. 이 유적의 문화면모(文化面貌)는 길림지역의 二道嶺子、虎頭砬子、장춘지역의 大青嘴、二青嘴 유적과 같다.⁷³

梨樹陳家屯遺址: 유적은 梨樹縣 河山鄉 長山村 東家屯의 뒤에 있는 長山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으로 東遼河와 2리 사이를 두었다. 문화유형으로 분석하면 이 유적은 기원전 4,000~5,000년 전의 문화유존(文化遺存)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6,000~7,000년의 시간이 된다. 이는 遼河의 中游의 신석기시대의 초기 유적의 하나이며 또한 東北地區에서 新石器時代의 가장 이른 계단(階段)의 중요한 유존(遺存)의 하나이기도 하다.⁷⁴

東豐西斷梁山遺址: 유적은 東豐縣 一面山鄉의 동북방향으로 3리 떨어져 있는 西斷梁山の 동쪽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백여미터 더 나아가면 그 곳이 梅河이다. 면적은 약 15,000평방미터에 달한다.

⁷¹ 德惠縣文物志編寫組:《德惠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年版.

⁷² 九台縣文物志編寫組:《九台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11月版.

⁷³ 雙陽縣文物志編寫組:《雙陽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年 3月版.

⁷⁴ 劉景文:《梨樹陳家屯遺址調查》,《博物館研究》1984年 3期; 梨樹縣文物志編寫組:《梨樹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4月版.

유적은 발굴 결과 상, 하 두 층의 문화로 나뉘었는데 아래층은 신석기시대, 윗층은 靑銅時代에 속한다.⁷⁵

雙遼西灣子遺址: 유적은 雙遼縣 柳條鄉 農閣村에서 500미터 떨어져 있는 索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남쪽에 大一水泡가 동쪽으로 遼河와 약 8리 사이두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약 5,000평방미터에 달한다. 추측에 의하면 西山灣子遺址은 지금으로부터 약 6, 7천년 전의 신석기시대의 早期遺址이다.⁷⁶

吉林七家子西山遺址: 유적의 면적은 비교적 커서 약 2만평방미터에 달하며 문화층(文化層)의 두께는 30센치미터에 이른다. 유적의 문화는 두 시기로 나누는데 초기는 신석기시대에 속하고 후기는 靑銅時代에 속한다. 문화면모로부터 보면 吉林虎頭砬子、永吉星星哨、瀋陽新樂下層 新石器時代遺址와 비슷하며 그 시간은 약 5, 6천년 전이다.⁷⁷

吉林三道嶺子遺址: 유적은 吉林市的 교외에 있는 九站鄉과 沙河子鄉이 접경하는 三道嶺子の 서북쪽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송화강, 남쪽으로는 二道嶺子和 가까이 하고 있다. 通化江口村遺址와 함께 동일한 문화류형에 속한다.⁷⁸

吉林虎頭砬子遺址: 유적은 吉林市的 교외에 있는 豐滿鄉 阿什村 虎頭砬子の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송화강과 가깝다. 유적에는 西團山靑銅文化의 유존(遺存)이 존재하며 신석기시대의 유물(遺物)이 발견되었다.⁷⁹

永吉星星哨遺址: 유적은 永吉縣 貧路河鎮 張家溝村에 있는 東山에

⁷⁵ 東豐縣文物志編寫組:《東豐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年 6月版.

⁷⁶ 雙遼縣文物志編寫組:《雙遼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8年 5月版.

⁷⁷ 董學增:《吉林市郊二道嶺子、虎頭砬子遺址調查》,《文物》1973年 8期; 吉林市郊

文物志編寫組:《吉林市郊區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年 11月版.

⁷⁸ 吉林市郊文物志編寫組:《吉林市郊區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年 11月版.

⁷⁹ 董學增:《吉林市郊二道嶺子、虎頭砬子遺址調查》,《文物》1973年 8期; 吉林市郊

文物志編寫組:《吉林市郊區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1983年11月版.

위치하고 있는데 그 서쪽이 바로 星星哨水庫이다. 유적의 면적은 약 15,000평방미터이다. 여기에는 신석기시대외에 또 西團山文化的 유존(遺存)이 있는가 하면 부근에는 西團山文化的 石棺墓도 존재한다. 지금 단지 신석기시대의 문화유존만을 설명하는 바인데 그 시간은 대략 瀋陽新樂下層文化와 해당되며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이다. 이는 吉林地區에서 신석기시대의 대표적 문화유존(文化遺存)의 하나이다.⁸⁰

樺甸三道通遺址: 유적은 樺甸縣 老金廠鄉 韋沙河村 三道通屯의 西山에 위치하고 있다. 第二松花江이 큰 굽인돌이를 형성하여 동쪽으로부터 산기슭을 흘러지나 가는데 紅石水庫의 침몰구역(淹沒區)에 속한다. 유적은 지극히 커서 총면적이 30,000평방에 달한다. 三道通遺址의 특징이 뚜렷하여 西團山文化的 유물(遺物)와는 다른 것으로 原始文化的 遺存에 속한다. 그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4, 5천년 이전이다.⁸¹

樺甸狼頭山遺址: 유적은 樺甸縣 八道河子鎮 李家堡村의 북쪽에 있는 狼頭山의 동남쪽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1만평방미터에 달하며 신석기시대와 靑銅時代(주요하게는 石棺墓)인 두가지 문화유존이 포함된다. 그 시대는 아마 신석기시대의 晩期이며 지금으로부터 약 4, 5천년 전이다.⁸²

延吉磚瓦石遺址: 유적은 延吉市 서쪽 교외에 있는 延邊建築材料廠의 서북쪽에서 1리 떨어져 있는 磚瓦石水塔 및 取土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5만 평방미터에 달한다. 半地穴式房址가 있고 유물이 풍부하다. 이는 신석기시대의 晩期の 유존(遺存)에 속하며 下限은 鐵器時代에 까지 이를 수 있다.⁸³

圖們岐新遺址: 유적은 圖們市 月晴鄉 岐新村의 야산의 남쪽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圖們江과 가까이 하고 있다. 강면보다 30미터

⁸⁰ 吉林市博物館：《吉林永吉星星哨新石器時代遺址調查與探掘》，《考古學集刊》第二集。

⁸¹ 樺甸縣文物志編寫組：《樺甸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年 5月版。

⁸² 樺甸縣文物志編寫組：《樺甸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年 5月版。

⁸³ 延吉市文物志編寫組：《延吉市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年 11月版。

높으며 圖們에서 開山屯에 이르는 도로가 유적의 중부를 가로 지른다. 유적의 면적은 15,000평방미터에 달하며 대량의 유물이 흩어져 있다. 金穀水庫西山遺址에서 출토된 유물과 거의 같은 것으로 같은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년대도 비슷할 것이다.⁸⁴

和龍興城遺址: 유적은 和龍縣 東城鄉 舉城村의 北山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남쪽으로 3리 내려가면 해란강이 보인다. 문화층(文化層)의 두께는 1.2미터에 달하며 龍井縣金穀早期遺址에서 출토된 기물(器物)과 거의 같은 것으로 新石器時代 晩期の 문화유존(文化遺存)일 것이다.⁸⁵

汪清復興參場遺址: 유적은 汪清縣 復興鄉 復興農場參場에 위치하고 있다. 문화층(文化層)의 두께는 50센치미터에 달하며 가능하게 綏芬河 상류(上游)의 년대가 오래된 신석기시대의 유적일 수 있다.⁸⁶

琿春大六道溝(南團山)遺址: 유적은 琿春縣 春化鄉 大六道樂觀屯에서 2리떨어져 있는 臨河南團山에 위치하고 있는데 早期、晩期인 두 시기의 문화유존(文化遺存)이 존재한다. 이 두 문화유존은 同一化의 류형에 속할 것이다. 학술계에서 어떤 학자들은 그 곳의 유적(遺迹)、유물의 특점으로부터 圖們江류역의 일종 신석기시대의 晩期遺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⁸⁷

龍井金穀早期遺址: 유적은 龍井 縣德新鄉 金穀村에서 북쪽으로 3리 떨어져 있는 金穀水庫의 서쪽에 자리잡은 산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서쪽 산기슭에는 八道河의 지류(支流)가 흘러 지나고 남쪽 산비탈은 金谷晩期墓葬區이다. 유적의 면적은 2,000평방미터이고 半地穴式房址이 6채 있다. 金谷早期遺址은 蘇聯濱海지역의 查尹桑諾夫卡遺址、朝鮮鹹鏡北道 茂山虎穀洞遺址、雄基郡 西浦項遺址、黑龍江 東寧大杏

⁸⁴ 圖們市文物志編寫組：《圖們市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年 11月版。

⁸⁵ 和龍縣文物志編寫組：《和龍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11月版。

⁸⁶ 汪清縣文物志編寫組：《汪清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9月版。

⁸⁷ 吉林省考古研究室等：《統一的多民族國家的歷史見證——吉林省文物考古工作三十年的收穫》，《文物考古工作三十年》，文物出版社 1979年版；琿春縣文物志編寫組：《琿春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9月版。

樹遺址、甯安鶯歌嶺遺址등 문화유존(文化遺存)과 같다. 延邊지역에서 는 이밖에 또 10여 곳이 발견되었다. 보다시피 이 문화유존(文化遺存)의 분포범위는 동쪽으로 바다에 접해 있고, 서쪽으로 張廣才嶺에 이르며, 남 쪽으로 長白山까지, 북쪽으로 興凱에 이르렀으며 延邊지역이 이 문화의 중심구역이었다. 유적의 년대는 碳十四의 측정으로 지금으로부터 5,000 년 전이다. 이 년대와 같은 것으로는 또 新光鄉 琵琶山遺址、富裕鄉 大蘇村早期遺址、三合鎮遺址등이 있다.⁸⁸

通化江南遺址: 유적은 通化市의 교외에 있는 環通鄉 江南村 남쪽 의 渾江 남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야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중심에서 6리 떨어져 있다. 유적의 면적은 12,000평방미터이다. 이 유적의 문화는 풍부하며 上限으로 新石器時代에, 下限으로 青銅時代에까지 이를 수 있다.⁸⁹

通化江口遺址: 유적은 通化縣 大泉源鄉 江口村의 동쪽에서 500미터 떨어져 있는 南山坡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원시농업과 어로경제(漁撈經濟)가 발달된 신석기시대의 유적에 속한다.⁹⁰

靖宇小南山遺址: 유적은 靖宇縣 靖宇鎮의 교외에 있는 南山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약 2만평방미터에 달하며 유물이 비교적 풍부하다. 이는 비교적 전형적인 신석기시대의 유적이다.⁹¹

撫松南崗遺址: 유적은 撫松縣 仙人橋鎮 大靑川村 小南溝 南崗의 꼭 대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북쪽에는 頭道松花江이 있다. 유적의 범위는 2만평방미터에 달하고 땅에는 적지 않은 유물이 흩어져 있으며 문화층의 두께는 60센치미터에 이른다. 유적의 년대는 신석기시대의 晚期遺存에 속할 것이다.⁹²

長白孤山子遺址: 유적은 長白朝鮮族自治縣 十二道溝鄉 孤山子村의

⁸⁸ 龍井縣文物志編寫組：《龍井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11月版。

⁸⁹ 通化縣文物志編寫組：《通化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年 5月版。

⁹⁰ 通化縣文物志編寫組：《通化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年 5月版。

⁹¹ 靖宇縣文物志編寫組：《靖宇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8年 4月版。

⁹² 撫松縣文物志編寫組：《撫松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年 12月版。

동남쪽에서 100미터 떨어져 있는 鴨綠江의 북쪽 기슭의 二級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25,000평방미터이다. 이는 신석기시대의 晩期遺存에 속하지만 그 下限은 靑銅時代까지 이를 수 있다.⁹³

渾江葦沙河遺址: 유적은 渾江市 葦沙河鄉葦沙河村의 남쪽으로 200미터 떨어져 있는 鴨綠江의 二級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서쪽은 葦沙河와 가까이 하고 그 면적은 7,500평방미터에 이르며 문화층의 두께는 50센치미터에 달한다. 이는 新石器時代의 遺存에 속하며 겹쌓임이 비교적 두텁고 문화내용이 풍부하다. 그런가 하면 또 靑銅時代와 高句麗、渤海文化의 遺存도 존재한다.⁹⁴

集安荒崴子遺址: 유적은 集安縣 臺上鄉 荒崴子村의 東網地에 위치하고 있다. 그 시대는 아마 新石器時代의 晩期일 것이다.⁹⁵

柳河寶善遺址: 유적은 柳河縣 駝腰嶺鎮 寶善村의 서북쪽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비교적 커서 150,000평방미터에 달하며 문화층(文化層)의 두께는 10센치미터에 달하고 중심부분은 더 두꺼울 것이다. 이 유적의 년대가 비교적 길어 신석기시대의 후기로부터 靑銅時代에까지 이르며 상한선(上限)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4,000년이 되었다.⁹⁶

輝南永豐遺址: 유적은 輝南縣 金川鄉 永豐村에서 북쪽으로 1리 떨어져 있는 土崗에 위치하고 있고 그 동쪽은 後河와 가까이 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15,000평방미터에 달한다. 이 유적은 丹東後窪、瀋陽新樂 등 신석기시대의 早期遺存과 비슷한 점이 있다. 이 유적은 신석기시대의 초, 중기유적에 속한다.⁹⁷

長嶺腰井子遺址: 유적은 長嶺縣 三十號鄉 腰井子村 北沙崗의 남쪽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이 비교적 커서 약 4만 평방미터에 달한다.

⁹³ 長白朝鮮族自治縣文物志編寫組:《長白朝鮮族自治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年 9月版.

⁹⁴ 渾江市文物志編寫組:《渾江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12月版.

⁹⁵ 集安縣文物志編寫組:《集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10月版.

⁹⁶ 柳河縣文物志編寫組:《柳河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年 6月版.

⁹⁷ 輝南縣文物志編寫組:《輝南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年 10月版.

이유적의 상한선(上限)은 新樂下層보다 이르며 하한(下限)은 新石器時代의 晩期에까지 닿는다. 이 곳은 아주 중요한 신석기시대의 유적이다.⁹⁸

前郭爾羅斯蒙古族自治縣 孤店鄉 腰浩特忙屯의 남쪽에서 1리 되는 索子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약 30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지면에 여러가지 유물이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량도 적지 않다. 이는 분명히 昂昂溪文化和 白金寶文化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유적은 신석기시대의 유적에 속하며 그 하한(下限)은 靑銅時代에까지 미룰수 있다.⁹⁹

乾安傳字井遺址: 유적은 乾安縣 蘭字井鄉 傳字井屯의 남쪽에서 4리쯤 되는 沙崗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면적은 12,000평방미터에 달한다. 이는 신석기시대의 유존(遺存)에 속하며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이다.¹⁰⁰

通榆敖包山遺址: 유적은 通榆縣 興隆山鄉의 서북방향으로 3리 떨어져 있는 敖包山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면적이 커서 100만평방미터에 달하며 유물도 풍부하다. 이 유적은 紅山、富河溝門文化의 유형과 비슷하고 그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이며 下限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가량에 맞먹는다.¹⁰¹

大安長新遺址: 유적은 大安縣 古城鄉 長新村的 남쪽에서 3리 떨어져 있는 南山서쪽편의 남부 漫崗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1만 평방미터에 달하며 여러가지 유물이 흩어져 있다. 그 년대는 아마 新樂下層文化和 같거나 좀 늦을 것이지만 富河와 昂昂溪文化보다는 이른다. 이 유적은 마침 이 세가지 문화의 교차구(交錯區)에 있다.¹⁰²

⁹⁸ 長嶺縣文物志編寫組：《長嶺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年 10月版。

⁹⁹ 前郭爾羅斯蒙古族自治縣文物志編寫組：《前郭爾羅斯蒙古族自治縣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年 12月版。

¹⁰⁰ 乾安縣文物志編寫組：《乾安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年 11月版。

¹⁰¹ 通榆縣文物志編寫組：《通榆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年 12月版。

¹⁰² 大安縣文物志編寫組：《大安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2年

洮安雙塔遺址: 유적은 洮安縣 德順鄉 雙塔村의 북쪽에 있는 漫崗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洮兒河와 8리 사이두고 있다. 유적의 면적이 비교적 커서 36만 평방미터에 달한다. 이 유적은 昂昂溪文化和 富河文化의 영향이 미쳤으며 후기에는 또 漢書一期文化의 인소가 존재하여 독특한 내포(內涵)와 비교적 복잡다단한 문화면모(文化面貌)를 형성하였다. 이는 신석기시대의 중요한 유적의 하나이다.¹⁰³

白城靛山遺址: 유적은 白城市의 서쪽 교외에서 10리 떨어져 있는 打靛山의 남쪽 산비탈의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9,000평방미터에 달한다. 靛山遺址은 洮安雙塔의 신석기시대의 유적과 비슷하다. 유적의 서쪽은 墓葬區인데 고분에서 출토한 유물로 보아 그 시대는 신석기시대의 晩期일것이다.¹⁰⁴

鎮賚二井子遺址: 유적은 鎮賚縣 勝利鄉 二井子屯의 土臺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 북, 서의 세 개 구로 나눌 수 있다. 면적은 약 4,500평방미터이다. 二井子遺址은 신석기시대에 속하는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되었다.¹⁰⁵

3. 黑龍江省新石器時代遺迹

哈爾濱黃山遺址: 黃山遺址은 哈爾濱市에서 30리 떨어져 있는 동쪽 교외에 위치하고 있다. 그 서쪽은 阿什河와, 북쪽은 松花江과, 동남쪽은 구릉과, 남쪽은 평원과 가까이 하고 있다. 이는 신석기시대의 유적에 속한다.¹⁰⁶

安達青肯泡遺址: 青肯泡遺址은 安達縣 東崗鄉 青肯泡의 東北崗에

9月版.

¹⁰³ 洮安縣文物志編寫組: 《洮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2年12月版.

¹⁰⁴ 白城市文物志編寫組: 《白城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年7月版.

¹⁰⁵ 鎮賚縣文物志編寫組: 《鎮賚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10月版.

¹⁰⁶ 黑龍江省博物館: 《哈爾濱市東郊黃山南北城遺址調查》, 《考古》1980年4期.

위치하고 있다.¹⁰⁷

齊齊哈爾 및 부근의 신석기시대의 人群分佈

昂昂溪滕家崗遺址: 齊齊哈爾市 昂昂溪의 북쪽으로 3리 떨어져 있는 齊昂公路의 좌측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측정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7,000여년이 되었다.¹⁰⁸

昂昂溪勝利一號遺址: 유적은 昂昂溪의 기차역전에서 6리 떨어져 있는 철로의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¹⁰⁹

昂昂溪其他遺址: 昂昂溪 주위의 여러 모래담이와 臺地에는 수많은 신석기시대의 문화유존(文化遺存)이 존재한다. 열거하면 王福、莫古氣、額拉蘇、紅旗營子、敖包山 등의 곳인데 여기에서는 상당한 수량의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문화유적들은 大興安嶺의 동쪽과 西遼河로부터 嫩江中下游에 이르는 곳, 그리고 지금의 黑龍江省과 吉林省이 접경하는 지대에 분포되어 있다. 霍林河 및 洮兒河유역의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곧 이에 속하는 것인데 그 층 수자는 백여 곳이 이른다.¹¹⁰

依安大橋屯遺址: 大橋屯遺址은 依安縣의 서쪽으로 7리밖에 있는 烏裕爾河의 중류(中游)의 북쪽 기슭에 자리잡은 一級階地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500평방미터에 달한다.¹¹¹

尙志亞布力遺址: 尙志 縣亞布力鎮의 동북방향으로 3리 떨어져 있는 崗地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蜿蜒河와 4리 사이두고 있다.¹¹²

五常南土城遺址: 유적은 五常縣 拉林河의 오른쪽 기슭에 있는 南土城부근의 강기슭의 二級階地에 위치하고 있는데 세 지점(地點)이

¹⁰⁷ 趙善桐: 《黑龍江省安遠縣青肯泡調查記》, 《考古》1962年 2期.

¹⁰⁸ 黃慰文: 《黑龍江昂昂溪의 舊石器》, 《人類學報》 第三卷 三期.

¹⁰⁹ 李龍: 《昂昂溪勝利三隊一號遺址清理簡報》, 《黑龍江文物叢刊》 1981年 創刊號.

¹¹⁰ 幹志耿、孫秀仁: 《黑龍江古代民族史綱》 77-79頁, 黑龍江人民出版社 1986年版.

¹¹¹ 於鳳閣: 《伊安縣烏裕爾河新石器時代遺址調查》, 《黑龍江文物叢刊》 1982年 2期.

¹¹²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黑龍江省尙志縣亞力布新石器遺址清理簡報》, 《北方文物》 1988年 1期.

있다.¹¹³

五常亞力山遺址: 유적은五常縣亞力山屯의 서쪽으로 400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¹¹⁴

五常安家與九十三公里站遺物點:五常縣安家車站에서 有肩石斧를 채집하였고 九十三公里站에서는 타제석기(打制石器)를 채집하였다.¹¹⁵

甯安鶯歌嶺遺址下層遺址:甯安縣鏡泊湖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상, 하 두 층으로 나누는데 윗층의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아래층은 3,000년 전으로 추측되고 있다.鶯歌嶺下層文化의 류형과 같은 것으로는 橋河西와 大杏樹、琿春團山六道등 유적 및 波謝特灣格拉卡婭河口的 查依桑諾夫卡一號居住址가 있다.¹¹⁶

雞西永台遺址: 유적은 雞西市 蘭嶺鄉의 남쪽으로 7리 떨어져 있는 永蘭村에 위치하고 있는데 곁에는 穆稜河의 上游의 지류(支流)인 牯牛河가 있다. 출토된 유물은 牡丹江류역의 東康遺址와 비슷하다.¹¹⁷

東寧大杏樹遺址: 유적은 東寧縣의 綏化河류역에 속하는 大肚川河의 한 시내물의 원천(源頭)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12,000평방미터에 달한다. 추측에 의하면 大杏樹遺址의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가량 된다.¹¹⁸

依蘭縣無風浪遺址, 遺址位於依蘭縣松花江以北迎風區境內. 年代較早, 並與黑龍江沿岸的新石器時代遺存有一定的聯繫.¹¹⁹

雙鴨山滾兔嶺等遺址: 유적은 雙鴨山市 尖山區이북 12리 되는 集賢縣

¹¹³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黑龍江省尙志縣亞力布新石器遺址清理簡報》,《北方文物》1988年 1期.

¹¹⁴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黑龍江省尙志縣亞力布新石器遺址清理簡報》,《北方文物》1988年 1期.

¹¹⁵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黑龍江省尙志縣亞力布新石器遺址清理簡報》,《北方文物》1988年 1期.

¹¹⁶ 幹志耿、孫秀仁:《黑龍江古代民族史綱》106-108頁,黑龍江人民出版社 1986年版.

¹¹⁷ 郝思德:《黑龍江雞西市永台發現原始社會遺址》,《考古》1982年 1期.

¹¹⁸ 張太湘:《綏芬河流域原始文化初探》,《社會科學戰線》1982年 2期.

¹¹⁹ 據黑龍江省文物普查資料.

과 접경하는 滾兔嶺의 丘崗에 위치하고 있다. 雙鴨山市의 동북쪽 교외에 있는 中華村의 東山、西山 및 七一村의 東北山、西南山에서도 이와 같은 유형의 유적이 발견되었다.¹²⁰

樺川萬里霍通遺址: 유적은 樺川縣 悅來鎮의 동북방향으로 4리 올라가는 한 崗丘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萬里霍通村에서 서북방향으로 1리쯤 되고 崗丘는 북쪽으로 松花江과 가까이 하고 있으며 강바닥보다 약 50미터 높다. 서쪽으로는 頭道河와, 동쪽으로는 馬鞍山과 가까이 하고 있다. 유적의 길이는 800미터, 넓이는 100미터이다.¹²¹

鶴崗安民等遺址: 유적은 鶴崗市 安民村의 동남방향으로 1리쯤 되는 梧桐河의 하류(下游)의 지류(支流)인 烏雞河의 오른쪽 기슭과 600미터 사이둔 沙丘山에 위치하고 있다.¹²²

密山新開流遺址: 유적은 密山縣과 凱湖사이의 湖崗의 서쪽방향, 新開流의 동쪽으로 3리 되는 湖崗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동서 길이는 300미터 넓이는 80미터에 달한다. 新開流遺址의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5, 6천년이 된다. 新開流文化의 인소(因素)는 樺川縣 萬霍通、烏蘇里江의 하류(下游)의 饒河小南山、牡丹江의 하류(下游)의 依蘭倭肯哈達洞穴遺址에서 출토된 문물 중에 반영이 되어 있다. 黑龍江의 하류(下游)의 捷秋赫下層、孔東、蘇丘島 등 유적에서도 이와 같은 문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런 문화는 이 지역에서 분포가 비교적 보편적이다.¹²³

饒河小南山遺址: 유적은 饒河縣 饒河鎮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烏蘇里江과 가까이 하고 있으며 강바닥보다 25미터 높다. 여기서 출토한 기물(器物)은 비교적 풍부하다.¹²⁴

¹²⁰ 雙鴨山市文管站: 《雙鴨山市部分地區考古調查》, 《黑龍江文物叢刊》1982年 2期.

¹²¹ 郝思德: 《樺川萬里霍通原始社會遺址調查》, 《黑龍江文物叢刊》1984年 1期.

¹²² 鄒寒: 《鶴崗市郊梧桐河下游右岸的幾處原始社會遺址》, 《黑龍江文物叢刊》1984年 1期.

¹²³ 幹志耿、孫秀仁: 《黑龍江古代民族史綱》80、109頁, 黑龍江人民出版社1986年版;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 《密山新開流遺址》, 《考古學報》1979年 4期.

饒河石場遺址: 유적은 饒潔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싼 소분지(小盆地)인데 그 중간으로 시내물이 흘러지나고 있다. 회색의 葉岩으로 만들어진 정미한 石斧가 출토되었다.¹²⁵

饒河五林洞小東山遺址: 유적지에는 대량의 夾砂紅褐陶片이 흩어져 있다.¹²⁶

饒河珍寶島西南遺址: 유적은 饒河縣 珍寶島의 서남쪽에 있는 하곡(河谷)의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小南山류형의 문화유존(文化遺存)에 속한다.¹²⁷

撫遠亮子油庫遺址: 유적은 撫遠縣 撫遠鎮 西南亮子油庫 蛇山の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黑龍江의 지류(支流)인 濃江과 가까이 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7,000년이 되었다고 추측되며 이는 黑龍江지구에서 비교적 이른 신석기시대의 유적이다.¹²⁸

III. 青銅時代遺迹

1. 遼寧省青銅時代遺迹

瀋陽新樂遺址上層: 유적은 瀋陽市の 북쪽교외에 있는 新樂工廠宿舍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下層은 新石器時代遺存에 속하고 上層文化는 青銅時代에 속한다. 新樂上層文化의 년대와 같은 것으로는 또 新民高臺山遺址이 있다.¹²⁹

¹²⁴ 黑龍江省博物館: 《黑龍江饒河小南山遺址試掘簡報》, 《考古》 1972年 2期.

¹²⁵ 黑龍江省博物館: 《烏蘇里江流域考古調查》, 《文物》 1972年 3期.

¹²⁶ 黑龍江省博物館: 《烏蘇里江流域考古調查》, 《文物》 1972年 3期.

¹²⁷ 黑龍江省博物館: 《烏蘇里江流域考古調查》, 《文物》 1972年 3期.

¹²⁸ 佳木斯市文物管理站提供資料.

¹²⁹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瀋陽市新樂遺址試掘報告》, 《考古學報》 1978年 4期; 瀋陽市文物管理辦公室: 《新民東高臺山第二次發掘》, 《遼海文物學刊》1986年 創刊號.

瀋陽鄭家窪子墓葬: 瀋陽市の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남쪽 방향으로 渾河와 6리 사이를 두고 있다. 여기는 원래 한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瀋陽市區에 들었다. 이는 瀋陽지역의 春秋末期에서 戰國初년에 이르는 우리 나라 동북지역의 古文化遺存의 하나이다.¹³⁰

遼陽接官廳墓葬: 고분(墓葬)은 遼陽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官廳村의 동부와 가까이 하고 있다. 이는 비교적 큰 고분인데 유물의 특점으로 보아 遼寧지역에서 발견된 靑銅短劍墓보다 늦지는 않을 것이다. 그 년대는 대략 春秋時期에 해당된다.¹³¹

遼陽二道河子墓葬: 고분은 遼陽市の 동남방향에 있는 湯河의 서쪽 기슭의 二道河子村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고분도 비교적 큰 墓群인데 부근에서 靑銅短劍土坑墓를 발견했었다. 이 묘지(墓地)의 주위에는 또 그 문화면모(文化面貌)가 이와 비슷한 遺址、墓葬이 적지 않게 있다.¹³²

旅順於家遺址下層: 유적은 大連市 旅順口區 於家村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류형에 속하는 유적의 분포는 비교적 광활하여 旅順口區大臺山下層、甘井子區雙坨子下層、金縣望海峯、新金縣單坨子、莊河縣鹽坨子、長海縣高麗城山、朱家村下層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於家下層文化의 년대는 많은 곳의 碳十四의 측정으로 보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좌우로 판정되고 있다. 於家下層 류형인 單坨子遺址에서 靑銅片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 류형의 문화가 이미 靑銅時代에 들어섰음을 알아볼 수 있고 이가 靑銅文化早期遺存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³

旅順於家遺址上層: 이 문화류형에 속하는 유적의 분포도 비교적 광활하여 여기에는 旅順口區將軍山、城子山遺址、羊頭窪、大臺山遺址上層、雙坨子上層(三期)、小磨盤山、大連市區烈士山와 于家村坨頭墓地 등이 있다. 碳十四의 측정에 의하면 于家上層文化는 지금으로부터 3,200

¹³⁰ 瀋陽市故宮博物院等: 《瀋陽鄭家窪子的兩座靑銅時代墓葬》, 《考古學報》 1975年 1期.

¹³¹ 瀋陽市文物管理所: 《瀋陽市接官廳石棺墓群》, 《考古》 1982年 1期.

¹³² 遼陽市文物管理所: 《遼陽二道河子石棺墓》, 《考古》 1977年 5期.

¹³³ 許玉林等: 《旅大地區新石器時代文化和靑銅時代文化概述》, 《東北考古與歷史》 第一輯, 1982年.

년, 雙坨子上層(三期)은 지금으로부터 3,135년 되었다. 보다시피 于家上層文化의 유형은 이미 靑銅時代였고 商周時期에 해당된다.¹³⁴

長海上馬石遺址上層: 유적은 長海縣 上馬石村에 위치하고 있다. 이 문화유형의 분포는 비교적 광활하여 여기에는 旅順口區牧羊城下層、尹家村河南下層、新金縣高麗寨、華岩寺、石棚溝、小於屯、梨樹底、複縣大孤山、縣心山、莊河縣大荒地、鹽坨子、長海縣英傑村上層 등 유적들이 있다. 上馬石類型은 碳十四의 측정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3,170년 가량 되었다.¹³⁵

新金石棚溝石棚: 新金縣 石棚溝村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은 고고학적 조사와 발굴을 통하여 이런 石棚이 일종의 墓葬임이 이미 밝혀졌다. 이는 遼南으로부터遼東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분포가 광활하여 이미 발견된 것만으로 10여채나 된다. 열거하면 大連市區大佛山、金縣小關屯、新金縣小劉屯、瓦房店市臺子屯、榆樹房、樺銅礦、莊河縣白店子、大荒地、楊屯 및 蓋縣石棚山、海城市析木城등 곳에 이런 石棚遺存이 있다. 이러한 石棚은 그 소수가 비교적 이른외에 절대부분이 靑銅時代의 遺存이며 그 지역에서 특점을 지닌 일종의 墓葬이다.¹³⁶

新金喬屯石蓋墓: 新金縣 喬屯에 주로 있는데 그 현의 小劉屯、石廟子、梨樹底등 마을에도 분포되어 있다. 이는 靑銅時代의 墓葬인데 그 년대는 가능하게 石棚와 동일시였거나 그보다 조금 뒤늦었을 것이다.¹³⁷

撫順望花遺址: 유적은 撫順市의 서부에 있는 望花區의 拖拉機配件廠 마당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渾河와 4리 되는 거리를 두고 있다. 유적의 년대는 商代晩期이다.¹³⁸

¹³⁴ 許玉林等: 《旅大地區新石器時代文化和靑銅時代文化概述》, 《東北考古與歷史》第一輯, 1982年.

¹³⁵ 許玉林等: 《旅大地區新石器時代文化和靑銅時代文化概述》, 《東北考古與歷史》第一輯, 1982年.

¹³⁶ 許玉林等: 《旅大地區新石器時代文化和靑銅時代文化概述》, 《東北考古與歷史》第一輯, 1982年.

¹³⁷ 許玉林等: 《旅大地區新石器時代文化和靑銅時代文化概述》, 《東北考古與歷史》第一輯, 1982年.

¹³⁸ 撫順市博物館考古隊: 《撫順地區早晚兩類靑銅文化遺存》, 《文物》

撫順施家東山遺址: 유적은撫順市の 교외인 施家溝村의 동쪽에 있는 東山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비교적 커서 5만평방미터에 달하며 房址에 곁쌓인 유물도 적지 않게 있다. 그 년대는 商末이다.¹³⁹

撫順孤家子遺址: 유적은撫順市の 교외인 孤家子村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년대의 下限은 商末에 더 뒤늦을 수 없다.¹⁴⁰

撫順小青島遺址: 유적은撫順市の 동쪽에 있는 大伙房水庫의 王臯山麓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비교적 크며 서부는 이미 저수지로 침몰되었다. 그 년대의 下限은 周初보다는 더 뒤늦지 않을 것이며 대체적으로 지금으로부터 3,000년 될 것이다.¹⁴¹

撫順其他青銅時代遺址:撫順지역에 있다. 위에 언급한 유적과 비슷한 유적은 아직 많이 존재한다. 열거하면 大甲幫後山鷹嘴砬子遺址、東州村 石油二廣東山遺址등이다. 이밖에撫順지역에는 아직도 적지않은 년대가 더 뒤늦어 대략 春秋로부터 戰國에 이르는 遺存이 존재한다. 열거하면 前甸鄉 大甲幫에서의 寬葉大弧曲刃青銅短劍이 들어있는 石棺墓、淸源縣 門臉村에서의 같은 양식의 青銅短劍과 銅斧가 들어있는 石棺墓、淸源縣 李家堡에서 같은 양식의 青銅短劍과 銅矛 및 타원형의 石棺墓、淸源縣 小錯草溝에서의 仿短劍식의 石劍墓、撫順市 將軍堡에서의 針織一廠青銅短劍墓등이다.¹⁴² 新實縣 勝利村、河西村、南嘉寬村、南溝村 및 淸原縣 曾家溝村 등에도 石棚遺存이 있다.¹⁴³

本溪廟後山遺址及洞穴墓: 유적은 本溪縣 山城子村의 동쪽에 있는 현

1983年 9期.

¹³⁹ 撫順市博物館考古隊:《撫順地區早晚兩類青銅文化遺存》,《文物》1983年 9期.

¹⁴⁰ 撫順市博物館考古隊:《撫順地區早晚兩類青銅文化遺存》,《文物》1983年 9期.

¹⁴¹ 撫順市博物館考古隊:《撫順地區早晚兩類青銅文化遺存》,《文物》1983年 9期.

¹⁴² 撫順市博物館考古隊:《撫順地區早晚兩類青銅文化遺存》,《文物》1983年 9期;淸原縣文化局等:《遼寧淸原縣近年發現一批石棺墓》,《考古》1982年 2期.

¹⁴³ 許玉林等:《遼東半島石棚綜述》,《遼寧大學學報》1981年 1期.

지(當地)에서 “廟後山”으로 불리우는 산허리(山腰)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洞穴墓文化和 성질은 같은 것으로 遼東지역에서의 靑銅時代早期의 문화유존(文化遺存)이다.¹⁴⁴

本溪梁家村靑銅短劍墓: 本溪市 明山區 梁家村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년대는 대략 春秋晚期이다.¹⁴⁵

丹東小娘娘山遺址: 유적은 丹東市 振安區 勝天村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약 2,500평방미터에 이르며 문화층의 두께는 1미터에 달한다. 그 시대는 靑銅時代의 초기이다. 이런 류형에 속하는 유적은 丹東지구에서 그 분포가 광활하는데 열거하면 丹東市 振安區 鎮東山、龍頭山、老溫山과 寬縣 連江下金坑、幸福村臭梨隈子上層 등이다.¹⁴⁶

康平順山屯遺址: 유적은 康平縣 康平鎮의 서남방향으로 3리 떨어져 있는 順山屯村의 西崗地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遺址과 墓葬이 있다. 碳十四의 측정에 의하면 下層은 지금으로부터 3,600년, 上層은 지금으로부터 3,100년이 되었다. 順山屯 이 류형에 속하는 유적으로 康平평내에서의 조사 결과 비교적 밀접하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康平鎮의 주위에서 馬蓮屯、刀蘭套海、哈拉呼碩、黑鴉屯、李家窩堡, 그리고 康平鎮내의 縣防疫站과 食品公司의 마당 등에서도 발견이 있었다.¹⁴⁷

法庫大山屯遺址: 유적은 法庫縣 包家屯鄉 大山屯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문화성격(文化性質)과 년대는 康平順山屯遺址와 같다. 이밖에 法庫縣에서는 또 臥牛石鄉麻子泡西山遺址를 발견하였는데 역시 이 문화류형의 전형적인 유적이다.¹⁴⁸

法庫灣柳街遺址: 유적은 法庫縣 丁家房鄉 灣柳街村에 위치하고 있다.

¹⁴⁴ 遼寧省博物館等: 《遼寧本溪縣廟後山洞穴墓地發掘簡報》, 《考古》1985年 6期.

¹⁴⁵ 張博泉、魏存成: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1998年.

¹⁴⁶ 許玉林等: 《遼寧丹東地區鴨綠江右岸及其支流的新石器時代遺存》, 《考古》1986年 10期.

¹⁴⁷ 辛占山: 《康平順山屯靑銅文化遺址試掘報告》, 《遼海文物學刊》1988年 1期.

¹⁴⁸ 曹桂林: 《法庫縣靑銅文化遺址的考古發現》, 《遼海文物學刊》1988年 1期.

유적의 문화성격(文化性質)과 년대는 新民高臺山 유형과 같다. 이러한 유적은 法庫縣에서 많이 발견되었는데 열거하면 包家屯鄉大三家子黑山下遺址、葉茂台鄉葉期待台村西山遺址、秀水河子鄉四家子遺址 등이다.¹⁴⁹

北票豐下遺址: 유적은 北票市에서 서북으로 32리 떨어져 있는 東官營子鄉 豐下村의 서쪽에 있는 季節河 옆의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동서의 넓이가 100미터이며 남북의 길이가 75미터이다. 豐下遺址下層文化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되었다. 遼寧省 建平縣 碌科鄉 水泉2址는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 豐下遺址와 같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豐下와 水泉遺址는 夏家店下層文化와 일치하며 早期青銅文化遺存에 속한다. 그 시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의 夏商時期에 해당된다.¹⁵⁰ 平喀喇沁遺址: 유적은 建平縣城에서 동북방향으로 120리 떨어져 있는 喀喇沁鄉喀喇村的 동쪽 강기슭의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12,000평방미터에 이르고 문화층(文化層)의 두께는 4-5미터에 달한다. 여기에는 세 층의 부동한 시기의 문화를 포함한다. 즉 夏家店下層文化、夏家店上層文化와 戰國文化이다. 이는 東北지역에서의 早期青銅時代의 중요한 발견이다.¹⁵¹

朝陽木頭城子銅鼎:鼎은 근년에 文物部門(文物部門)에서 채집한 것인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木頭城子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는 商代中期의 전형적 기물(器物)이며 遼西지역의 이른 早期青銅文化의 면모를 반영하였다.¹⁵²

朝陽魏營子遺址及墓葬: 朝陽縣에서 남쪽으로 140리 떨어져 있는 六家子鄉 魏營子村의 동북방향과 2리 거리를 둔 河灣의 臺地에 위치하고

¹⁴⁹ 曹桂林: 《法庫縣青銅文化遺址的考古發現》, 《遼海文物學刊》 1988年 1期.

¹⁵⁰ 遼寧省文物幹部培訓班: 《遼寧北票縣豐下遺址1972年春發掘簡報》, 《考古》 1976年 3期.

¹⁵¹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 《遼寧朝陽魏家營子西周墓和遺址》, 《考古》 1977年 5期.

¹⁵²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 《概述遼寧省考古新收穫》, 《文物考古工作三十年》, 文物出版社1979年版.

있다. 그 시대는 西周早期에 해당되는 것으로 豐下類型(夏家店下層文化)、早商과 西周사이의 文化遺存에 속한다.¹⁵³

喀左小轉山遺址: 유적은 喀喇沁左民辦蒙古族自治縣 平房子鄉 馬廠溝村的 小轉山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면적이 비교적 큰 商周時期的 夏家店下層文化遺存에 속하는 유적이다.¹⁵⁴

喀左青銅器窖藏: 지금의 喀沁左民辦蒙古族自治縣 境내에 위치하고 있다. 근년에 青銅器窖藏을 여러 번 출토했었다. 이런 窖藏은 모조리 縣境내의 서남부에 있는 大凌河의 梁기슭부근에서 발견하였는데 통계에 따르면 平房子鄉馬廠溝、北洞、山灣子、坤都營子鄉小波汰溝 등 곳이 있다.¹⁵⁵

義縣花爾樓青銅器窖藏: 窖藏은 義縣의 동북방향에 있는 稍戶營子鄉 花爾樓村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년대는 商末周初이다.¹⁵⁶

彰武平安堡遺址: 유적은 彰武縣 성북(城北) 20리에 있는 興隆山平安堡村的 西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87,000평방미터, 문화층의 두께는 2-3.7미터에 달한다. 이는 高臺山류형에 속하는 유존(遺存)이다.¹⁵⁷

朝陽十二台營子青銅短劍墓: 이 고분은 朝陽市の 서남쪽에서 25리 떨어져 있는 十二台營子鄉 十二台營子村的 남쪽에 자리 잡은 柏山の 북쪽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고분은 春秋晚期-戰國初年 사이의 것으로 추측된다.¹⁵⁸

¹⁵³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 《遼寧朝陽魏家營子西周墓和遺址》, 《考古》 1977年5期.

¹⁵⁴ 王增新: 《凌原青銅器群出土地點發現新石器時代遺址》, 《文物參考資料》 1959年 3期.

¹⁵⁵ 熱河省博物館籌備組: 《熱河凌原縣海島營子村發現的古代青銅器》, 《文物參考資料》 1957年 3期; 遼寧省博物館等: 《遼寧喀左縣北洞村發現殷代青銅器》, 《考古》 1973年 4期; 遼寧省博物館等: 《遼寧省喀左縣山灣子出土商周青銅器》, 《文物》 1977年 12期; 資料爲發表, 出土文物現藏遼寧省博物館.

¹⁵⁶ 孫思賢、邵福玉: 《遼寧義縣發現商周銅器窖藏》, 《文物》 1982年 2期.

¹⁵⁷ 孫傑: 《遼寧彰武縣平安堡遺址調查記》, 《遼寧文物》 總第六期, 1984年.

¹⁵⁸ 朱貴: 《遼寧朝陽十二台營子青銅短劍墓》, 《考古學報》 1960年 1期.

錦西烏金青銅短劍墓: 이 고분은 錦西縣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暖池塘鄉 烏金塘村 李虎氏屯의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고분(墓葬)은 朝陽十二台營子墓와 비슷하며 그 년대도 거의 같아 戰國時期로 추측된다.¹⁵⁹ 이런 青銅短劍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유존(文化遺存)은 遼寧지역에서 매우 보편적이어서 각 지역에서 대량적으로 발견되었다. 남으로는 大連市의 長海縣, 북으로는 鐵嶺市의 法庫、西豐縣, 동으로는 丹東市의 桓仁縣(遼寧중부지역의 각 市縣 및 遼西지역의 錦州、朝陽경내의 市縣도 포함)까지여서 그 지역의 범위는 아주 광활하다.¹⁶⁰

2. 吉林省青銅時代遺迹

長春東嶮草遺址: 유적은 長春市 農林鄉 建國村의 동쪽에 있는 嶮草屯의 東山坡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쪽으로 6리 가면 그 곳이 伊通河이다. 유적은 면적이 커서 3만평방미터에 달한다. 또한 유적은 西團山文化의 특징을 지녀 그와 동일한 문화계통(文化系統)에 속한다. 이 유적의 년대는 春秋晚期-戰國이다.¹⁶¹

農安田家坨子遺址: 유적은 農安縣의 북쪽에 있는 小城子鄉 李林通村 田家坨子屯에 위치하고 있다. 그 북쪽은 第二松花江과 6리의 거리를 두고 있다. 유적은 松花江의 남쪽기슭에 있는 長河谷의 모래언덕에 자리잡고 있으며 그 면적은 25만평방미터에 달한다.¹⁶²

農安王公坨子遺址: 유적은 農安縣의 북쪽에 있는 第二松花江의 남쪽기슭의 黃魚圈鄉 連三坑村 王公坨子屯에 위치하고 있다. 서남방향으로 田家坨子遺址와 2리 되는 거리를 두었다. 조사결과로 보면 이 유적의 早期文化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西團山文化유형이고 둘째는 漢書

¹⁵⁹ 錦州市博物館: 《遼寧錦西縣烏金塘東周墓調查記》, 《考古》 1960年 5期.

¹⁶⁰ 靳楓毅: 《論中國東北地區含曲刃青銅短劍的文化遺存》, 《考古學報》 1983年 1期.

¹⁶¹ 長春市文物編寫組: 《長春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年 10月版.

¹⁶² 王亞洲等: 《吉林農安田家坨子遺址的發現與初步調查》, 《吉林大學人文科學學報》 1958年 3期.

文化類型이며 셋째는 靺鞨文化特徵遺存이다. 또한 遼金時期的 유물(遺物)이 있는데 그 시대가 오래되어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西團山文化和 漢書文化前期의 상한선(上限)은 西周인데 이 유적의 년대는 아마 西周로부터 遼金時대에 이를 것으로 중요한 유존(遺存)에 속한다. 이 유적의 북쪽에 있는 黑魚泡遺址의 문화내포(文化內涵)도 이와 같은 세가지 유형이 있다.¹⁶³

農安後香坊遺址: 유적은 農安縣 三崗鄉 山頭村뒤의 香坊屯의 동남쪽 山丘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적의 문화면모(文化面貌)는 田家坨子遺址와 같아 靑銅時代에 속한다. 그 년대는 中原의 西周-秦漢에 해당한다.¹⁶⁴

德惠大靑嘴遺址: 유적은 德惠縣 大靑嘴鄉 동쪽의 漫崗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서쪽이 飲馬河이다. 유적의 면적은 비교적 크며 유물도 풍부하다. 이 유적의 早期는 신석기시대에 속하고 晚期는 吉林西團山子文化和 靑銅文化遺址에 속한다.¹⁶⁵

德惠亮子溝遺址: 유적은 德惠縣의 북쪽에 있는 松花江鄉 寶泉山村 亮子溝屯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북쪽으로 松花江과 3리의 거리를 두었고 동쪽으로 松花江의 지류인 沐石河와 1리 되는 거리를 두었다. 유적은 면적은 크며 亮子溝屯 南山의 산비탈을 따라 남쪽으로 3리 밖에 있는 寶泉山村에까지 이른다. 이 유적의 내포(內涵)는 세가지 문화유형을 지녔는데 그 早期는 西團山文化에 속하고 나머지 두가지의 년대는 漢代이다.¹⁶⁶

榆樹老河深遺址: 유적은 榆樹縣 성남 松花江의 강기슭에 있는 大坡

¹⁶³ 吉林大學歷史系考古專業: 《吉林農安田家坨子遺址試掘簡報》, 《考古》1979年 2期; 農安縣文物志編寫組: 《農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年 10月版.

¹⁶⁴ 農安縣文物志編寫組: 《農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年 10月版.

¹⁶⁵ 德惠縣文物志編寫組: 《德惠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年 11月版.

¹⁶⁶ 農安縣文物志編寫組: 《農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年 10月版.

郷의 後崗村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마을 남쪽의 崗地의 서부에 있는 卵石와 沙礫가 들어있는 古河床에 자리잡고 있다. 문화층(文化層)은 2미터정도 겹쌓이었고 세가지 문화유존이 있다. 그중 下層은 西團山文化에 속한다.¹⁶⁷

榆樹狼煙台遺址: 유적은 榆樹縣 劉家鄉 合心村 南城子屯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마을 북쪽에서 1리 되는 “狼煙台”라 불리는 高崗地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 면적은 15,000평방미터, 문화층(文化層)의 두께는 90센치미터에 달한다. 이는 西團山文化류형에 속한다.¹⁶⁸

九臺北山遺址: 유적은 九台縣 莽卡鄉 舍嶺村 舍嶺屯 北山の 동남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쪽으로 松花江과 5리 되는 거리를 두었다. 유적은 커서 그 면적이 5만평방미터에 달한다. 이는 吉林西團山文化류형에 속한다.¹⁶⁹

雙陽李家街遺址: 유적은 雙陽縣 太平鄉 田家村 李家街屯의 동남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커서 약 3만평방미터에 이르며 유물(遺物)도 풍부하다. 유적은 西團山文化류형에 속한다.¹⁷⁰

四平趙家屯遺址: 유적은 四平市 鐵西區 平西鄉 勤業村 趙家屯에서 남쪽으로 1리 떨어져 있는 四平機場機庫 의 흙등성이(土崗)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36,000평방미터에 달한다. 비록 西團山文化와 많은 비슷한 점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류형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西團山文化의 년대에 접근하는 또다른 문화류형인 靑銅時代의 유적일 것이다.¹⁷¹

¹⁶⁷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1987年 4月版.

¹⁶⁸ 榆樹縣文物志編寫組: 《榆樹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年 12月版.

¹⁶⁹ 九台縣文物志編寫組: 《九台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11月版.

¹⁷⁰ 雙陽縣文物志編寫組: 《雙陽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11月版.

¹⁷¹ 趙鳳山: 《四平市郊發現新石器時代遺址》, 《文物》 1959年 2期; 四平市文物志編寫組: 《四平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8年 8月版.

遼源水源地遺址: 유적은 遼源市區의 서쪽으로 2리 되는 陳家溝의 남쪽에 있는 城子山古城址에서 50미터에 자리잡은 水源地 남쪽비탈의 耕地에 자리잡고 있다. 면적은 14,000평방미터, 문화층의 두께는 70센치미터에 달한다. 그중에 얼마간 신석기시대晩期の 유물이 있기는하나 역시 靑銅時代의 유존(遺存)이다.¹⁷²

東豐龍頭山遺址: 유적은 東豐縣 大陽鎮 寶山村의 서쪽으로 1리 되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개 지점(地點)이 있는데 그 총면적은 10만평방미터에 달한다. 그 년대는 西周-春秋시기로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가량 되었다. 이는 靑銅文化遺存이다.¹⁷³

雙遼大金山遺址: 유적은 雙遼縣 新立鄉 大金山屯의 북쪽으로 300미터 떨어져 있는 모래등성이(沙崗)의 남쪽비탈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남방향으로 東遼河와 6리 되는 거리를 두었다. 유적의 면적은 15,000평방미터에 달한다. 이는 靑銅文化遺存이다.¹⁷⁴

梨樹陳家屯遺址: 유적은 梨樹縣 河山鄉 長山村 陳家屯뒤의 長山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방향으로 東遼河와 2리 되는 거리를 두었다. 유적의 면적은 비교적 광활하며 그 면적은 8만평방미터에 달한다. 유적을 早晚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는 신석기시대의 瀋陽新樂下層文化에 해당되고 晩期는 靑銅時代遺存에 속한다. 그 상대적 년대는 吉林西團山文化의 中、晩期이다.¹⁷⁵

懷德大靑山遺址: 유적은 懷德縣 雙龍鄉 大靑山村 水泉屯 水泉山の 남쪽비탈에 위치하고 있는데 水泉屯이 곧 이 유적에 자리잡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크며 12만평방미터에 달한다. 년대로 보아 상한선(上限)은 靑

¹⁷² 遼源市文物志編寫組: 《遼源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8年 8月版.

¹⁷³ 東豐縣文物志編寫組: 《東豐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年 6月版.

¹⁷⁴ 雙遼縣文物志編寫組: 《雙遼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8年 5月版.

¹⁷⁵ 劉景文: 《梨樹縣陳家屯遺址調查》, 《博物館研究》 1984年 3期; 梨樹縣文物志編寫組: 《梨樹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4月版.

銅文化에 속하고 하한(下限)은 이미 鐵器時代에 들어섰다.¹⁷⁶

懷德大青山墓葬: 고분(墓葬)은 懷德縣 雙龍鄉 大青山村 水泉屯의 서남방향으로 30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고분의 년대는 瀋陽鄭家窪子青銅短劍墓에 비해 조금 늦으며 이미 春秋戰國에 이르렀다.¹⁷⁷

吉林西團山遺址: 유적은 吉林市 歡喜鄉 吉興屯의 북쪽에 있는 西團山の 서남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약 4만평방미터에 달한다. 여기에는 遺址과 墓葬이 있으며 앞뒤 몇차례의 조사발굴을 거쳐 이미 “西團山文化”라고 이름지었다. 유적이 밀집하고 그 분포범위는 아주 광활하여 서쪽으로 伊通河, 동쪽으로 張廣才嶺, 남쪽으로 渾河와 輝發河의 상류(上游), 북쪽으로 拉林河에 이른다. 西團山文化는 早、中、晚인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기는 西周初期-春秋初期에, 중기는 春秋中期-戰國中期에, 후기는 戰國末-秦漢에 해당된다.¹⁷⁸

吉林長蛇山遺址: 유적은 吉林市的 교외인 大屯鄉 哈達村的 長蛇山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남쪽으로 1리 되는 곳이 松花江의 지류(支流)인 牯牛河이다. 유적의 면적은 3만평방미터에 달하며 遺址과 墓葬이 있다. 長蛇山遺址는 西團山文化의 전형적 유적이다.¹⁷⁹

吉林猴石山遺址: 유적은 吉林市 大屯鄉 孤家子村에서 북쪽방향으로 2리 떨어져 있는 猴石山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뒷면은 끊임없이 이어진 산등성이(山崗)이고 산기슭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牯牛河이 있으며 서면은 松花江과 가까이 하고 있다. 유적의 동북방향 1리 되는 곳

¹⁷⁶ 懷德縣文物志編寫組：《懷德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12月版。

¹⁷⁷ 吉林省文物管理委員會：《吉林懷德大青山發現青銅短劍》，《考古》1974年 4期。

¹⁷⁸ 董學增：《試論吉林地區的西團山文化》，《考古學報》1974年 4期；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等：《統一的多民族國家的歷史見證——吉林省文物考古工作三十年的主要收穫》，《文物考古工作三十年》，文物出版社 1979年 11月版。

¹⁷⁹ 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長蛇山遺址的發掘》，《考古》1980年 2期；吉林市郊區文物志編寫組：《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年 10月版。

의 산비탈은 墓葬區이며 유적의 면적은 45만평방미터에 달한다. 猴石山遺址의 내포(內涵)는 長蛇山遺址와 거의 같다.¹⁸⁰

吉林兩半山遺址: 유적은 吉林市的 교외인 白山鄉 紅旗村的 남쪽 4리 되는 吉樺公路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兩半山은 두개 반의 拉山으로 구성되었는데 유존은 遺址와 墓葬을 포괄하였다. 유적은 東半山の 동남비탈에 자리잡고 있는데 문화층(文化層)이 가장 두꺼운 곳은 1미터에 달하였다. 고분(墓葬)은 주요하게 동, 서 兩個半山の 북쪽비탈에 있다. 이는 대략 西團山文化的 中期단계에 해당된다.¹⁸¹

吉林狼頭山遺址: 유적은 吉林市的 교외인 二道鄉 馬相村的 狼頭山에 위치하고 있다. 서부는 끊임없이 이어진 산등성이(山崗)이고 남쪽은 二道水庫이며 동쪽은 2리 떨어져 있는 곳에 溫德河가 있다. 산의 동북비탈에는 유적이 있고 산의 서남비탈은 墓葬구역이다. 그 면적은 약 5,000평방미터에 달한다. 이는 西團山文化早、中期사이의 문화유존(文化遺存)에 속하는데 그 시간은 약 春秋전후이다.¹⁸²

永吉楊屯大海猛遺址: 유적은 永吉縣 烏拉街鄉 楊屯村的 동남방향으로 1리 떨어져 있는 漫崗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어느 한 소택(沼澤)과 가까이하고 있으므로 흔히 “大海猛”라 불리웠는데 이로서 유적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 유적의 면적은 6만평방미터에 달하고 문화층(文化層)이 가장 두꺼운 곳에는 1.6미터에 이른다. 여기에는 세가지의 서로 다른 시대문화가 포괄되는데 첫번째 시기는 靑銅時代의 西團山文化이고

¹⁸⁰ 吉林地區考古短訓班：《吉林猴石山遺址發掘簡報》，《考古》1980年2期；吉林市郊區文物志編寫組：《吉林市郊區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1983年11月版；董學增：《試論吉林地區的西團山文化》，《考古學報》1974年4期；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等：《統一的多民族國家的歷史見證——吉林省文物考古工作三十年的主要收穫》，《文物考古工作三十年》，文物出版社1979年11月版。

¹⁸¹ 張忠培：《兩半山遺址調查》，《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1963年2期；張忠培：《吉林兩半山遺址發掘報告》，《考古》1964年1期；吉林市郊區文物志編寫組：《吉林市郊區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1983年11月版。

¹⁸² 吉林市郊區文物志編寫組：《吉林市郊區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1983年11月版。

두번째 시기는 漢代文化이며 세번째 시기는 渤海文化이다. 大海猛의 一期文化은 西團山、長蛇山、猴石山등 유적이 내포(內涵)와 기본상 같아 西團山文化에 속하는데 자신의 어떤 특점을 구비하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문화유존(文化遺存)이다.¹⁸³

永吉黃家樓遺址: 유적은 永吉縣 五裏河鄉 官地村的 黃家樓屯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는 遺址과 墓葬이 있는데 그 총면적은 15만평방미터에 달한다. 이 유적은 그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내포(內涵)도 상당히 풍부하다. 靑銅時代의 유물외에 또 漢代文化의 유존(遺存)이 있다.¹⁸⁴

舒蘭滾兔嶺遺址: 유적은 舒蘭縣 小城鄉 自井村 任家街屯의 동쪽에 있는 滾兔嶺山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북쪽은 끊임없이 이어진 산(山嶺)이고 남쪽은 黃泥河이다. 유적의 면적은 22,000평방미터이고 지면에는 수많은 石陶遺物이 흩어져 있다. 이는 西團山文化의 유존(遺存)에 속한다.¹⁸⁵

蛟河八垌地遺址: 유적은 蛟河縣 池水鄉 八垌地村的 북쪽으로 250미터 떨어져 있는 小郭山의 崗梁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5,000평방미터에 달한다. 이는 西團山文化의 유존(遺存)에 속한다.¹⁸⁶

樺甸西崴子遺址: 유적은 樺甸縣 八道河子鎮 西崴子鎮 西崴子屯 西山의 동쪽비탈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남쪽이 當石河이다. 유적의 면적은 5만평방미터에 달하고 부근에는 墓葬이 있다. 유적은 西團山文化의 선명한 특징(特徵)을 띠었으며 西團山文化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靑銅文化遺址에 속한다.¹⁸⁷

¹⁸³ 劉振華：《永吉縣楊屯遺址試掘簡報》，《文物》1973年 8期；永吉縣文物志編寫組：《永吉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年 5月版。

¹⁸⁴ 永吉縣文物志編寫組：《永吉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年 5月版。

¹⁸⁵ 舒蘭縣文物志編寫組：《舒蘭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年 12月版。

¹⁸⁶ 蛟河縣文物志編寫組：《蛟河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年 5月版。

¹⁸⁷ 樺甸縣文物志編寫組：《樺甸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年 5月版。

磐石餘富遺址: 磐石縣 煙筒山鄉 餘富村의 西山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남쪽 산비탈에 小北河가 있다. 유적은 산의 꼭대기와 산비탈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총면적은 15만평방미터에 달한다. 여기에는 遺址과 墓葬이 있으며 전형적인 西團山文化의 遺存이다.¹⁸⁸

延吉長東遺址: 유적은 延吉縣 長白鄉 東風村 長東屯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靑銅時代의 유존(遺存)에 속한다.¹⁸⁹

敦化大山嘴子遺址: 유적은 敦化市 大山嘴子鄉의 동북쪽으로 1리 되는 산등성이(山崗)의 서남쪽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쪽으로 大山水庫와, 남쪽으로 牡丹江과 가까이 하고 있다. 총면적은 12,000평방미터에 달하고 지표(地表)밑 65센티미터로부터 1.05미터까지는 灰層과 文化층(文化層)이다. 이는 靑銅時代文化遺存이다.¹⁹⁰

安圖大砬子遺址: 유적은 安圖縣 明月鎮 大砬子村에서 북쪽으로 3리 올라가는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布林哈通河의 上源인 長興河가 여기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지난다. 유적지에는 渤海시기의 산성이 있는데 지금은 농경지(耕地)로 되어 있다. 유적의 면적은 12,000평방미터에 달하며 그 文化內涵(文化內涵)은 圖們江류역의 유적과 거의 같다.¹⁹¹

圖們東興遺址: 유적은 圖們市 石硯鎮 東興村의 서남쪽에 있는 농경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남쪽은 嘎呀河와 가까이 하고 있다. 총면적은 3만 평방미터에 달한다. 이는 琿春—松亭遺址의 文化內涵(文化內涵)와 비슷하여 같은 시기의 文化遺存(文化遺存)에 속할 것이다.¹⁹²

汪清百草溝遺址: 유적은 汪清縣 百草溝鄉 安田村(전에는 新安閭)이라

¹⁸⁸ 磐石縣文物志編寫組: 《磐石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年 5月版.

¹⁸⁹ 延吉市文物志編寫組: 《延吉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年 11月版.

¹⁹⁰ 敦化市文物志編寫組: 《敦化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年 10月版.

¹⁹¹ 安圖縣文物志編寫組: 《安圖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年 2月版.

¹⁹² 圖們市文物志編寫組: 《圖們市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年 11月版.

고 불렀음)의 동쪽에 있는 嘎呀河의 오른쪽 기슭의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그 서북쪽으로 2리 되는 新華閭村 뒤의 북산비탈에 유적과 같은 시기의 墓地가 있다. 유적은 면적이 크며 嘎呀河가 百草溝平原을 지나는 10리 되는 斷崖의 어디서나 文化層의 堆積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安田村이 제일 전형적이다. 百草溝遺址의 상, 하의 두 문화층(文化層)은 같은 시기의 문화의 두개의 서로 다른 발전단계이다. 제 1문화층인 하층(下層)에서 靑銅渣를 발견하여 이미 靑銅時代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냈다.¹⁹³

琿春—松亭遺址, 유적은 琿春縣 哈達門鄉의 一松亭村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가파른 산봉우리, 남쪽으로 琿春河와 가까이 하고 있다. 유적은 마을 안과 마을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동서 길이가 2리, 남서 넓이도 2리쯤 된다. 그 년대는 대체적으로 延吉小營子、汪清百草溝遺址의 년대에 가까운데 六道溝(南團山)遺址보다 뒤늦다.¹⁹⁴

龍井金穀晚期遺址: 유적은 龍井縣 德新鄉 金谷水庫의 수문(閘門)의 남쪽으로 2리 내려오는 金穀山城의 북쪽 漫崗에 위치하고 있는데 金穀早期遺址의 산등성이(山崗)과 잇닿아 있다. 金穀晚期遺址은 碳十四의 측정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가량 되었다.¹⁹⁵

通化龍崗遺址: 유적은 通化縣 大都嶺鄉 龍崗村 西山崗(흔히 龍崗이라고 부름)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위에 풍부한 유물이 분포되어 있다. 龍崗遺址은 渾江류역의 靑銅時代文化遺址에 속한다. 그 년대는 西周-戰國時期이다.¹⁹⁶

靖宇三道溝遺址: 유적은 靖宇縣 榆樹川鄉 新立村의 서북쪽에 있는

¹⁹³ 汪清縣文物志編寫組:《汪清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9月版.

¹⁹⁴ 李雲鐸:《琿春南團山、一松亭遺址調查》,《文物》1973年 8期; 琿春縣文物志編寫組:《琿春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9月版.

¹⁹⁵ 龍井縣文物志編寫組:《龍井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11月版.

¹⁹⁶ 通化縣文物志編寫組:《通化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年 9月版.

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이 자리잡고 있는 산꼭대기의 동서 양측의 산기슭에는 각각 시내물이 흘러지나는데 북쪽으로 흘러 회합(匯合)하고는 서북으로 방향을 바꾸어 頭道松花江으로 흘러든다. 현지(當地)에서는 서측의 시내물을 三道溝라고 부른다. 유적의 범위는 8만평방미터에 달하며 비교적 풍부한 유존(遺存)이 있다. 유적의 년대는 이미 靑銅時代에 들어섰다.¹⁹⁷

撫松中心街遺址: 유적은 撫松縣 松郊鄉 中心街村의 동쪽으로 100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개성(縣城)과 5리의 거리를 사이두고 있다. 유적은 靑銅時代의 유존(遺存)이다.¹⁹⁸

長白門坎子遺址: 유적은 長白朝鮮族自治縣 十四道溝鎮에서 동쪽으로 5리 되는 門坎子村의 북쪽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 면적은 3,000평방미터에 달한다. 門坎子遺址은 靑銅時代의 유존(遺存)에 속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가량이 된다.¹⁹⁹

集安大朱仙溝遺址: 유적은 集安縣 榆林鄉 大朱仙村의 남부와 북부의 두덤이의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靑銅時代에 속하며 中原의 商周時期에 해당된다. ²⁰⁰

柳河王家屯遺址: 유적은 柳河縣의 서쪽으로 1리 떨어져 있는 王家屯의 서남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동쪽이 바로 一統河이다. 유적의 면적은 비교적 커서 24만평방미터에 달한다. 이 유적의 년대는 商周에 해당하여 지금으로부터 3,000여년이 되었으며 그 하한(下限)은 戰國末까지 이룰수 있다.²⁰¹

¹⁹⁷ 靖宇縣文物志編寫組：《靖宇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8年 4月版。

¹⁹⁸ 撫松縣文物志編寫組：《撫松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年 12月版。

¹⁹⁹ 長白朝鮮族自治縣文物志編寫組：《長白朝鮮族自治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年 9月版。

²⁰⁰ 吉林省博物館集安考古隊等：《吉林集安大朱仙溝新石器時代遺址》，《考古》1977年 6期；集安縣文物志編寫組：《集安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10月版。

²⁰¹ 柳河縣文物志編寫組：《柳河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年

海龍靳家溝遺址: 유적은 海龍縣(今梅河口市)의 서부 경역의 薑家街 鄉에서 동북으로 4리 올라가는 흔히 “靳家溝”라 불리는 곳의 북쪽에 있는 양지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약 7500평방미터, 문화 층(文化層)의 두께는 1.5미터에 달한다. 이는 옛 海龍縣에서의 중요한 春秋戰國時期의 유존(遺存)이다. 그 구체적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년이 된다.²⁰²

輝南富民堡遺址: 유적은 輝南縣 樣子哨鎮 富民堡뒤의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城水河는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유적의 서북부를 가로지르며 三通河에 흘러든다. 유적의 면적은 비교적 크며 약 12만평방미터에 달한다. 富民堡遺址의 년대는 銅靑屬時代에 속한다.²⁰³

長嶺五十四號屯遺址: 유적은 長嶺縣 龍鳳鄉 十五號村 五十四號屯의 북쪽으로 3리 되는 어느 沙坨子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약 35,000평방미터에 달한다. 이는 靑銅時期의 유적에 속한다.²⁰⁴

前郭紅石砬子遺址: 前郭爾羅斯蒙古族自治縣 吉拉吐鄉의 동부에 있는 燈婁庫屯에서 5리 떨어져 있는 第二松花江의 왼쪽 기슭의 가파로운 절벽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면적은 375,000평방미터에 달한다. 이 유적은 漢書文化의 유형에 속하는데 扶餘長崗子、農安田家坨子和 昂昂溪文化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 그 년대는 대체적으로 西周時期에 해당되며 그 하한(下限)은 西漢에까지 이룰수 있다.²⁰⁵

扶余老方家地遺址: 유적은 扶余縣 華僑農場이 있는 馬家店의 서남쪽으로 1리 떨어져 있는 熊家亮泡의 남부의 동측의 臺地에 있다. 유적의

6月版.
²⁰² 海龍縣文物志編寫組:《海龍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 12月版.
²⁰³ 輝南縣文物志編寫組:《輝南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7年 10月版.
²⁰⁴ 長嶺縣文物志編寫組:《長嶺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6年 10月版.
²⁰⁵ 吉林省文物管理委員會:《吉林省前郭、扶余、德惠考古調查》,《考古》1961年 1期;前郭爾羅斯蒙古族自治縣文物志編寫組:《前郭爾羅斯蒙古族自治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3年 12月版.

면적은 28,000평방미터에 달한다. 이는 漢書文化류형에 속하는데 그보다는 좀 뒤늦고 二期文化보다는 이른다.²⁰⁶

乾安操字井遺址: 유적은 乾安縣 仙字井鄉 操字井屯에서 3리 되는 沙崗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약 8,000평방미터에 속한다. 이는 靑銅時代의 문화유존(文化遺存)이다.²⁰⁷

大安漢書遺址: 유적은 大安縣 月亮泡鄉 漢書村(옛 端基屯)의 동북방향으로 2리 떨어져 있는 月亮泡 남쪽 기슭에 있는 黃土崖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발굴결과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서로 겹싸인 곳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下層은 漢書一期文化로서 靑銅時代에 처해 있었고 上層은 漢書二期文化로서 그 시대가 비교적 늦어 下限은 西漢에 해당한다. 漢書一期文化의 년대는 西周時期에 해당된다.²⁰⁸

鎮賚那其海遺址: 유적은 鎮賚縣 東屏鄉 那其海村的 흙등성이(土崗)에 위치하고 있다. 그 문화성격은 靑銅時代에 속하는데 이는 西周-春秋時期에 해당된다.²⁰⁹

3. 黑龍江省靑銅文化遺迹

肇源白金寶遺址: 유적은 肇源縣 民意鄉 大廟村 白金寶屯에 위치하고 있는데 嫩江의 二級臺地와 인접하고 있다. 유적의 남북 길이는 450미터이고 동서 넓이는 400미터이다. 이는 嫩江의 下游에 있어서 시간이 비교적 이르고 발전수준도 비교적 높은 靑銅時代의 문화유존(文化遺址)이다.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2700여년이 되었으며 西周中期에 해당된다. 부근에

²⁰⁶ 扶餘縣文物志編寫組：《扶餘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2年9月版.

²⁰⁷ 乾安縣文物志編寫組：《乾安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5年11月版.

²⁰⁸ 大安縣文物志編寫組：《大安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2年9月版.

²⁰⁹ 鎮賚縣文物志編寫組：《鎮賚縣文物志》，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年10月版.

이와 같은 유형의 유적이 많은데 모조리 白金寶文化라 불리운다.²¹⁰

肇源臥龍遺址: 유적은肇源縣 臥龍村의 서남쪽,嫩江의 하류의 왼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半地穴式房址와 土坑豎穴墓를 발견하였다.²¹¹

肇源小拉哈遺址:肇源縣에서 서북쪽으로 120리 떨어져 있는 義順鄉 北窯村 小拉哈屯의 북쪽 산등성이에 위치하고 있다.²¹²

肇源狼坨子墓葬: 유적은肇源縣 義順鄉의 동쪽에 있는 北窯村의 동남쪽 모래언덕에 위치하고 있다.²¹³

肇源西南低根遺址: 유적은肇源縣의 서남방향에 있는 低根村에서 남쪽으로 170리쯤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²¹⁴

肇源烏拉爾基遺址:肇源縣 小廟子鄉의 서북에 있는 烏拉爾基에서 서북으로 100미터 떨어져 있는 야산에 위치하고 있다.²¹⁵

肇源望海屯遺址:肇源縣 三站鄉의 서부 20리밖에 있는 望海屯부근의 松花江의 북쪽 기슭의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²¹⁶

肇東東八裏墓葬: 고분(墓葬)은 東八裏村의 서남방향으로 2리 되는 二級臺地에 위치하고 있다.²¹⁷

肇東後七棵樹遺址: 유적은肇東縣 東田站鄉의 서남쪽에서 14리 되는 後七棵樹村의 서남쪽에 있는 모래언덕(沙崗)에 위치하고 있다.²¹⁸

²¹⁰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黑龍江肇源白金寶遺址第一次發掘》,《考古》1980年 4期.

²¹¹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黑龍江肇源白金寶遺址第一次發掘》,《考古》1980年 4期.

²¹² 幹志耿、孫秀仁:《黑龍江古代民族史綱》89-97頁,黑龍江人民出版社 1986年版.

²¹³ 郝思德、李硯鐵:《黑龍江肇源小拉哈、狼坨子青銅時代遺址調查簡報》,《黑龍江文物叢刊》1984年 4期.

²¹⁴ 張博泉、魏存成:《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吉林大學出版社 1998年.

²¹⁵ 黑龍江省博物館:《嫩江下游左岸考古調查簡報》,《考古》1960年 4期.

²¹⁶ 丹化沙:《黑龍江肇源望海屯新石器時代遺址》,《考古》1961年 10期; 思孝:《望海屯遺址略記》,《北方文物》1987年 1期.

²¹⁷ 《肇東青銅時代墓葬》,《中國考古學年鑒》1984年.

²¹⁸ 《肇東青銅時代墓葬》,《中國考古學年鑒》1984年.

肇東前七棵樹遺址: 유적은肇東縣 前七查樹屯에서 2리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출토된 기물(器物)은 後七棵樹에서 발견한 동류기물(同類器物)과 같다.²¹⁹

肇東前七道屯等遺址: 肇東縣에는 또 前七道屯、銀家圍子、腰嶺子、程家崗、石家崴子、大望海屯、茅春、腰牛營屯、二站、南山頭、八家河屯、九間房、東漫海、大廟、多耐站、大拍拍屯등 유적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後七棵樹、前七棵樹와 같은 기물(器物)이 출토되었다.²²⁰

蘭西河口遺址: 유적은 蘭縣 城郊鄉 呼蘭河의 오른쪽 기슭에 자리잡은 개성(縣城)에서 약 8리 되는 河口村 북쪽의崗地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지(當地)에서는 흔히“拉哈崗”이라고 불리운다. 유적의 길이는 300미터, 넓이는 200미터된다.²²¹

杜爾伯特官地遺址: 유적은 杜爾伯特蒙古族自治縣 官地村의 서남쪽에 있는 工頭山의 동북구석의 沖溝동측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은 동쪽방향으로 嫩江과 가까이하고 있다. 이밖에 杜爾伯特蒙古族自治縣의 哈拉海、西龍坑등 유적도 靑銅時代의 유존(遺存)에 속한다.²²²

泰來平洋墓葬: 고분(墓葬)은 泰來縣 平洋鎮의 서쪽으로 4리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²²³

林甸牛尾巴崗墓葬: 고분(墓葬)은 林甸縣의 서북쪽으로 64리 되는 흙 언덕(土崗)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쪽으로 烏裕爾河의 왼쪽 기슭과 24리 되는 거리를 두었다.²²⁴

富裕小登科墓葬: 고분(墓葬)은 富裕縣 小登科村의 서쪽에 있는 모래

²¹⁹ 張博泉、魏存成：《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吉林大學出版社 1998年.

²²⁰ 丹化沙、譚英傑：《松花江中游和嫩江下游的原始文化遺址》，《東北歷史與考古》第一輯，1982年.

²²¹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黑龍江省蘭西河口遺址調查簡報》，《遼海文物學刊》1987年 2期.

²²² 黑龍江省博物館：《嫩江下游左岸考古調查簡報》，《考古》1960年 4期；趙善桐：《黑龍江官地遺址發現的墓葬》，《考古》1965年 1期.

²²³ 楊志軍：《泰來縣平洋磚廠一號靑銅時代墓地》，《中國考古學年鑒》1985年.

²²⁴ 金鑄：《黑龍江林甸牛尾巴崗發現靑銅時代墓葬》，《北方文物》1985年 4期.

언덕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추측에 의하면 西周晚期-春秋戰國시대이다.²²⁵

訥河二克淺墓葬: 고분(墓葬)은 訥河縣 二克淺鄉의 村南과 村北, 嫩江 上游의 왼쪽 기슭의 二級地에 위치하고 있는데 흔히 鳳凰山 혹은 敖包山이라고 부른다. 그 년대는 초기는 西周晚期-春秋時代에 해당되고 후기는 戰國-漢代에 해당된다. ²²⁶雙城彭有窩棚遺址: 雙城縣 彭家窩棚에서 서북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는 拉林河 오른쪽 기슭의 階地의 서남면 두리에 위치하고 있다.²²⁷

雙城三家子遺址: 유적은 雙城縣 三家子村부근의 拉林河기슭의 二級階地에 위치하고 있다.²²⁸

雙城沙坨子遺址: 유적은 雙城縣 板房子屯에서 북쪽으로 5리 되는 松花江옆의 모래언덕(砂崗)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지(當地)에서는 白砂坨子라고 부른다.²²⁹

寶縣老山頭遺址: 유적은 寶縣 巨源鄉 靠山屯의 북쪽으로 6리 올라가는 곳에 있다. 이는 북쪽은 松花江과, 서쪽은 蜚克圖河과 가까이하는 老山頭의 서북쪽대기에 위치하고 있다. 그 시대는 대체적으로 嫩江류역의 青銅文化遺址에 해당된다.²³⁰

甯安鶯歌嶺遺址上層: 유적은 甯安縣 鏡泊湖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이 된다.²³¹

依蘭倭肯哈達洞穴遺址: 유적은 依蘭縣 依蘭鎮의 동쪽 교외에 있는 倭肯河의 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한 洞穴遺址인데 조사발굴을

²²⁵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黑龍江小登科墓葬及相關問題》, 《北方文物》 1986年 2期.

²²⁶ 安路、賈偉明: 《黑龍江訥河二克淺墓地及其相關問題探討》, 《北方文物》 1986年 2期.

²²⁷ 張博泉、魏存成: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1998年.

²²⁸ 張博泉、魏存成: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1998年.

²²⁹ 孫秀仁、朱國忱: 《黑龍江拉林河右岸調查》, 《考古》 1964年 12期.

²³⁰ 趙善桐: 《黑龍江寶縣老山頭遺址試掘簡報》, 《考古》 1962年 3期.

²³¹ 幹志耿、孫秀仁: 《黑龍江古代民族史綱》 106-108頁, 黑龍江人民出版社 1986年版.

거쳐 두 채의 고분(墓葬)이었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그 시대는 신석기시대의 晩期 혹은 그보다 더 뒤늦어 그 년대는 이미 商周時期에 이르렀을 것이다.²³²

撫遠海青遺址: 유적은 撫遠縣경내의 烏蘇里江 왼쪽 기슭의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靑銅時代의 유존(遺存)에 속한다.²³³

平洋墓葬: 黑龍江省 서남부의 泰來縣경내[90]에 위치하고 있는데 磚廠과 戰鬥 이 두 묘지(墓地)가 포함된다. 1984년과 1985년 전후 두차례를 걸쳐 墓葬을 118채 발굴하고 유물 2 500여건이나 출토시켰다. 이는 지금까지 松嫩平原에서 발견한 규모가 제일 큰 靑銅時代의 묘지(墓地)이다. 근년에 발굴한 肇東에서 동쪽으로 8리 되는 곳의 고분(墓葬)[91]은 平洋墓葬와 장식(葬式) 및 그 부분 隨葬器物에서는 같거나 비슷한 점을 많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 자체특징으로서의 葬制과 類型品도 선명한 구별을 보이고 있다. 기타 이미 발굴한 고분(墓葬), 열거하면 富裕小登科[92]、齊齊哈爾三家子[93]、訥河二克淺[94]등은 平洋墓葬과 서로 같거나 다른점을 보이고 있다.

IV. 戰國秦漢時期遺迹

1. 遼寧省戰國秦漢時期遺迹

遼西地區的長城遺迹: 遼西지역에는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나아가면서 세갈래의 거의 平行(平行)된 燕秦漢시기의 長城遺迹이 보존되어 있다. 일반적 견해로는 첫갈래는 秦長城으로 보며 그 기본 방향(走向)은 赤峰이북으로서 또한 赤北長城이라고도 한다. 두번째 갈래는 戰國燕長城인데 그 기본(走向)은 赤峰이남으로서 赤南長城이라고도 한다. 燕國이

²³² 李文信: 《依蘭倭肯哈達的洞穴》, 《考古學報》 第七冊, 1954年.

²³³ 幹志耿、孫秀仁: 《黑龍江古代民族史綱》 110頁, 黑龍江人民出版社 1986年版.

남부국경에 있는 易水 一線에서 長城을 쌓은 적이 있기에 이 북부국경의 長城을 습관적으로 燕北長城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번째 갈래는 漢長城이다. 秦長城(第一道長城)은 河北 圍場縣으로부터 동쪽으로 內蒙古 赤峰縣경내를 지나 英金河의 북쪽기슭에서 동으로 흘러 安慶溝를 경과 하고 老哈河를 넘어 敖漢旗에 흘러든다. 그리고 新惠鎮을 지나 豐水山을 거쳐 奈曼旗에 흘러드는데 가능하게 土城子、沙巴營子를 지난 뒤 遼寧阜新縣套尺營子으로 방향을 바꾸어 大五家鄉로 향한다. 燕長城(第二道長城)은 대개 秦長城과 평행을 이루는데 秦長城이남 40-50킬로미터 되는 곳에 있다. 內蒙古경내에서 비교적 선명한 서권(西端)은 喀喇沁旗의 達拉明安山 산비탈로부터 동쪽으로 劉家店 東山을 거쳐 赤峰縣에 이르고, 冷水塘와 老哈河 넘어 遼寧建平縣에 이르며, 程家溝를 거쳐 內蒙古敖漢旗에 이르러 동쪽으로 寶國吐鄉까지 잇닿아 遼寧北票縣의 북부에 이르고, 四合城을 거쳐 牛亡牛河를 가로 넘어 阜新縣에 들어서 雞冠山까지 잇닿는다. 漢長城(第三道長城)은 河北承德縣에서 동쪽으로 內蒙古 寧城縣 大營子鄉 小城子로 향하고는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喀喇沁旗에 들어서서 甸子를 거쳐 동쪽으로 老哈河를 가로넘은 뒤 遼寧建平縣에 들어서서 동남쪽으로 臥佛寺로 향한다. 이 後長城은 喀喇沁를 거쳐 동쪽으로 內蒙古敖漢旗의 남부에 들어선 후 大靑山西北麓을 따라 동북으로 향하다가 郝杖子일대에서 大靑山을 넘어 遼寧北票縣에 이르며 樓家店을 지나 寶國老를 거쳐 牯牛河의 서쪽기슭에 이른다²³⁴

遼東地區的長城遺迹: 遼西지역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燕、秦、漢長城은 阜新以遠지역에서 그 추향(走向)이 불명하고 遼東지역의 長城遺迹은 遼西지역만큼 똑똑히 못하다. 목전 渾河연안과 鴨綠江의 오른쪽기슭에 있는 寬甸縣으로부터 長甸口북부 산지역에서만 하여도 두 갈래의 長城을 발견하였다. 이 갈래의 장성의 구조는 遼西지역의 漢長城과 같아 漢長城에 속한다.²³⁵

²³⁴ 李慶發等：《遼西地區燕秦長城調查報告》，《遼海文物學刊》 1991年 2期；李慶發等：《遼寧西部漢代長城調查報告》，《北方文物》 1987年 2期；王綿厚：《秦漢東北史》，遼寧人民出版社 1994年 第一版。

鴨綠江 오른쪽 기슭의 寬甸縣에서부터 長甸口의 북부 산지역까지에서 한갈래의 중단된 石築城牆를 발견하였다. 이 石築牆은 모두 5토막인데 동측의 鴨綠江畔 酋果壁 腰嶺子에서 출발하여 紅石砬子鄉 上蒿子溝에 까지 이르러 기본상 한줄로 이어졌다. 이 장서의 부근에 있는 寬甸縣에서는 秦“李斯戈”등 유물을 발굴해냈는데 燕秦漢時期屯邊戍衛와 관계있으리라고 생각된다.

吉林梨樹縣의 二龍湖城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제일 북쪽의 燕國城址이다. 吉林通化市부근의 赤松柏城과 自安山城은 동북쪽으로 기울어진 漢城이다. 열거하면 新賓縣永陵鎮은 사면이 산들로 둘러쌓여 있고 蘇子河谷의 동서교통을 통제하고 있다. 鳳城縣劉家堡城은 동쪽으로 鳳凰山, 서쪽으로 臨璦河와 가까이 하고 遼東郡 治襄平城에서 樂浪郡으로 향하는 朝鮮縣의 교통중추이다. 喀左縣黃道營子城은 東控白狼水(大凌河)、背靠 白狼山(太陽山)하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旅順牧羊城은 해안에 가까운 방위성적인 성이다.

일찍이 戰國의 燕때에 東北지역의 성사이의 밀도는 매우 밀접하였다. 遼西지역의 凌源、喀左、建平、建昌일대에서만 하여도 戰國 燕시기에 건축한 城址 약 10채를 발견하였는데 東北지역의 개발이 이미 상당히 발전된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북지역에서의 이 시기의 名城은 遼東郡治襄平이 그 으뜸으로 간다. 襄平의 옛성은 遼寧 遼陽市 舊城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西漢 右北平郡 治平剛도 중요한 성시이다. 黑城城址은 內蒙古寧城縣甸子鄉黑城村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의 城址는 “花城”、“外羅城”과 “黑城” 세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 黑城은 遼代때 다스린 것이다.

行宮遺址: 河北省 秦皇島市 北戴河區 金山嘴로부터 遼寧省 綏中縣에까지에 이르는 錨灣의 연해 언덕지대에서 대형의 秦代行宮遺址를 발견하였다. 길이가 50킬로미터 되는 지대에서 金山嘴、黑山頭、石碑地、

²³⁵ 孫守道: 《漢代遼東長城列燧遺迹考》, 《遼海文物學刊》 1992年 2期; 王德柱: 《鴨綠江畔發現燕秦漢長城東段遺迹》, 《中國文物報》 1991年 5月 19日.

止錨灣、瓦子地、周家南山、大金絲屯、城子裏、南城地등 여러 곳의 秦代建築群址이 발견되었다.²³⁶

朝陽袁臺子遺址: 朝陽市の 서남쪽 10여킬로미터에 있는 大凌河 남쪽 기슭의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그 시대는 西漢이다.²³⁷

建平縣西胡素台古城址: 寧城縣 天義鎮의 북쪽에서 9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土城子自然村의 동남방향 약 500미터 되는 河川地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西漢時期的 古城遺址이다.²³⁸

紮寨營子古城址: 紮寨營子村의 동북에서 150미터 되는 牯牛河 서쪽 기슭의 低窪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西漢時期的 古城址이다.²³⁹

小荒地古城: 英房古城의 서북쪽에서 3리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上限은 春秋時期까지 이룰수 있다.²⁴⁰

英房古城址: 錦西邵集屯 女兒河의 북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漢代 遺址에 속한다.²⁴¹

薑女墳建築遺址: 山海關밖의 15킬로미터 되는 渤海와 가까이하고 있는데 石碑山、黑山頭、瓦子地、大金絲屯、止錨灣、周家南山등 유적들이 포괄된다. 이는 秦漢時期的 유적에 속한다.²⁴²

老龍頭漢代遺址: 綏中縣 王寶鄉 費家嶺村의 서북방향으로 약 500미터 되는 絶壁(斷崖)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西漢時期的 유적에 속한다.²⁴³

²³⁶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綏中縣“薑女墳”秦漢建築遺址發掘簡報》, 《文物》1986年 8期; 河北省文物研究所等: 《金山咀秦漢建築遺址發掘報告》, 《文物春秋》1992年增刊; 王德柱: 《“薑女墳”建築遺址的年代、性質及其相關問題》, 《北方文物》1991年 4期; 王德柱: 《與“碣石宮”相關的幾個問題》, 《遼海文物學刊》1992年 1期.

²³⁷ 高青山: 《朝陽袁臺子漢代遺址發掘報告》, 《遼海文物學刊》1987年 1期.

²³⁸ 李禹峰: 《遼寧建平縣兩座西漢古城址調查》, 《考古》1987年 2期.

²³⁹ 李禹峰: 《遼寧建平縣兩座西漢古城址調查》, 《考古》1987年 2期.

²⁴⁰ 王成生: 《錦西邵集屯英房古城址調查》, 《錦州文物通訊》1985年 2期.

²⁴¹ 王成生: 《錦西邵集屯英房古城址調查》, 《錦州文物通訊》1985年 2期.

²⁴²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遼寧綏中縣“薑女墳”秦漢建築遺址發掘簡報》, 《文物》1986年 8期.

²⁴³ 《遼寧省綏中縣老龍頭漢代遺址調查簡報》, 《博物館研究》1992年 2期.

蛇山子漢代遺址: 黑山鎮에서 동남으로 13킬로미터 내려가는 蛇山子村의 북쪽에 있는 높은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西漢時期的 유적에 속한다.²⁴⁴

撫順小甲邦漢代遺址: 撫順市 露天區 東洲小甲邦에 위치하고 있다. 시대는 西漢中晚期-東漢에 속한다.²⁴⁵

永陵漢城址: 新賓縣 永陵鎮의 동남방향으로 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魏晉시기에 계속 사용하였다.²⁴⁶

居就城址: 遼陽城의 남쪽에서 45,000미터 되는 河欄公社의 亮甲山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漢代城址에 속한다.²⁴⁷

遼陽三道壕村落址: 遼陽市에서 3리 되는 북쪽 교외인 三道壕村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西元前200년-西元25년의 유적이다.²⁴⁸

台安縣朱城子古遺址: 泰安縣 新開河鎮 李家窯村의 朱城子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漢代의 險瀆縣城이다.²⁴⁹

鞍山古代冶鐵遺址: 遼金元明의 각 시기에 다 있다.²⁵⁰

旅順牧羊城: 旅順口區 鐵山鎮 劉家村과 刁家村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 시대는 戰國末-東漢初이다.²⁵¹

旅順張家店城: 新金縣 普蘭店鎮의 서북으로 20리 되는 張店과 平房 사이의 二道嶺大隊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漢代城址에 속한다.²⁵²

璦河尖漢城址: 丹東市 九連城公社 璦河上尖大隊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西漢右安平縣유적에 속한다.²⁵³

²⁴⁴ 王素英: 《黑山縣蛇山子漢代遺址調查》, 《錦州文物通訊》 1993年 5期.

²⁴⁵ 武家昌: 《撫順市小甲邦漢代遺址》, 《中國考古學年鑒》 1990年 文物出版社.

²⁴⁶ 徐家國: 《遼寧新賓縣永陵鎮漢城址調查》, 《考古》 1989年 11期.

²⁴⁷ 《居就縣城址》, 《遼陽史迹簡介》第一集, 1982年 1月.

²⁴⁸ 東北博物館: 《遼陽三道壕西漢村落遺址》, 《考古學報》 1957年 1期.

²⁴⁹ 董凌山等: 《台安縣漢代險瀆城遺址考略》, 《鞍山文物彙編》 1992年 5期.

²⁵⁰ 張喜榮: 《從鞍山地區出土的古代鐵器和歷代有關冶鐵資料看鞍山冶鐵業的發展》, 《鞍山志通訊》 1987年 2期,

²⁵¹ 許明綱: 《旅順牧羊城》, 《大連工人報》 14期, 1991年 4月 8日.

²⁵² 《漢代城址》, 《旅大鄉土歷史教材資料》 1978年 2, 3期.

鳳城劉家堡遺址: 鳳凰山에서 7.5킬로미터 되는 鳳山利民鄉 劉家堡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西漢武次縣遺址에 속한다.²⁵⁴

寬甸縣秦代窖藏: 寬甸縣 太平哨公社 挂房大隊 小挂房小隊에서 동쪽으로 300미터 되는 산등성이밑에 위치하고 있다.²⁵⁵

綏中大官帽村貨幣窖藏: 綏中縣 大官帽村에서 동남쪽으로 150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 시대는 東漢時期이다.²⁵⁶

蘇家屯大溝鄉錢幣窖藏: 瀋陽蘇家屯區 大溝鄉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南北朝時期的 窖藏이다.²⁵⁷

旅順魯家村漢代窖藏: 旅順口區 江西公社 魯家大隊 魯家村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西漢中晚期的 窖藏이다.²⁵⁸

朝陽袁臺子墓地: 朝陽의 서남으로 10여킬로미터 되는 大凌河 남쪽 기슭의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그 시대는 西漢初年이다.²⁵⁹

喀左黃道營子漢墓: 喀左縣政府의 소재지(所在地) 大城子鎮의 서남방향으로 12킬로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²⁶⁰

錦州國和街漢代貝墓: 錦州凌河區 洛陽北國와 가두 서측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戰國末-西漢初期이다.²⁶¹

錦州漢代貝墓: 錦州女兒街、豐樂街、凌安街、雲飛路、門家窩鋪등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西漢-東漢時期이다.²⁶²

²⁵³ 王金波: 《丹東市璦河尖漢城址의 初步探索》, 《遼寧省考古、博物館學會成立大會會刊》 1981年.

²⁵⁴ 崔玉寬: 《鳳城發現西漢武次縣城遺址》, 《中國文物報》 第16期, 1958年 4月 23日.

²⁵⁵ 許玉林等: 《遼寧寬甸縣發現秦代石邑戈》, 《考古與文物》 1983年 3期.

²⁵⁶ 劉停戰: 《綏中縣大官帽村出土漢代貨幣》, 《遼寧文物》 1984年 6期.

²⁵⁷ 盧延超等: 《蘇家屯大溝鄉出五株錢》, 《遼寧金融·錢幣專輯》 1992年 9期.

²⁵⁸ 劉俊勇: 《旅順劉家村發現一處漢代窖藏》, 《文物資料叢刊》 1981年 4期.

²⁵⁹ 遼寧省博物館文物隊: 《遼寧朝陽袁臺子西漢墓1979年發掘簡報》, 《文物》 1990年 2期.

²⁶⁰ 傅宗德: 《喀左縣黃道營子漢墓》, 《博物館研究》 1990年 1期.

²⁶¹ 吳鵬等: 《錦州國和街漢代貝墓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1992年 1期.

西網漢墓: 錦西大凌河의 왼쪽 기슭에 있는 錦縣右衛人民公社 西網屯의 서쪽으로 1킬로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 시대는 東漢初期이다.²⁶³

昌盛漢墓: 錦縣右衛鄉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大凌河鎮과 19킬로미터 되는 사이를 두었다. 이는 東漢初期의 고분(墓葬)이다.²⁶⁴

瀋陽伯官屯漢魏墓葬: 瀋陽市에서 15킬로미터 되는 동쪽 교외인 伯官屯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西漢初-魏晉이다.²⁶⁵

紅寶山漢墓群: 瀋陽市 蘇家屯 十裏河鎮 紅寶山村의 서남에 있는 紅寶山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新莽時期보다는 이룰 수 없다. 이는 漢代의 墓葬이다.²⁶⁶

大南益文小區漢墓: 瀋陽市 沈河區 大南益文小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東漢中晚期的 墓葬이다.²⁶⁷

漢代四連墓: 瀋陽市の 교외에 있는 蘇家屯區 十裏鎮의 紅寶山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東漢時期的 墓葬이다.²⁶⁸

西岔溝墓: 遼寧西豐縣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래 고분이 450-500채 정도였다고 추측된다. 이는 中心墓區、東部墓區와 西部墓區로 나뉘지는데 그 년대는 武帝-宣帝時期이며 上限은 武帝이전, 下限은 宣帝初期까지 이룰 수 있다.²⁶⁹

撫順小甲邦東漢墓: 撫順市 順城區 碾盤鄉 小甲邦村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약 東漢中晚期이다.²⁷⁰

²⁶² 劉謙: 《遼寧錦州漢代貝墓》, <考古> 1990年 8期.

²⁶³ 傅俊山: 《錦縣西網漢墓發掘簡報》, 《遼寧文物》 1981年 1期.

²⁶⁴ 傅俊山: 《遼寧錦縣右衛鄉昌盛漢墓清理簡報》, 《北方文物》 1987年 4期.

²⁶⁵ 瀋陽市文物工作組: 《瀋陽伯官屯漢魏墓葬》, 《考古》 1964年 11期.

²⁶⁶ 劉長江等: 《紅寶山漢墓群清理簡報》, 《瀋陽文物》 1993年 1期.

²⁶⁷ 林茂雨: 《瀋陽大南益文小區漢墓清理簡報》, 《瀋陽文物》 1992年 創刊號.

²⁶⁸ 俊岩, 茂雨: 《瀋陽發現漢代四連墓》, 《中國文物報》 第36期, 1989年 9月 15日.

²⁶⁹ 孫守道: 《“匈奴西岔溝文化”古墓群的發現》, 《文物》 1960年 8, 9期.

²⁷⁰ 撫順市 博物館: 《撫順小甲邦東漢墓》, 《遼海文物學刊》 1992年 2期.

撫順市劉爾屯村漢墓: 撫順市の 교외에 있는 李石寨鄉 劉爾屯村에 위치하고 있다. 그 시대는 西漢晩期이다.²⁷¹

中央路東漢墓: 撫順市 中央路 工商銀行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기차역전과 400미터의 거리가 된다.²⁷²

南雪梅村壁畫墓、石墓: 遼陽縣 安平區 小屯鄉 南雪梅村에 위치하고 있다. 그 시대는 약 漢魏때이다.²⁷³

唐戶屯漢墓: 遼陽市の 동쪽 교외에서 18리 떨어져 있는 唐戶屯에 위치하고 있다. 그 시대는 兩漢이다.²⁷⁴

遼陽漢晉壁畫墓群: 遼陽의 북쪽교외에 있는데 北園墓、迎水寺墓、南林子墓、棒臺子墓、三道壕墓、上王家墓、道西莊墓 등을 포괄하고 있다.²⁷⁵

三道壕兒童甕棺墓群: 遼陽市の 북쪽 교외인 三道壕遼陽窖廠第二取土場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대략 西漢初、中期인데 제일 늦어서 新莽시기까지는 되지 못한다.²⁷⁶

棒臺子二號墓: 遼陽市에서 44킬로미터 되는 동북교외인 棒臺子屯의 동쪽으로 200미터 떨어져 있는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漢魏時期的 壁畫墓이다.²⁷⁷

遼陽舊城東門裏東漢壁畫墓: 遼陽市の 옛 明代的 舊城 東牆 南端 平夷門의 남쪽으로 75미터 되는 성벽(城牆)내측의 牆基에 위치하고 있다. 그 시대는 대개 東漢中期보다 좀 뒤늦다.²⁷⁸

遼陽北園壁畫墓: 遼陽舊城의 서북에 있는 北園瓦窯子村落의 동남쪽

271 肖景全, 郭振安: 《遼寧撫順市劉爾屯村發現兩座漢墓》, 《考古》 1991年 2期.

272 鄭辰: 《撫順市中央路東漢墓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1991年 2期.

273 王增心: 《遼寧遼陽縣南雪梅村壁畫墓及石墓》, 《考古》 1960年 1期.

274 沈欣: 《遼陽唐戶屯一帶的漢墓》, 《考古通訊》 1955年 4期.

275 竹節: 《遼陽漢晉壁畫墓群》, 《遼寧大學學報》 1990年 5期.

276 陳大爲: 《遼陽三道壕兒童甕棺墓發掘簡報》, 《考古通訊》 1956年 2期.

277 王增新: 《遼陽市棒臺子二號壁畫墓》, 《考古》 1960年 1期.

278 馮永謙等: 《遼陽舊城東門裏東漢壁畫墓發掘報告》, 《文物》 1985年 6期.

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약 東漢中期혹은 後期이다.²⁷⁹

棒臺子屯壁畫墓: 遼陽市에서 8리 떨어져 있는 서북 교외인 棒臺子屯 1리밖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東漢晩期の 壁畫墓이다.²⁸⁰

三道壕窯業第四現場壁畫古墓: 遼陽市에서 6리 되는 북쪽 교외인 窯廠第四現場取土場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漢代晩期の 壁畫墓이다.²⁸¹

三道壕窯業第二現場令支令張君墓: 遼陽市에서 5리 되는 북쪽 교외 窯廠第二現場取土場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魏人壁畫墓이다.²⁸²

北陶漢墓: 遼寧省 鞍山市 鐵西區 六街口의 북쪽에서 300미터 되는 거리의 동권, 新開街거리에서 20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上限은 西漢中期보다 이르지 않으며 下限은 王莽時代보다 뒤늦지 않을 것이다. 이는 西漢晩期の 墓葬에 속한다.²⁸³

營口地區漢墓: 營口熊岳城、蘆家屯、蓋縣、東達營、鮫魚圈、營口縣 등 곳에서 수많은 漢墓를 발견하였다.²⁸⁴

蓋縣東漢墓: 蓋縣 九龍地鄉 九龍地村、東達營子、鮫魚圈鄉草房村에 위치하고 있다.²⁸⁵

瓦房店馬圈子漢魏晉墓地: 老虎屯滿族鎮 馬圈子村의 동쪽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다. 그 시대는 魏晉時期이다.²⁸⁶

李家溝西漢貝墓: 旅順口區 北海公社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약 西漢中葉이다.²⁸⁷ 旅順漢代古墓에는 또 牧羊城古井墓、勞動公園古墓、三澗區古墓、尹家村古墓、刁家村墓、營城子壁畫墓 등이 있다.²⁸⁸

²⁷⁹ 李文信: 《遼陽北園壁畫古墓記略》, 《國立瀋陽故宮博物院叢刊》 1947年 10月.

²⁸⁰ 李文信: 《遼陽發現的三座壁畫古墓》, 《文物參考資料》 1955年 5期.

²⁸¹ 李文信: 《遼陽發現的三座壁畫古墓》, 《文物參考資料》 1955年 5期.

²⁸² 李文信: 《遼陽發現的三座壁畫古墓》, 《文物參考資料》 1955年 5期.

²⁸³ 劉景玉等: 《北陶漢墓發掘簡報》, 《鞍山文物彙編》 1992年 5期.

²⁸⁴ 崔德文: 《營口地區漢墓研究綜述》, 《中國考古集成·東北卷》10, 北京出版社 1997年.

²⁸⁵ 許玉林: 《遼寧蓋縣東漢墓》, 《文物》 1993年 4期.

²⁸⁶ 劉俊勇: 《瓦房店市馬圈子漢魏晉墓地》, 《中國考古學年鑒》 1990年 文物出版社.

²⁸⁷ 於臨祥: 《旅順李家溝西漢貝墓》, 《考古》 1965年 3期.

新金縣後元台石槨墓: 新金縣 大沙河의 상류(上游)에 있는 園台公社 뒤의 圓臺大隊第二生産隊 馬尾地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西漢初年の 墓葬이다.²⁸⁹

花兒山漢代貝墓: 新金縣 普蘭店鎮에서 서북으로 약 7킬로미터 올라가는 花兒山公社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西漢晩期の 고분이다.²⁹⁰

馬山漢代貝墓: 新金縣 贊子河公社 崔家窯大隊의 서쪽으로 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馬山の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西漢晩期の 墓葬이다.²⁹¹

前牧城驛東漢墓: 大連에서 旅順으로 통하는 도로의 북측에 있는 前牧城驛村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東漢前期의 고분이다.²⁹²

大連沙崗子東漢墓: 大連市 沙崗子村의 북쪽에 있는 沙土崗의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東漢初期의 고분이다.²⁹³

2. 吉林省戰國秦漢時期遺迹

大安漁場古代墓地: 洮兒河와 嫩江이 회합하는 月亮泡의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그 시대는 戰國-西漢에 해당하며 그 下限은 遼보다는 뒤 늦지 않다.²⁹⁴

榆樹老河深中層墓地: 吉林省 榆樹縣 老河深村의 남쪽에 있는 광활한

²⁸⁸ 於臨祥: 《旅順牧羊城發現古井古墓》, 《文物參考資料》 1956年 8期; 於臨祥: 《旅順勞動公園東門發現古墓》, 《文物參考資料》 1956年 6期; 於臨祥: 《旅順市三潤區發現古墓》, 《文物參考資料》 1956年 2期; 於臨祥: 《旅順尹家村發現古墓》, 《文物參考資料》 1955年 7期; 吳青雲: 《營城子漢代壁畫墓散記》, 《中國文物報》 第5期, 1989年 2月 3日; 劉俊勇: 《大連尹家村、刁家村漢墓發掘簡報》, 《大連文物》 1990年 2期.

²⁸⁹ 許明綱、於臨祥: 《遼寧新金縣後元台發現銅器》, 《考古》 1980年 5期.

²⁹⁰ 旅順博物館、新金縣文化館: 《遼寧新金縣花兒山漢代貝墓第一次發掘》, 《文物資料叢刊》 1981年4期.

²⁹¹ 新金縣文化館: 《遼寧新金縣馬山漢代貝墓》, 《金州博物館館刊》 1981年 4期.

²⁹² 旅順博物館: 《遼寧大連前牧城驛東漢墓》, 《考古》 1986年 1期.

²⁹³ 許明綱等: 《遼寧大連沙崗子發現二座東漢墓》, 《考古》 1991年 2期.

²⁹⁴ 楊晶: 《吉林大安漁場墓地的時代與族屬》, 《考古與文物》 1988年.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데 第二松花江의 북쪽 기슭에 자리잡았다. 中層에 속하는 고분이 총 129채된다. 그 년대는 약 漢末年-東漢이다.²⁹⁵

泡子沿前山遺址: 吉林市 泡子沿의 前山에 위치하고 있다. 遺址의 上層의 년대는 약 戰國晚期-西漢이다.²⁹⁶

帽兒山古墓群: 吉林市的 교외인 江南鄉 裕民村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西漢紀年사이에 있다.²⁹⁷

永吉學古漢墓: 永吉縣 烏拉街滿族鄉 學古村에 위치하고 있다.²⁹⁸

舒蘭縣黃魚圈珠山1號墓: 九台關馬山M1、石砬山上層墓葬、公主嶺猴石墓葬을 포함하는데 그 시대는 戰國晚期-西漢시기이다. ²⁹⁹

刑家店墓地: 農安刑家店에 위치하고 있다. 德惠王家砬子北嶺은 刑家店時代와 비슷한데 약 戰國-漢代의 유적이다.³⁰⁰

東遼山驛公社墓群: 東遼縣 石驛公社의 彩嵐과 長興大隊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의 上限은 漢武帝전후, 下限은 西漢末期이다.³⁰¹

興隆山鮮卑墓群: 通榆縣 興隆山公社에 위치하고 있다. 그 시대의 上限은 西漢中期이고 下限은 東漢前期의 鮮卑墓葬이다.³⁰²

永吉學古東山遺址: 永吉縣 烏拉街公社의 동북방향에 있는 吉舒鐵路와 公路가 교체되는 漫崗에 위치하고 있다. 下層의 년대는 西團山文化에

²⁹⁵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榆樹老河深》, 文物出版社 1987年.

²⁹⁶ 吉林市博物館: 《吉林市泡子沿前山遺址和墓葬》, 《考古》 1985年 6期.

²⁹⁷ 吉林市博物館: 《吉林帽兒山漢代木槨墓》, 《遼海文物學刊》 1988年 2期.

²⁹⁸ 尹玉山: 《吉林永吉學古漢墓清理簡報》, 《博物館研究》 1985年 1期.

²⁹⁹ 吉林市文物工作隊: 《吉林舒蘭黃魚圈珠山遺址清理簡報》, 《考古》 1985年 4期; 吉林市文物考古研究所: 《吉林九台市石砬山, 關馬山西團山文化墓地》, 《考古》 1991年 4期; 武保中: 《吉林公主嶺猴石古墓》, 《北方文物》 1989年 4期.

³⁰⁰ 吉林市文物考古研究所: 《吉林農安刑家店北山墓葬發掘簡報》, 《考古》 1989年 4期; 劉紅宇: 《吉林省德惠王家砬子北嶺發現的古代遺存》, 《北方文物》 1985年 1期.

³⁰¹ 劉升燕: 《東遼縣石驛公社古代墓群出土文物》, 《博物館研究》 1984年 3期.

³⁰² 通榆縣興隆山公社鮮卑墓葬出土文物》, 《東北師範大學學報》 1982年 4期.

해당되고 上層의 년대는 西漢時期에 해당된다.³⁰³

漢陶遺存：吉林市的 교외에 분포되어 있다. 대개 西漢時期的 夫餘遺存에 속한다.³⁰⁴

農安縣田家坨子遺存：農安田家坨子에 위치하고 있다. 시대는 약 戰國晚期-漢代이다.³⁰⁵

自安山城遺址：吉林省 通化市 江東鄉 自安村 夾心屯의 북산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漢代城址이다.³⁰⁶

赤松柏漢城：通化縣 快大茂鎮의 서남으로 2.5킬로미터 되는 비탈에 위치하여 있다. 이는 漢代城址이다.³⁰⁷

十八盤遺址：榆樹市 五棵樹鎮 龔家村에 위치하고 있다. 그 시대는 西漢末-東漢初이다.³⁰⁸

大坡古城址：榆樹縣의 남쪽에서 서쪽으로 기울어 32킬로미터 되는 大坡鎮의 동남방향 2킬로미터 떨어져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³⁰⁹

“南城子”城址：東團山の 동남쪽에 있는 완만한 비탈의 臺地에 자리잡고 있다.³¹⁰

3. 黑龍江省戰國秦漢時期遺迹

大城子古城址：東甯縣 綏芬河의 남쪽 기슭에서 2킬로미터 되는 冲積盆地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渤海古城址에 속한다.³¹¹

³⁰³ 吉林市博物館：《吉林永吉縣學古東山遺址試掘報告》，《考古》1981年 6期.

³⁰⁴ 吉林市博物館：《吉林江北土城子古文化遺址及石棺墓》，《考古學報》1957年 2期.

³⁰⁵ 吉林大學歷史系考古專業：《吉林農安田家坨子遺址試掘簡報》，《考古》1979年 2期.

³⁰⁶ 柳蘭等：《吉林通化市漢代自安山城調查與考證》，《博物館研究》1991年 3期.

³⁰⁷ 邵春華等：《赤松柏漢城調查》，《博物館研究》1987年 3期.

³⁰⁸ 李新萌：《十八盤遺址調查簡報》，《長春文物》第7期.

³⁰⁹ 於樹仁：《大坡古城址》，《長春文物》2期.

³¹⁰ 武國勳：《夫余王城新考》，《黑龍江文物叢刊》1983年 4期.

³¹¹ 張秦湘：《大城子古城調查記》，《文物資料叢刊》第4輯.

哈土崗子遺址: 肇東縣의 남쪽으로 40킬로미터 되는 哈土崗子村과 後屯사이의 흙언덕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漢書二期”과 비슷하다.³¹²

團結遺址: 黑龍江 東寧縣 大肚川公社에 위치하고 있다. 團結遺址下層을 대표로 한 遺存을 團結文化이라고 한다. 그 년대는 西元前5世紀-西元1世紀이다.³¹³

東康遺址: 牡丹江中上游일대 지역에 黑龍江 甯安縣을 대표로 하는 東康류형의 유적이 분포되어 있다.³¹⁴

挹婁文化遺存: 黑龍江中游이하의 연안(沿岸)에서 해구(海口)에까지 이르러 남쪽으로 바다옆까지 닿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는 우리 나라 黑龍江省 三江平原에서도 발견하였는데 綏濱縣 新城鎮 동쪽 蜿蜒河의 서쪽 기슭의 臺地의 전형적 유적을 蜿蜒河類型이라 부른다. 이와 같은 류형에 속하는 유적으로 또 黑龍江中游蘿北縣三馬架, 烏蘇里江下游撫遠縣海青 등이 있는데 그 분포범위는 북쪽으로 黑龍江中游의 연안, 서쪽으로 佳木斯이동, 남쪽으로 友誼縣이북까지 이른다. 碳十四의 측정으로 얻은 波爾采文化의 년대는 뚜렷이 이르러 중국학자들은 鐵器가 극히 발달된 波爾采文化의 년대의 上限은 漢代보다 이룰수 없다고 보며 대체적으로 漢魏晉時期에 해당된다는 것이다.³¹⁵

滾兔嶺遺址: 雙鴨山市와 集賢縣이 접경하는 滾兔嶺에 위치하고 있다. 이 류형은 張廣才嶺이동, 남쪽으로 雞西、林口일대, 북쪽으로 樺川、友誼일대까지의 범위를 포괄하였다. 滾兔嶺類型的 HC資料(樹輪校正)로 알려진 그 년대는 西元前175±85年이다.³¹⁶

佳木斯市市郊山城遺址: 四豐山大隊古城山城、民興大隊大頭山山

³¹²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等: 《黑龍江省肇東縣哈土崗子遺址試掘簡報》, 《北方文物》 1988年 3期.

³¹³ 林沄: 《論團結文化》, 《北方文物》 1985年 1期.

³¹⁴ 譚英傑等: 《黑龍江區域考古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年版.

³¹⁵ 譚英傑等: 《黑龍江區域考古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年版; 林沄: 《肅慎、挹婁和沃沮》, 《遼海文物學刊》 1986年 1期; 賈偉明等: 《論挹婁的考古學文化》, 《北方文物》 1989年 3期.

³¹⁶ 譚英傑等: 《黑龍江區域考古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1年版; 林沄: 《肅慎、挹婁和沃沮》, 《遼海文物學刊》 1986年 1期.

城、前董家子古城山山城、復興大隊東山山城、中豐大隊小城子山山城、三連大隊石砬子山山城、山音二龍山山城遺址를 포괄한다. 그 시대는 同仁一期에 해당된다.³¹⁷

V. 魏晉南北朝隋唐時期遺迹

1. 遼寧省魏晉南北朝隋唐時期遺迹

朝陽十二台鄉磚廠墓: 朝陽市에서 남쪽으로 11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袁臺子村 동북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十二台營子村과 2킬로미터 사이두고 있다. 이는 兩晉十六國時期的 고분(墓葬)이다.³¹⁸

單家店鄉墓群: 朝陽市 單家店鄉 榆樹溝 七家村的 남쪽에 있는 取土場의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兩晉十六國時期的 고분이다.³¹⁹

朝陽大平房鎮墓葬: 朝陽縣 大平房鎮 公阜村에 위치하고 있다. 그 시대는 晉代이다.³²⁰

袁臺子壁畫墓: 朝陽市에서 남쪽으로 24리 내려오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東晉의 石槨壁畫墓에 속하는데 그 년대는 약 4세기중엽전후이다.³²¹

朝陽八寶村1號墓: 朝陽鳳凰山の 서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八寶村의 마을남쪽의 南臺子남부는 北燕시기의 鮮卑의 石室墓이다.³²²

大平房村壁畫墓: 朝陽市에서 서남쪽으로 3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老

³¹⁷ 佳木斯市文管站: 《佳木斯市郊山城遺址調查》, 《黑龍江文物叢刊》 1982年 3期.

³¹⁸ 李禹峰: 《遼寧朝陽兩晉十六國時期墓葬清理簡報》, 《北方文物》 1986年 1期.

³¹⁹ 李禹峰: 《遼寧朝陽兩晉十六國時期墓葬清理簡報》, 《北方文物》 1986年 1期.

³²⁰ 邱金輝: 《朝陽發現晉代墓葬》, 《中國文物報》 1994年 11月 4日.

³²¹ 遼寧省文物工作隊等: 《朝陽袁臺子東晉壁畫墓》, 《文物》 1984年 6期.

³²² 徐基、孫國平: 《遼寧朝陽發現北燕、北魏墓》, 《考古》 1985年 10期.

虎山河와 大凌河가 회합하는 곳의 왼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北燕時期的 鮮卑石室墓에 속한다.³²³

朝陽田草溝墓: 朝陽市 西營子鄉 仇家店村 田草溝에 위치하고 있는데 東晉의 鮮卑墓이다.³²⁴

朝陽縣溝門子晉墓: 朝陽市 西南溝門子鄉 東山村에 위치하고 있는데 東晉의 鮮卑墓이다. 시대는 西官營子和 가깝다.³²⁵

後燕崔遜墓: 朝陽縣 十二台鄉 姚金溝村的 北山비탈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대는 대략後燕의 建興년간(年間)이다.³²⁶

北廟村1、2號墓: 朝陽市の 서쪽으로부터 40킬로미터 떨어져있는 溝門子公社 北廟村的 서쪽에 자리잡은 王子墳의 동쪽비탈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北燕시기의 鮮卑石室墓이다.³²⁷

上臺珍珠岩廠墓: 朝陽市 西上臺珍珠岩廠마당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北魏시기의 磚室墓이다.³²⁸

北魏劉賢墓: 朝陽市 西上臺珍珠岩廠 마당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³²⁹

後燕龍騰苑遺址: 朝陽市 朝陽鎮 凌北公社 木營子大隊에 위치하고 있다.³³⁰

凌河機械廠北魏石室墓: 朝陽의 서북쪽에 있는 凌河機械廠居住區에 위치하고 있다.³³¹

北魏張略墓: 朝陽의 서북쪽에 있는 凌河機械廠居住區에 위치하고

³²³ 徐基、孫國平:《遼寧朝陽發現北燕、北魏墓》,《考古》1985年 10期.

³²⁴ 萬萬欣:《中國考古學年鑒》,文物出版社 1990年.

³²⁵ 陳大爲:《朝陽縣溝門子晉壁畫墓》,《遼海文物學刊》1990年 2期.

³²⁶ 陳大爲等:《遼寧朝陽後燕崔遜墓的發現》,《考古》1982年 3期.

³²⁷ 徐基、孫國平:《遼寧朝陽發現北燕、北魏墓》,《考古》1985年 10期.

³²⁸ 徐基、孫國平:《遼寧朝陽發現北燕、北魏墓》,《考古》1985年 10期.

³²⁹ 曹汎:《北魏劉賢墓誌》,《考古》1984年 7期.

³³⁰ 朱子方:《記後燕龍騰苑遺址的發現》,《東北地方史研究》1984年 創刊號.

³³¹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等:《朝陽市發現的幾座北魏墓》,《遼海文物學刊》1995年 1期.

있다.³³²

朝陽西大營子北魏墓: 朝陽市 西大營子公社 河南大隊 四隊村的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³³³

隋韓暨墓: 朝陽市の 북교외에 있는 황무지의 서북쪽으로부터 300미터 떨어져있는 狼山の 남쪽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³³⁴

朝陽自來水管道工地墓群: 朝陽市 雙塔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北魏, 隋唐, 遼金元의 각 시대의 墓가 흩어져 존재한 곳이다.³³⁵

朝陽唐墓群: 朝陽鎮을 중심으로하여 북쪽은 十家子河, 남쪽은 大凌河를 범위로 하면 墓群을 세개 墓區로 나눌수 있다. 一區는 朝陽鎮의 서북방향에 위치하고 있는데 十家子河의 동안(東岸)과 가깝다. 주요하게 西上臺墓地, 於家窩鋪墓地, 北大橋墓地, 朝陽重型廠墓地, 紡織廠墓地 등이 있고 중요한 고분(墓葬)은 張秀墓, 王德墓, 韓貞墓가 있다. 二區는 朝陽鎮의 동남방향에 위치하고 있는데 大凌河洗岸과 가깝다. 주요하게 大凌河洗岸墓地, 飼養廠墓地, 中山營子墓地, 南大橋墓지가 있고 중요한 고분 [墓葬] 은 左才墓, 勾龍墓, “朝散大夫”大墓가 있다. 三區는 朝陽鎮의 서남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한 고분(墓葬)은 師範學校墓地, 西大營子八裏堡屯墓地 등이 있고 중요한 고분(墓葬)은 孫默墓가 있다.³³⁶

北票慕容鮮卑墓群: 遼寧省 北票西南房身村에 위치하고 있는데 慕容鮮卑의 石板墓群이다. 시대는 西元3-4세기이다.³³⁷

馮素弗墓: 北票市の 서남쪽으로부터 42리 떨어져있고 남쪽은 朝陽으로부터 70여리 떨어져있는 西官營子에 위치하고 있다. 馮素弗墓부근에 또 두 채의 墓葬가 있는데 이는 한 家族墓地이다. 기타 北燕墓群은 또

³³² 張克舉, 田立坤: 《朝陽市郊北魏張略墓》, 《中國考古學年鑒》(1988年), 文物出版社.

³³³ 孫國平: 《朝陽西大營子北魏墓》, 《遼寧文物》1983年 4期.

³³⁴ 孫國平: 《朝陽新荒地隋韓暨墓清理簡報》, 《遼寧文物》1980年 1期.

³³⁵ 遼寧文物考古研究所: 《朝陽自來水管道工地墓葬發掘》, 《遼海文物學刊》1993年 1期.

³³⁶ 辛岩: 《遼西朝陽唐墓的初步研究》, 《遼海文物學刊》1994年 2期.

³³⁷ 陳大爲: 《遼寧北票房身村晉墓發掘簡報》, 《考古》1960年 1期.

주요하게 北鹿村1號壁畫墓, 袁臺子墓, 北廟村2號墓 등이 있다.³³⁸

下喇嘛溝晉墓: 北票縣 小塔子公社 西營子大隊 下喇嘛溝生產隊에 위치하고 있다.³³⁹

北票下杖子唐墓及遺址: 北票市 哈爾腦鄉 下杖子村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분년대(墓葬時代)는 唐중기이전이다. 유적 [遺址]의 상한선(上限)은 唐代에까지 이룰수 있다.³⁴⁰

安和街墓: 錦州市의 동북쪽으로부터 40킬로미터 떨어져있는 靠山屯의 북쪽편에 있는 劉龍溝鄉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北魏시기의 磚室墓이다.³⁴¹

李廐墓: 錦州市구역(區)내에 위치하고 있다. 그 년대는 太寧二年(324年)이다.³⁴² 保安寺墓葬: 錦州市의 동북쪽으로부터 40킬로미터 떨어져있는 靠山屯의 북쪽편에 있는 劉龍溝鄉 保安寺村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漢代말기의 고분(墓葬)이다.³⁴³

陳相屯魏晉墓: 瀋陽市の 남쪽교외에 있는데 蘇家屯區 陳相屯의 기차역전으로부터 0.5킬로미터 떨어져있는 沙河기슭의 臺地上에 위치하고 있다. 上限은 東漢보다 이르지않고 下限은 응당 魏晉시기에 속한다.³⁴⁴

遼陽三道壕西晉墓: 遼陽市の 북쪽교외에 있는 三道壕村의 북쪽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져있는 窯場取土區에 위치하고 있다.³⁴⁵

本溪晉墓: 本溪市の 동쪽으로부터 약 50킬로미터 떨어져있는 小市鎮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本溪縣정부의 소재지이다. 년대는 兩晉十六國시기와 대응된다.³⁴⁶

³³⁸ 黎瑤渤: 《遼寧北票縣西官營子北燕馮索弗墓》, 《文物》 1973年 3期.

³³⁹ 董高、周亞力: 《北票縣下喇嘛溝發現一座晉墓》, 《遼寧文物》 1980年 1期.

³⁴⁰ 于俊玉、韓國祥: 《北票下杖子唐墓及附近遺址調查》, 《遼海文物學刊》 1993年 2期.

³⁴¹ 劉謙: 《錦州北魏墓清理簡報》, 《考古》 1990年 5期.

³⁴² 辛發等: 《錦州前燕李廐墓清理簡報》, 《文物》 1995年 6期.

³⁴³ 劉謙: 《遼寧義縣保安寺發現繁榮古代墓葬》, 《考古》 1963年 1期.

³⁴⁴ 周陽生: 《瀋陽陳相屯魏晉石槨墓清理》, 《遼海文物學刊》 1993年 1期.

³⁴⁵ 遼陽博物館: 《遼陽市三道壕西晉墓清理簡報》, 《考古》 1990年 4期.

旅大營城子古墓: 旅大市 營城子村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년대는 東漢말기로부터 高句麗초기까지의 고분(墓葬)이다.³⁴⁷

桓仁米倉溝高句麗壁畫墓: 桓仁縣의 동남쪽으로부터 약 10킬로미터 떨어져있는 雅河米倉溝村에 위치하고 있는데 년대는 대략 4세기중말기로부터 5세기초까지이다.³⁴⁸

桓仁大甸子石棺墓: 桓仁 四道河子鄉 大甸子村 灣溝子에 위치하고 있는데 년대는 戰國말기 혹은 그보다 더 늦다.³⁴⁹

大夾板溝墓群: 沙尖子鎮 秋皮溝村 大夾板溝의 溝口에 위치하고 있는데 년대는 대략 西漢시기다.³⁵⁰

鳳鳴石室墓: 桓仁鎮 鳳鳴村 渾江기슭옆(岸邊)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漢代 고분(墓葬)이다.³⁵¹

望江樓積石墓: 雅河鄉의 남쪽에 있는 石哈達村의 북쪽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져있는 산등성이에 있다. 년대는 약 漢武帝로부터 漢昭帝까지다.³⁵²

胡家堡積石墓: 鳳城 大堡滿族自治縣 愛路村 胡家堡村民組의 서북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떨어져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高句麗중기의 유적(遺址)이다.³⁵³

孟家積石墓: 鳳城縣 石城鄉 孟家村 孟家堡子村民組에 위치하고 있는

³⁴⁶ 遼寧省博物館: 《遼寧本溪晉墓》, 《考古》 1984年 8期.

³⁴⁷ 許明綱: 《旅大市營城子古墓清理》, 《考古》 1989年 6期.

³⁴⁸ 武家昌: 《遼寧桓仁高句麗壁畫墓》, 《中國文物報》18期, 1993年 5月 9日.

³⁴⁹ 梁志龍、王俊輝: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1994年 2期.

³⁵⁰ 梁志龍、王俊輝: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1994年 2期.

³⁵¹ 梁志龍、王俊輝: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1994年 2期.

³⁵² 梁志龍、王俊輝: 《遼寧桓仁出土青銅遺物墓葬及相關問題》, 《博物館研究》 1994年 2期.

³⁵³ 許玉林、任鴻魁: 《遼寧鳳城胡家堡、孟家積石墓發掘簡報》, 《博物館研究》 1991年 2期.

데 高句麗중기의 유적(遺址)이다.³⁵⁴

朝陽城牆遺迹: 朝陽市區의 城建工程중에서 발견하였는데 년대는 三燕에 앞설 수 있고 그 方位와 走向은 지금의 朝陽老城西城牆의 흔적과 서로 맞다. 지금의 朝陽市老城西、南、北의 세 벽의 흔적은 아직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동쪽은 이미 大凌河로 하여 침식(侵蝕)되고 城牆은 東北—西南방향의 사다리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三燕의 龍城으로 추측하고 있다.³⁵⁵

朝陽北塔、“思燕佛圖”基址: 朝陽北塔를 뒤손질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朝陽北塔는 朝陽老城區의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磚塔는 唐代에 세웠고 遼代에 뒤손질(維修)하였다. 1986년—1989년의 維修工程에서 夯土台基가 상, 하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下部는 唐代磚塔와 부동한시기의 건축유적이다. 下層台基는 方形樓閣式木塔의 塔基이고 塔基의 네 모퉁이에 남긴 것은 옛 三巷礎石인데 木塔는 三燕 후에 세운 것이다. 이 木塔는 가능하게 鑿箕翌太后裔이 건축한 “思燕佛圖”이다.³⁵⁶

萬佛堂石窟: 遼寧省 義縣의 서북쪽으로부터 18리 되는 萬佛堂村의 大凌河 북쪽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萬佛堂石窟는 東、西兩區, 東區7窟, 西區9窟로 나뉜다. 西區는 北魏太和二十三年(499년)에 營州刺史 元景이 건축하였다. 東區는 北魏景明三年(502년)에 韓貞、劉都都、劉初勿丹 등 74사람이 건축한 私窟이다.³⁵⁷

尙姑堂石窟: 義縣 頭台鄉 尙姑堂村의 西山의 절벽에 위치하고 있는데 尙姑堂石窟는 아직 可資參考年代의 碑刻와 摩崖題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中原地區 北魏후기의 石窟造形과 대체적으로 같은데 그 년대는 약 北魏晩期이다.³⁵⁸

³⁵⁴ 許玉林、任鴻魁: 《遼寧鳳城胡家堡、孟家積石墓發掘簡報》, 《博物館研究》 1991年 2期.

³⁵⁵ 董高: 《朝陽北塔思燕佛圖基址考》, 《遼海文物學刊》 1991年 2期.

³⁵⁶ 董高: 《朝陽北塔思燕佛圖基址考》, 《遼海文物學刊》 1991年 2期.

³⁵⁷ 《中國大百科全書·考古學》, 《義縣萬佛堂石窟》,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6年 第一版.

金嶺寺西北地遺址: 遼寧 北票縣 大板鎮 金嶺寺屯의 서북쪽에 있는 大凌河畔에 위치하고 있다. 어떤 학자는 이 유적은 가능하게 棘城과 관계된다고 추측하였다.³⁵⁹

唐鴻臚井刻石: 이 刻石은 원래 大連旅順口區의 黃金山 북쪽산등성이에 있었는데 지금은 東京 千代田구역(區) 皇宮내(內)의 建安府의 앞마당에 있다.³⁶⁰

五女山城: 桓仁縣의 동쪽으로부터 8.5킬로미터 떨어져있고 渾江 맞은편 기슭에 있는 五女山에 위치하고 있다. 산성에서 남쪽으로 5킬로미터 내려오면 渾江의 맞은편 기슭에 있는 高力墓子村부근에는 년대가 비교적 이른 高句麗積石墓群이 있다.³⁶¹

下古城子古城: 桓仁縣의 서쪽으로부터 4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渾江의 맞은편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로부터 강을 따라 10킬로미터 거슬러 올라가면 五女山城에 도달한다. 성의 북쪽으로부터 1.5킬로미터 떨어져있는 上古城子에는 년대가 비교적 이른 積石墓群을 보유한 적이 있다.³⁶²

催陣堡觀音閣山城: 鐵嶺縣의 남쪽으로부터 20킬로미터 떨어져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高句麗山城이다.³⁶³

靑龍山古城: 鐵嶺 催陣堡觀音閣山城의 남쪽으로부터 5킬로미터 떨어져있는 靑龍山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高句麗山城이다.³⁶⁴

馬家寨山城: 開原 馬家寨村의 북쪽으로부터 약 100킬로미터 떨어져있

³⁵⁸ 吳鵬: 《義縣尙姑堂石窟調查》, 《遼海文物學刊》 1991年 1期.

³⁵⁹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等: 《白石水庫淹沒區考古調查簡報》, 《遼海文物學刊》 1994年 2期.

³⁶⁰ 張博泉、魏存成: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1998年.

³⁶¹ 馬俊: 《五女山山城》, 《遼寧大學學報》 1986年 1期.

³⁶² 蘇長清: 《高句麗早期平原城——下古城子》, 《遼寧省考古、博物館學會成立大會會刊》 1981年.

³⁶³ 曹桂林、王鐵軍: 《鐵嶺境內五座高句麗山城簡介》, 《遼海文物學刊》 1994年 2期.

³⁶⁴ 曹桂林、王鐵軍: 《鐵嶺境內五座高句麗山城簡介》, 《遼海文物學刊》 1994年 2期.

는 요자형(凹字形)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高句麗山城이다.³⁶⁵

古城子山城: 開原 八棵樹鄉 古城子村의 동북쪽으로부터 100미터 떨어져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高句麗山城이다.³⁶⁶

龍潭山城: 開原 威遠堡鎮 龍王嘴村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高句麗山城이다.³⁶⁷

西豐城子山山城: 西豐城의 남쪽으로부터 27킬로미터 떨어져있는 城子山에 있는데 이는 高句麗山城이다.³⁶⁸

石臺子山城: 瀋陽 東陵區 滿堂鄉 石臺子村의 동북쪽에 있는 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高句麗말기의山城이다.³⁶⁹

撫順高爾山山城: 撫順市 北渾河의 북쪽기슭에 있는 高爾山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高句麗초기의山城이다.³⁷⁰

撫順前屯、窪渾木高句麗墓: 撫順市의 동쪽교외에 있는 渾河북쪽기슭의 沿河平原에 위치하고 있다.³⁷¹

英額門子山城: 清原縣 英額門公社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짚이후이다.³⁷²

新賓五龍高句麗山城: 新賓縣의 서북쪽에 있는 夾河鎮 得勝堡水庫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高句麗중후기의山城이다.³⁷³

新賓黑溝山城: 新賓縣 紅廟子鄉 四道溝村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³⁶⁵ 曹桂林、王鐵軍：《鐵嶺境內五座高句麗山城簡介》，《遼海文物學刊》1994年 2期。

³⁶⁶ 曹桂林、王鐵軍：《鐵嶺境內五座高句麗山城簡介》，《遼海文物學刊》1994年 2期。

³⁶⁷ 曹桂林、王鐵軍：《鐵嶺境內五座高句麗山城簡介》，《遼海文物學刊》1994年 2期。

³⁶⁸ 吳長山：《西豐城子山城》，《遼寧大學學報》1989年 1期。

³⁶⁹ 李曉鍾等：《瀋陽石臺子高句麗山城試掘報告》，《遼海文物學刊》1993年 1期。

³⁷⁰ 陳大爲：《撫順市高爾山山城遺址》，《中國考古學年鑒》1984年，文物出版社。

³⁷¹ 王增新：《遼寧撫順市前屯、窪渾木高句麗墓發掘簡報》，《考古》1964年 10期。

³⁷² 陳大爲：《清原縣英額門子山城子調查記》，《遼寧文物》1982年 3期。

³⁷³ 佟達：《新賓五龍高句麗山城》，《遼海文物學刊》1994年 2期。

高句麗초기의 산성이다.³⁷⁴

新賓轉水湖山城: 新賓縣의 동남쪽에 있는 響水河鄉 轉水湖村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高句麗초기의 산성이다.³⁷⁵

高句麗太子城: 新賓縣의 서남쪽에 있는 下夾河鄉 太子城村의 북쪽에 있는데 이는 高句麗초기의 산성이다.³⁷⁶

鳳凰山山城: 鳳城市의 동남쪽교외에 있는 鳳凰山의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西元4~5세기에 쌓았다.³⁷⁷

丹東老城溝山城: 岫岩縣 黃花甸子鎮의 동북쪽으로부터 6킬로미터 떨어져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³⁷⁸

丹東松樹溝山城: 岫岩縣 黃花甸子鄉 關門山村에 위치하고 있다.³⁷⁹

丹東娘娘城山城: 岫岩縣 楊家堡子鄉의 동북쪽으로부터 4,0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³⁸⁰

千山古代石城: 千山北溝의 서부(西部)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西元 645년 이전에 쌓았다.³⁸¹

海城英城子高句麗山城: 海城市 八裏鎮 英城子村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高句麗초기의 산성이다.³⁸²

³⁷⁴ 撫順市博物館、新賓縣文化局: 《遼寧省新賓縣黑溝高句麗早期山城》, 《文物》 1985年 2期.

³⁷⁵ 撫順市博物館: 《遼寧新賓縣轉水湖山城》, 《北方文物》 1991年 1期.

³⁷⁶ 撫順市博物館: 《遼寧新賓縣高句麗太子城》, 《考古》 1992年 4期.

³⁷⁷ 崔玉寬: 《鳳凰山山城調查簡報》, 《遼海文物學刊》 1994年 2期.

³⁷⁸ 崔雙來: 《丹東地區高句麗山城及其墓葬考察紀要》, 《中國考古集成·東北卷》 12, 北京出版社 1997年.

³⁷⁹ 崔雙來: 《丹東地區高句麗山城及其墓葬考察紀要》, 《中國考古集成·東北卷》 12, 北京出版社 1997年.

³⁸⁰ 崔雙來: 《丹東地區高句麗山城及其墓葬考察紀要》, 《中國考古集成·東北卷》 12, 北京出版社 1997年.

³⁸¹ 張喜榮: 《千山古代石城調查記》, 《鞍山文物彙編》 1992年 5期.

³⁸² 富品瑩, 吳洪寬: 《海城英城子高句麗山城調查記》, 《遼海文物學刊》 1994年 2期.

2. 吉林省魏晉南北朝隋唐時期遺迹

輯安高句麗霸王朝山城：輯安縣 霸王朝村的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³⁸³

集安市區國內城城址：鴨綠江의 오른쪽기슭과 通溝盆地的 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平原城에 속한다. 이와 동시에 근년에 이성의 石城牆 밑에서 또 漢代土城을 발견하였다.³⁸⁴

山城子山城：集安縣의 북쪽으로부터 5리 떨어져있는 高山에 위치하고 있는데 西元3년에 쌓은 것이다.³⁸⁵

丸都山城：集安縣의 북쪽으로부터 2.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高山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高句麗초기의 城址이다.³⁸⁶

薩其城：琿春縣 楊泡鄉 楊木林子村的 동남쪽으로 약 1.5킬로미터 떨어진곳에 있는 高山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 시대의 산성이다.³⁸⁷

土城屯古城：龍井縣 八道鄉 西山村 土城屯의 북쪽으로부터 2.5킬로미터 떨어진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高句麗시기의 古城이다.³⁸⁸

龍潭山山城：吉林市的 동북쪽에 있는 松花江동쪽기슭의 龍潭山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高句麗시기에 쌓았다.³⁸⁹

東團山山城：吉林市的 교외에 있는 南鄉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高句麗시기의 산성이다.³⁹⁰

³⁸³ 方起東：《吉林輯安高句麗霸王朝山城》，《考古》1962年 11期。

³⁸⁴ 集安縣文物保管所：《集安高句麗國內城址的調查與試掘》，《文物》198期

³⁸⁵ 李殿福：《集安山城子山城考略》，《求是學刊》1982年 1期。

³⁸⁶ 李殿福：《高句麗丸都山城》，《文物》1982年 6期。

³⁸⁷ 延邊博物館：《高句麗時期的延邊文物》，《延邊文物簡編》，延邊人民出版社 1988年。

³⁸⁸ 延邊博物館：《高句麗時期的延邊文物》，《延邊文物簡編》，延邊人民出版社1988年。

³⁸⁹ 康家興：《吉林市龍潭山的山城和“水牢”》，《吉林省文物工作通訊》。

³⁹⁰ 董學增：《吉林市龍潭山高句麗山城及其附近衛城調查報告》，《北方文物》1986年 4期。

三道嶺子山城: 吉林市的 교외에 있는 沙河子鄉 三道嶺子 大砬子山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高句麗시기의 古城이다.³⁹¹

新街古城: 蛟河縣 池水鄉 池水村의 동남쪽에 있는 平川地에 있는데 이는 漢晉시기의 夫余文化유적에 속한다.³⁹²

福來東古城: 松花江村 福來東屯의 동남쪽에 있는 平川地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漢晉시기의 夫余文化유적에 속한다.³⁹³

羅通山城: 柳河, 海龍, 輝南 삼현 [三縣]의 접경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柳河縣 大通溝公社에 속한다. 산성은 西元3-4세기초에 쌓았다.³⁹⁴

臨江電站庫區古遺迹: 鴨綠江상류 [上游]의 장백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河南屯遺址, 樺皮甸子遺址, 後大地遺址, 夾皮溝遺址, 七道溝遺址, 長川墓群, 東甸子墓群을 포괄한다. 이는 高句麗시기의 유적(遺迹)에 속한다. 高句麗千里長城: 동북의 중부에 있는 松遼平原에 위치하고 있는 邊崗유적을 가리킨다.³⁹⁵

東臺子建築址: 集安市區의 동쪽문으로부터 0.5킬로미터 떨어져있는 寬平臺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高句麗준기다.³⁹⁶

高句麗時期的採石廠: 集安 高臺村 大湖부근에 있는 綠水橋 採石廠에 위치하고 있다.³⁹⁷

好太王碑: 集安縣城의 동북쪽으로부터 4킬로미터 떨어져있는 山坡에 위치하고 있다.³⁹⁸

³⁹¹ 董學增: 《吉林市龍潭山高句麗山城及其附近衛城調查報告》, 《北方文物》 1986年 4期.

³⁹² 董學增: 《吉林蛟河縣新街、福來東古城》, 《博物館研究》 1989年 7期.

³⁹³ 董學增: 《吉林蛟河縣新街、福來東古城》, 《博物館研究》 1989年 7期.

³⁹⁴ 吉林省文物工作隊: 《高句麗羅通山城調查簡報》, 《文物》 1985年 2期.

³⁹⁵ 王健群: 《高句麗千里長城》, 《博物館研究》 1987年 3期.

³⁹⁶ 吉林省博物館: 《吉林輯安高句麗建築遺址的清理》, 《考古》 1961年 1期.

³⁹⁷ 張雪岩: 《集安高句麗高句麗時期的採石廠》, 《博物館研究》 1992年 1期.

³⁹⁸ 耿鐵華: 《高句麗好太王碑》, 《文物天地》 1989年 6期.

卍丘儉紀功碑：集安縣의 서쪽으로부터 17킬로미터 떨어져있는 板岔嶺의 서북방향에 있는 天溝의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다.³⁹⁹

長白乾溝子墓地：鴨綠江의 북쪽 기슭에 자리잡은 十四道溝鄉 幹溝子村의 서쪽으로 0.5킬로미터 되는 西幹溝子河와 鴨綠江이 회합하는 곳의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년대의 上限은 약 戰國인데 周초기보다 이르지 않고 下限은 대략 西漢말기까지이다.⁴⁰⁰

榆樹老河深鮮卑墓群：榆樹縣의 남쪽으로부터 30킬로미터 되는 老河深村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요하게 漢代의 鮮卑 고분이다.⁴⁰¹

大安漁場墓地：洮兒河와 嫩江이 회합하는 月亮泡의 남쪽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년대는 약 曹魏西晉시기이다.⁴⁰²

洞溝古墓群：禹山墓區 56채, 山城下墓區 37채, 七星山墓區 26채, 麻線溝墓區 69채를 포괄하는데 년대는 대략 兩晉으로부터 南北朝까지이다.⁴⁰³

五盔4號、5號：禹山の 산기슭에 있는 平地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분의 년대는 대략 6세기중엽으로부터 7세기초이다.⁴⁰⁴ 동일한 시기의 고분은 또 龜甲蓮花墓、散蓮花墓、長川一號、4號、下解放3號、冉牟墓、環紋墓、二室墓 등이 있다.

通溝12號：集安 洞溝平原의 중부에 있는 禹山の 남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분의 년대는 대략 5세기이다.⁴⁰⁵ 山城下332號、山城下983號、山城下1411號墓：山城下墓區에 위치하고 있는데 년대는 대략 西元

³⁹⁹ 秋石：《卍丘儉紀功碑與卍丘儉》，《方志研究》1994年 1期。

⁴⁰⁰ 朴潤武：《長白縣幹溝子墓地調查》，《博物館研究》1990年 3期。

⁴⁰¹ 吉林省文物工作隊等：《吉林省榆樹縣老河深鮮卑墓群部分墓葬發掘簡報》，《文物》1985年 2期。

⁴⁰² 吉林省博物館文物隊等：《吉林大安漁場古代墓地》，《考古》1975年 6期。

⁴⁰³ 吉林省文物工作隊、集安文管所：《1976年集安洞溝高句麗墓清理》，《考古》1984年 1期。

⁴⁰⁴ 耿鐵華：《吉林輯安五盔墳四號和五號墓清理略記》，《考古》1964年 2期。

⁴⁰⁵ 王承禮、韓淑華：《吉林輯安通溝第十二浩高句麗壁畫墓》，《考古》1964年 2期。

5세기다.⁴⁰⁶ 동일한 시기의 고분은 또 麻線溝1號、長川2號、折天井墓와 禹山下4號 등이 있다.

萬寶汀墓區1368號、78號墓: 七星山墓區에 자리잡고 있다.⁴⁰⁷

萬寶汀墓區242號墓: 七星山墓區에 자리잡고 있는데 그 시대는 3세기 말기에 속할 것이다.⁴⁰⁸

角氈、舞躑兩墓의 시대는 4세기중엽으로부터 5세기초까지 추측한다.⁴⁰⁹

老虎哨古墓: 集安縣城의 서남쪽으로부터 약 50킬로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高句麗말기의 고분에 속한다.⁴¹⁰

榆林河流域高句麗古墓群: 集安 榆林河류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高句麗중후기이다.⁴¹¹

上、下活龍村高句麗古墓: 集安縣城의 서남쪽으로부터 8킬로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있다. 上活龍村墓葬의 년대는 대략 南北朝시기이고 下活龍村墓葬의 년대는 대략 東漢시기인데 漢와 魏가 교체하는 시기보다 늦지않다.⁴¹²

將軍墳: 集安市區의 동북쪽으로부터 4.5킬로미터 되는 龍山의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高句麗王의 陵墓에 속하는데 方壇階梯 高句麗積石墓이다.⁴¹³

太王陵: 集安市區의 동북쪽으로부터 4킬로미터 되는 禹山의 남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高句麗王의 陵墓에 속하는데 方壇階梯 高句麗積石墓이다.⁴¹⁴

⁴⁰⁶ 李殿福: 《集安洞溝三座壁畫墓》, 《考古》 1983年 4期.

⁴⁰⁷ 李殿福: 《集安洞溝三座壁畫墓》, 《考古》 1983年 4期.

⁴⁰⁸ 吉林集安縣文管所: 《集安萬寶汀墓區242號古墓清理簡報》, 《考古與文物》 1982年 6期.

⁴⁰⁹ 董長富、文琳: 《集安高句麗古墓壁畫》, 《文物天地》 1984年 6期.

⁴¹⁰ 集安縣文物保管所: 《集安縣老虎哨古墓》, 《文物》 1984年期.

⁴¹¹ 曹正榕等: 《吉林輯安榆林河流域高句麗古墓調查》, 《考古》 1962年 11期.

⁴¹² 集安縣文物保管所: 《集安縣上、下活龍村高句麗古墓清理簡報》, 《文物》 1984年 1期.

⁴¹³ 魏存成: 《集安高句麗大型積石墓王陵》, 《青果集》, 吉林文史出版社 1993年.

千秋墓: 集安市區의 서남쪽으로부터 3.5킬로미터되고 麻線河口的 동쪽기슭으로부터 200미터 되는 漫坡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高句麗王의 陵墓에 속하는데 方壇階梯 高句麗積石墓이다.⁴¹⁵

西大墓: 集安 麻線溝墓區의 서쪽에 있는 安子嶺의 남쪽비탈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高句麗王의 陵墓에 속하는데 方壇階梯 高句麗積石墓이다.⁴¹⁶

臨江墓: 集安 龍山 서남쪽 산기슭의 작은 산터미에 위치하고 있다. 高句麗王의 陵墓에 속하는데 方壇階梯 高句麗積石墓이다.⁴¹⁷

橫路九隊墓群: 集安縣城의 서북쪽으로부터 85킬로미터 되는 花甸鄉 橫路九隊의 서쪽 산비탈에 있는 河谷平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高句麗중, 후기와 대응된다.⁴¹⁸

古馬嶺高麗墓溝古墓群: 集安縣城의 서남쪽으로부터 90킬로미터 되는 高麗墓門에 위치하고 있는데 上限은 대략 魏晉시기다.⁴¹⁹

渤海貞惠公主墓: 敦化六頂山墓區I區(西區)의 중앙에 있다. 敦化六頂山渤海古墓은 敦化로부터 5킬로미터 되는 곳에 있는 六頂山 山陽량단(西端) 남쪽의 山凹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시대는 西元8세기이다.⁴²⁰

貞孝公主墓: 和龍縣 龍水鎮의 서남쪽에 있는 龍頭山에 위치하고 있다. 서남쪽으로는縣城으로부터 50華里되고 서북쪽으로부터 10餘裏되는 곳은 渤海中京西古城이다. 비문으로부터 이 墓는 文王 大欽茂 第四女

⁴¹⁴ 魏存成: 《集安高句麗大型積石墓王陵》, 《青果集》, 吉林文史出版社 1993年.

⁴¹⁵ 魏存成: 《集安高句麗大型積石墓王陵》, 《青果集》, 吉林文史出版社 1993年.

⁴¹⁶ 魏存成: 《集安高句麗大型積石墓王陵》, 《青果集》, 吉林文史出版社 1993年.

⁴¹⁷ 魏存成: 《集安高句麗大型積石墓王陵》, 《青果集》, 吉林文史出版社 1993年.

⁴¹⁸ 集安縣文物保管所: 《集安縣新發現的兩處高句麗墓群》, 《博物館研究》 1984年 2期.

⁴¹⁹ 集安縣文物保管所: 《集安縣新發現的兩處高句麗墓群》, 《博物館研究》 1984年 2期.

⁴²⁰ 王承禮、曹正榕: 《吉林敦化六頂山渤海古墓》, 《考古》1961年 6期.

貞孝公主의 夫婦合葬墓이다.⁴²¹

和龍北大渤海墓葬群: 和龍縣城의 동쪽으로부터 약 20킬로미터 되는 곳에있는 八家子鎮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海蘭江에 인접하고 原隸北大村⁴²²

和龍縣龍海渤海墓葬群: 和龍縣 城東北約50華里的 頭道盆地的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으로 11華里가면 龍水公社의 所在地이다.⁴²³

和龍龍湖渤海墓: 和龍縣 龍水鄉 龍湖村 龍頭山の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년대는 西元9세기 말엽에 대응한다.⁴²⁴

河南屯古墓: 西古城의 남쪽으로 약 10華里되는 곳에 있는 河南屯古城에 위치하고 있는데 唐代의 渤海墓葬에 속할것이다.⁴²⁵

高產渤海寺廟址: 和龍縣 德化公社 高產村으로부터 0.5킬로미터 되는 언덕에 있다.⁴²⁶

馬滴達古墓: 琿春縣城의 동북쪽으로 50킬로되는 琿春河 북쪽기슭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다.⁴²⁷ 龍井富民渤海墓葬: 龍井縣 德新鄉 富民村 五屯의 동남쪽으로부터 100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渤海말기의 고분이다.⁴²⁸

龍井英城渤海古墓: 龍井縣 英城村 衛生所의 북쪽으로부터 10미터 되는 곳에 있다. 북쪽으로는 비탈밭과 산등성이에 접하고 남쪽으로는 東盛平原과 인접하는데 동쪽으로 흐르는 海蘭江과 1.5華里떨어져 있다.⁴²⁹

甩灣子渤海房址: 琿春市 甩灣子村의 서쪽으로부터 2킬로미터 되는

⁴²¹ 延邊博物館: 《渤海貞孝公主墓發掘清理簡報》, 《社會科學戰線》 1982年 1期.

⁴²² 延邊博物館, 和龍縣文化館: 《和龍北大渤海墓葬清理簡報》, 《東北考古與歷史》 第一輯, 文物出版社 1982年.

⁴²³ 延邊博物館: 《和龍縣龍海渤海墓葬》, 《博物館研究》 1983年 3期.

⁴²⁴ 延邊文物管理委員會、延邊博物館: 《吉林省和龍龍湖渤海墓葬》, 《博物館研究》 1993年 1期.

⁴²⁵ 郭文魁: 《和龍渤海古墓出土的幾件金飾》, 《文物》 1973年 8期.

⁴²⁶ 何明: 《吉林和龍高產渤海寺廟址》, 《北方文物》 1985年 4期.

⁴²⁷ 張錫英: 《琿春馬滴達渤海塔基清理簡報》, 《博物館研究》 1984年 2期.

⁴²⁸ 李正鳳, 李強: 《吉林龍井富民渤海古墓》, 《博物館研究》 1986年 1期.

⁴²⁹ 李正鳳, 李強: 《吉林龍井英城渤海古墓》, 《博物館研究》 1986年 1期.

沿江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一道橫嶺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圖們江과 인접하는데 渤海중후기이후와 대응한다.⁴³⁰

溝口渤海遺址: 琿春縣城의 서쪽으로 약 15킬로미터 되는 英安鎮 甩灣子村 盤嶺溝口의 서남쪽에 있는 圖們江의 왼쪽기슭의 동서향 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渤海말기의 유적이다.⁴³¹

東六洞二號遺址: 琿春市 密江鄉의 동남쪽으로부터 2킬로미터 되는 山下臺地에 위치하고 있다. 그 북쪽으로부터 800미터가면 琿圖公路이고 남쪽으로 약 1.5킬로미터가면 圖們江과 密江이 회합하는 곳이다. 그의 시대는 대략 渤海중기이다.⁴³²

查裏巴村渤海墓: 吉林省 永吉縣 烏拉鎮 查裏巴村과 汪屯村의 사이에 있는 崗梁에 위치하고 있다. 그의 시대는 대략 渤海초기이다.⁴³³

蛟河縣渤海古城: 蛟河縣 漂河鎮 교외의 南山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⁴³⁴

蛟河七道河村渤海建築遺址: 蛟河市 天崗鎮 七道河村의 북쪽으로부터 약 300미터 되는 小高崗에 위치하고 있다.⁴³⁵

龍首山渤海遺址: 遼源市區의 동쪽에 있는 龍首山城의 서쪽문의 동북쪽으로 약 50미터 되는 곳에 있다.⁴³⁶

新安渤海遺址: 撫松縣城의 서남쪽, 頭道松花江의 북쪽기슭의 山坳에 위치하고 있는데 縣城으로부터 약 10華里 떨어져 있다.⁴³⁷

⁴³⁰ 圖琿鐵路考古發掘隊: 《吉林省琿春市甩灣子渤海房址清理簡報》, 《北方文物》 1991年 2期.

⁴³¹ 李正鳳: 《琿春縣英安鎮盤嶺溝口渤海遺址》, 《博物館研究》 1989年 3期.

⁴³² 吉林省圖琿鐵路考古發掘隊: 《琿春市東六洞二號遺址發掘簡報》, 《北方文物》 1990年 1期.

⁴³³ 尹鬱山: 《吉林永吉縣查裏巴村發現二座渤海墓》, 《考古》 1990年 6期

⁴³⁴ 陳永祥: 《蛟河縣發現一座較大的渤海古城》, 《吉林文物》 1985年 9月 10日.

⁴³⁵ 吉林市博物館: 《吉林市蛟河市七道河村渤海建築遺址清理簡報》, 《考古》 1993年 2期.

⁴³⁶ 《遼源市龍首山渤海時期遺址》, 《中國考古學年鑒》 文物出版社 1991年.

⁴³⁷ 王志敏: 《吉林撫松新安渤海遺址》, 《博物館研究》 1985年 2期.

前甸子渤海古墓: 撫松縣 抽水公社 城廠大隊前 甸子屯의 서남쪽으로부터 약 1華里되는 곳에 있는 高崗에 위치하고 있다.⁴³⁸

集安太王鄉渤海遺址: 集安市 洞溝平原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은 縣城으로부터 약 2킬로미터되고 그 남쪽으로부터 200미터 좌우는 鴨綠江이다.⁴³⁹

永安渤海遺址: 渾江市 松樹鎮으로부터 약 6킬로미터 되는 永安村부근에 위치하고 있다.⁴⁴⁰

大營渤海遺址: 撫松縣 仙人橋 鎮大營村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⁴⁴¹

湯河口渤海遺址: 撫松縣 仙人橋 鎮湯河後村의 남쪽으로부터 약 3리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⁴⁴²

長白靈光塔: 이탑은 吉林省 長白縣城의 서북쪽에 있는 後山(塔山)꼭대기에 자리잡고 있는데 渤海중후기의 건축이다.⁴⁴³

二十四塊石建築址: 모두 11곳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敦化地區의 교외, 官地, 海靑房과 腰甸子에서는 4곳이 발견되고; 甯安縣의 鏡泊湖南단에 있는 房身溝와 彎溝에서는 2곳이 발견되었고; 圖們市 石建과 馬牌에서는 2곳이 발견되었으며; 朝鮮 鹹鏡北道 淸津市 松坪區, 漁郎郡 會文裏와 金策市 東興裏에서는 3곳이 발견되었다處⁴⁴⁴

⁴³⁸ 龐志國、柳蘭: 《撫松縣前甸子渤海古墓清理簡報》, 《博物館研究》 1983年 3期.

⁴³⁹ 集安縣文物管理所: 《吉林集安發現一處渤海時期遺址》, 《北方文物》 1995年 4期.

⁴⁴⁰ 張殿甲: 《試析渾江市永安遺址出土的銅鈴》, 《博物館研究》 1991年 2期.

⁴⁴¹ 張殿甲: 《渾江地區渤海遺迹與遺物》, 《博物館研究》 1988年 1期.

⁴⁴² 張殿甲: 《渾江地區渤海遺迹與遺物》, 《博物館研究》 1988年 1期.

⁴⁴³ 邵春華: 《長白靈光塔》, 《博物館研究》 1989年 2期.

⁴⁴⁴ 歷史系敦化文物普查隊第二小組: 《敦化縣二十四塊石遺址調查記》, 《吉林大學學報》 1958年 3期.

呂遵祿、孫秀仁: 《鏡泊湖附近鶯歌嶺等地考古鍵查報告》, 《北方文物》 1991年 3期; 《朝鮮發現渤海二十四塊石建築址》, 《博物館研究》 1984年 2期; 《圖們市文物志》; 《東北亞歷史書考古資訊》總4期, 1984年, 總18期, 1992年, 總22期, 1994年; 李健才: 《二十四塊石考》, 《北方文物》 1992年 2期; 孫秀仁: 《渤海二十四塊石之謎解析》, 《北方文物》 1993

城山子山城: 敦化市區의 서남쪽으로부터 22. 5킬로미터 되는 해발600미터의 孤山에 위치하고 있다.⁴⁴⁵

敖東城: 敦化市區의 동남쪽에 있는 牡丹江의 왼쪽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永勝遺址: 城山子山城의 동쪽에 있는 牡丹江의 오른쪽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의 동북쪽으로부터 3킬로미터 되는 곳은 六頂山墓群이다.⁴⁴⁶

中京顯德府城址: 즉 龍西古城이다. 城址는 海蘭江의 上游平原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서남쪽은 和龍縣으로부터 50~60리 떨어져 있고 古城의 북쪽 담벽은 延(吉)和(龍)公路와 가깝다.⁴⁴⁷

東京龍原府城址即琿春八連城: 이 유적은 琿春河와 圖們江 三角沖積盆地的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쪽은 縣城과 10여리 떨어져있다.⁴⁴⁸

3. 黑龍江省魏晉南北朝隋唐時期遺迹

佳木斯市郊山城遺址: 佳木斯市의 교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同仁一期와 비슷하다.⁴⁴⁹

上京龍泉府城址: 甯安縣城의 서남쪽으로부터 30여리 떨어진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牡丹江과 등지고 鏡泊湖와 가까우며 宮殿遺址、八寶琉璃井、南大廟 등 유적을 가지고 있다.⁴⁵⁰

年4期.

⁴⁴⁵ 劉忠義: 《東牟山在哪里》, 《學習與探索》 1982年 4期.

⁴⁴⁶ 延邊博物館: 《延邊文物簡編》, 延邊人民出版社 1988年 第一版.

⁴⁴⁷ 烏山喜一、藤田亮策: 《間島省古迹調查報告》, 1941年; 延邊博物館: 《延邊文物簡編》, 延邊人民出版社 1988年 第一版.

⁴⁴⁸ 延邊博物館: 《延邊文物簡編》, 延邊人民出版社 1988年 第一版; 烏山喜一、藤田亮策: 《間島省古迹調查報告》, 1941年; 魏聲合: 《(增訂)吉林地理紀要》, 民國二十年.

⁴⁴⁹ 佳木斯市文管站: 《佳木斯市郊山城遺址調查》, 《黑龍江文物叢刊》 1982年3期.

⁴⁵⁰ 黑龍江省文物考古工作隊: 《渤海上京宮城第一宮殿東、西廊廡遺址發掘清理簡報》, 《渤海上京宮城 第2、3、4號 門址發掘簡報》, 《文物》 1985年 11期;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渤海上京宮城內房址發掘簡

蘇密城: 樺甸縣城의 동쪽으로부터 6리 되는 輝發河의 남쪽기슭에 위치하고 있다.⁴⁵¹

重唇河山城址: 黑龍江省 甯安縣城의 서남쪽으로부터 30킬로미터 되는 鏡泊湖 북단의 서쪽기슭에 위치하고 있다.⁴⁵²

城牆砬子山城址: 鏡泊湖의 중부 서쪽기슭에 있는 高山사이에 위치하고 있다.⁴⁵³

城子後山山城址: 鏡泊湖瀑布의 동북쪽으로부터 3킬로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⁴⁵⁴

江山嬌古城牆址 (小長城) : 江山嬌林場의 東山 북쪽비탈에 위치하고 있다.⁴⁵⁵

牯牛河子遺址: 牡丹江市의 남쪽교외로부터 약 15킬로미터 되는 牯牛河子村에 위치하고 있는데 渤海중후기의 문화유적이다.⁴⁵⁶

牡丹江市南城子城址: 牡丹江市區의 동북쪽으로부터 40여리 되는곳에 있는데 서북쪽은 樺林鎮으로부터 10여리 떨어져있고 유적의 북쪽은 南城子村이다. 성밖의 동남, 서남방향은 각기 渤海墓群이 있는데 그중 동남 방향의 石場溝墓群은 이미 처리되었다. 南城子와 대립되는 牡丹江왼쪽기슭에서는 또 현지에서 取土 採石 修築하고 邊牆이 서북방향으로 향한 길이가 100여리에 달하며 지금 “牡丹江邊牆”로 불리우는 유적을 발견하였다. 조사하는 사람은 이 邊牆은 渤海초기에 黑水靺鞨를 방어하기 위하여 쌓은 것인데 該地區 牡丹江랑쪽기슭에서 발견된 제일 큰 渤海古城이다.⁴⁵⁷

報》, 《北方文物》 1987年 1期.

⁴⁵¹ 李健才: <東北史地考略>, 吉林文史出版社 1986年 第一版.

⁴⁵² 呂遵祿: 《鏡泊湖周圍山城遺址的調查》, 《北方文物》 1989年 1期.

⁴⁵³ 呂遵祿: 《鏡泊湖周圍山城遺址的調查》, 《北方文物》 1989年 1期.

⁴⁵⁴ 呂遵祿: 《鏡泊湖周圍山城遺址的調查》, 《北方文物》 1989年 1期.

⁴⁵⁵ 呂遵祿: 《鏡泊湖周圍山城遺址的調查》, 《北方文物》 1989年 1期.

⁴⁵⁶ 牡丹江市文物管理站: 《牯牛河子遺址調查》, 《中國考古集成·東北卷》 13, 北京出版社 1997年.

⁴⁵⁷ 陶剛: 《牡丹江市郊南城子調查記》, 《黑龍江文博學會成立紀念文集》 1980年; 牡丹江市文管站: 《牡丹江邊牆調查簡報》, 《北方文物》

東寧大城子城址: 東寧縣城의 동쪽으로부터 약 5킬로미터 되는 곳에 있는 綏芬河南쪽에 위치하고 있다. 古城의 서북쪽에서는 또 渤海墓群을 발견하였는데 이미 발굴하였다. 조사자는 東寧大城子를 率賓府유적으로 정하였다.⁴⁵⁸

東甯團結平民居住址: 東寧縣 團結村의 북쪽에 있는 大肚川河오른쪽의 臺地에 위치하고 있는데 분포면적은 수만평방킬로미터된다.⁴⁵⁹

磚瓦窯址: 근년에 上京城址의 서남쪽으로부터 30華里되는 牡丹江오른쪽기슭의 臺地에서 두채의 渤海磚瓦窯址를 발견하였다.⁴⁶⁰

蘿北團結靺鞨墓地: 蘿北縣 團結公社磚廠의 서부에 위치하고 있다.⁴⁶¹

海林山嘴子渤海墓葬: 海林縣 新安公社 海浪河의 왼쪽기슭에 있는 山嘴子동쪽의 黃土崗에 위치하고 있는데 渤海후기의 유적이다.⁴⁶²

海林二道河子渤海墓葬: 海林鎮의 동북쪽으로부터 약 60킬로미터 되는 牡丹江의 왼쪽기슭 一級階地에 위치하고 있다.⁴⁶³

海林北站渤海墓: 海林縣의 서남쪽으로부터 약 37킬로미터 되는 柴河鎮 北站村의 서쪽의 1.5킬로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⁴⁶⁴

東寧大城子渤海墓: 東寧縣의 서쪽으로부터 4킬로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渤海중후기의 고분이다.⁴⁶⁵

三靈渤海國墓: 甯安縣 三靈鄉、渤海國 上京龍泉府故城의 서북쪽으

1986年 3期.

⁴⁵⁸ 張太湘: 《大城子古城調查記》, 《文物資料叢刊》 4, 文物出版社 1981年.

⁴⁵⁹ 張博泉、魏存成: 《東北古代民族考古與疆域》, 吉林大學出版社 1998年.

⁴⁶⁰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渤海磚瓦窯址發掘報告》, 《北方文物》 1986年 2期.

⁴⁶¹ 李英魁: 《黑龍江省蘿北縣團結墓葬清理簡報》, 《北方文物》 1989年 1期.

⁴⁶² 孫秀仁: 《略論海林山嘴子渤海墓葬的形制、傳統和文物特徵》, 《中國考古學會第一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79年.

⁴⁶³ 於彙力: 《黑龍江海林二道河子渤海》, 《北方文物》 1987年1期.

⁴⁶⁴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黑龍江海林北站渤海墓試掘》, 《北方文物》 1987年 1期.

⁴⁶⁵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歷史系考古專業: 《黑龍江東寧縣大城子渤海墓發掘簡報》, 《中國考古集成·東北卷》 13, 北京出版社 1997年.

로 약 4킬로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초보적으로 渤海文王妃의 墓라고 정하였다.⁴⁶⁶

三陵屯1號墓: 上京城이북 牡丹江의 맞은 편 기슭에 있는 三陵屯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다.⁴⁶⁷

甯安大朱屯古墓群: 東京城鎮의 부근에 있는 大朱屯의 서북으로부터 약 2킬로미터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阿堡村과 강을 사이두고 있다.⁴⁶⁸

林口縣頭道河子石墓群: 牡丹江하류의 오른쪽기슭에 있는 漫崗에 위치하고 있었다.⁴⁶⁹

樺林石場溝墓地: 牡丹江市郊외의 樺林公社 石場溝村의 서남쪽로부터 약 0.5킬로미터 되는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는 西元7세기로부터 8세기중엽까지였을 것이다.⁴⁷⁰

⁴⁶⁶ 趙評春、蓋立新: 《黑龍江省甯安縣三靈渤海國墓》, 《中國考古學年鑒》 1989年, 文物出版社; 劉曉東、付曄: 《試論三靈墳的年代與墓主人的身份》, 《北方文物》 1992年 1期.

⁴⁶⁷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黑龍江發掘渤海大型石室壁畫墓》, 《中國文物報》 1992年 1月 19日.

⁴⁶⁸ 呂遵祿: 《黑龍江甯安、林口發現的古墓葬群》, 《考古》 1962年 11期.

⁴⁶⁹ 呂遵祿: 《黑龍江甯安、林口發現的古墓葬群》, 《考古》 1962年 11期.

⁴⁷⁰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黑龍江省牡丹江樺林石場溝墓地》, 《北方文物》 1991年 4期.

부록 II

북한 문화 유산 개괄

유적 개괄

조희승*

1. 평양성

평양성은 고구려시기의 수도성이다. 552~586년 사이에 쌓은 것이 평양성이다. 그때로부터 평양성은 고구려의 수도성으로서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여왔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고구려전성시기 수도(주변지역 포함)의 호수는 21만 508호에 이르렀다고 한다. 고구려사람들은 전쟁경험에 기초하여 평양성을 평산성형식으로 쌓았다. 평양성은 대동강과 보통강이 합치는 곳에 이루어진 남북으로 긴 지대를 차지하였다. 이곳은 평양준평원지대에서도 벌과 야산들을 적당하게 포함한 유리한 지대로서 성벽은 평지도 둘러막고 산지도 둘러막아 평지성과 산성의 유리한 점들을 다 갖추었다. 그리고 평양성에서 세면을 둘러막은 대동강과 보통강은 자연의 해자로서 성의 방어력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평양성의 둘레는 약 16km이며 그 성벽의 총연장길이는 약 23km이다. 평양성의 성벽은 금수산의 모란봉(문봉, 최승대가 있는 봉우리)을 북쪽끝으로 하고 서남쪽으로 을밀봉(을밀대), 만수대의 마루를 타고 내려가면서 보통강언덕을 따라 안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서남쪽으로 보통강을 따라 뻗어나갔다. 보통강과 대동강이 합치는 목에 이르러 성벽은 대동강기슭을 따라 상류쪽으로 거슬러올라 대동문을 지나 청류벽을 타고 전금문, 부벽루를 지나 모란봉에 이르렀다. 이것이 평양성의 바깥성벽이다. 평양성안은 성벽들로 가록막아 내성, 중성, 외성, 북성 등 4개의 부분성으로 나누었으며 북성의 북쪽에는 철성을 두었다.

* 조희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교수)

2. 대동문과 평양중

대동문은 고구려시기 처음세우고 리조시기에 고쳐지은 성문이다. 대동문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 있다. 평양시 한가운데로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기슭에 련광정과 이웃하여 우아한 자태로 웅장하게 서있는 대동문은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동문으로 평양성과 함께 6세기 중엽에 처음세웠다. 지금 있는 건물은 여러차례 보수개건되어오다가 1635년에 고쳐세운 것이다. 대동문문루에는 《읍호루》라는 현판이 붙어있다. 《읍호》는 문루에서 손을 드리워 대동강의 맑은 물을 떠올린다는 뜻으로 강에 면한 이 주변의 자연풍경과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은 대동강을 건너 남쪽으로 통하는 문으로서 평양성의 성문들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성문이었다. 문밖의 덕바위아래쪽에는 옛 나루터가 있다. 이 나루터는 고구려때부터 리조말까지 배타는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대동문 건너편이 《선교》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이곳에 배다리가 놓여있었기때문이라고 한다. 대동문은 화강석을 다듬어쌓은 정교한 축대와 그우에 세운 무루로 이루어졌다.

문의 높이는 19m이다. 축대의 이는 6.5m이며 그 북편에는 무지개문 길을 냈다. 축대는 평면상 네 모서리를 바깥쪽으로 점차 넓혀서 힘을 잘 받을수 있게 하였다. 축대우에 세운 2층문루는 앞면 3간(15.91m), 옆면 3간(10.34m)이다.

3. 련광정

련광정은 고구려시기 처음세우고 리조시기에 고쳐지은 루정이다. 련광정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 있다. 련광정은 경치가 좋아 옛날부터 관서 8경의 하나로 알려졌다.

루정에 올라 앞을 바라보면 푸른 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대동강너머

로 주체사상탑과 문수거리 등으로 새롭게 단정된 동평양의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북쪽에는 아름다운 금수한과 깎아지른듯한 청류벽, 비단천을 펼쳐놓은 것 같은 룡라도 등이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오늘 련광정이 서있는 자리는 고구려시기 평양성 내성의 동쪽장대터이다. 고구려시기 평양성을 보수하여 서경으로 하면서 1111년 이 자리에 다시 루정을 세우고 이름을 《산수정》이라고 하였다. 그후 부수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면서 어느새 그 이름을 련고아정이라고 고쳐부르게 되었다. 련광정에서는 서로 년대가 다른 글자새긴 기와가 20여종이나 발견되었다. 이것은 여러차례 보수하였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련광정이란 이름은 전망경치가 좋은 루정이라는 뜻으로 붙여진것이다. 이밖에 련광정은 《제일루대》, 《만화루》등으로 불리웠다.

4. 보통문

보통문은 고구려시기에 처음세우고 리조시기에 고쳐세운 성문이다. 보통문은 평양시 중구역 보통문동에 있다. 보통문은 우리 나라에 남았는 성문가운데서 가장 오랜것의 하나이다. 보통문은 6세기중엽 고구려가 수도성 평양성을 쌓을 때 그 서문으로 처음 세웠다. 지금 있는 건물은 여러차례 보수개건되어오다가 1473년에 고쳐지운것이다. 보통문은 평양성 서북쪽방향으로 통하는 관문으로서 국방상 또는 교통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고구려시기부터 고려와 리조 시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시되었다.

보통문은 옛날부터 평양 8경의 하나로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보통문에서 손님 바래우는 광경》은 평양 8경가운데서 《부벽루에서의 달구경》이나 《거문에서 바라보는 돛배 떠가는 광경》등과 함께 당시 하나의 서정적화폭으로 널리 알려졌다.

문루는 앞면 3간(14.8m), 옆면 3간(9.15m)이며 배부른기둥들이 두공을

이고 그우에 2층의 날아갈듯한 합각지붕을 떠받들고 있다. 바깥기둥들은 1층의 지붕에 이어지고 집안의 4개의 기둥은 1층에서 2층까지 관통하여 세웠다. 바깥기둥들은 1층의 지붕에 이어지고 집안의 4개의 기둥은 1층에서 2층까지 관통하여 세웠다. 바깥기둥과 안기둥사이에 련결된 보우에는 짧은 2층기둥이 놓여있다. 두공은 1층과 2층에서 안팎이 다같이 3포로 되었다. 두공 침차의 간격은 같지 않다. 침차들사이 간격을 비교적 크게 하면서 바깥쪽은 안쪽보다 더 크게 하였다. 두공은 전반적으로 검박하게 하였다. 제공은 소허형인데 그 옷면 중간에 턱을 지어 변화를 주었다. 보통문은 다른 성문들에 비하여 전체높이가 조금 낮고 또 1층면적에 비하여 2층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게 되어있다. 옆면에서 1층 량쪽바깥기둥의 밑등과 마루도리를 련결하는 3각형은 거의 정 3각형에 가깝게 되어있다. 그리하여 보통문은 장중하고 안정한 느낌을 준다.

5. 칠성문

칠성문은 고구려때 처음세우고 리조시기에 다시세운 성문이다. 칠성문은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에 있다. 칠성문이라는 이름은 하늘 북쪽에 자리 잡고있는 북두칠성에서 딴 이름으로서 북문이라는 뜻을 가진다. 칠성문은 6세기중엽 고구려가 평양성을 쌓을 때 그 내성의 북문으로 세운 것이며 현재의 문루는 1712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칠성문은 평양성에서 북쪽방면으로 나드는 문으로서 평양성 내성의 북쪽벽이 뺏어나간 을밀대, 만수대 등성이가운데서 낮은 지점에 있으며 적이 공격하기에는 힘들고 성안에서 적을 내리치는데는 유리한 곳에 있다. 고구려사람들은 방어하기 좋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문자리를 잡고 칠성문을 튼튼하게 세웠던 것이다.

6. 을밀대

을밀대는 고구려시기 처음세우고 리조시기에 다시지은 루정이다. 을밀대는 평양시 중구역 금수산에 있다. 을밀대는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장대(군사지휘처)로 쓰던 루정이다.

을밀대라는 이름은 아득히 먼 옛날《을밀선녀》가 이곳의 경치에 반하여 하늘에서 자주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에서 생겼다고도 하고 고구려시기 이 장대를 굳건히 지켰다고 전하여지는 《을밀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도 한다. 을밀대를 《사허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을밀대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면 탁트인 그림같은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안겨온다는 데서 생긴 것이다. 을밀대주위의 아름다운 경치는 《을밀상춘》(을밀대의 봄맞이)으로 일찍부터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 평양 8경의 하나로 꼽혀왔다. 을밀대는 6세기중엽 고구려평양성의 내성을 쌓으면서 그 북장대로 세운 것이다.

7. 현무문

현무문은 고구려시기 수도성인 평양성 북성의 북문이다. 현무문은 평양시 중구역 금수산에 있다. 현무문은 6세기중엽 고구려가 수도성인 평양성을 쌓을 때 처음 세운 것이며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보수도 하고 다시세우기도 하였다. 현재 돌축대우에 서있는 문루는 1714년에 다시지은 것이며 지난 조국해방전쟁 때 미제의 야수적 폭격으로 흑심하게 파괴된 것을 1954년에 옛 모습대로 복구한 것이다. 현무문은 모란봉(최승대가 서있는 봉우리)과 을밀봉(을밀대가 서있는 봉우리)사이의 제일 낮은 지점의 성벽을 어기게 하고 그 사이에 성벽과 지각으로 세웠다. 이것은 고구려 평양성의 칠성문과 같은 모양으로 고구려 사람들이 창안한 독특한 성문형식이다.

8. 최승대

최승대는 고구려시기에 처음 세우고 리조시기에 다시 지은 루정이다. 최승대는 평양시 중구역 금수산의 모란봉에 있다. 모란봉은 문봉이라고도 하는데 금수산의 보우리들 가운데서 제일 높은 봉우리이며 그 생김새가 모란꽃이 피어오르는 듯 하다고 하여 모란봉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금수산에서 전망이 좋은 곳으로는 을밀대를 꼽으나 평양성의 전체 경치를 내려다보는 데는 최승대가 더욱 좋다. 여기서는 동평양과 서평양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그래서 여기에 최승대란 이름이 붙은 것 같다. 여기서 대동강 한복판에 반월도와 나란히 두둥실 떠있는 봄날의 룡라도를 바라보는 경치는 정말 황홀하다.

9. 부벽루

부벽루는 고구려시기에 처음 세우고 리조시기에 고쳐 지은 루정이다. 부벽루는 평양시 중구역 금수산 청류벽에 있다. 부벽루의 원래 이름은 영명루로서 393년에 세운 영명사의 부속건물로 지은 루정이었다고 한다. 이 루정은 12세기 초부터 거울같이 맑고 푸른 물이 감돌아흐르는 청류벽우에 등실 떠있는 듯한 루정이라는 뜻에서 부벽루라고 고쳐부르게 되었다. 12세기초에 고쳐 지은 부벽루는 임진조국전쟁때 왜적에 의하여 불타고 현재의 건물은 1614년에 다시 세운 것이다 부벽루는 우리 나라 루정가운데서도 이채를 띠는 대표적인 건물의 하나로서 금수산일대의 그림같은 아름다운 경치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부벽루의 달맞이》는 평양 8경의 하나로 꼽히고 사랑을 받아왔다.

10. 대성산성

대성산성은 3~5세기에 쌓은 고구려의 산성이다. 고구려시기의 산성들 가운데서 갖○ 큰것의 하나인 대성산성은 잘아스럽고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에 있는 대성산성은 그 둘레가 7,076m나되며 성벽의 총길이는 9,284m이다. 대성산성은 높이 274m의 을지봉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부터 소문봉, 을지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의 6개 봉우리들을 련결하였으며 그안에 2개의 넓고 깊은 골짜기를 끼고 있어 많은 사람들과 전투기자재 및 물자들을 수용하고 보관할 수 있었다. 성안에는 식량창고터, 무기고터, 병실터들이 많다.

11. 대성산성 남문

대성산성 남문은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는 고구려시기 대성산성의 남문이다. 옛날에는 붉게 피는 단풍이 하두 아름다워 평양 8경으로 이름높던 대성산에는 높고낮은 봉우리를 따라 둘레가 거의 20리에 가까운 대성산성이 자리잡고 있다. 고로봉식으로 되어 강력한 요새를 이룬 대성산성에서는 오직 서남쪽 골짜기 방향만이 트이었는데 대성산성 남문은 바로 여기에 섰다. 대성산성에서는 이 서남쪽 골짜기 방향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익소의 성벽을 두겹으로 쌓고 거기에 대성산성의 20여개 성문 가운데서도 제일 크고 든든한 성문을 배치하였다. 지금 복구한 대성산성 남문은 그 안쪽성벽의 남문이며 곧 이 산성의 정문이다. 대성산성 남문은 대성산성과 함께 고구려가 427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기 이전에 처음 세운것이다. 남문의 남쪽에는 소문봉이, 북쪽에는 주작봉이 높이 솟아있으며 그 두 산줄기에서 뻗어내린 성벽이 이 남문과 잇닿아있었다. 남문을 지나 골짜기에 들어서면 옛날의 병실터, 창고터를 비롯한 많은 집터들이 있고 잉어못, 사슴못 등 170개의 못들이 있다. 대성산성 남문은 고구려 건

축기술의 오랜 전통을 살려 웅장하게 건설되었다. 남문은 튼튼하게 쌓은 축대, 그 량쪽에 잇달린 적대, 축대우에 세운 문루로 이루어졌다. 남문의 총높이는 19.5m에 달한다. 남문의 축대와 적대는 다같이 네모나게 다듬은 화강석을 차곡차곡 포개여 쌓았다. 돌들은 새로방향으로 통이음줄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우로 올라갈수록 차츰 작은 것을 놓았다. 축대와 적대의 바깥면은 안쪽으로 약간 경사지으면서 그 밑부분은 계단모양으로 쌓았다. 이 부분의 곁에 놓이는 돌의 옷면바깥쪽에는 턱을 지어 그우에 놓이는 돌이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였다. 돌쌓기의 이러한 수법들은 축대와 적대가 튼튼하면서도 우로 솟아보이게 한다.

축대의 복판에는 ㄱ형의 문길을 하나 냈다. 축대와 적대의 옷돌레에는 평가귀를 쌓고 그곳에 낸 활구멍과 타구로 적을 사격할수 있게 하였다. 축대우로는 그 뒤쪽 량견에 내 계단으로 오르내리게 되어있다. 축대우에 세운 문루는 앞면 5칸(17.15m), 옆면 2칸(6.30m)의 2층 건물이다. 굽직하게 세운 배부른기둥은 안정해 보이며 안쪽 모서리부분에 세운 4개의 기둥은 곧추 뻗어올라 2층기둥까지 겹하고 있다. 기둥우에 얹은 두공은 첨차를 두단 고인 이른바 《공아》형식의 두공이며 두공과 두공사이에는 활개모양의 《사이두공》을 소로에 받쳐놓았다. 내부를 통천정으로 시원하게 띄어놓았는데 대들보우에 대공을 세운 다음 중보를 놓고 거기에 다시 대공을 세워 마루도리를 받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우진각형식의 지붕은 장중한 맛을 돋우고있으며 고구려의 무늬기와와를 잇고 룡마루 량끝과 아래지붕 추녀마루 옷부분에 치미를 놓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건물안 한가운데에는 한단 높은 마루를 놓고 란간을 둘렀다. 문루안팎에는 화려한 단청을 입혔다. 단청을 붉은색의 기둥으로부터 시작하여 밑으로부터 우로 올라가면서 차츰 더 밝게 하여 지붕밧을 시원하게 하여주었다. 단청무늬의 기본은 닝쿨무늬, 구름무늬, 불꽃무늬 등이며 화살을 메운 활을 그린 기둥머리초, 5잎짜리 서까래마구리무늬도 좋지만 평판방안쪽에 그린 단청그림은 성문에 어울리게 특색있게 되었다. 남쪽의것은 칼, 창, 방패를 든 보병들, 사람도 갑옷을 입고 말에도 갑옷을 입힌 개마무사들이

씩씩하게 행군하는 장면을 그린것이고 북쪽의 것은 말탄 사냥꾼들이 달리면서 범과 사슴 등을 사냥하는 용맹한 모습을 그린 것이다.

12. 대성산부근 고구려 무덤떼

대성산에는 고구려시기의 천여개의 무덤과 산성자리들이 남아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오랜 력사와 우리 인민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말하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무덤 떼는 특히 대성산 서쪽기슭과 남쪽 및 동쪽 기슭에 집중되어있으며 이밖에 대성산 서북쪽의 화성동, 서남쪽의 미산동, 동남쪽의 로산동 등에도 있다. 무덤떼에는 돌각담무덤과 돌칼흙무덤이 있다. 돌각담무덤은 대성산 서쪽과 남쪽 산중턱에서 산기슭에 이르는 사이에 분포되어있다. 대부분 밑단이 있는데 더러 없는 것이 있다. 대성산부근의 무덤들은 압도적다수가 돌칸흙무덤이다. 돌칸흙무덤의 무덤무지는 방대형이다. 무덤칸은 경우에는 무덤안을 회죽으로 곱게 미장하였다. 천정형식에는 평행고임, 평행3각고임이 있다. 무덤칸안에 판대가 남았는것, 무덤칸에 들어가는 입구에 돌문이 있는것도 있다. 이 부근 무덤가운데는 벽화가 있는것도 있다. 고산동 1호, 7호, 9호, 10호 무덤과 개마무덤, 내리 1호무덤, 남경리 1호무덤, 호남리사신무덤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 고산동 7호, 10호 무덤은 인물풍속무덤이고 고산동 1호, 9호무덤과 개마무덤은 인물풍속 및 사신도무덤이며 내리 1호무덤, 호남리 사신도무덤은 사신도무덤이다.

13. 안학궁터

안학궁터는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에 있는 고구려시기의 왕궁터이다. 안학궁은 5세기 초엽 고구려가 수도를 국내성으로부터 평양으로 옮기면

서 건설한 것이다. 안학궁은 왕이 일상적으로 거처하던 성이다. 안학궁은 두터운 성벽을 네모나게 둘러막혀 있다. 궁성 한변의 길이는 622m이고 그 둘레는 2,488m로서 넓이는 약 38만㎡에 달한다. 궁성의 동, 서 두벽은 서쪽으로 10도 치우쳐있으며 남, 북 두벽은 북쪽으로 6도 치우쳐있기 때문에 성의 평면은 약간 륭형을 이루고 있다. 성벽은 돌과 흙을 섞어 쌓았다. 성벽의 밑부분은 평균 너비 8.8m로서 안팎에 일정한 높이까지 돌로 쌓고 그 안에 진흙을 다져넣었다. 돌은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뒤로 물러쌓았다. 이것은 고구려성들인 국내성이나 대성산성의 성벽의 밑부분을 쌓은 방법과 같다.

14. 청암리성

청암리성은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는 고구려시기의 성이다. 청암리성은 그 축성형식과 축조방법 그리고 성안에서 발견된 유물을 통하여 5세기경에 쌓은 고구려때 성으로 알려져있다. 성은 대동강을 옆에 끼고 주암산과 금수산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성의 평면은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은 반달모양이며 둘레는 약 5km이다. 이성의 서쪽성벽은 금수산의 한줄기가 북쪽으로 뻗어 주암산에 이르는 륭선을 따라 쌓고 동쪽은 대동강기슭에 생긴 절벽을 그대로 성벽으로 삼았다.

15. 금강사터

금강사터는 고구려시기의 절터이다. 금강사터는 평양시 대성구역에 있다. 고구려시기의 성인 청암리성은 남쪽에 대동강을 끼고 반달모양으로 길쭉하게 놓여있다. 여기서 동북쪽으로는 유명한 대성산이 솟아있고 북쪽에는 아미산과 감복산이 길게 누워있다. 이 일대에는 고구려시기 유적들

이 많이 분포되어있다. 대성산성과 안학궁터, 그 일대의 고구려무덤들, 상오리절터와 청오리절터 등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청암리 성안에는 고구려시기의 기와들이 널려있는 곳이 많은데 특히 금강사터일대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16. 법운암

법운암은 고구려시기에 처음세우고 리조시기에 고쳐지은 절간(암자)이다. 법운암은 평양시 만경대구역 룡봉리에 있다. 이 절간은 우거진 숲, 기이한 바위와 그 틈에서 샘솟는 맑은 물로 하여 예로부터 경치 좋기로 이름난 룡악산 남쪽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법운암은 고구려때 처음 세운후 여러차례 다시짓고 보수하여왔다. 지금있는 건물은 리조중엽에 다시 지은것이다. 이 절간을 고구려때에 세웠다는 것은 법운암비문이나 그밖의 기록 외에도 그 말단을 쌓은 돌을 다듬은 수법이 고구려성돌과 같으며 EH한 이 부근에는 고구려의 수키와 맥새들이 발견되는 것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깎아지른듯한 높은 벼랑을 배경으로 본전과 라한전, 산신각, 칠성각, 승방 등 다섯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법운암은 룡악산의 지형조건에 알맞게 배치되어있다. 법운암은 본전은 높은 밑단위에 세운 앞면 5칸(10.27m), 옆면 3칸(6.2m)으로 되었는데 2익공두공을 엮은 14개의 흘림기둥이 합각지붕을 떠받들고 있다.

17. 동명왕릉

동명왕릉은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무덤이다. 동명왕릉은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 있다. 동명왕릉은 한때《진주못》이라는 옛 못이 있다. 그리고 이 가까운곳에는 고구려무덤만 하여도 20여기 떼지어있다. 정릉사는

동명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만든 절간이다. 정릉사는 4세기초엽에 동명왕릉을 옮겨올 때 함께 지은것이다. 정릉사터에 대한 발굴은 1974년에 대규모적으로 진행되었다. 정릉사란 이름은 이 발굴과정에 나타난 질그릇조각들에 새겨진 《정릉》, 《□릉사》등 글자들에 의하여 판명되었다. 이 글자들은 위의 무덤(동명왕릉)이 왕의 무덤이며 이 절간은 왕릉을 위하여 지은 절간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정릉사터에서는 남북 132.8m, 동서 223m구역에서 18채의 집터, 10개의 회랑터가 발굴되었다. 정릉사터의 배치와 구조형식은 평양에 있는 고구려 금강사터의 그것과 기본상 같다.

18. 검은모루유적

검은모루유적은 구석기시대 전기의 동굴유적으로서 평양시 상원군 흑우리에 있다. 이 유적은 1966년부터 1968년 사이에 발굴정리되었다. 검은모루유적은 100만년이전의 유적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오늘까지 알려진 유적가운데서 가장 오랜 시기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검은모루유적은 평양시 상원군 상원읍에서 서쪽으로 3km 남짓한 거리에 있는 검은 모루마을(흑우리)동쪽산봉우리인 우물봉(해발 117.58m)남쪽비탈 천연동굴에서 발견되었다. 그곳에는 100만년이전 사람들이 쓴 석기와 짐승들을 잡아먹고 버린 뼈의 화석들이 쌓여있었다. 우물봉을 포함하여 상원일대의 산들은 대부분《상원통》의 석회암으로 이루어져있는만큼 크고 작은 동굴이 곳곳에 있다. 상원읍에는 청천암굴이라는 큰 굴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굴이 있고 대천리, 신하리, 대동리 일대와 력포구역에도 큰 석회암 동굴들이 있다. 우물봉 동북쪽쪽으로 약 300m 떨어져 크고 작은 동굴이 3개 있다. 이러한 동굴에는 지질학적으로 4기에 형성된 쌓인층에서 포유동물화석이 가끔나타난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동굴들에서 살았다. 검은 모루동굴은 길이 약 30m, 제일 넓은 곳의 너비는 2.5m이다.

19. 고구려 대동강다리터

대동강다리터는 고구려시기의 것이다. 고구려 대동강다리는 5세기초 고구려의 황궁인 안학궁앞쪽에 있던 다리이다. 이다리는 오늘의 대성구역 청호동과 사동구역 휴암동을 연결시켰던 커다란 나무다리이다. 대동강다리는 총길이가 375m, 너비가 9m가 되는 것으로서 대단히 웅장하다. 다리골조부재로는 대부분 너비 38cm, 두께 26cm되는 굵은 나무각재들을 썼다. 이렇게 력사가 오래고 규모가 큰 나무다리유적은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직 알려진 일이 없다.

20. 황룡산성

황룡산성은 고구려시기에 돌로 쌓은 산성이다. 황룡산성은 남포시 룡강군 옥도리 오석산에 있다. 황룡산성의 둘레는 약 6.6km이며 그 평면은 타원형에 가깝다. 성벽은 유리한 지형조건을 리용하여 산릉선을 따라가면서 쌓았다. 오석봉처럼 험한 봉우리와 절벽이 많은곳에서는 절벽을 그대로 성벽으로 삼았다. 그리고 성벽의 대부분은 룡선을 따라 잘 다듬은 성돌을 바깥부분에만 쌓았다. 성벽의 높이는 대체로 4~5m이다. 황룡산성성벽에는 성문, 웅성, 치, 성가퀴, 장대, 수구문 등이 있었다. 성가퀴는 높이 1.1~1.6m, 두께 1~1.3m, 길이 1~6m 정도이다. 성가퀴에는 각이한 형태와 크기를 가진 쏘는 구멍들을 뚫었다. 이밖에 남쪽과 서쪽의 성벽에는 접근하는 적을 정면과 좌우에서 치기 위한 4개의 치가 있었다. 남문부근에 있는 수구문은 오석산의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성밖으로 빼기 위한것이다. 지금도 수구문에는 적들이 기여들 수 없게 한 기둥(은주)자리가 남아있다. 성안에는 풍부한 물원천이 있었다. 옛기록에는 10개의 샘물과 3개의 못이 있다고 한다. 현재도 여덟군데나 큰 샘물이 사시장철 마를줄 모르고 솟아나오고 있다. 산성에는 동, 서, 남, 북 봉우리마다에 장대

터가 있다. 이것은 전시에는 전투지휘처로, 평상시에는 감시처로 리용하던 곳이다. 성의 북장대인 오석봉에는 봉수터가 있다. 성안의 여러곳에는 수많은 무기고와 식량창고, 병실들의 터가 있다.

21. 쌍기둥무덤

쌍기둥무덤은 남포시 룡강군 룡강읍에 있는 5세기말엽의 고구려벽화무덤이다. 이 무덤의 주변에는 룡강큰무덤과 강서세무덤, 덕흥리벽화무덤, 약수리벽화무덤, 수산리벽화무덤 등 이름난 고구려벽화무덤들이 많다. 쌍기둥무덤의 무덤칸은 절반 지하에 돌로 쌓았다. 이 무덤은 무덤안길, 앞칸, 안칸과 그 사이길로 이루어졌다. 앞칸과 안칸 사이에는 두개의 큰 8각기둥을 세웠다. 이로부터 이 무덤을 쌍기둥무덤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앞칸과 안칸의 천정은 모두 형행 3각고임형식이다. 무덤칸의 회벽우에는 화려한 벽화를 그렸다. 벽화의 주제는 인물풍속 및 사신이다. 무덤안길 동쪽 벽에는 소수레 2대, 말탄 사람 3명(그중 1명은 갑옷을 엮었다), 그밖에 30여명의 남녀를 그렸다. 그 가운데는 북을치는 사람도 있다. 무덤안길 서쪽 벽에는 소수레, 말탄사람, 그 밖의 30여명의 남녀그림이 있으며 거기에도 북을 치고 춤을 추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내용이 풍부하고 화려한 무덤안길의 벽화는 대부분 없어졌다.

22. 강서세무덤

고구려인민의 높은 건축술과 뛰어난 회화술을 자랑하는 강서세무덤은 7세기 중엽의 고구려벽화무덤이다. 강서세무덤은 남포시 강서구역 삼묘리에 있다. 이 무덤의 동쪽 2km되는 곳에는 이름난 덕흥리벽화무덤이 있고 서쪽으로 6km되는 곳에는 수락리벽화무덤이 있다. 세 개의 무덤으로 폐

를 이룬 강서세무덤은 삼묘리별판에 자리잡고있다. 맨남쪽에 놓여있는 제일큰 것이 강서큰무덤이고 그 뒤에 나란히 놓인 두 무덤가운데서 서쪽의 것이 강서 중무덤, 동쪽의 것이 강서 작은덤이다. 강서큰무덤과 강서중무덤에는 벽화가 있다.

23. 덕흥리벽화무덤

덕흥리벽화무덤은 408년에 만든 고구려벽화무덤이다. 무덤은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 무학산기슭의 전망이 좋은 언덕우에 자리잡고있다. 덕흥리벽화무덤의 무덤간은 무덤안길, 앞칸과 안칸 그 사이길로 이루어졌다. 무덤안길과 사이길은 무덤간의 중심축에서 동쪽으로 조금 치우쳐있다. 무덤안길은 남북길이 1.54m, 동서너비 1.02m의 장방형평면이며 안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좁아졌다. 높이는 1.43m이다. 앞칸은 동서로 길게생겼다. 그 동서 2.97m, 남북 2.02m, 높이 2.85m이다. 앞칸의 서북쪽 주인공 그림 밑에는 길이 95.5cm, 너비 55cm, 높이 17.5cm되는 제상을 놓았다. 앞칸과 안칸의 사이길은 남북길이 1.18m, 동서너비 0.9m, 높이 1.37m이다. 안칸은 동서와 남북이 각각 3.28m의 정방형평면으로 되었으며 높이는 2.9m이다. 북쪽부분 한가운데에 높이 21cm의 관대가 놓였다. 관대는 3개의 큰 판들의 무어 만들었는데 크기는 너비(동서)2.51m, 길이 (남북)2m이다. 덕흥리 벽화무덤이 세상에널리 알려지게된 것은 가지가지의 내용을 가진 벽화와 그것을 설명하는 600여자의 글자가 씌여져있기때문이다. 무덤안길 좌우의 벽면에는 문지기괴물과 몇몇 사람들을 그렸다. 거기에는 이 무덤문을 기원 409년 2월 2일에 닫았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있다. 무덤안길을 지나 앞칸에 들어서면 북쪽면 정면에 이 무덤주인공의 략력이 씌여있다. 거기에는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은 《진》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고구려 유주지방을 다스리고있던 지방장관이었으며 벼슬살이를 하다가 나이 77살에 죽어 기원 408년 12월 25일 여기에 옮겨묻었다고 하였다. 앞칸

의 벽화내용은 유주자사《진》의 공적생활과 관계되는 장면들을 그린 것이다. 북벽 서쪽부분에는 주인공이 장방안에 앉아 관리들과 시중군들을 거느리고 정사를 보는 장면이 펼쳐졌다.

24. 약수리벽화무덤

약수리벽화무덤은 5세기초의 고구려벽화무덤이다. 약수리벽화무덤은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리에 있다. 이 무덤부근에는 강서세무덤, 덕흥리벽화무덤을 비롯하여 수산리벽화무덤, 쌍기둥무덤, 룡강큰무덤,련꽃무덤 등 고구려시기의 이름난 벽화무덤들이 많다. 아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약수리벽화무덤의 무덤칸은 언덕을 깎아내고 절반 땅속에 쌓았다. 무덤의 방향은 약간 서쪽으로 치우친 남쪽방향이다. 무덤칸은 무덤안길과 앞칸, 안칸 및 그 사이길로 이루어졌다. 안칸의 동, 서 량벽에는 작은 감실이 달려 있다. 앞칸과 안칸의 천정은 밑은 궁륭으로 쌓아올라가다가 우는 3각고임으로 마감한 궁륭3각 고임형식이다.

25. 수산리벽화무덤

수산리벽화무덤은 5세기 후반기의 고구려귀족의 무덤이다. 수산리벽화무덤은 남포시 강서구역 수산리에 있다. 리소재지에서 서남방향으로 약 4km 떨어진 고정산에서 남으로 길게 뻗어내린 산줄기가 끝나는 언덕에 이 무덤이 자리잡고있다. 수산리벽화무덤의 무덤무지는 방대형으로 되었다. 수산리벽화무덤의 무덤칸은 무덤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진 외칸무덤이다. 무덤칸의 바닥에는 석비레를 다져 깔았으며 벽은 납작납작한 화강석을 회와 진흙에 물려쌓고 그우에 회죽미장을 하였다. 무덤안길은 길이 4.5m, 너비 1.6m, 높이 1.8m로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낮고 좁아졌다.

천정은 큰 판들을 건너대어 평천정형식으로 올렸다. 안간은 동서 3.2m, 남북 3.21m의 정방형평면이며 높이는 4.1m이다. 안간의 네 벽은 밑으로부터 2m까지는 수직으로 쌓았고 그우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혔다. 안간의 천정은 고구려무덤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행3각고임형식으로 평행고임 3단에 3각고임 2단을 올려놓고 북판에 뚜껑돌을 덮었다. 수산리벽화무덤에는 인물풍속을 주제로 한 벽화가 그려져있다. 무덤안길좌우벽에는 문지기 장수를 그렸다. 안간 북쪽벽에는 주인공부부가 아름다운 장막을 친 화려한 우진각집에서 남녀시중군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장면을 그렸다.

26. 안주성

안주성은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에 있는 고구려시기와 리조시기에 쌓은 성이다. 《삼국사기》지리지에 의하면 고구려시기에는 안주를 식성이라고 불렀고 고려초기에는 팽원이라고 하였으며 12세기중엽부터 안주라고 고쳐부르게 되었다. 안주성은 내성과 외성, 신성의 3개 부분성으로 이루어졌는데 부분성들의 쌓은 년대는 서로 다르다. 안주성을 처음쌓은 년대에 대하여 쓴 옛날기록은 없다. 그러나 고구려시기에 이미 안주를 식성이라고 불렀으며 성들을 다듬은 솜씨로부터 성벽을 쌓아올리는 수법에 이르기까지 내성의 축성형식이 모두 고구려적이고 성안에서 고구려기와 조각들이 많이 발견된 것은 안주성의 내성이 고구려시기부터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내성의 둘레는 2, 280m이다.

외성은 리조초기에 쌓은것인데 그 둘레는 3, 650m이고 신성은 후금(녀진)친락군을 물리친후 17세기에 쌓았는데 그 둘레는 약 550m이다. 성안에는 곳곳에 큰 못을 파고 물을 가득 채워놓았다. 내성에는 북문안에 현무못, 서문안에 곽남못, 남상못 등 3개의 큰 못이 있었다. 칠성못 가운데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듯 작은 흙섬을 7개 만들어놓았다.

27. 안국사

안국사는 고구려시에 처음세우고 리조시기에 고쳐지은 절간이다. 안국사는 평안남도 평성시에 있다. 안국사에 들어서는 입구에 있는 태평루계 단옆에는 안국사사적비가 있다. 거기에는 안국사가 503년에 세운 절간이라는 것이 기록되어있다. 안국사는 처음에는 크고작은 건물들이 처마를 잇대여 그득히 들어앉은 큰 절간이었다고 한다. 안국사주변에 있는 주춧돌들과 그 일대에 널려있는 고구려 붉은 기와조각들은 그 옛날의 모습을 더듬게 한다. 그리고 여기서 멀리 앓은 절골이라는 곳에 있는 중무덤탑은 안국사의 오랜 역사를 말해준다. 안국사사적비가 사이에 서있는 9층돌탑은 고려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안국사 대웅보전 마루도리에 씌여있는 기록에 의하면 이 건물은 1419년에 다시지었고 또 임진조국전쟁을 겪은 후와 1654년, 1785년에 고쳐지었다. 안국사는 대웅보전과 태평루, 주필대, 료사 등으로 이루어졌다. 안국사의 본전인 대웅보전은 2층으로 된 웅장한 건물이다. 이것은 현재 북반부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2층절간건물로서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28. 천왕지신무덤

천왕지신무덤은 평안남도 순천군 북창리에 있는 5세기중엽의 고구려벽화무덤이다. 대동강강변에서 멀지 않은 벌판 가운데에 있는 이 무덤은 그 짜임새와 벽화내용이 독특한 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이 무덤은 천왕지신무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벽화에 《천왕》과 《지신》의 그림이 있기 때문이다. 무덤칸은 무덤안길, 앞칸과 안칸, 사이길로 이루어졌다. 앞칸의 평면은 동서로 긴 장방형이며 그 동서는 6.73m, 남북은 1.56m이다. 앞칸 서쪽끝부분은 기둥과 두공으로 구분하고 바닥을 한단 높게 하였으며 동쪽끝부분도 두공으로 칸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서쪽끝부

분의 천정은 평행고임으로 하고 동쪽끝부분의 천정은 8각고임으로 보이게하였다. 천왕지신무덤에서는 실물활개와 그림활개, 실물두공과 그림두공을 잘 어울려쓰면서 무덤의 천정을 다양하고도 아름답게 처리하였다. 천왕지신무덤은 구조적으로 기발하게 잘 짜였을 뿐 아니라 그 벽화내용도 다양하다. 벽화는 오래전에 대부분 없어졌지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만으로도 대체로 그 내용을 짐작할수 있다. 앞칸 서쪽에 결간처럼 마련한 부분은 앞에 세운 2개의 실물기둥과 방안구석들에 화려한 무늬치레를 하였다. 이것은 이 부분을 하나의 방안과 같이 꾸미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안악3호무덤과 태성리1호무덤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래 이와 같은 부분에는 무덤에 묻힌 사람의 초상화를 그렸던 것이다.

29. 덕화리1호, 2호무덤

덕화리 1호, 2호무덤은 6세기에 만든 고구려귀족의 무덤이다. 1973년 10월에 새로 발굴된 이 무덤은 평안남도 대동군 덕화리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봉화산 남쪽기슭에 자리잡고있다. 2기가 동, 서로 나란히 놓여있는데 서쪽의것이 1호무덤이고 동쪽의것이 2호무덤이다. 이 무덤에 그린 사신가운데서는 동벽의 청룡이 제일 우수하다. 청룡은 힘있는 필치로 그렸으므로 기운이 생동하고 박력감이 있다. 제한된 몇 가지 색으로 평면적으로 간단히 그린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동하게 보이는것은 탄력있는 선들이 적절하게 안받침되어있기 때문이다. 크게 벌린 아가리, 대가리 뒤로 내뺀은 두 개의 긴뿔, 불을 토하는것 같은 붉고 긴 혀, 큰 귀, 엄청나게 길고 흰 두 눈썹 등은 살아움직이는 집승을 보는것 같은 감을 준다. 몸집은 굵고 꼬리는 가늘게 위로 올라간 청룡은 물결치는듯한 선으로 움직임을 잘 표현하고 있다. 서쪽벽 백호의 대가리는 맹수의 특징을 잘 나타냈으며 그 몸집은 청룡과 비슷하다. 북쪽벽의 현무는 거부기의 몸을 뱀이 세 번 휘감은 것으로 형상하였다. 같은 형태로 그린 호남리사신무덤

의 현무보다 더 세련되었다. 남쪽벽의 주작은 입구좌우에 각각 한 마리씩 방금 날것 같이 형상하였다. 색깔은 왼쪽것의 날개에 붉은색을 많이 썼는데 오른쪽것에는 붉은색을 쓰지 않았다. 이것은 수컷과 암컷을 구별하려는 것 같다. 주작은 마른뿔질법에 의하여 그 특징이 잘 나타나게 그린 것으로서 진파리1호무덤의 주작과 같은 높은 솜씨를 보여준다. 무덤칸 북쪽벽 옷단에는 각각 4명씩의 남녀를 그렸다. 맨 앞에는 노란색 저고리에 통뽕은 자주색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적>>(모자의 일종)을 쓴 남자가 남쪽을 향하여 서있다. 옷차림으로 보아 이 사람이 무덤에 묻힌 사람이것 같다. 그밖의 사람들은 모두 고구려의 고유한 남녀옷차림을 하였다. 천정 고임에는 전면에 걸쳐 커다란 거북잔등무늬를 그리고 그 사이에 북쪽에는 북두칠성을, 남쪽에는 류수를, 동쪽에는 해를, 서쪽에는 달을 그렸으며 천정 요소요소에는 여러 가지 구름무늬를, 뚜껑돌과 평행고임에는 큰 런꽃무늬를 그렸다. 천정의 여러 가지 무늬들가운데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거북잔등무늬와 그 가운데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무늬이다. 활달한 필치로 그린 이 무늬는 천정 전체가 하나로 잇닿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천정뚜껑돌에 그린 활짝 핀 런꽃무늬도 우수하다. 먼저 콤파스로 중심원을 그리고 그안에 13개의 런씨를, 그밖에는 8개의 꽃잎을 돌렸다. 그리고 남북의 빈곳에는 구름무늬를 하나씩 크게 그렸는데 가운데의 큰 런꽃과 남북의 구름무늬는 서로 잘 어울린다. 덕화리2호무덤의 무덤무지는 동서 23m, 남북 26m, 높이는 지금 남은것이 4.1m인데 그 남쪽에 약간 모가 난 흔적이 있는것은 본래 이 무덤무지가 방대형이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무덤은 무덤안길이 달린 외칸무덤이며 그 방향은 서쪽으로 치우친 남향이다.이 무덤의 무덤칸 벽면과 천정에는 회죽으로 미장하고 그우에 벽화를 그렸다. 벽화의 주제내용은 인물풍속 및 사신이다. 무덤벽화의 주제는 1호무덤의것과 같으며 그림솜씨도 비슷하나 다만 천정의 별자리그림이 다르다. 별자리는 8각고임 셋째단에 그렸는데 북쪽과 동쪽의것만 남아있다. 원래28개의 별자리를 다 그렸던것인데 지금 보이는 별자리는 19개뿐이며 그가운데서 4개의 별자리에는 류(성), 정(성), 위(성), 벽(성)이

라는 글자가 쓰여있다. 28수중 류성, 정성, 위성, 벽성, 실성의 별배열상태는 고구려시기에 만들어진 <<석간천문도>>의 별자리그림과 거의 같다. 그리고 북두칠성은 북쪽에, 세발까마귀로 나타낸 해는 동쪽에, 두꺼비로 나타낸 달은 서쪽에 모두 정확한 방위에 그려놓았다. 이 별자리그림은 고구려 천문학과 나아가서는 동부아시아의 고대천문학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30. 룡오리산성

룡오리산성은 고구려시기에 쌓은 산성이다. 이 산성은 평안북도 태천군 룡상리 산성산에 있다. 산성산은 강남산줄기의 한갈래가 남으로 뻗어나가다가 문득 멈춰서서 한번 룡틀임을 한듯 솟아오른 가파로운 산이다. 이 산은 팔원선(구성-팔월간)산성역에서 북으로 약20km떨어져있다. 고구려 사람들은 룡오리산성을 는데서도 지형조건을 잘리용하여 이 산에서 가장 높고 가파로운 서남부에 그 자리를 잡았다. 성의 남쪽에는 넓은 태천벌이 펼쳐져있고 동쪽과 북쪽에서 흘러내리는 대령강의 두 지류가 태천벌에서 합류하여 벌을 서남방향으로 누비며 조선서해에 흘러간다. 룡오리산성은 또한 남북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북으로 구성-대관-청수길과 동북으로 동창-창성길을 거쳐 룡동지방으로 통하며 남쪽으로는 녕변-개천-순천길과 박천-안주길을 거쳐 평양지방으로 통한다. 그리고 물길로는 대령강을 따라 청천강과 조선서해로 통한다. 그리고 물길로는 대령강을 따라 청천강과 조선서해로 통한다. 산성이 자리잡은 서남봉우리는 마치 광주리를 기울여 놓은듯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가운데는 오목하다.

성벽은 오목한 분지를 안에 넣고 동, 서, 북 세면을 병풍처럼 둘러막은 봉우리들과 룡선을 따라 쌓았다. 성벽의 둘레는 2,020m이다. 성벽은 외면쌓기방법으로 쌓았는데 그 높이는 5~6m이다.

31. 양화사

양화사는 9세기중엽에 처음세우고 리조시기에 고쳐세운 절간이다. 양화사는 평안북도 태천군 상단리에 있다. 양화사가 자리잡은곳은 향적산 주봉을 배경으로 하고 좌우는 향적산에서 뺀어내린 산줄기로 둘러막혔다. 그 안쪽 좌우 두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을 양화사앞에서 합쳐 서쪽으로 흐른다. 이곳은 수십수백년 묵은 나무들이 우거져 마치 깊은 산속에라도 들어선듯한 감을 준다. 양화사는 평안북도지방에서 묘향산 보현사 다음가는 큰 절간으로서 대웅전을 비롯하여 명부전, 봉축전, 심검당, 봉향각, 천왕문, 해탈문 등 10여채로의 건물로 이루어졌다. 옛 기록에 의하면 양화사를 처음세운 년대는 872년이며 992년에 다시 지었다고 한다. 양화사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992년에 지은 보광전을 1461년에 고쳐세우면서 이름도 대웅전이라고 고쳤다. 지금의 대웅전은 1874년에 불타버린것을 1879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명부전은 1247년에 처음짓고 1656년에 고쳐세운것이다. 천왕문과 해탈문은 처음에 대웅전과 함께 세웠던것인데 그후 천왕문을 먼저 고쳐짓고 다음에 해탈문을 다시지은후 여러차례의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그밖의 건물들은 모두 1874년 큰 화재가 있을 후에 다시세운것들이다.

32. 룡골산성

룡골산성은 평안북도 염주군 반곡리, 피현군 성동리 경계에 있는 고구려시기에 처음쌓고 리조시기에 덧은 돌성이다. 이 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되어있다. 내성은 고구려시기에 쌓은것인데 둘레가 약 670m이며 외성은 리조시기인 1692년에 내성남쪽에 덧붙여 있는데 둘레가 약 2,500m이다. 룡골산은 우리 나라 서북 끝에 있는 높은 산이다. 룡골산성은 지난날 압록강을 건너 침입한 적을 물리치는데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

한 자리에 놓여있었다.

33. 룡한산성

룡한산성은 고구려시기의 산성이다. 이 산성은 평안북도 곽산군 곽산읍 룡한산에 있다. 산성안에 있는 23개의 우물과 1개의 높은 군대와 인민들의 음료수를 보장할수 있는 풍부한 물원천으로 되고있었다. 성벽의 둘레는 약 2.8km(옛 기록에 6, 913자)이며 그 높이는 5~6m, 밑너비는 6m이다.

34. 백마산성

백마산성은 고구려시기에 처음 쌓고 고려시기, 리조시기에 덧 은 산성이다.

백마산성은 평안북도 피현군 백마로동자구에 있다.해발 410m나 되는 백마산은 북으로는 의주, 남으로는 룡천, 피현 일대의 사면팔방을 손금처럼 굽어볼수 있어 적의 동정을 살피는데서나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요격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그러기에 력사적으로 북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침입해온 외래침략자들은 의주를 건너 이곳 백마산성을 전투목표로 삼고 달려들군하였다. 백마산에 의지하여 쌓은 이 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된다. 그 둘레는 내성이 2, 590m이고 외성은 2, 430m이다. 내성은 고구려시기에 쌓은 우마성을 기초로 하여 1014~1017년 사이에 강감찬의 지휘밑에 고쳐쌓았다. 외성은 1753년에 내성의 동쪽에 덧붙여 쌓았다.

35. 관산리고인돌

관산리고인돌은 우리 나라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인 고인돌 가운데서 가장 크고 잘 남아있는것 가운데 하나이다. 이 고인돌은 황해남도 은률군 관산리소재지에서 동쪽으로 약 1.3km떨어진곳에 있다. 고인돌은 질 좋은 화강암으로 만들었다. 뚜껑돌은 대체로 장방형으로 생겼다. 그 크기는 길이 8.75m, 너비 4.5m, 두께 31cm로서 그 무게를 환산해보면 40t이 나 된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우선 뚜껑돌과 고임돌을 일정한 형태로 대강 다듬어 쓴것이다. 이것은 고임돌을 처음부터 일정한 구상밑에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동서 양쪽의 고임돌에 의지하여 북쪽 고임돌을 잇대여 세워놓은 점이다. 또한 고임돌에 6~7도가량 안기울임을 주고있는점이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초보적인 건축공학적인지식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36. 연안읍성

연안읍성은 황해남도 연안군 연안읍을 둘러막은 고구려의 평지성이다. 이 읍성은 고구려때에 고영성이라고 불렀다. 지금의 성은 1555년에 고쳐 쌓은 것이다. 연안은 예로부터 조선서해기슭의 여러 고을가운데서 가장 이름있는곳의 하나였다. 고구려시기에는 동음홀이라고 부르던 주요지점이며 그후 력대 봉건왕조들도 이곳을 황해도 남부의 중심적인 고을로 보았다. 연안읍의 뒤에 높이 솟은 봉세산(비봉산)에는 봉세산성터가 있다.

연안읍성은 앞에 낮은 남산을 끼고 뒤는 봉세산의 기슭을 둘러막았다. 연안읍성은 앞에는 무연한 연안, 배천, 청단벌을, 뒤에는 평천일대의 기름진 땅을 끼고있다. 연안읍성은 바다로 기여올랐거나 례성강을 건너들어온 그 어떤 침략자도 뚫을 수 없는 요새였다. 읍성은 둘레 약 2km이며 성벽은 다듬은 성돌로 면을 맞추어 치밀하게 쌓아올렸다. 성벽의 높이는 성가

퀴까지 합하여 약 6m가량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지금도 성의 남쪽벽일 부가 남아있어 옛성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37. 안악1호무덤

안악1무덤은 황해남도 안악군 대추리 상지마을뒤 언덕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이 무덤은 광복후 발굴된 고구려시기의 이름난 벽화무덤이다. 1949년에 이 무덤을 발견하고 발굴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 무덤에서 북쪽으로 400m되는 곳과 서남쪽 6km 떨어진 곳에서도 고구려벽화무덤을 발굴하였다. 이 세 무덤을 발견한 순서에 따라 안악1호무덤, 안악2호무덤, 안악3호무덤이라고 부른다. 안악지방에서 3기의 고구려벽화무덤이 연이어 발굴된것은 세상사람들의 큰 주목을 끌었다. 안악1호무덤은 4세기 발엽에 만든 고구려귀족의 벽화무덤이다. 이 무덤은 땅우에 쌓은 돌칸흙 무덤으로서 무덤 안길에 남쪽에 달린 외칸무덤이다. 벽화는 안칸 벽면과 천정에 그렸다. 벽에는 큰집, 사냥장면, 행렬장면과 여자들을 그렸으며 천정에는련꽃무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무늬들과 가상적인 짐승 및 날짐승, 《신선》, 해와 달, 별자리들을 그렸다. 북쪽벽에는 전면에 걸쳐 큰 집을 그렸다. 2층짜리 큰 집을 중심에 놓고 주위에는 지붕있는 회랑이 장방형으로 둘러있으며 그 동, 서, 남, 북 네면의 한가운데에는 대문이, 회랑의 네모서리에는 각루가 하나씩 있다. 중심의 2층집에는 우진각지붕을 이었다. 지붕 룡마루 량끝에는에는 치미를 얹고 추녀마루끝은 휘어올렸다. 이것은 고구려유적들에서 나오는 귀면판을 그린것 같다.

38. 안악2호무덤

안악2호무덤은 5세기말~6세기초 고구려의 우수한 벽화무덤이다. 이

무덤은 황해남도 안악군 대추리 상지마을뒤의 느리게 비탈진 언덕 중턱에 자리잡고있다. 이곳은 넓은 벌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망이 좋은곳이다. 이 무덤의 남쪽 400m되는 언덕기슭에는 안악1호무덤이 있고 서남쪽 약 6km지점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안악3호무덤이 있다. 무덤벽화의 주제는 인물풍속이다. 먼저 무덤칸 전체를 집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네 벽모서리에 두공을 엮은 기둥을 그렸다. 기둥들사이는 도리를 이어대고 도리우에 A형으로 된 활개가 놓이고 다시 그우에 도리를 련이어 엮은 모양으로 그렸다. 그리고 3각고임부분에는 계단식으로 네면에 각각 큰 소로를 그려 그우에 놓인 고임을 떠받들고있는듯이 하였다. 천정에는 또한 여러 가지 무늬를 정교롭게 그려 고임천정과 조화를 이루게 하여 장식적효과를 높이고있다. 무덤안길과 인간에 그린벽화는 그 화법이 세련되어 고구려무덤벽화가운데서도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인간 동쪽벽에 그린 《비천》그림은 이때까지 알려진 고구려벽화에서뿐만아니라 5~6세기경 다른 나라의 예술작품가운데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대표적인 걸작품이다.

39. 안악3호무덤

안악3호무덤은 4세기중엽 고구려왕의 벽화무덤이다. 안악3호무덤은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있다. 안악3호무덤의 벽화는 1, 60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나 고구려화가들의 뛰어난 예술적재능과 고구려의 문화와 생활풍습의 다양한 면모를 생동하게 보여준다. 벽화의 솜씨를 개괄하여보면 왕과 왕비의 그림, 회랑과 행렬그림, 인간의 무악그림, 서쪽결칸입구 좌우의 그림솜씨가 뛰어나게 우수하고 동쪽결칸의 그림이 그 다음간다. 벽화를 그린 솜씨에 차이가 있는것은 벽화의 중요성에 따라 역량배치를 달리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왕비의 그림은 당시 초상을 그리는 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왕비의 얼굴은 부

드럽고 탄력있는 피부의 질감과 량감을 능숙하게 표현하면서 활달한 선으로 단숨에 자신만만하게 그리면서 대상의 특징까지 잘 형상하고있다. 왕과 왕비의 초상 좌우에 서있는 부하들과 시녀들은 모두 엄청나게 작게 몇등급으로 나누어그렸다. 당시 사람들 그럴 때에는 엄격한 계급신분제도에 맞추어 크기를 결정하는 위계법이 적용되었다. 이처럼 시대적, 계급적 제약성으로부터 생겨나는 도식과 규범 속에서도 화가들의 지향과 념원, 사실적인것을 추구하는 흐름은 일관하게 표현되고있다. 또한 화가들은 매 사람의 특징뿐만아니라 그의 연령, 성격까지도 일일이 알아볼수있게 뚜렷이 표현하였다. 안악3호무덤회랑의 행렬그림은 250여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대화폭으로서 중심대렬의 일부와 선두대렬만을 그렸다. 그러므로 이 대행렬에 참가한 총인원은 500여명에 달하였다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행렬은 대규모적이고 장중하고 질서정연하다. 이는 왕의 권세를 시위하는 행렬이다. 행렬그림은 그 구도가 크고 복잡하지만 모두가 고취악대의 음악소리에 맞추어 통일적으로 일제히 한걸음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고있는듯하다. 안악3호무덤은 고구려왕의 무덤으로서 여기서는 인민대중에 대한 통치계급의 가혹한 착취와 수탈 면모를 력력히 찾아볼수있다. 안악3호무덤은 이른시기에 속하는 고구려벽화무덤으로서 여기에는 우리 나라 미술의 오랜 민족적전통이 반영되어있다.

40. 로암리고인돌

로암리고인돌은 청동기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무덤이며 고인돌가운데서 가장 큰것의 하나이다. 로암리고인돌은 황해남도 안악군 로암리 소재지에서 4km떨어진 화평마을앞에 남쪽을 향하여 서있다. 로암리고인돌은 화강암으로 만들었는데 네면을 다 막은 형식이었으리라고 짐작된다. 현대는 동, 서 두 고임돌과 그우에 올려놓은 뚜껑돌만이 남아있다.뚜껑돌의 길이는 7.7m, 너비는 6m, 두께는 0.64m로서 그 무게는 41.5t으로

추정된다. 이 수자는 지금 남은 돌의 크기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보다 훨씬 더 컸을 수있다. 로암리고인들의 내부공간은 길이 4.14m, 너비 2m, 높이가 2.4m쯤 되었을것이라고 추정된다. 이것은 배천군 룡동리고인돌, 연탄군 오덕리 송산동 1호고인돌, 은률군 관산리고인돌이나 고조선의 옛땅이던 룡하동쪽의 허가둔 석봉산고인돌의 무덤칸보다도 큰것이다.

41. 수양산성

수양산성은 황해남도 해주시에 있는 고구려시기의 산성이다. 이 성은 원래 지성산성이라고 불려왔고 예로부터 황해도 3대 산성의 하나로 일러왔다. 성 북쪽에는 멸약산 줄기의 가장 높은 봉우리들이 솟아있고 서남쪽에는 무연한 연백벌과 해주만이 한눈에 안겨오는 전망이 좋은곳에 자리잡고있다. 성안은 수림이 울창하고 깊숙한 골짜기마다 시내물이 흐르며 이름난 수양폭포까지 있어 경치가 매우 좋다. 수양산성은 동, 남, 북쪽이 높고 서쪽은 낮으며 두 개의 깊은 골짜기와 넓은 공지를 가지고있는 전형적인 고로봉식산성이다. 이 성은 북쪽에 높이 솟은 장대봉을 중심으로 높고낮은 봉우리들을 련결한 둘레 약 8.02km의 큰 산성이다. 성벽은 지형지물을 잘 리용하여 대부분 바위우에 쌓았다. 성벽의 높이는 보통 6~7m, 밑너비 7~8m, 윗너비 3~4m이며 남문부근에서는 성벽의 두께가 14m나 된다. 이 성은 거의 전구간을 량면쌓기방법으로 쌓아 든든하게 하였다.

42. 태백산성

태백산성은 황해북도 평산군 산성리 태백산의 험한 산세를 리용하여 쌓은 고구려시기의 돌성이다. 태백산성은 고구려시기의 대곡성으로 인정된다. 태백사성일대는 고구려시기 대곡군이었으며 고려시기에는 평주로

이름을 고치고 여기에 방어사를 두었다. 이성은 방어하기에 유리한 태백산과 레성강의 지형지체를 잘 리용하여 쌓았다. 태백산성이 성벽은 바로 산성골을 둘러막고있는 봉우리들과 릉성을 따라 뻗었는데 동쪽은 레성강의 절벽을 그대로 성벽으로 삼았다. 성의 북쪽과 남쪽으로는 넓고 기름진 벌이 펼쳐져있고 동쪽으로는 레성강의 푸른 물이 성밑을 씻으며 흐른다. 그 건너편에는 깃대봉이 높이 솟아있다. 태백산성은 또한 교통이 매우 편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서북으로 서흥, 사리원, 평양에 통하는 큰길이 이곳을 지났다. 이 길은 남으로 금천, 개성, 서울로도 통한다. 태백산성의 둘레는 2, 425m이며 성벽의 높이는 7m이다.

43. 정양사

정양사는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내금강에 있는 600년에 처음짓고 리조초기에 다시 지은 절간이다. 내금강의 표훈사뒤로 험한 령길을 에돌아 900여m가량 오르면 문득 넓직한 평지가 펼쳐지는데 그곳이 방광대이다. 이방광대 산허리에 정양사가 자리잡고있다. 정양사일대는 내금강에서도 전망이 좋기로 이름난곳이다. 옛날사람들을 정양사 혈성루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면 아아하게 솟은 내금강의 못봉우리들이 한눈에 안겨와 한쪽의 풍경화를 대하는듯도 하고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에 천하의 장관을 한품에 안은듯도 하다고 하였다. 정양사라는 이름은 금강산에서도 가장 양지바른곳에 지은 절간이라는데서 온것이다. 《회양읍지》에 의하면 정양사는 600년에 처음세우고 661년에 확장하여 다시지은 일이 있다.현재 서있는 반야보전은 리조초기에 약산전은 리보후반기에 다시 세운 건물이며 그앞에 있는 《금강산 세 옛탑》의 하나 정양사 3층탑은 돌등과 함께 금강산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건축물이다. 령산전, 라한전, 혈성루 등은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의하여 불타버렸다. 정양사는 그 위치가 외지고 그윽한 곳이어서 1458년에 경상남도 해인

사에 보관하였던 《8만대장경》판목의 일부를 여기에 옮겨 보관한 일이 있다. 정양사는 방광대중턱 양지바른 평지우에 남북중심축을 설정하고 축을 따라 안쪽으로부터 반야보전, 약사전, 3층돌탑이 있고 그 좌우에 그 밖의 건물들이 배치되어있었다.

44. 정양사3층탑

정양사3층탑은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정양사 약사전 앞에 있는 오랜 돌탑이다. 이탑은 장연사 3층탑, 신계사 3층탑과 함께 《금강산 세 옛탑》의 하나로 불리웠다. 탑은 600년에 정양사와 함께 세운 것으로 전해온다. 탑의 평면은 방형이며 화강석을 다듬어만든 밑단과 탑몸, 타머리로 이루어졌다. 탑의 높이는 3.97m이다. 탑의 맨 밑에는 바닥돌을 깔았다. 밑단은 두단으로 되었다. 밑단 한번의 길이는 2.32m이다.

45. 장안사터

장안사는 6세기중엽에 처음 세우고 18세기에 다시지은 절간이다.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내금강입구에서 골짜기를 누비며 흐르는 맑은 만천을 따라 약 2km가면 비흥교(만천다리)건너편에 장안사터가 있다. 장안사터가 자리잡은곳은 내금강 만폭동 명승구에서도 절승으로 이름이 높다. 해발 1,000여m의 방광대의 한줄기가 바재령을 이루면서 서쪽으로 뻗어나와 장안사의 뒤를 뺨들러막았는데 앞으로는 만폭동에서 흘러내리는 수정같이 맑은 물이 물안개를 흩날리며 굽이쳐흐르고 그 너머로는 장경봉, 지장봉, 석가봉, 관음봉 등 봉우리들이 하늘을 찌를듯이 키돋음하며 솟아있다. 장안사는 본래 수심채의 크고 작은 건물로 이루어진 큰 절간이었는데 지난 조국해방전쟁때(1951년 5월)미제날강도들의 무차별폭격으로 모조리

불타버렸다. 장안사는 표훈사, 신계사, 유점사와 함께 《금강산의 4개 큰 절간》의 하나로서 551년에 처음 지은 뒤 여러차례 불타서 고쳐지었다. 전쟁전에 있던 건물은 리조시기(1731년)에 다시 지은 것이었다. 고려시기에 장안사는 70여채로 된 큰 절간으로 명승지 금강산의 이름과 함께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 알려졌다.

46. 장연사 3층탑

장연사 3층탑은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에 있는 삼국시기의 돌탑이다. 이 탑은 내금강입구인 내강리마을 서북쪽 낮은 언덕에 있는 장연사터에 서 있다. 이 탑뒤에는 아름다운 샛갯봉이 솟아있고 탑앞에는 내금강골안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이 동금강천과 합치여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흘러내리고있다. 옛날 장연사앞에는 《장연》이라는 긴 못이 있었다. 장연사라는 이름은 이 못의 이름에서 붙은 것이라 한다. 장연사 3층탑은 신계사3층탑, 정양사 3층탑과 함께 《금강산 세 옛탑》이라고 불려왔다.

47. 신계사터와 신계사3층탑

예로부터 이름난 신계사는 삼국시기에 처음 세우고 리조시기에 고쳐지은 절간이었다. 신계사터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있다. 온정리 소재지에서 구룡연을 향하여 가느라면 신계천을 왼쪽에 끼고 수백년 자란 울창한 소나무숲을 한참 지나게 된다.《창터솔밭》이라고 전해오는 이 솔밭이 끝나는 오른쪽 평탄한 대지의 한가운데에 《금강산 세옛탑》의 하나인 신계사 3층탑이 서있다.이 탑은 중심으로 널려있는 큰 규모의 집터들이 신계사터이다. 신계사는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건축술을 보여주는 절간으로서 장안사와 표훈사, 유점사와 함께 《금강산의 4개 큰 절간》의 하나

로 졌다. 신계사는 뒤의 관음련봉줄기인 붓끝같이 뽀족한 문필봉과 앞의 구름을 끼고 아슬하게 솟아있는 세존봉, 채하봉, 집선봉 등과 잘 어울렸다. 관음봉에 올라서 보는 아침해돋이와 저녁 금빛노을의 눈부신광경은 수천마디의 말로써도 형용하기 어렵다. 신계사에 대한 기록으로 보면 이 절간을 보면 이 절간은 519년에 처음 세운 후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여러 차례 다시 짓고 34차례나 보수하였다. 리조말기 신계사에는 대웅전과 만세루를 중심으로 15채의 건물이 있었다. 신계사는 대웅전과 만세루를 통하는 남북중심축이 설정되고 뒤의 대웅전구역과 앞의 만세루구역으로 나누어 배치되어있었다. 대웅전구역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앞에는 3층돌탑이 놓이고 동쪽에는 칠성각, 대향각, 극락전이, 서쪽에는 라한전(령산전), 어실각이 일정한 사이를 두고 정연하게 배치되어있었다. 만세루구역에는 만세루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향로전과 부속건물을, 서쪽에는 최승전과 부속건물이 배치되어있었다. 이와 같이 남북으로 중심축을 설정하고 좌우대칭으로 건물들을 놓는것은 우리나라 절간건축에서 이미 삼국시기부터 써내려온 배치형식의 하나이다.

부록 III

* 북한 “문화유물보호법”

* 조희승(북한 과학원 교수) 자료 제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제 1 장 “문화유물보호법의 기본”

-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상대로 보존하여 민족 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 제2조 문화유물을 우리 인민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주는 민족의 귀중한 제보이다.
문화유물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소부리터와 같은 역사유적과 생산도구, 생활용품, 불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골과 같은 역사유물 등이 속한다.
- 제3조 문화유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역사유물은 개별 적공민도 소유할수 있다.
-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올바른 문화유물보호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문화유물이 발굴수집되고 복고재건되었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여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획적으로 높여나간다.
- 제5조 문화유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 제6조 문화유물보호관리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문화유물담당관리제를 실시한다.
- 제7조 국가는 문화유물을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 제8조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

에서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집”

제10조 문화유물의 발굴수집은 나라의 문화적재보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문화유물의 발굴수집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문화유물의 발굴은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전문기관만이 한다. 등록된 문화유물의 발굴은 중앙문화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문화유물을 발굴하는 기관은 문화유물이 손상되지 않게 과학기술적으로 발굴하며 발굴이 끝나는 차례로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발굴보고자료는 정해진 기간안에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 내며 발굴된 문화유물은 해당 문화유물보존기관에 넘겨 주어야 한다.

제1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문화유물을 발견하면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문화유물의 발견에 대하여 통보받은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기관은 즉시 현장을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필요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건설공사같은 작업을 할 수 없다.

제14조 력사유물수집사업은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만이 한다.

문화유물보존기관은 력사유물수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에 바친 역사유물에 대하여서는 그 가치에 따라 특별히 보상하여 준다.

제15조 은행 및 수매기관과 해당기업소는 수매과정에 발견한 역사유물을 문화유물보존기관에 넘겨 주어야 한다.

제 3 장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

제16조 문화유물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것은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문화유물을 정확히 평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 문화유물은 역사적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 일반문화유물로 평가한다.

제18조 문화유물을 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평가된 문화유물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일반문화유물은 지방문화유물보존기관이 등록한다.

제2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정형을 제때에 기록하고 해당등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을 폐기, 이관하거나 이름을 고치려고 할 경우에는 내각 또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문화유물의 보존관리”

제22조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를 잘하는 것은 문화유물의 파손을 미리 막고 원상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제23조 문화유물보존관리는 문화유물보존기관과 역사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제24조 국가는 역사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역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한다.

제25조 역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땅을 일구거나 그안에 시설물을 건설할 수 없다.

제26조 지방해정경제기관과 문화유물보존기그나은 역사유적에 표식주, 설명문판 같은 것을 규격대로 만들어 세우며 울타리를 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제27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문화유물을 계획적으로 보수, 수복, 소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적준비가 없이는 문화유물을 복구, 수복, 소독할 수 없다.

제28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의 보호에 필요한 온도, 습도를 보장하고 화재, 분실, 파손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9조 역사유적은 박물관을 꾸리거나 문화유물보존과 관련되는 목적에 리용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을 리용하려고 할 경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역사유적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수하며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승인없이 역사유적의 구조를 변경시킬수 없다.

제31조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물을 해당시설이 갖추어진 보존고에 정히 보관하며 손상될수 있는 진귀한 역사유물은 모조품을 만들어 리용하여야 한다. 모조품의 제작승인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 제32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촬영하거나 벽화무덤을
 참관하려고 할 경우에는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3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을 보존하는데 영향이 미칠수 있는
 지역에 건설대상을 배치하려고 할 경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
 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34조 역사유물을 팔고 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를 목적으로 역사유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은 내
 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보적의의가 있는 문화유
 물의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같은 것을 만들어 영구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문화유물의 복구개건”

- 제36조 문화유물의 복구개건은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문화유물을 재현하
 는 중요한 사업이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행정경제기관은 해당 역사적시기를
 대표하고 교양적의의가 있으며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수 있
 는 전형적인 문화유물을 복구개건하여야 한다.
- 제37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역사적사실과 해당시기의 특성에 맞게 복구개건할 력사
 유적의 형성안을 만들어야 한다.
- 제38조 력사유적의 복구개건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비준된 기술과제에 기초하여 력사유적의 복구개
 건설계를 하여야 한다.
 력사유적복구개건설계의 승인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 제39조 국가계획기관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유적의 복구개건대상을 기본건설계획 중아지표로 정확히 맞물려 주어야 한다.
- 제40조 문화유물 보존지도기관과 해당 시공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의 복구개건을 승인된 설계대로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대상은 역사유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
- 제41조 역사유적은 승인없이 이설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역사유적을 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2조 현물이 없는 역사유물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할 수 있다.
역사유물의 복원은 중앙문화유물보존기관이 지정한 기관만이 한다.

제 6 장 “문화유물 보호에 대한 지도통제”

- 제6장(제 43조로부터 제 52조까지)에서는 문화유물보호사업을 담당하는 각급 지도기관들과 기업소의 임무, 문화유물보존사업과 관계되는 관련기관들의 임무,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감독통제사업과 그 내용에 대하여 밝혀 주고 있다.
- 제43조 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전국의 문화유물보호관리정형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제44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고나과 지방행정경제기관,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안의 문화유물보존관리에 대한 분담을 조직하고 문화유물보존관리계획을 맞물리며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 제45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박물관을 꾸릴수 있다.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실물로 보여줄수 있는 민속촌도 꾸릴수 있다.

제46조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 보호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문화유물보호부문의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제47조 정무원과 해당기관은 문화유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문화유물보존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문화유물보호관리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8조 지방행정경제기관과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 해당기관은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속에서 문화유물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단일성, 찬란한 문화전통을 옹계 인식시키며 그들의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문화유물을 애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판보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문화유물에 대한 출판보도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 나라의 문화유물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49조 문화유물보호에 대한 감독통제는 문화유물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문화유물감독기관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은 문화유물의 보호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50조 문화유물을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킨다.

제51조 문화유물을 도굴하였거나 력사유물을 팔고 사거나 력사유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거나 또는 발견한 력사유물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유물을 몰수한다.

제52조 문화유물의 발굴과 수정, 평가와 등록, 보존관리, 복구개건질서를 어겨 문화유물보존관리에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 · 최의철 · 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 최의철 ·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장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윤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철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외	저	4,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